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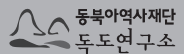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27 Summer 20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연구논문

- 엄기석 | 조선 후기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 변화
- 서남해안 도서를 중심으로 007
- 이 호 |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河川地理志)의 등장과 편찬에 관한 연구
- 중국 역도원(鄺道元)의 『수경주(水經注)』와의 비교를 곁하여 039
- 정연식 |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077
- 박정민 | 중국 역사학계의 14~15세기 압록강·두만강 유역 인식 109
- 이서희 |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전후, 실효적 지배에 관한 고찰 147
- 오승희 |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179
- 석주희 |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 219

자료소개

- 김종근 | 한국과 일본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249
- 박한민 | 1901년 울릉도 출장을 다녀온 스미스가 작성한 영문보고서 271

서평

- 이석용 |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도시환 편, 2023, 동북아역사재단 297
- 정갑용 | 『독도등대』: 김신 저, 2024, 좋은땅 319

영토·해양 일지

업태일 | 영토·해양 일지 344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칙 354

발행 및 심사규정 356

투고 요령 36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364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76



평화선



- **임기석** | 조선 후기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 변화 - 서남해안 도서를 중심으로
- **이 호** |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河川地理志)의 등장과 편찬에 관한 연구 - 중국 역도원(鄺道元)의 「수경주(水經注)」와의 비교를 곁하여
- **정연식** |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 **박정민** | 중국 역사학계의 14~15세기 압록강·두만강 유역 인식
- **이서희** |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전후, 실효적 지배에 관한 고찰
- **오승희** |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 **석주희** |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 후기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 변화

- 서남해안 도서를 중심으로

엄기석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17세기 전반~18세기 중반 도서 지역 활용과 설읍 논의

III.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 면리 편제와 수군진 활용

IV. 맺음말

1. 머리말

현재 남한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 460여 개를 포함하여 대략 3,300여 개의 섬이 위치해 있다.¹ 섬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나 강 너머에 있는 육지 공간이기 때문에 땅으로 인접한 내륙과는 정치·문화적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섬이 아주 동떨어진 것만은 아니다. 섬 역시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며, 다소 제한은 있지만 내륙과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이다. 이러한 섬의 보편적 성격은 과거에도 동일하였다.

조선시대 섬은 내륙 지역과 동일한 역사 공간이었다. 마찬가지로 통치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며, 동시에 임금의 교화(敎化)가 미쳐야 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다만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미지의 영역처럼 그려진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섬은 주요한 관심에서 멀어진 경우가 많았고, 연구 소재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경계 지대에 관한 관심 등에 힘입어 섬에 관한 연구가 꾸준하게 시도되고 있다. 조선시대 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김경옥의 연구가 있다.² 김경옥은 서남해안 지역의 섬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도서 지역에 관한 정책 추이, 섬 내부의 경제적 활동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제시하여 섬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이후 섬과 관련된 연구로는 섬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행정 편제와 같은 정책 변화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먼저 고석규는 17~19세기 연대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도서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³ 송양섭은 나주 지역 섬의 절수(折受)와 영조 연간에 진행된 설읍(設邑) 논의를 다루었고, 이어서 오희묵(吳愼默)이 작성한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瑣錄)』을 활용하여 19세기 말 서남해안 도서 지역을 묶어 편제한 지도군의 행정 지배

* 논문 투고일: 2023.10.15, 심사 완료일: 2024.5.31, 게재 확정일: 2024.6.3.

1 KDI한국섬진흥원 사이트(www.kidi.re.kr) 참조.

2 김경옥, 2004, 『朝鮮後期 島嶼研究』, 해안.

3 고석규, 1997, 「設郡 논의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섬의 변화」, 『도서문화』 15.

구조에 관하여 서술하였다.⁴ 이어서 고동환은 전반적인 조선 후기 도서 운영 방식과 함께 완산도를 사례로 구체적인 정책 적용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⁵ 최근 임학성은 경기·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도서 지역의 인식과 편제 양상을 다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⁶ 이상의 연구 외에도 조선시대 도서 지역을 다룬 연구는 다수 있으나 대부분 지리지를 활용한 섬에 대한 인식 변화, 왕조 초반에 있었던 공도(空島) 정책과 목장·둔전 운영 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도서 지역, 그중에서도 서남해 연안에 밀집한 섬들에 행정 편제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서남해안 지역에 관한 관심 증가와 둔전 설치, 도서 지역을 별도로 행정 편제하는 설읍 논의를 압축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 글에서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호남 도서(湖南島嶼)』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17세기 도서 지역의 활용 양상과 인구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어서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던 군현 설치 논의를 넘어 면리제(面里制)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 지역의 행정 편제 상황을 제시해 볼 것이다. 구체적인 면리 편성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과거의 행정구역 재현을 시도하고, 실제 행정 편제 내역이 어떠하였는지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군진 등을 활용한 행정 통제 양상과 한계를 논의해 보겠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과거, 바다 너머의 공간이 실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실제에 다가서기를 기대한다.

4 송양선, 2005, 「朝鮮後期 羅州諸島の 折受와 設邑論議의 全開」, 『대동문화연구』 50; 2007, 「1896년 智島郡 創設과 西南海 島嶼 支配構造의 再編-吳弘默의 『智島郡叢覽錄』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6.

5 고동환, 2006, 「조선후기 島嶼政策과 完山島の 변화」, 『역사와 담론』 45.

6 임학성, 2014, 「조선시기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 『도서문화』 43; 2022, 「조선 전·후기 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양상-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16.

II. 17세기 전반~18세기 중반 도서 지역 활용과 설읍 논의

1. 목장·둔전 설치와 운영 변화

도서 지역은 내륙과 함께 국가 영토의 일부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섬은 지배·교화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였으며, 전근대 왕조는 섬에 대한 국가 지배 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펼쳐 나갔다.⁷ 고려의 경우 왕조 초반부터 연안 지역에 위치한 도서 지역을 적극적으로 경영·개발하였다. 태조 연간 전후로 서남해안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제주를 복속시켰으며, 강화·옹진·진도·거제·압해·남해현과 같이 섬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군현을 편제하기도 하였다.⁸ 대몽항쟁기에는海道입보(海島入保) 정책을 통해 외세의 침입을 바다에서부터 막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⁹ 다만 고려 말,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도서 지역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주민 보호를 위하여 섬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때 서남해안에 있었던 진도(珍島)·가흥(嘉興)·임회(臨淮)·압해(壓海)·장산(長山)·임치(臨淄)·육창(陸昌) 7개 군현은 대부분 내륙으로 이동하거나 혁폐되었다.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이후에도 공도 정책은 이어졌다. 서남해 7개 군현 중 진도현만이 진도군으로 명맥을 이었고 나머지 섬 지역에 설치되었던 군현은 복구되지 못하였다.¹⁰ 왜구에 의한 피해는 세종 연간 기해동정(己亥東征) 등의 결과로 찾아들었지만 공도 정책은 여전하였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약한 섬으로 범죄자나 피역자들이 숨어들었기 때문에 이

7 조선시대 도서 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배우성, 1997, 「조선후기 沿海·島嶼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 『도서문화』 15 참고.

8 정요근, 2012, 「고려~조선전기 전라도 서남해상 島嶼 지역의 郡縣 편제와 그 변화」, 『도서문화』 39; 박종기, 2017, 「조선시기 관찬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 48 참고.

9 윤용혁, 1982,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麗蒙抗爭 전개의 一樣相-」, 『역사교육』 32 참고.

10 김경옥, 2004, 앞의 책, 50~53쪽; 정요근, 2012, 앞의 글, 96~105쪽.

들에 대한 추쇄를 실시하고, 동시에 섬으로 이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¹¹

이와 같이 섬에 거주민을 두지 않는 정책은 지속되었으나, 그렇다고 섬 공간이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정부는 비어 있는 섬에 국영 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활용하였다. 특히 전라도에는 세종 18년(1436, 병진) 지도(智島)·임치도(臨淄島)·장산도(長山島)·자은도(慈恩島)에 목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종 24년(1493, 계축) 암태도(巖泰島)까지¹² 총 34개의 목장이 확인된다. 이처럼 정부는 주민 통제를 위한 공도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도서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목장 등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였다.¹³

결과적으로 16세기를 전후로 하여 공도 정책은 점차 실효성을 잃어 갔다.¹⁴ 사실상 목장 개발과 동시에 목자(牧子)와 목자군(牧子軍)을 상주시켜 우마를 사육, 생산하는 국역을 담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도서 지역의 완전한 ‘공도’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연해 지역 주민들이 경작지 개간을 위하여 섬으로 이주하면서 도서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도서 지역의 인구 증가는 섬을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하였다. 숙종 5년

11 김경옥, 2004, 위의 책, 62~67쪽.

12 『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1436) 7월 25일(무오); 『성종실록』 권282, 성종 24년(1493) 9월 14일(을사).

13 조선 정부의 도서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은 섬에 대한 중앙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지리지에 수록된 섬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世宗實錄』 『지리지』에는 전라도에 위치한 섬이 총 30개로 매우 적은 수를 보였다. 반면에 16세기 전반 『新增東國輿地勝覽』 단계에 오면 나주·진도·영광·순천 등 군현에만 30개가 넘는 섬이 기재되는 등 급격한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섬 기재의 증가 양상은 섬 지역에 대한 국영 목장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개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파악과 통제도 심화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도 증가 추세는 이어져서 18세기 중엽 『東國輿地備考』에는 429개, 19세기 중엽 『大東地志』에는 461개의 섬 지역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나주의 경우 조선 후기에는 60~70개나 될 만큼 많은 수의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섬 기재의 증가 양상은 도서에 대한 행정력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조선시대 관한 지리지별 섬 정보를 기재 방식과 인식에 관해서는 박중기, 2017, 『조선전기 관한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 48; 임학성, 2022, 『조선 전·후기 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양상』, 『해양문화재』 16호 참고.

14 공도 정책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명호, 2008, 『조선 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海島政策을 통한 空島政策 재검토』, 『역사와 경계』 66; 정요근, 2012, 앞의 글, 96~97쪽 참고.

(1679, 기미) 자료로 알려진 『목장지도(牧場地圖)』를 살펴보면 전라도 12개 읍에 설치되었던 기존 국영 목장 46개 중 둔전이 설치된 곳 12개, 목장을 폐지한 곳 9개 등을 제외하고 실제 목장이 유지되는 곳은 16개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는 기존 국영 목장을 폐장하고 그곳을 개간하여 경작지로 활용하였기 때문인데,¹⁶ 예를 들어 나주목의 경우 7개 목장 중 자은도·장산도·압해도 3곳만 목장이 있었고, 나머지 기좌도·안창도·지도·우곶도에는 사복시 둔전이 설치되었다. 진도군도 3곳 중 지력산(智力山) 목장 1곳만이 유지되었으며, 침찰산(尖察山)과 부지산(夫之山)의 경우 폐지되고 민가가 들어섰다고 설명하였다.¹⁷

이와 같이 서남해 도서 지역이 목장에서 경작지로 탈바꿈하는 모습은 『목장지도』와 비슷한 시기인 숙종 7년(1681, 신유) 이전 자료로 추정되는¹⁸ 『호남도서(湖南島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호남도서』에는 군현별로 서남해안 섬의 위치가 지도로 표현되어 있고, 동시에 섬마다 이용 상황을 기재하였다. 총 122개의 지명 중 활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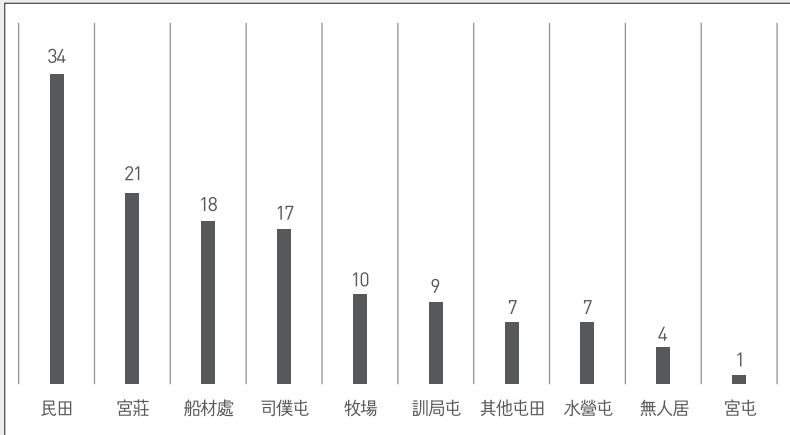
15 『牧場地圖』(한궤古朝80-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6 임학성, 2022, 앞의 글, 153~154쪽.

17 『牧場地圖』(한궤古朝80-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 『湖南島嶼』는 현재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호남도서』의 간행 연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19세기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호남도서』의 서지적 형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19세기 초중반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정대영, 2020. 『湖南島嶼』 지도첩의 서지적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1 참고). 하지만 실제로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광군 매암도와 모야도의 둔전에 대하여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와 숙취공주가 봉록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나주부의 지도와 강진현 신지도의 경우 1681년 군진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1681년 이전 자료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한국고지도집 편집위원회, 2012. 『국토의 표상』, 동북아역사재단, 425쪽). 이 글에서는 후자의 의견을 따르고자 하는데, 실제 화풍은 19세기의 것으로도 보이지만 호구 수의 변화와 같은 텍스트 내용만큼은 1681년 이전의 자료로 보는 게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 변화



〈그림 1〉 17세기 전반 전라도 도서 지역 활용 양상

출처: 『湖南島嶼』 상세한 내역은 〈부표〉 참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서남해에 위치한 도서 지역의 활용 양상은 민전 34, 궁장 21, 선재처 18, 사복시 둔전 17, 목장 10, 훈련도감 둔전 9곳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17세기 전후로 도서 지역에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목장 지역을 개간한 민전이 다수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궁방·군영·아문에서도 도서 지역에 대한 경작을 주도하면서 다수의 둔전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목장지를 활용한 사복시 둔전은 17곳으로 앞서 언급한 나주의 지도와 낙안의 장도를 비롯하여 나주 압해도와 자은도, 강진 신지도, 흥양 절며도와 시산도 등에 설치되었고, 오히려 목장보다도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존 목장지를 개간하는 방식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영광의 증도와 고이도, 장흥의 내덕도와 득량도 등 많은 도서 지역이 목장에서 궁방·아문의 둔전으로 탈바꿈하였다.¹⁹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목장을 개가하였을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복시로 귀속되었는데,²⁰ 점차 이 사복시 둔

19 『牧場地圖』(한글 古朝80-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0 고동환, 2006, 앞의 글, 33~34쪽.

전을 궁방이나 군영 둔전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목장지도』를 보면 후대에 섬의 활용이 바뀌는 경우 노란색 종이를 붙여 변경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대부분 왕실 토지나 훈련도감·수영의 둔전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7세기 이후 왕실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관은 절수(折受), 사여(賜與), 이속(移屬) 등을 통해 궁방전과 둔전을 확장하고 있었다.²¹ 이때 주로 대상이 되는 토지가 섬에 위치한 기존 사복시 소관의 목장 혹은 둔전이었다.

김류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옛날 둔전의 법을 모두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우선 쉬운 것만 시험삼아 해 보면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 강화의 덕물도와 장단의 무지곶 같은 곳은 땅이 비옥하고 강도의 앞뒤를 호위하는 곳이기도 하므로 개간을 하기에 합당합니다. 그 외 태안의 액산과 호남의 황원, 완도, 지도, 고금도, 의도, 위도, 고군산 역시 모두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태복시에서 거두는 것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지역의 곳곳에 둔전을 설치하면 그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수확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연변의 섬이므로 운송할 때 고충을 줄일 수 있으니, 곡식을 얻는 방법으로 이보다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둔장을 보내고, 3도의 감사에게 알려져 속히 조치하도록 하소서.”²² (밑줄은 필자)

위 기사는 인조 5년(1627, 정묘) 우의정 김류가 제시한 둔전 개발 의견이다. 김류는 경기도의 섬과 연안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도 연해에 위치한 황원(黃原)과 섬 지역인 완도·지도·고금도·의도·위도·고군산에 있었던 기존 사복시 목장에 주목하고, 목장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둔전으로 개간하여 이용하자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복시 목장을 둔전으로 활용하고

21 나주 소속 도서 지역의 둔전 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송양섭, 2005, 앞의 글, 388~396쪽 참고.

22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1627) 11월 17일(경진).

자 하는 양상은 18세기 초반까지도 이어졌고, 『목장지도』를 보면 장흥부의 내덕도(來德島)의 경우 본래 사복시 둔전이 있었다가 숙종 29년(1703, 계미) 명빈방(淸嬪房)으로 이속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²³

조선은 왕조 초반 왜구를 염려하여 도서 지역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종 연간 이후에는 비어 있는 섬에 목장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전라도 연안 도서 지역에 34개의 국영 목장이 조성되었다. 다만 목장의 설치에 목자와 같은 인력의 도서 진입을 허용해야만 하였고, 연해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도서로 이주하여 개간을 실행하면서 이전의 공도 정책은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도서 지역의 개발은 계속되어서 기존 목장지를 둔전으로 변경하는 일이 잦아졌고, 실제 17세기 후반에는 서남해 도서 지역에 왕실의 궁장토와 사복시·훈련도감 등의 둔전이 다수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도서 지역 경제력 증가와 설읍 필요성 제기

17세기 이후 서남해 도서 지역에서는 둔전의 조성과 같은 개발이 잦아졌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인구 역시 증가하였다. 인구의 유입은 대체로 17~18세기에 주로 이루어졌다.²⁴ 예를 들어 숙종 33년(1707, 정해) 논의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흑산도와 가가도를 방어상의 이유로 공도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들어와 개간하며 정착하여 토지가 240여 두락, 백성이 40여 호나 되는 상황이라고 아뢰었다. 이 때문에 백성을 쫓아내는 일은 불가능해졌으므로 훈련도감으로 하여 둔전을 구관하도록 조치하는 일이 있었다.²⁵ 이처럼 18세기 초반을 전후로 경작지 개발로 인해 도서 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17~18세기 도서 지역의 인구 변화를

23 『牧場地圖』(한말고종80~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4 김경옥, 2004, 앞의 책, 86쪽; 고동환, 2006, 앞의 글, 40쪽.

25 『승정원일기』 437책, 숙종 33년(1707) 8월 19일(무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 서남해 주요 도서별 '호'수 변화 양상

명칭	『호남도서』	『여지도서』	증감	명칭	『호남도서』	『여지도서』	증감
자은도 (慈恩島)	350	420	70	가가도 (可佳島)	43	33	- 10
비금도 (飛禽島)	330	369	39	자라도 (者羅島)	30	47	17
장산도 (長山島)	250	224	- 26	구슬도 (仇瑟島)	23	21	- 2
도초도 (都草島)	221	281	60	반월도 (半月島)	16	27	11
지좌도 (只佐島)	212	269	57	홍의도 (紅衣島)	16	18	2
팔이도 (八爾島)	180	205	25	박지도 (朴只島)	13	25	12
우개도 (牛開島)	105	113	8	대야도 (大也島)	12	13	1
하의도 (荷衣島)	100	60	- 40	엇매도 (唵每島)	10	13	3
암태도 (巖泰島)	60	320	260	수치도 (愁致島)	9	16	7
흑산도 (黑山島)	60	283	223	우막도 (牛幕島)	5	13	8

출처: 『湖南島嶼』, 『輿地圖書』.

〈표 1〉은 17세기 후반 자료인 『호남도서』의 '나주제도원수(羅州諸島元數)'에 기록된 나주 소속 일부 도서별 호수(戶數) 규모와 『여지도서』에 기록된 영조 35년(1759, 기묘) 기준 호수를 비교한 내역이다.²⁶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산도(長山島), 하의도(荷衣島), 가가도(可佳島), 구슬도(仇瑟島)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 지역에서는 적게는 1호에서 많게는 260호까지 호수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내용이 서남해 도서 지역의 모든 상황을 반영한

26 『호서도서』의 '羅州諸島元數'에는 전체 도서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호수를 기록하고 있고, 『여지도서』에 수록된 섬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표 1〉의 내용은 두 자료 내 도서 지역의 명칭이 동일한 사항만 비교한 내역이다.

것은 아니지만 실제 도서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서 지역의 행정은 국가 차원의 군현제적 시스템에 의한 지배라기보다는 토지 개간을 주도 혹은 소유권을 가진 왕실이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 둔장과 같은 둔전 관리자가 지역 자치의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²⁷ 상황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일원적인 호구 파악이 쉽지 않았으며, 섬 지역 주민 중 호적에 오른 경우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였다.²⁸ 결국 섬 지역 주민에 대한 파악과 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공적 지배 영역에 벗어난 행정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방법이 바로 섬 지역에 대한 설읍 논의였다.²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서남해 연안의 섬이 압해군·임치현과 같이 군현으로 편제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여말선초 공도 정책으로 인하여 폐읍되었고, 이후 별도 행정 편제 없이 섬은 인근 내륙에 위치한 군현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섬은 특정 군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치소와 물리적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의 통제는 유명무실하였고, 정부의 행정력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18세기 전후 도서 지역의 인구 증가는 이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영조 5년(1729, 기유) 아래와 같이 섬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구역을 편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태좌가] 또 아뢰기를, “신이 저번에 전 전라 병사 조경(趙敬)이 다음과 같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주 등 고을이 관할하는 서해와 남해의 여러 섬이 57개나 됩니다. 그중 34개는 매우 큰 섬으로 그 넓이를 모두 계산하면 길

27 송양섭, 2005, 앞의 글, 392~393쪽.

28 『승정원일기』 772책, 영조 10년(1734) 1월 28일(을사).

29 전반적인 서남해안 도서 지역의 설군·설읍 논의에 대해서는 고석규, 1997, 앞의 글; 김경옥, 2004, 앞의 책; 송양섭, 2005, 앞의 글; 고동환, 2006, 앞의 글 참고.

이가 600여 리이고 너비도 300여 리이며, 인호의 수가 모두 4,300여 호이고 전결은 합이 4,000여 결입니다. 그 밖의 작은 섬들도 누락된 곳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상 방어는 매우 허술하여 남양(南洋)의 여러 섬이 원근에 바둑돌처럼 나열되어 있는데도 조정에서는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의 형세로 헤아리면 거제나 진도의 규례처럼 여러 섬을 합하여 하나의 고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 외에 제멋대로 거두는 것을 금지하고 백성을 무마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섬을 순시하고 직접 민호를 점검하여 호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정장(丁壯)을 뽑아 대오를 편성하고 단속하도록 하면 해상 방어가 허술하게 되는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전라감사에서 분부하여 먼저 나주 목사로 하여 직접 여러 섬을 살펴보고도록 하며, 또 봄 순시 때 다시 형지(形止)를 상세하게 조사한 다음 이해에 따라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³⁰

위 내용에서 우의정 이태좌는 전 전라병사 조경의 말을 인용하여 나주 등 서남해 연안 고을이 관리하는 섬이 57개나 된다고 하였다. 그중 34개의 섬은 규모가 있으며 전체 인구가 4,300여 호, 전결이 4,000여 결로 상당한 규모임을 설명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제나 진도의 규례를 따라 여러 섬을 하나의 읍으로 편성하지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서 병조판서 조문명은 압해도와 장산도에 예전에 읍을 설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세에 따라 읍을 설치하고 감목관을 부사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우원장(右援將)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서 군사·행정을 통솔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¹ 이상의 의견에 대해 영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결말에 이르지

30 『승정원일기』, 679책, 영조 5년(1729) 2월 20일(을미).

31 『승정원일기』, 679책, 영조 5년(1729) 2월 25일(경자).

는 못하였다.³² 그렇지만 서남해안 도서 지역에 대한 설읍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정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나주의 여러 섬은 그 수가 57개입니다. 섬에 거주하는 백성의 습속이 사납고, 신역을 피하려는 유민이 가서 살다 보니 도망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 고을 하나를 설치하여 여러 섬을 통할하게 하면 충분히 군현의 모양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려두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신이 내려갈 때 즉시 복명하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오래 머물 수 없어서 형편을 다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만, 고을을 설치하면 편리할 것이라는 호남의 여론이 일치합니다.” 홍치중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섬에 고을을 설치하면 편리하다는 것은 경기 수사가 일찍이 언급하였고, 우상도 그렇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전하께서는 도신에게 물어본 뒤에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광덕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편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논의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 외적이 침입할 우려가 없지 않은데도 방비가 소홀하고, 근래에 연좌된 죄인들이 섬에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수령을 가려서 두어 방어하고 진무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섬에 궁가 절수 토지와 태복시의 둔전이 많습니다. 만약 나주 감목관이 있는 곳에 고을을 설치하고 이어 본읍으로 하여 목관을 겸하게 하여 세를 거두어 태복시로 보내게 하면 일이 매우 편하고 본읍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고을의 대소 형편은 신이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고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 수 있습니다.”³³

32 영조 5년(1729) 8월에도 조문명이 이어서 설읍을 주장하였으나 영조가 섬과 섬 사이의 물리적 거리, 수령 부임의 기피, 하리와 토호의 침탈, 향교나 군제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였다. 『승정원일기』 692책, 영조 5년(1729) 8월 29일(신미); 송양섭, 2004, 앞의 글, 406~407쪽.

33 『승정원일기』 717책, 영조 7년(1731) 1월 4일(무진).

영조 7년(1731, 신해) 호남어사 황정이 마찬가지로 섬을 통합한 군현을 설치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며, 이는 호남의 민심이라는 점도 전하였다. 영의정 홍치중 역시 해방과 섬 주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고을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었다. 여기에 도승지였던 박문수도 10년 동안 수령을 파견하면 왕화(王化)를 입어 잘 다스려질 것이라고 부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역시 영조는 반대하였다. 영조는 군현을 설치하여 각종 조세와 부역을 부과한다면 주민들이 동요할 것이고, 이들이 섬에 유배된 이들과 연계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설읍 주장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후 영조 24년(1748, 무진) 전라감사 한익모에 의하여 채차 설읍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영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되었다.³⁴

이상 서남해 도서에 대한 독자적인 군현 설치가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기존 도서 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궁방과 아문과 같은 권력 기구와의 관계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기존 재정을 대체해 줄 만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설읍 논의를 진행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섬 주민들 역시 궁방과 아문의 지배가 오히려 익숙하였으므로 국가 기관의 통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중첩적인 부세 부담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만들어 내었다.³⁵

이처럼 영조 연간 설읍의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한 이유가 궁방과 아문의 기존 지배 체제가 공고한 측면에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으로는 도서 지역에 대한 거리와 이동의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적 통제를 위해서는 내륙 차원에서 도서 지역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림 2>는 윤두서(尹斗緒)가 그린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 내 서남해 도서 지역 부분이다.

34 『승정원일기』 1029책, 영조 24년(1748) 5월 6일(기축).

35 송양섭, 2005, 앞의 글, 408~411쪽.



〈그림 2〉 『東國輿地之圖』 속 서남해 도서 간 해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서남해 도서 지역은 도서 간에 해로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교류를 전개하였다. 다만 그림상의 해로는 인접 도서를 다방면으로 연결한 형태라기보다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실제 현제도 마찬가지로 내륙 지역과 다르게 해로는 인접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교류 방향 역시 단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하는 과정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위험 부담 역

시 큰 편이었다.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 접근의 어려움은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다.

서남해 도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함께 도서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제 17·18세기 서남해 인구 현황을 담은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일부 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수가 증가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부는 섬 지역에 경제적 관리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영조 초반 이른바 설읍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설읍은 시기 상조였다. 여전히 섬 내부에는 궁방과 아문의 통제가 공고하였고, 내륙에서 도서 지역을 관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결국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일원적 지배를 위한 설읍 논의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늘어난 인구와 전결을 방지할 수만은 없었다. 별도의 군현의 설치가 아니더라도 도서 지역에 산재한 인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읍을 대신하여 찾은 방안은 범위를 축소하여 면리(面里) 단위로 도서 지역을 편제하는 방식과 수군진의 활용이었다.

Ⅲ.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 면리 편제와 수군진 활용

1. 면리제(面里制) 적용과 군현별 편제 양상

17~18세기 조선 정부는 군현의 영역과 제정 체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면리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기관별 혹은 향촌별로 시행된 사적인 지배 체제를 약화하고, 사회의 하부구조까지 국가의 일원적 통치를 바탕으로 한 공적이고 보편적인 지배를 시도하였다.³⁶ 이러한 면리제 적용은 18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서남해안의 많은 도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주민이 있는 섬의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내부의 동리

36 조선 후기 면리제 시행 추이에 대해서는 오영교, 2001, 『朝鮮後期 鄉村支配政策 研究』, 혜안 참고.

편성과 인구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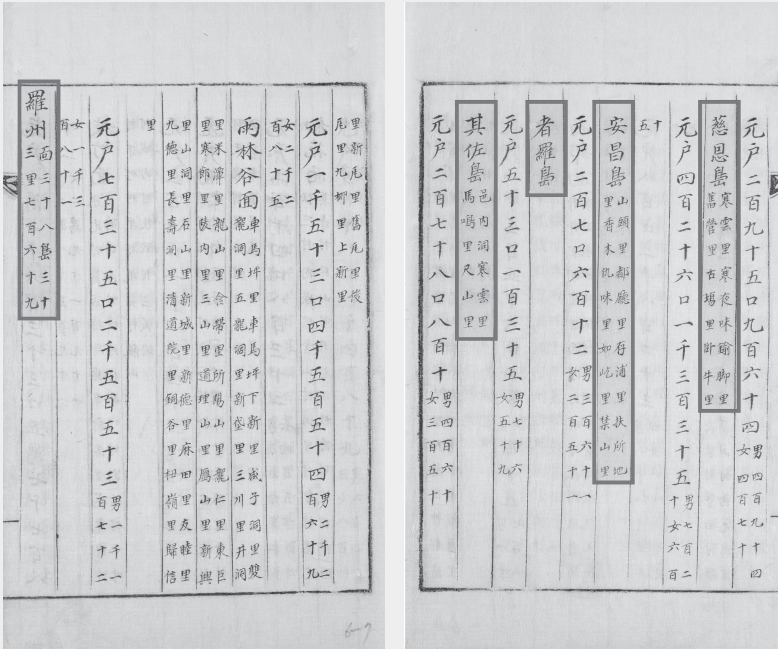
영조 초반 설읍 논의가 사실상 흐지부지 끝이 나면서 더 이상 도서 지역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에 관한 재원의 파악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면리제의 강화와 함께 조선 정부는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와 인구 파악도 시도하였는데, 이는 정조 13년(1789, 기유)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조사·기록한 『호구총수(戶口總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³⁷

『호구총수』는 당시 전국의 호구 규모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군현-면-동리로 이어지는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섬에 대한 정보 기재 방식이다. 경기-충청-전라와 같이 서남해 해안과 접해 있는 지역은 섬이 많은 곳으로 행정 정보에도 도서 명칭을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라도 서남해안의 군현은 다수의 섬이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서 지역을 편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의 왼쪽 면을 보면 나주는 면 38개와 함께 섬(島) 33개로 이루어졌으며 그 아래에 리 769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섬 33개는 일반 내륙의 면과 동일한 등급의 행정 단위로 〈그림 3〉의 오른쪽 면에서 볼 수 있듯이 면 명칭 위치에 자은도·안창도·자라도·기좌도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섬을 면으로 편성한 사례로 섬으로 이루어진 면[이하 도면(島面)] 역시 다수의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은도는 세운리를 비롯하여 6개의 동리, 안창도는 산두리를 포함하여 7개의 동리, 기좌도는 읍내동과 4개의 동리가 있었다. 다만 자라도의 경우 별도로 분동(分洞)³⁸ 없이 편성되었다.

37 18세기 후반 이전 지리지에서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도서 지역에 대한 파악은 행정 관할지의 부속 도서로 명칭만 언급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호구총수』의 경우 도서의 分洞 상황부터 호수, 남녀 인구, 하위 부속 도서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18세기 후반 정부의 섬을 비롯하여 지방의 하위 행정 단위까지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경욱, 2004, 앞의 책, 101쪽.

38 조선 후기 촌락의 편제와 면 단위 분화인 分洞 양상에 대해서는 정진영, 1993, 「조선후기 村落의 구조와 分洞」, 『국사관논총』 4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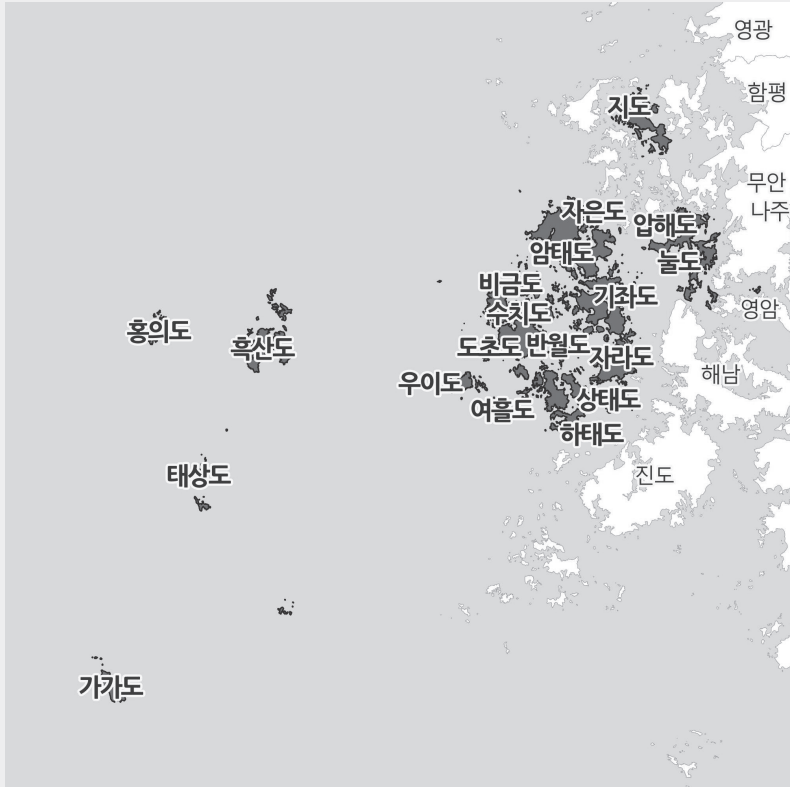


〈그림 3〉『호구총수』에 기재된 서남해 도서 지역 '면' 편성 내역 출처: 『戶口總數』.

『호구총수』에는 나주처럼 영암(2), 영광(2), 강진(5), 홍양(3)에도 같은 방식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면이 있었다. 이처럼 별도로 도면으로 언급된 경우는 특정 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큰 섬과 주변 소규모 섬으로 공간이 구성되었다. 도면으로 언급된 경우는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강화의 제도면(諸島面)처럼 여러 섬을 묶어 1개의 면으로 편성하고 명칭을 제도(諸島) 등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진도와 장흥에는 각각 제도면이 있었고, 영광은 상제도(上諸島)와 하제도(下諸島)로 구분되어 있었다.³⁹ 정리해 보면 전라도 지역의 경우 섬을 면리제로 편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특정 섬을 중심으로 하여 면을 편제한 도면, 다른 하나는 군소 규모의 섬을 하나의 면으로

39 『戶口總數』全羅.

뭍은 제도면의 경우이다.⁴⁰ 아래부터는 복원한 지도를 바탕으로 각 군현별 도면 편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4〉 전라도 나주 島面 편성 현황

출처: 『戶口總數』.

* 이 글에서 제시한 지도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지리DB를 기반으로 정요근·김현중이 제작한 행정구역 정보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GIS팀에서 연구한 전라도 지역 지명 고증 결과를 원생산자 동의하에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이다. 이 글 이외의 이용은 금하며, 이하 언급은 생략한다.

40 해당 면 편제 방식의 특징과 세부 내역은 김경옥, 2004, 앞의 책, 101~103쪽 참고.

〈그림 4〉처럼 나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섬을 보유한 지역이었다. 그만큼 도면도 많았다. 나주에서는 자은도·안창도·자라도·기좌도·압태도 등 33개의 면으로 도서 지역을 편제하였다. 지도의 경우 호수가 891호, 인구가 1,734명으로 나주 섬 단위 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고, 본도 안에 15개의 동리가 있었다. 이와 함께 회도와 송도 두 섬으로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호구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압해도의 경우 17개의 동리와 태도와 우곶촌 섬으로 편제되었다. 이때 우곶촌의 경우 어미가 ‘촌’이지만 실제로는 본도와 떨어져 있는 섬으로 확인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도와 압해도처럼 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섬, 예를 들어 사치도와 여흥도의 경우에는 각각 호수는 7호밖에 되지 않지만 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 면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흑산도·홍의도·태상도·가가도의 경우 외해에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개별 도면으로 구성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⁴¹ 〈그림 5〉는 나주를 제외한 영암·영광·강진·홍양의 도면 편성 내역이다.

영암의 경우 도면으로 서도가 있었다. 서도는 소안도를 중심으로 본도 인근의 자지도·구도·횡간도를 포함하여 내륙에 인접한 흑일도·백일도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남쪽 제주도로 가는 경로에 위치한 추자도가 서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암의 다른 도면인 제도의 경우 노화도를 본도로 하여 인근 노죽도·잉도·가도와 함께 영암 월경지에 위치한 어룡도·장고도·죽굴도, 보고도서로 표현된 보길도로 이루어졌다.⁴² 영광은 상제도와 하제도도 나뉘는데, 상제도는 낙월도 주변의 군소 도서, 하제도는 임자도를 중심으로 군소 도서를 포함하였다. 특이한 점은 인접한 섬끼리 묶인 것이 아니며, 나주의 지도와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⁴³ 나주 다음으로 도면이 많은 강진의 경우 강진 남해안에 위치한 다수 도서와 완도

41 『戶口總數』全羅, 羅州.

42 『戶口總數』全羅, 靈巖.

43 『戶口總數』全羅, 靈光.

조선 후기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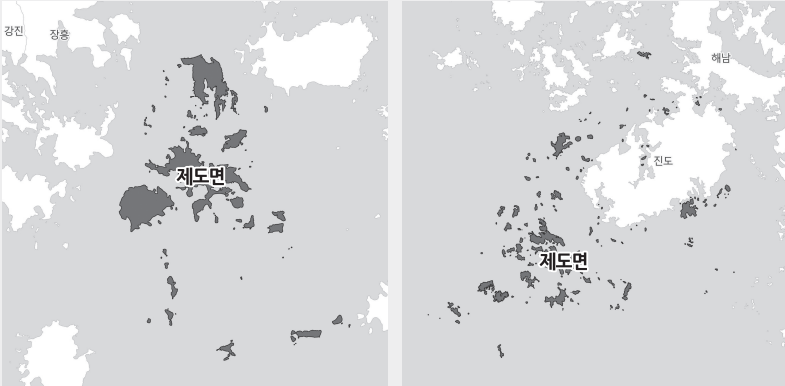


〈그림 5〉 전라도 영암·영광·강진·홍양 島面 편성 현황
출처: 『戶口總數』.

일부로 면을 편성하였다. 고금도는 고금도가 본도로 14개 동리로 분동되어 있고, 인근 척찬도가 척찬리로 표기되어 있다. 조약도와 신지도는 각각 본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완도는 해남의 은소면에 해당하는 완도 서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부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청산도는 남쪽 외해에 위치해 있다. 본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19개 동리로 분동되어 있고 부속 도서로 남쪽의 여서도가 있다.⁴⁴ 다음으로 홍양은 도면이 세 개로 절이도와 나로도를 본

44 『戶口總數』全羅, 康津.

도로 하는 도면이 있고, 제도리는 명칭으로 내륙에서 떨어진 군소 규모의 섬을 묶어 면으로 편성한 경우도 있었다.⁴⁵



〈그림 6〉 전라도 장흥·진도 諸島 편성 현황
출처: 『戶口總數』.

다음으로 장흥과 진도는 특정 섬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군소 규모의 여러 섬을 하나의 면, ‘제도면’으로 묶어 편제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장흥 제도면은 내청도·평일도·소량도·일산도 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에 편제되지 않은 섬이 많은데 이를 동리로 편제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섬이 무인도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⁴⁶ 진도의 제도는 본도 주변에 있는 섬을 하나의 면으로 묶은 경우이다. 다만 본도 남서쪽에 위치한 상조도와 하조도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중심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상과 같이 18세기 후반 조선 정부는 면리제를 바탕으로 서남해에 흩어져 있는 도서 지역을 행정 영역화시켰다. 이들 지역은 내륙에 있는 면리와

45 『戶口總數』全羅, 興陽.

46 『戶口總數』全羅, 長興.

47 『戶口總數』全羅, 珍島.

다르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면 안에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접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상호 간의 이동과 같은 요소도 중요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면’이라는 별도의 편성 방식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럼에도 내륙 지역과 동일한 ‘면’ 단위의 행정 층위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도서 지역의 주민 역시 일반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지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 여전히 섬은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의 통치·교화의 범위에 들어오기 어려웠고, 섬 주민들도 내륙의 상황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면임과 바다에 설치된 수군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섬 지역에 대한 대민 지배를 계속해서 시도하였다.

2. 수군진을 통한 행정 통제 시도와 한계

18세기 이후 정부는 서남해안 도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였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실제 지배 구조 방식의 차이가 있었으나 섬 지역의 주민들 역시 보편적인 행정 체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8세기 후반 작계는 7호·16명이 사는 섬 지역의 현황까지도 파악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⁴⁸ 하지만 실제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력의 적용 방식이 내륙과 같을 수는 없었다. 여전히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성격의 사회 구조에 일반적인 지배 체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앞서서 『호구총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이 있는 서남해안 도서 지역은 면리제로 편제되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위 군

48 『戶口總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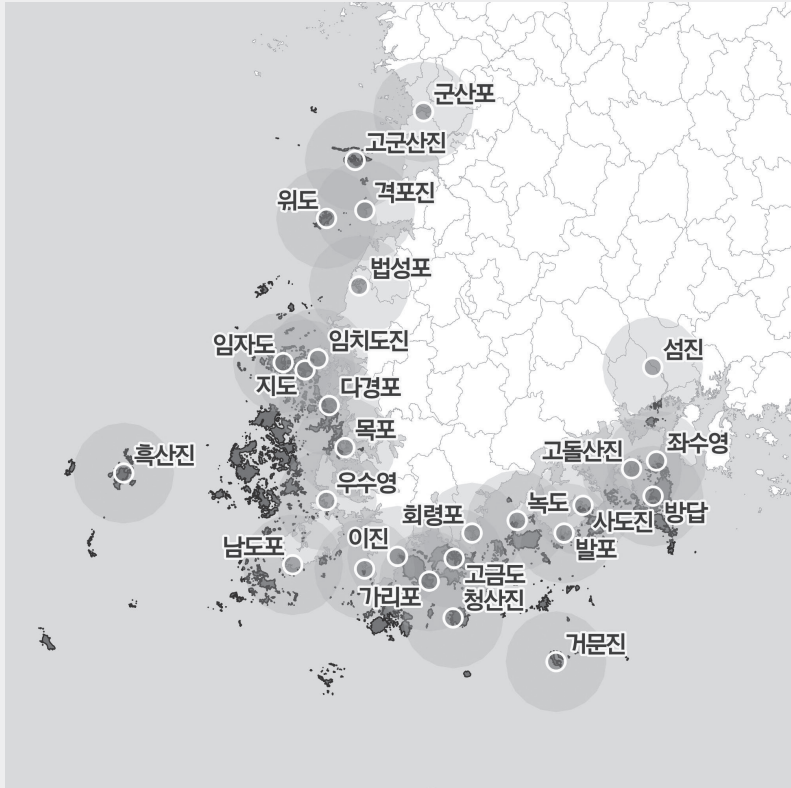
현의 수령은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도서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진휼을 실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결국 수령의 부재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였는데, 섬에서는 우선 면의 행정 책임자인 면임(面任)이 있어서 수령을 대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호구총수』에 기재된 도서 지역의 동리 명칭을 살펴보면 도청리(都廳里) 혹은 도청촌(都廳村)이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⁰ 대체로 나주의 압태도·압해도·지도, 강진의 청산도와 같이 호구 규모가 큰 면에서 확인 가능한데, 위치도 읍치로 추정되는 곳과 일치한다. 이러한 도청(都廳)의 기능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면임의 또 다른 명칭인 도윤(都尹)이 주재하는 일종의 치소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본다면 도서 지역에 방문이 어려운 수령을 대신한 면 단위 책임자인 도윤이 있어서 행정력의 부재를 해결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도서 지역에 보다 확실한 행정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직접적으로 이 지역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남해안 곳곳에 설치하였던 수군진을 활용하였다.

〈그림 7〉은 서남해안에 설치된 수군진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8~19세기 서남해안에는 다수의 수군진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수군진 설치는 19세기에든 추가로 이루어져서 격포진(格浦鎭), 흑산진(黑山鎭), 삼도진(三島鎭), 청산진(靑山鎭), 거문진(巨文鎭) 등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 편찬된 『호남진지(湖南鎭誌)』를 기준으로 대략 27개의 수군진이 있었다. 해당 수군진은 내륙에 있는 군현보다도 지리적·물리적으로 도서 지역과 가까웠다. 실제로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수군진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10~15킬로미터 내에 대부분의 도서 지역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상의 이점 등을 토대로 실제 서남해안 도서 지역의 행정

49 面任의 선출과 기능, 추이에 대해서는 오영교, 2001, 앞의 책 참고.

50 『戶口總數』.



〈그림 7〉 18~19세기 서남해안 수군진 설치 현황

을 수군진의 침철제사나 만호 등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⁵¹ 조선 후기 수군진의 역할로는 ① 송전과 봉산 관장, ② 조운로 보장, ③ 선박 건조 담당, ④ 섬 주민의 인구나 호구 관장, ⑤ 세금 관리, ⑥ 민역과 잡역 업무 관장 등이 있다.⁵² 이 중에서 인구나 호구 관장과 세금 및 민역·잡역 관리가 일반적

51 조선 후기 수군진 설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5세기 내륙에 있던 달랑진 등이 사라지고 17세기 이후 신설된 수군진은 대부분 섬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김경옥, 2019, 『수군진, 물고기 비늘처럼 설치하다』, 민속원, 23~26쪽; 17세기 서남해안 수군진은 황당산 출현 증가로 일부 재편되었는데, 세부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송기중, 2019,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정책, 재정, 훈련에 관하여』, 역사비평사, 163~177쪽 참고.

52 김경옥, 2019, 위의 책, 31~33쪽.

인 수령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서남해안 도서에서 수군진이 행정 역할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조 10년(1786, 병오) 추자도에 별장(別將)을 설치하여 환곡 분급과 같은 일반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일이 있었다.⁵³ 이와 같이 섬이라는 특성상 거리가 멀어 일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 파견되어 있는 수군진의 관리에게 업무를 부여해서 행정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8~19세기 정부는 서남해 연안의 도서 지역을 면리제로 편제하였으나 공간적 한계로 발생하는 행정력의 부재를 면 책임자인 도윤이나 수군진의 무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수군진을 활용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도서 지역에 중앙집권적 형태의 행정 체계를 적용하려고 한 이유는 이전부터 도서 지역을 사실상 지배해 오던 궁방과 아문의 침탈을 방지하고 섬 지역의 주민들을 일반적인 부세 체계 내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적 편제만으로 도서 지역의 지배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이후에도 도서 지역에 대한 기존 권력 기관의 영향력이 이어지면서 궁방과 아문에 의한 규정 외 침탈의 사례는 이어졌다. 19세기 초반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백성들이 궁가가 있는 줄만 알고 나라가 있는 줄은 모른다”라고 하며 서남해 도서의 현실을 꼬집기도 하였다.⁵⁴ 결국 도서 지역에 대한 일원적 통제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면리제, 수군진의 활용과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이 중 침탈과 같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내륙과 동등한 입장의 행정 편제와 관리 파견, 즉 ‘설읍’이 불가피한 일이었다.

53 『승정원일기』 1595책, 정조 10년 2월 13일(정해).

54 정약용, 『經世遺表』 권8, 「田制」 12.

IV. 맺음말

여말선초 공도 정책이 이어지면서 조선왕조 초반에는 빈 섬을 목장으로 이용하였다. 서남해안은 도서 지역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목장이 설치된 곳이었다. 하지만 공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서로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었고, 이들의 생활을 위하여 목장지를 둔전으로 개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17세기 이후에는 궁방과 아문이 도서 지역을 경영하며 둔전은 확대 양상을 보였다. 적극적인 섬 개발과 함께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 결과 도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위하여 별도 군현을 설치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설읍 논의는 국왕인 영조가 반대하면서 무산되었으나, 18세기 후반 면리제를 기반으로 한 행정 편제로 이어졌다. 전라도 도서 지역의 특징은 섬만을 대상으로 한 면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른바 ‘도면’은 나주 33곳을 포함하여 45개가 만들어졌고, 군소 도서를 묶은 제도면이 진도와 장흥에 각각 1개씩 편성되었다. 이러한 행정 단위는 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리·이동 등을 고려하여 편제하였다. 섬이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면-동리 단위 편제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내륙과 동일한 행정 체제의 구현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방식에도 한계가 있었다. 일반 군현과 다르게 도서 지역은 수령이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왕조 정부에서는 이를 대체하여 면 책임자인 도윤과 수군진의 별장 등을 통해 행정력 부재를 메꾸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선 후기 서남해에 위치한 도서 지역의 행정 편제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도서 지역의 지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읍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다만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행정 체제를 내륙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조선 정부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제민 지배의 성격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썼고, 그 결과 19세기 후반 지도군·돌산군·완도군 3개 군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牧場地圖』(한貴古朝80-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湖南島嶼』(국립익산박물관 소장).
- 『戶口總數』(奎160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湖南邑誌』(奎1218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湖南鎮誌』(奎1218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고동환, 2006, 「조선후기 島嶼政策과 完山島의 변화」, 『역사와 담론』 45.
- 고석규, 1997, 「設郡 논의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섬의 변화」, 『도서문화』 15.
- 김경옥, 2004, 『朝鮮後期 島嶼研究』, 혜안.
- _____, 2018, 「18~19세기 전라도 나주목 자은도의 촌락편제와 인구변동」, 『한국학연구』 66.
- _____, 2019, 『수군진, 물고기 비늘처럼 설치하다』, 민속원.
- 박종기, 2017, 「조선시기 관찬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 48.
- 배우성, 1997, 「조선후기 沿海·島嶼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 『도서문화』 15.
- 송기중, 2019,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정책, 재정, 훈련에 관하여』, 역사비평사.
- 송양섭, 2005, 「朝鮮後期 羅州諸島의 折受와 設邑論議의 全開」, 『대동문화연구』 50.
- 오영교, 2001, 『朝鮮後期 鄉村支配政策 研究』, 혜안.
- 윤용혁, 1982,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 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역사교육』 32.
- 임학성, 2022, 「조선 전·후기 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양상-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16.
- 정대영, 2020, 「『湖南島嶼』 지도첩의 서지적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1.
- 정요근, 2012, 「고려~조선전기 전라도 서남해상 島嶼 지역의 郡縣 편제와 그 변화」, 『도서문화』 39.
- 정진영, 1993, 「조선후기 村落의 구조와 ‘分洞」, 『국사관논총』 47.

조선 후기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 변화

(부표) 17세기 후반 전라도 도서 지역 활용 양상

군현	도서명	활용내역	군현	도서명	활용내역
옥구	箕食島	宮屯	진도	鳥島	訓局屯
옥구	永島	耆老所屯	진도	金島	民田
만경	深仇未		진도	獨巨由島	民田
만경	峨眉山		진도	惠邁島	民田
만경	鋤橋島		진도	入里島	訓局屯
만경	橫建島		강진	竹島	無人居
만경	防築仇未		강진	駕牛島	箭竹田
만경	串之島		강진	伺候島	民田
만경	莊財島		강진	古馬梁	民田
만경	女妓島		강진	茅島	民田
부안	界火里	四學折受	강진	助藥島	宮庄
부안	飛梁島	四學折受	강진	薪智島	司僕屯·牧場
부안	王登	民田	강진	古今島	訓局屯·船材處
부안	蝟島	成均館折受	강진	靑山島	訓局屯
영광	七山		강진	餘鼠島	民田
영광	鞍馬島	淑徽公主折受	장흥	來德島	宮庄·司僕屯
영광	落月島	訓局屯	장흥	薪島	民田
영광	於義島	民田	장흥	山日島	宮庄
영광	每岩島	淑明公主折受·民田	장흥	金唐島	訓局屯
영광	臨子島	船材牧島	장흥	代羅島	訓局屯
영광	毛也島	淑徽公主折受	장흥	得良島	宮庄
영광	甌島	司僕屯·牛場	장흥	平日島	宮庄
영광	屏風島	民田	흥양	小鹿島	牧場
영광	唐石島	民田	흥양	折尔島	司僕屯·船材處
영광	古耳島	司僕屯·船材	흥양	示山島	司僕屯·牧場
나주	智島	司僕屯	흥양	坪島	水營屯
나주	押海島	司僕屯·船材·牧場	흥양	鳥島	水營屯
나주	慈恩島	司僕屯·船材·牧場	흥양	損竹島	宮庄
나주	岩太島	內需司屯田	흥양	三島	宮庄
나주	高下島	民田	흥양	曳島	
나주	其佐島	船材·牧場	흥양	內羅老島	司僕屯·船材處
나주	安昌島	船材·牧場	흥양	外羅老島	司僕屯·船材處

군현	도서명	활용내역	군현	도서명	활용내역
나주	蓬里島	戶曹鹽鐵屬	흥양	四梁島	水營屯
나주	牛墨島	民田	흥양	梧桐島	民田
나주	半月島	景顯書院屯田	흥양	蔬島	民田
나주	長山島	船材·牧場	흥양	苜草島	民田
나주	牛耳島	無人居	흥양	朴日島	民田
나주	飛禽島	宮庄	흥양	格今島	民田
나주	苔尔島	宮庄	낙안	獐島	司僕屯
나주	黑山島	無人居	낙안	蘭子島	水營屯
나주	永山島	無人居	순천	大雲入島	
나주	都草島	民田	순천	伊老島	水營屯
나주	荷衣島	宮庄	순천	花島	民田
영암	黑山島	民田	순천	小雲入島	
영암	花島	民田	순천	白也島	司僕屯·牧場
영암	苜呂巨吾島	訓局屯	순천	蓋島	司僕屯
영암	露兒島	宮庄·民田	순천	頭里島	宮庄
영암	所安島	宮庄·船材處	순천	齊里島	司僕屯
영암	楸子島	成均館折受	순천	多里島	宮庄
영암	橫看島	民田	순천	多老島	民田
영암	甫吉島	民田·船材處	순천	非間島	水營屯
영암	莞島	黃腸所封處	순천	愁太島	司僕屯
해남	馬路島	民田	순천	安島	宮庄
해남	莞島	南邊黃腸木所封處	순천	金鰲島	船材處
진도	並明島	民田	순천	所里島	宮庄
진도	玉島	訓局屯	순천	突山島	
진도	西巨次里島	民田	순천	大京島	船材處
진도	加士島	水營屯	순천	柚島	司僕屯
진도	孟骨島	民田	광양	牛島	民田
진도	東巨次里島	民田	광양	大安道	宮庄

출처: 『湖南鎮誌』.

국문초록

조선시대 서남해안에 위치한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 정책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왕조 초반에는 고려 말에 이어서 ‘공도(空島)’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동시에 섬의 자연 환경 조건을 이용하고자 다수의 목장을 설치·운영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공도 정책은 큰 지속성과 실효성이 없었다. 도서로 인구 유입은 이어졌고, 이들의 생활을 위한 농지 개간도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17세기 이후부터는 궁방과 아문의 도서 지역에 대한 둔전 경영이 활발해지면서 도서 지역에 대한 경제력이 향상되었다. 동시에 도서 지역으로 인구 유입도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도서 지역이 원거리이고 지방 수령의 직접 통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18세기 중반부터 서남해안 도서 지역을 별도로 묶어 하나의 행정 단위로 조직하는 ‘설읍(設邑)’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궁방 등의 공고한 도서 지역에 대한 지배 구조와 원거리라는 물리적 한계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도서 지역에 대한 행정 편제에 대한 필요성은 이어졌고, 당시 지방 통치 제도로 자리하였던 ‘면리제(面里制)’가 도서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18세기 후반 자료인 『호구총수』를 살펴보면 서남해 도서 지역은 큰 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작은 섬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면으로 편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면리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호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기반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졌다. 다만 면리제로 편성한 도서 지역은 수령이 직접 순회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서남해 지역 곳곳에 설치된 수군진의 별장 등을 이용하여 행정 통제를 시도하였다.

〈주제어〉

도서(島嶼), 치읍(治邑), 면리제(面里制), 도면(島面), 『호구총수(戶口總數)』, 『호남도서(湖南島嶼)』, 역사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The Administrative Division and Control of Islands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Islands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Um, Ki Suc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Chosun Universit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administrative policies toward the islands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varied by period. In the early Joseon period, a policy to “vacate the islands” was implemented in continuation of the policy that had been in force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while at the same time, a number of ranches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take advant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islands. However, the government’s policy of vacating the islands was not very sustainable and effective. The influx of people to the islands continued, and farmlands were continuously reclaimed for their living.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the economic power of the islands was enhanced by the active management of garrison farms on the islands by royal households and public offices. At the same time, the islands saw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coming to live there. In response, the government could no longer ignore the islands just because of their remoteness and the difficulty of direct control by local governors. Therefore, from the mid-18th century, discussions took place to control the islands off the southwest coast under a single administrative unit called seoreup(設邑). However, this idea was never realized because of the strong presence of the royal households and the remoteness of the islands. Nevertheless, the need for a separat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islands continued, and the “myeonri system(面里制),” which was the local governance system at the time, was applied to the islands. The islands were organized in various ways. Only large islands were governed by this system in the Southwest Sea, while smaller islands were grouped together for administrative control. Since it was difficult for the governor to visit the islands controlled by the myeonri system, administrative control was attempted by using naval villas. As a result, the islands were organized and governed at a similar level to the mainland, and their residents also served as members of Joseon society.

Keywords

islands, administrative district, myeonri system(面里制), do-myeon(島面), Hoguchongsu(戶口總數), Honamdoseo(湖南島嶼), HGIS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河川地理志)의 등장과 편찬에 관한 연구

- 중국 역도원(酈道元)의 『수경주(水經注)』와의 비교를 곁하여

이호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 I. 머리말
- II.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등장 배경
- III.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내용과 특성
- IV. 중국 역도원의 『수경주』와의 비교
- V. 맺음말

1. 머리말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하천은 물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인류의 생활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하천을 식수 공급, 관개, 수력 발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하천의 자연과 인문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많은 문헌이 작성되었다. 한반도에 거주한 인류 역시 하천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고려시대의 『삼국사기』 「지리지」,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그리고 역대의 문집에는 풍부한 하천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의 이러한 기록들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형태였으며, 지리서나 문집류에 수록된 여러 지리적 정보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반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는 하천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문적인 지리서가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양보경은 이러한 하천 중심 지리지를 ‘하천지(河川志)’라고 부르며, 이를 하천이 발원하여 바다로 흐르는 유로와 중요한 지류의 경로를 경문(經文)에 기록한 후, 그 경로에 따라 하천이 통과하는 지역의 지명, 전고, 전설 등을 주문(註文)에 기술하여 하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전문적인 지리 저술로 정의하였다.¹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등장한 신경준(申景濬)의 『산수고(山水考)』 중 「수경(水經)」와 「수위(水緯)」, 이종휘(李種徽)의 「수경(水經)」, 성해응(成海應)의 『동수경(東水經)』, 정약용(丁若鏞)의 『대동수경(大東水經)』² 등은 모두 ‘하천지’에 속한다. ‘하

* 논문 투고일: 2024.4.15, 심사 완료일: 2024.5.30, 게재 확정일: 2024.6.3.

1 양보경, 1992,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3-3; 양보경, 1996, 「丁若鏞의 地理認識: 『大東水經』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2.

2 이 글에서 다루는 하천지리지 네 부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신경준의 『산수고』는 1976년 경인문화사에서 영인 발행한 『여암전서』 중의 일부이다. 이종휘의 『수경』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 간행한 『한국문집총간』본 『수산집』 중의 일부이다. 성해응의 『동수경』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 간행한 『한국문집총간』본 『연경재전집』 중의 일부이다. 정약용의 『대동수경』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 간행한 『한국문집총간』본 『여유당전서』 중의 일부이다.

천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하천지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62년 조선과학원 고전연구소에서 전개한 정약용 『대동수경』 국역 사업이다.³ 하지만 해당 번역서에서는 오직 짧은 서문을 통해 정약용의 생애, 학술 저술, 『대동수경』의 편찬 경위와 문헌 내용 등을 간단히 소개하였을 뿐, 깊이 있는 연구는 실제로 전개되지 않았다. 하천지리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양보경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992년에 신경준의 『산수고』를 중심으로, 산맥과 하천을 중심으로 국토를 파악한 조선 후기의 지리 인식을 정리하였다. 또한 『산수고』에 대해 “산수를 중심으로 국토의 자연을 정리하였으나, 그 속에는 인간 생활과 통합된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⁴ 게다가 1996년에는 정약용과 『대동수경』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양보경은 정약용이 『대동수경』을 조선 하천 중심의 유일한 지리서로 판단하였으며, 그의 편찬 경위, 문헌 내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약용의 하천과 국토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분석하였다.⁵ 그 후에는 『대동수경』의 문헌적 특징, 서지적 성격, 그리고 그에 반영된 경제 지리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수의 연구가 등장하였다.⁶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일정한 성과가 축적된 동시에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나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네 부의 하천지리지를 하나의 유형의 지리서로 인식하여, 이러한 하천지리지가 같은 시점에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대동수경』이나 『산수고』를 단독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3 정약용 저, 조선과학원 고전연구소 역, 1962, 『대동수경』, 평양: 조선과학원출판사.

4 양보경, 1992, 앞의 글.

5 양보경, 1996, 앞의 글.

6 조성을, 2008, 「『我邦疆域考』와 『大東水經』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 13; 노경희, 2020, 「『大東水經』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 손용택, 2021,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 60-4.

전개되었으며, 이들 지리지의 등장 배경, 각 하천지리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 저자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검토한 연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정약용의 『대동수경』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의 다른 세 부의 하천지리지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동수경』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재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셋째, 중국 하천지리지와의 비교 연구가 부재한다. 이들 하천 중심 지리지의 저자들은 모두 “수경”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스스로의 서명이나 장절명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하천 중심 지리지 명작인 남북조(南北朝)시대 북위(北魏) 역도원(酈道元)의 『수경주(水經注)』⁷를 연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조선과 중국 하천지리지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비교 연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가 등장한 역사 배경을 세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 네 부의 내용과 특징, 각 저자의 생애, 그리고 그에 담긴 지리 인식을 검토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 하천지리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조선 후기의 하천지리지를 중국 역도원의 『수경주』와 비교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가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를 탐구하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

7 최근 역도원의 『수경주』에서 발췌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저술이 출간되었다. 해당 번역서를 통해서 『수경주』의 문헌적 내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역도원 저, 조영래 역, 2024, 『(원서발췌) 수경주』, 서울: 지식출판만드는지식.

II.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등장 배경

1. 17·18세기 불안한 국제정세와 조선 국내 국토의 개발

우선, 17세기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맹렬히 불고 있었다. 원래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명나라는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에게 패배하면서 몰락했고, 명나라의 속국인 조선도 만주 군대에 몇 차례 맞서지만, 결국은 청나라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항상 청나라의 정복으로 인한 굴욕감과 중화 세계 질서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만주인들의 재침입으로 인한 불안과 무력감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조선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위기감은 급속히 커졌고, 동시에 자국의 역사지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만주인이 입관한 뒤, 조선 내부는 반청복명을 고취한 북벌론 및 호무백년지운(胡無百年之運) 등의 청나라 멸망과 만주인의 고토 귀환으로 인한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영고탑회귀설 등으로 심각한 분위기였다.⁸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백두산 정계비 문제와 일본과의 울릉도 쟁계 문제 등 영토 분쟁이 더욱 빈번해졌다.⁹ 따라서 조선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려는 열망과 정신이 한층 더 강화되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전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 특히 산천과 도리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는 자연스럽게 온 나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다음으로, 양난 이후 백 년 동안 조선은 계속해서 사회를 재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여 국력을 단기간 내에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영·정조 대에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 농업과 상업 발전, 그리고 국토 개발로 인해 변방, 심산, 해도 등 원래 인적이 드물고 자세한 지리 정보를 파악할 수

8 관련된 연구는 다음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서울: 일지사; 王元周, 2013, 『小中華意識의嬗變: 近代中韓關係的思想史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9 관련 연구는 다음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李花子, 2019, 『清代中朝邊界史探研: 結合實地踏查的研究』,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姜錫珉, 2006, 『18世紀 朝鮮의 領土論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없었던 지역까지도 잘 알게 되었다. 조선과 청나라가 정계비를 세운 이후, 조선 정부는 북방 국경지대로의 인구 이주와 개발을 금지하는 봉금정책을 포기하고 압록강-두만강 유역으로의 이주와 농지 개척을 촉진하는 권장·격려 정책으로 점차 전환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무산도호부, 장진도호부 등 행정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인구와 경제 등이 급격히 발전했다. 예를 들면 17세기 말의 무산부의 인구는 4,085명에서 18세기 후반에는 38,640명으로 급증했다.¹⁰ 따라서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은 국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한편으로는 인구 증가와 이동, 농업 및 상업의 발전은 수원과 수운 등 하천 지리 정보에 관한 이해를 더욱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하천지리지의 편찬 사업이 그 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게 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이전 특히 영·정조 대 무렵에는 대량의 전국지리지, 읍지, 지도 및 기타 지리 문헌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문헌은 전국 각지에 있는 다수의 크고 작은 하천에 대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여 하천지리지 편찬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다. 첫째로 전국지리지 편찬의 측면에서, 영·정조 대는 전국지리지의 극히 활발하게 등장한 시기였다. 1530년(중종 25)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이후 200년 동안, 전국지리지의 편찬 사업은 정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 즉위 이후, 『여지도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등 전국지리지의 편찬·간행 사업이 즉각 시작되었고, 그 계승자인 정조는 『동국문헌비고』의 부분 내용을 증보·수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국지리지인 『해동여지통제』의 편집을 주도했다. 둘째로 읍지의 차원에서, 해당 시기에 141부의 읍지가 나타났으며 이전에 비해 간행된 책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¹¹ 셋째로 전국지도 제작 발달의 시각에서, 해당 시기에 들어 정상기 유형의 전국 지도와 더욱 자세한 군현지도가 대규모로 생산되었으며 매우 널리 유통되었다. 넷째로 다른 지리 저술의 분야에서는 실

10 金春善, 1998, 「조선후기 한인의 만주로의 '犯越'과 정착과정」, 『白山學報』 51.

11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학파가 다양한 지리학적 저술을 창작했다. 예를 들면, 유형원의 『균현제』, 『동국여지지』, 이익의 『성호사설』, 이증환의 『택리지』, 안정복의 『동사강목』 「지리고」 등이 등장했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은 이미 풍부한 하천에 관한 지리적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이 담당한 작업은 기존의 하천 관련 정보를 대조하고 확인하여 재검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권의 책에 편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2. 조선 후기 학술 환경과 하천지리지 저자의 학맥

국왕의 추앙과 지지, 그리고 학자들의 재질과 노력은 좋은 학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내용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전통 지리학의 발전 맥락, 성호학파의 지리학 연구 학풍, 그리고 조선 하천지리지 저자 집단의 형성과 그들 간의 교류 관계 등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한국 전통지리학은 점차 완벽해지면서, 하천에 대한 자연 지리 관념이 모호하고 파편적인 것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실학 학풍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역사학자, 지리학자, 지도학자들이 계속해서 수계망, 하천 변천 등 역사 지리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한반도 사분의 삼 이상의 지역은 산지이고, 산줄기에 대한 인식과 숭배가 한반도 인류의 자연 관념 중 일부로 정착했다. 하천은 산맥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자라며, 이로 인해 산맥을 중시하는 한반도의 인류들도 자연스럽게 산맥과 하천 간의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에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인류의 산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한층 더 깊어졌다. 예를 들어, 여말선초의 문인 이침(李詹)은 한반도의 산천 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술을 발표했다.

그 산맥을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오르며 풍악이 되었고, 거기서 중첩되어 태백산·소백산·죽

령·계림·삼하·추양산이 되었고, ...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패강·벽란·임진·한강·웅진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 중에서 가야진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가 화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이 앞을 돌렸으니, 그 풍기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¹²

이 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침은 산척(山脊)과 분수령의 지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지리 인식은 다소 거시적이고 대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체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세기에 이르면서 실학사상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실학자들은 자국 지리 문제를 연구할 때 능숙하게 분수령의 지리 개념을 활용하고 전국 각지의 산맥과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등장한 정상기 유형의 전국지도에는 매우 체계적인 한반도의 산천 형세가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¹³ 신경준과 정약용 두 사람이 모두 정상기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그들이 정상기 가문에서 제작된 여러 지도를 읽고 자신의 저술에 많이 참고하여 활용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시기 한국 국내의 산천에 대한 지리 지식은 전면적이고 체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러한 하천 지리 지식을 어떻게 한 권의 책에 정리·편집할 것인지에 대해 사고하고 있었다. 중국 전통 지리학을 숙지한 조선 실학자들은 당연히 중국의 유일무이한 하천지리지 경전인 역도원의 『수경주』를 상기하고 재발견했다. 이를 참고·모방하여 완성된 조선 하천지

12 李詹, 「三國圖後序」, 徐居正, 『東文選』 권92, “其山自白頭迤邐, 至鐵嶺突起而爲楓岳, 重複而爲大小伯, 爲竹嶺 爲雞立, 爲三河嶺, … 山極高峻, 他山莫能兩大也, 其脊以西之水, 則曰薩水, 曰浪江, 曰碧瀾, 曰臨津, 曰漢江, 曰熊津, 皆達于西海, 脊以東, 獨伽耶津南流耳.”

13 정상기형의 조선전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八道地圖』(古4909-23, 古4909-14) 및 『海東地圖』(古4909-61)를 참조할 수 있다.

리지가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둘째, 당시 조선 학계에서는 실학사상과 역사지리학 연구 학풍이 상호 결합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호학파의 조선 자국 지리에 대한 독립적이고 특유한 연구가 후대의 지리학자에 의해 계승되었다.¹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한국 역사지리학은 최초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후에는 실학의 비조로 불리는 유형원이 등장했으며, 그는 역사지리학자로서 활동하면서 『군현제』, 『동국여지』 등의 중요한 지리 저술을 남겼다. 성호학파의 창시자인 이익은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는 조선의 지리 문제를 중시하며, “지금 사람들은 동방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유독 동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 우리나라는 본래 우리나라일 뿐이어서 제도와 형세가 자연히 중국의 역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것에 대해 더욱 설을 세워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¹⁵라는 학술 관점을 제시했다. 이익은 학자들이 자국의 역사와 지리를 무시하는 폐단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치중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익은 친구인 정상기가 “자주 노새 한 마리를 구사해 백두산에 들어가, 산맥과 하천의 기원, 방향, 유로와 형세를 조사하다”¹⁶라는 현장 답사 활동을 극히 관심 있게 받아들이고 칭찬했다.

이익의 지리학 연구에 대한 태도와 사상은 후배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영향력은 성호학파의 한계를 넘어갔다. 조선 본국의 역사지리 문제를 연구한 모든 학자들은 이익의 학풍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18세기 조선 역사지리학의 대표 인물로는 신경준과 이종휘가 있었고, 19세기에는 성해응과 정약용이 있었다.¹⁷ 동시에 신경준과 정약용은 성호학파의 문인이기도 했으며, 이로써 이익의 지리적 학술 사상과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14 원재린, 2003, 『전선후기 星湖學派의 학풍 연구』, 서울: 혜안, 220~234쪽.

15 李瀾, 『星湖先生全集』 권25, 「答安百順乙亥」, “今人生乎東邦, 惟東事全不省覺. … 東國自東國, 其規制體勢, 自與中史有別. … 此尤合立說而分曉之也.”

16 申景澹, 『旅庵全書』, 「總敘」, “控一驪屢入不咸, 相視維首山水之勢.”

17 박인호, 1998, 「조선시기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의 추이와 특성」, 『조선사연구』 7.

로 계승하고 실천했다. 따라서 성호학파의 역사지리학적 학풍은 조선 하천 지리지가 출현한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술 이념으로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하천지리지 편찬자들은 서로 다양한 인연을 맺었으며 상호 간의 학문적 교류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들은 조정에서 동료로서 영·정조 대의 여러 지리지 편찬 사업에 함께 참여했으며, 개인적으로도 항상 교류하여 다양한 역사 지리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협력하여,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편찬에 몰두한 학자들의 집단이 형성되었다. 영·정조 시기의 관찬지리지 편찬 사업에서, 정항령(鄭恒齡)과 신경준은 같이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와 『동국지도』의 편수 사업에 직접 참여했으며, 정항령의 아들인 정원임과 성해응의 부친인 성대중도 함께 『해동여지통재』의 편찬 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성해응과 교류를 맺은 북학과 학자들인 유덕공, 이덕무 등도 『해동여지통재』의 편집에 동참했다.¹⁸ 성해응은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그의 부친과 상기 학자들과 함께 벼슬을 지내본 경험이 있었다. 더불어, 정약용과 그의 친구인 이익의 종손 이가환도 조정에 관여했다. 정약용과 이가환은 지리지 편찬에 대한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가환은 조정에 바친 「지리」 대책문에서 전국지리지 편찬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¹⁹ 이종휘 외에도 다른 조선 하천지리지의 저자들은 조정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찬지리지 편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 같은 공통 작업 경험은 조선 하천지리지의 편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학자들 사이의 개인적 교제에서, 이종휘를 제외한 모든 인물은 광범위하게 교류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신경준과 정항령은 오래된 친구로서 서로 친밀하게 지냈으며 학문적 교류도 깊었다. 특히 정항령 집안 몇 세대가 심혈을 기울여 편집한 전국지

18 양진석, 2013,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43.

19 이가환, 2011, 『금대전책』,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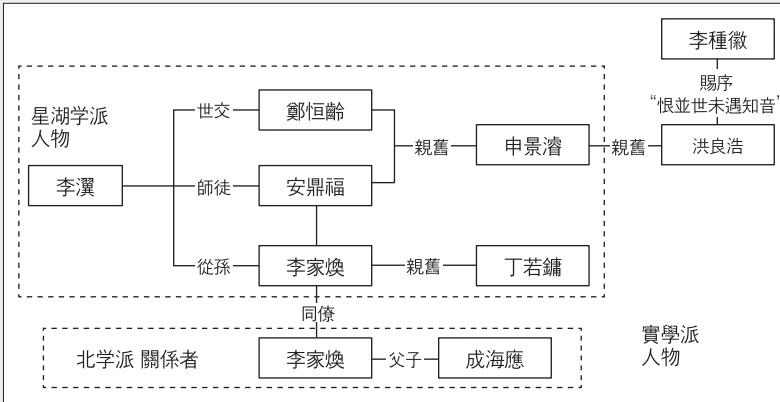
도에 대해서, 신경준은 “거리에 대한 파악이 매우 정밀하다”²⁰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또한 『동국문헌비고』의 부도로 정씨 집안의 지도를 영조에게 추천했다. 정항령과 그의 부친인 정상기는 모두 이익과 친분이 깊어 두 집은 대대로 교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익과 정항령은 서신 왕래를 자주 했으며, 이 서신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준을 언급했다. 이익은 “예전에 그를 본 적이 있는데 재주와 학식이 매우 많아 보였고 근래에는 학업이 진보하여 명성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²¹라고 말했으며, 신경준의 학술적 수준과 능력을 칭찬하고 고평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익은 신경준, 정항령과 함께 학문을 공부하고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지금 신순민 이외에도 안백순과 같은 사람이 있어 함께 논의할 사람이 없지 않으니 서로 서로 도와 가며 진행된다면 어찌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대[정항령]와 순민은 식견이 탁월하니 함께 연구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²²라는 말이 남았다. 성해응과 정약용의 교류 상황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약용과 이기환을 비롯한 성호학파의 다른 학자, 성해응과 북학과 학자들, 그리고 성호학파와 북학과 학자 간의 학술 교류와 왕래가 굉장히 빈번하고 밀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²³ 이 때문에 상술한 학술 왕래 활동은 성해응과 정약용이 하천 지리 정보에 대한 수집·정리, 하천지리지의 편찬·간행에 대해 거대한 촉진 작용을 했다. 조선 하천지리지는 학술 공동체 내부의 밀접한 학술 교류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하천지리지 저자 및 관련 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20 申景濬, 『旅庵遺稿』 권5 「東國輿地圖跋」, “尺量存度, 至為精密.”

21 李瀾, 『星湖先生全集』 권29, 「答鄭玄老乙亥」, “昔見之甚有才學, 近聞業進譽彰.”

22 李瀾, 『星湖先生全集』 권29, 「答鄭玄老庚辰」, “今時申舜民外如安百順不無其人, 相與幫助, 豈非好事. … 玄老與舜民意見超凡, 相與講磨, 或有新得, 還以見教也.”

23 유봉학, 1995, 『燕岩一派北學思想研究』, 서울: 一志社, 156쪽.



〈그림 1〉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 저자 관계도

3. 중국 『수경주』에 대한 고증학적 연구의 조선 전래

명대부터 중국의 학자들은 『수경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역도원의 『수경주』에 관한 전문적인 학문인 역학(鄕學)에 흥미를 갖는 학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청나라 시기에는 중국 학계에서 고증학의 열풍이 불어나면서 『수경주』에 대한 고증학적 연구가 활발해졌다. 강희(康熙)·옹정(雍正) 시기에는 손잠(孫潛)과 심병손(沈炳巽)을 비롯한 학자들이 활약하며, 건륭(乾隆) 시기에는 진조망(全祖望), 조일청(趙一淸)과 대진(戴震) 등 우수한 역학 학자들이 등장하여 『수경주』에 대한 교감학적 연구 성과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²⁴ 이 밖에 여지학(輿地學)은 동시대 청나라 학술계에서 주목받아, 역대 군현의 연혁, 산천 지리의 변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증학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 학계는 분명히 중국 학풍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편으로는 청나라 학자들의 『수경주』에 관한 고증학적 저작 및 다른 역사지리학 저술들이 조선에 대거 유입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나라 고증 학풍의 전래가 조선 학자들에게 자국 지리 문

24 陳橋驛, 2000, 「水經注版本和校勘的研究」,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1.

제 연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조선의 학자들의 지리 지식의 수준이 예전보다 현저히 향상되어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역시 상당히 확장되고 혁신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조선의 학계에서 하천지리지를 편찬하고자 하는 열망이 한층 커졌다.

중국 학계에서 받은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같은 시기에 역도원의 『수경주』에 대한 연구와 다른 지리 연구서가 조선에 전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중국으로 파견된 조선 사신들은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항상 다양한 서적을 구입하여 귀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리와 관련된 서적을 선호했으며, 중국의 지리, 특히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지식에 큰 관심을 가진 사신들은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왕의 명령을 받고 특정 지리 문헌을 중국에서 구입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숙종은 중국에 파견된 사신에게 『지리대전』과 『수경주』 두 가지 지리 문헌을 구입하도록 지시했으며, 결국 이 두 책은 왕실 도서관에 소장되게 되었다.²⁵ 정조 대의 왕실 도서목록인 『규장총목』에 따르면, 당시 소장되어 있던 중국 지리 관련 문헌은 총 556책에 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명청시기 중국인 학자들의 『수경주』 관련 연구 서적 7종 이상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 후기 학자인 이규경은 「지지변증설(志地辨證說)」에서 당시 중국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이박(李縛), 대진, 고염무(顧炎武), 주이존(朱彝尊), 홍양길(洪亮吉)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나라 학계의 연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글 중에서, 이규경은 명대 지리학자인 주모위(朱謀瑋)가 쓴 『수경주전서(水經注箋序)』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지리서는 『상서(尙書)·우공(禹貢)』으로부터 제(齊)·영(梁)대까지 244종이 있었는데, 아직 현존하는 것이 몇 종밖에 없다. 다른 (신실된) 책은 『수경주』에서 꽤 여기

25 「承政院日記」肅宗 5년 7월 27일, “上曰：地理大典全秩及麗道元水經書，使冬至使貿來，而水經則貿來二件，一件，置諸玉堂，一件入內，可也。維岳曰：地志，使弘文館覓入，而書傳之所謂地志，乃漢書之地志也。上曰：唯。”

저기 볼 수 있다. 지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글재주가 부족해 오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⁶라고 하여, 『수경주』의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칭찬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청나라 학자 대진의 『수경주』 교감과 연구를 언급하며, “대진의 논설은 「수경」을 잘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라고 평가하여 대진의 연구 성과를 찬양했다. 이규경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당시 조선 학자들은 동시기 중국 학자들의 『수경주』 연구 성과를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학자들은 대조하고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리 문헌 자료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았을 것이며, 중국 『수경주』의 연구가 조선 학자들에게 자국의 하천지리지에 대한 영감과 열정을 일깨웠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청나라 고증학의 학풍은 조선으로 전해져 조선 후기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번영은 청나라의 고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²⁸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저자들이 고증학의 연구 이념과 방법을 흡수하고 활용한 사실을 앞에서 이미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겠지만, 조선 하천지리지의 서술 방식과 내용 특징을 고려하면, 조선 학자들이 하천지리지 편찬 작업에서 고증학의 문제 의식과 연구 방법을 능숙하게 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나라의 고증학 학풍이 조선 하천지리지의 서술과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2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志地辨證說」, “志地者, 『禹貢』以下迄於齊·梁二百四十四家, 今存者僅數種, 餘頗散見『水經注』中, 蓋非無志地者志之, 而文筆不健, 不能傳久也.”

2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志地辨證說」, “戴氏之論, 可謂善讀『水經』者也.”

28 서경요, 1982, 「성해응의 경학사상에 관한 고찰」, 『大東文化研究』 15.

Ⅲ.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내용과 특성

1. 신경준과 『산수고』 중의 「수경」과 「수위」

신경준(1712~1781)은 영조 대의 실학자로 자는 순민(舜民)이고, 호는 여암(旅庵)이다. 그는 지리학 외에도 역사학, 문자학, 음운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달하고 월등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었다. 조선의 강산을 매우 사랑했으며, 당시의 이름난 지도학자 정항령과 자주 교류했다. 그는 일찍이 조선의 지리 정보를 세심히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답사를 통해 많은 지리 문헌을 편집하고 간행했다. 1769년(영조 45)에 국왕은 『강역지(疆域志)』를 편찬하라는 어명을 내렸고, 신경준은 뛰어난 역사지리학 재능과 성과를 인정받아 당시 영의정 홍봉한의 추천으로 『강역지』 편찬 사업을 맡게 되었다. 편찬 과정에서 영조는 신경준을 치하(致賀)하며 일찍이 만나지 못한 것을 몇 차례 아쉬워했다.²⁹ 다음 해에 이 편찬 사업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완성되었고, 그중의 일부인 『여지고(輿地考)』는 바로 신경준이 책임지고 편집한 것이었다. 신경준의 저서는 상당히 많으며 『여암집』, 『여암유고』, 『여암전서』 등의 책을 지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산수고』는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4권은 「수경」이고 4·5권은 「수위」이다.³⁰ 다른 하천지리지와 비교할 때, 그는 책이 되는 시대가 비교적 이른 편이었지만 독립적으로 책을 제작하지는 않았다. 『산수고』를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와 대조하면, 후자 12·13권인 『산천총설(山川總說)』이 『산수고』의 「산경」과 「수경」의 내용에 해당하며, 13·14·15권인 각 도별의 내용이 『산수고』의 「산위」와 「수위」에 부합한다. 양자 간의 차이는 매우 미

29 「承政院日記」 英祖 46년 1월 5일, “上曰: 予以汝, 置侍從多年, 而不知何狀矣. 今聞所奏, 實恨相見之晚也.”

30 『山水考』는 『旅庵全書』의 20권 중 10권에서 15권까지로, 한반도의 산맥 형세를 묘사한 「山經」과 「山緯」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세하다. 박인호는 두 문헌을 비교한 결과, 『산수고』 「산위」에서는 많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이들 전문(全文)을 수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보다 『산수고』가 더 이른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³¹ 그러므로 『산수고』 중의 「수경」과 「수위」는 1769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준의 「수경」과 「수위」는 『수경주』를 참고하여 편찬·완성된 것이다. 당시 서수호가 “역시 옛날 것보다 못한다”³²라고 평가했지만, 『산수고』는 독특한 서술 방식과 수록 내용을 가지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먼저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그는 「수경주」의 경문과 주문을 독립적인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수경」과 「수위」로 작성했다. 『수경』은 각 하천의 자연 지리 정보만을 기록하여 원래 상하의 『수경』과 유사했다. 「수위」는 각 군현 단위로 해당 행정구역 내의 하천, 호수, 샘물, 폭포 등 역사·지리 정보를 담았다. 이것은 역도원의 『수경주』의 주문 부분과 비슷했다. 이러한 혁신적 편찬 방식은 신경준이 역도원의 『수경주』를 의도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했음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 「수경」 부분은 다음 네 가지 내용을 수록했다. 첫째, 하천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의 본류 방향, 지류와의 합류 등 각종 유로 상황을 기록했다. 둘째, 본류를 서술한 뒤, 흐름에 따라 각급 지류의 하천 수문(水文) 상황을 소개했다. 또한 지류는 최대 3급으로 세분화되었다. 셋째, 해당 하천 유역의 지리적 범위를 분수령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넷째,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의 다섯 구역 내의 바다로 유입하는 독자적인 하천의 상황을 서술했다. 그러나 「수위」 부분은 각 군현 관할 범위 내의 크고 작은 하천, 포구, 우물, 호수, 폭포 등 물과 관련된 위치, 유로, 전고, 역사 변천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31 朴仁鎬, 1996,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서울: 以會文化社, 137쪽.

32 『承政院日記』 英祖 46년 7월 22일. “命進水經冊, 賤臣承命持入. 上命頭之, 進讀少許. 上曰: 其文法如申景濬之法矣. 浩修曰: 景濬依倣此法而爲之, 而猶不如古矣.”

마지막으로 수록된 하천에 대해 『산수고』 권두의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하천이다. (우리나라) 산수는 열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팔도가 된다. 팔도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 열두 수라 함은 곧 첫째는 한강, 둘째는 예성강, 셋째는 대진강, 넷째는 금강, 다섯째는 사호강, 여섯째는 섬진강, 일곱째는 낙동강, 여덟째는 용흥강, 아홉째는 두만강, 열째는 대동강, 열한째는 청천강, 열두째는 압록강이다. … 한강을 수의 머리로 삼은 것은 서울을 높인 것이다.³³

상기의 12개 하천 외에, 신경준의 임진강에 대한 처리와 서술 방식 역시 주목할 만하다. 신경준이 동일 수계로 삼은 하천은 분류와 일부 중요한 지류가 일치하는 표시로 나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역의 지리적 범위도 함께 설명되었다.³⁴ 그러나 임진강 유역 범위가 별개로 기술된 것으로 보아, 신경준은 임진강이 한강과 달리 독자적인 수계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13개의 큰 하천 외에, 독자적으로 바다로 유입하는 13개의 하천 및 7개 중요한 큰 하천의 지류가 수록되었다. 즉, 신경준의 「수경」이 하천의 등급

33 申景濬, 『旅庵全書』 권10, 『山水考』 권1, “一本而分萬者山也, 萬殊而合一者水也, 域內之山水表以十二, 自白頭山分而為十二山, 十二山分而為八路諸山, 八路諸水合而為十二水, 十二水合而為海, 流峙之形, 分合之妙, 於茲可見, … 十二水: 一曰漢江, 二曰禮成, 三曰大津, 四曰錦江, 五曰沙湖, 六曰蟾江, 七曰洛東, 八曰龍興, 九曰豆滿, 十曰大同, 十一曰清川, 十二曰鴨綠, … 水以漢江為首, 尊京都也.”

34 “大津”의 부분을 예시로 들면, 하천을 서술할 때 그의 지류인 頓川津과 彌勒江이 大津과 마찬가지로 책에서 처음 등장한 하천의 이름 뒤에 ○형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그러나 申景濬은 이 3개의 하천이 같은 수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이들 하천을 서술한 뒤에 저자가 단 하나의 수계 유역 범위만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자는 頓川津과 彌勒江이 ○형의 부호로 표시되었지만, 결코 이 두 하천이 주류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臨津江에 대한 서술과 비교하면, 申景濬과 成海應 양자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에 따라 분류되면, 146개의 3급 지류, 57개의 2급 지류 및 4개의 1급 지류를 담아냈다.

양보경은 『산수고』의 지리학적 가치와 신경준의 지리 사상을 높이 평가했다.³⁵ 그는 신경준이 『산수고』를 작성할 때 전국지리지와 읍지 자료를 참조했으며, 그의 주요 참고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세기 유형원의 『동국여지』였다고 생각하였다. 『산수고』에서 신경준이 조선 전국 산천의 지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국 산천 형세를 체계화시키려는 의도와 실천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산천에 대한 조선인의 전통적 자연관이 현대 자연지리학으로의 새로운 발전상을 보여 준다는 것을 양보경은 강조했다.

2. 이종휘와 「수경」

이종휘(1731~1797)는 조선 후기 중요한 양명학자로 자는 덕숙(德叔)이며, 호는 수산(修山)이다. 그는 당시 주자만을 중시하고 숭배하는 경향이 강했던 조선 본국 학술계의 분위기를 비판하고,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자학과 양명학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휘는 중요한 역사학자이며 지리학자로도 활동했다. 근대 한국사 대가인 신채호는 이종휘가 지은 조선 본국 역사에 관한 서적인 『동사』를 “조선 고유한 독립적 문화를 영가하여 김부식 이후 사가의 노예사상을 갈파하여 특유한 발명과 채집”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칭찬했다.³⁶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종휘는 고증학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 역사와 지리 문제에 대해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 중요한 학자이다.

「수경」은 『수산집』 권14 「동국여지잡기(東國輿地雜記)」의 마지막 편이다. 길이가 매우 짧고 총 한자 수가 천여 개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책을 만들기 어렵고 총괄적인 지리 산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경」의 편찬 배

35 양보경, 1992, 앞의 글.

36 申采浩, 1982, 『朝鮮上古史』, 서울: 人物研究所, 53쪽.

경에 대해서는 이종휘가 쓴 「수경서(水經序)」에서 대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종휘는 조선의 산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나, 조선 학자들이 본국 산천의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군 등 행정구역의 형세, 풍수의 공통점과 차이점, 고급 분열과 통일의 궤적”³⁷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가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학자들은 지도나 여행기로 지리 형세를 규명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 이종휘는 상흠의 『수경』과 역도원의 『수경주』를 상기하고 “천하 하천 수계 상황, 굽은 곳과 곧은 곳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등록하여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며 (하천 상황에 대해) 손바닥을 가리키듯 확실히 안다”³⁸라는 장점을 찬양했다. 하지만 『수경주』는 여전히 “소속 군현과 제후국, 고급의 사적에 대하여 번거로운 글을 지나치게 쓰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읽자마자 항상 잠자게 했다”³⁹라는 단점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평소 산수에 열중했다”⁴⁰라는 저자는 “비밀리에 상흠의 『수경』과 역도원의 『수경주』에 따라, 별도로 『청구수경』 1부를 만들고 강목의 형식으로 하천의 크고 작은 상황을 잘 기록한다”⁴¹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청구수경』의 내용에 대해 저자는 “무릇 조선의 하천은 11개, 삼한은 18개, 예맥은 7개, 옥저는 5개, 총 41개이다”⁴²라고 하여 하천을 수록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이종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의 「수경」에서는 “동방에 8개의 큰 하천”⁴³만이 수록되었다. 이 하천들은 압록강, 요하, 혼동

37 李種徽, 『修山集』 권1, 「水經序」, “州域之形勢, 風俗之異同, 古今分合之蹟.”

38 李種徽, 『修山集』 권1, 「水經序」, “天下之水源分派別, 一曲一直, 無不詳論而備載. … 沿洄沂遄, 瞭如指掌.”

39 李種徽, 『修山集』 권1, 「水經序」, “所屬郡國, 古今事蹟, 大費冗雜語, 使人見之, 往往欲誣.”

40 李種徽, 『修山集』 권1, 「水經序」, “素性癖於山水.”

41 李種徽, 『修山集』 권1, 「水經序」, “竊附桑, 鄙故卷, 別作靑丘水經一部, 綱其大而目其細.”

42 李種徽, 『修山集』 권1, 「水經序」, “朝鮮水凡十一, 三韓水凡十八, 濊貊凡七, 沃沮凡五, 合四十一水.”

43 李種徽, 『修山集』 권13, 「水經」, “東方八大水.”

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이다. 이종휘의 「수경」은 다음 네 개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첫째는 하천의 발원지와 길이, 둘째는 하천의 유역 범위와 면적, 셋째는 해당 하천 유로 지역의 역사 기록, 넷째는 해당 하천 남쪽과 북쪽의 다른 중요한 하천 상황, 그리고 다섯째로는 해당 하천 인근 구역에서 독립적으로 바다에 유입하는 하천 및 호수의 상황이다. 이종휘는 8개의 중요한 하천 외에, 11개의 부차적인 하천 및 3개의 다른 호수를 수록했다.

천여 자의 짧은 글자에 이종휘는 한반도의 중요한 하천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의 요하와 송화강까지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이종휘가 강한 자국정신과 만주고토회복의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수경」은 짧지만 대체로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하천을 포함하며, 각 하천의 발원지, 유로, 하구, 유역 및 관련 역사 상황을 일정하게 설명했다. 이 측면만을 고려하면, 그의 목표인 “강목의 형식으로 하천의 크고 작은 상황을 잘 기록한다”⁴⁵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종휘의 「수경」의 편폭이 너무 짧아서 수록된 하천과 지리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의 학술 가치는 불가피하게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성해응과 『동수경』

성해응(1760~1839)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자는 용여(龍汝), 호는 연경재(硯經齋)이다. 그는 당시 북학과 학자인 이덕무, 유덕공, 박제가 등과 밀접하게 교류를 했으며, 규장각 검서관의 관직을 맡아 본 적이 있다. 그는 광범위하게 여러 도서를 섭렵했고 학문적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비록 그의 학문은翁方綱(翁方綱) 등 청나라 학자들의 방법을 참고하면서도, 번거로운 고증을 금

44 李種徽의 자국정신과 故土恢復意識에 관해서는 다음 저술을 참조할 수 있다. 한영우, 1987, 「18세기 중엽 소론학인 이종휘의 역사관」, 『東洋學』 17; 장유승, 2007, 「이종휘(李種徽)의 자국사 인식과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 『민족문화사연구』 35.

45 李種徽, 『修身集』 권1, 「水經序」, “綱其大而目其細.”

정하지 않고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수창은 성해응을 실학 전성기의 인물로 “조선 후기 주자학에 대한 발전적 비판 내지 저항이 즐기차게 계속될 때 경학의 이념적 굴레를 탈피하려는 박학(樸學)적이고도 고증학적 경향을 보인 학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⁴⁶라고 논평했다. 그의 다양한 저작들은 총 102책, 188권으로 구성된 대형 문집인 『연경재문집』에 수록되었다.

『동수경』은 총 한자 12,000여 자로, 『연경재전집』 외집 권44 「지리류」 중의 일부이다. 성해응의 「동수경서(東水經序)」에 따르면, 그가 『동수경』을 저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성해응은 먼저 산천이 정확한 역사와 지리 의식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는 “제후국과 군현의 흥성과 쇠퇴에 관한 흔적은 확실하지 못하다”⁴⁷ 하지만 “산천의 원유와 즐기는 고대부터 오늘까지 쉽게 변하지 않는다”⁴⁸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산맥과 하천의 지리 상황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해당 지역 행정구역의 변천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후 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서술을 시작했다. 중국인들이 한국 산천을 일찍부터 많이 기록했지만, “몸소 가서 직접 보지 못하고 여행기와 지리지에만 의거하여 조선의 산천을 잘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일일이 정확하게 고증할 수 있는가?”⁴⁹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선 사람들은 역시 “황폐하고 정밀하지 않다.”⁵⁰ 그러므로 성해응은 “지도와 지리지를 고증하며, (구역) 고금의 연혁 및 지명의 변천을 자세히 파악하고, 『동수경』을 찬술한다”⁵¹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선 사람

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7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十一·文三, 「東水經序」, “邦國州縣興廢之跡不定.”

48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十一·文三, 「東水經序」, “山川源流條枝, 自古及今, 不能變易.”

49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十一·文三, 「東水經序」, “不能躬履而目擊, 只憑記誌所載, 而欲明東方之山川, 則安得一一考正乎.”

50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十一·文三, 「東水經序」, “荒蕪不精.”

51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十一·文三, 「東水經序」, “考圖經, 而詳其古今之沿襲, 與夫名稱之變易, 爲之東水經.”

들이 (이 글을) 읽고 서투르지 않으며 근거를 잃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방향을 잃지 않으며 망상을 하지 않는다면 다행이다”⁵²라는 좋은 효과를 기대했다.

성해응은 비교적 높은 창작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동수경』의 내용을 통해 보면 전인(前人)을 능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해응의 『동수경』과 신경준의 『산수고』 중 「수경」과 「수위」는 차이가 매우 작았으며, 전자의 대부분 내용이 사실상 후자에서 파생된 것이다. 성해응은 신경준의 원문을 약간 생략하고 「수경」과 「수위」의 내용을 혼합하여 재편성함으로써, 신경준이 일부러 별개로 저술한 경문과 주문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 서술 방식과 지리 개념에서 성해응과 신경준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 『동수경』은 경문과 주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역도원의 『수경주』와 더 유사하게 되었다. 둘째, 두 사람은 하천의 분류와 지류, 하천 등급 등에서 지리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해응은 신경준이 한강의 한 지류로 여겼던 임진강을 또다시 한강의 지류로 판단하고 서술했다. 셋째, 성해응은 모든 하천의 유역 범위와 일부 하천의 지리 정보를 삭제했다. 넷째, 『동수경』은 각 지류를 하천 크기에 따라 큰 하천(大川)과 작은 하천(小川)으로 나눴다. 다섯째, 성해응은 『한서·지리지』, 『성경통지』 등 신경준이 인용하지 않은 지리 문헌을 참고하며 새로운 인문 지리 정보와 저자의 지리적 견해를 추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동수경』은 18개의 4급 하천, 23개의 3급 하천, 그리고 238개의 대천과 소천을 수록했다.

따라서 『동수경』이 『산수고』의 내용을 답습했다고 추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이 책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헌학적인 시각에서 『동수경』을 『산수고』의 약본으로 삼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52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十一·文三, 「東水經序」, “東人見之, 不至鹵莽而失據, 華人見之, 不至迷亂而妄索, 則幸矣.”

4. 정약용과 『대동수경』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집대성자로 꼽힌다. 그는 학문과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성호학파의 학맥을 이어받아 다양한 학문에 전념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과 부국강병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의 실학사상과 다양한 저술은 아직도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학문인 다산학이 형성되었다. 그의 풍부한 작품은 총 154권으로, 이 중 76권은 『여유당전서』에 수록됐다. 또한 4권짜리 『대동수경』은 이 전집의 제6집 「지리지집」에 수록되어 있다.⁵³ 비록 정약용의 연보에 따르면, 『대동수경』은 1814년(순조 4)에 편찬·완성되었지만, 의외로 1814년 직후의 역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양보경은 이 책에서 사용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대동수경』의 초고가 1814년에 완성되었고, 그 후로 순조 말년인 1834년까지 정약용의 제자인 이청(李晴)이 계속해서 수정·보완한 것으로 추론했다.⁵⁴

정약용은 『대동수경』을 창작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1789년(정조 15)에 세웠다. 그해에 정조는 지리학에 대한 책문인 「추세(驟勢)」 한 편을 친히 작성하고 신하들에게 대책문을 요청했다. 「추세」에서 국왕은 “다만 우리나라 선비들만이 명물의 학문에 제일 소홀하여 전해 오는 지리서라고는 『여지승람』과 『문헌비고』 등 1~2종류에 불과할 뿐이었다”⁵⁵라고 지적하며, “이런 것이 어찌 세상을 다스리고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⁵⁶라고 비판했다. 정약용은 “명산, 지산의 분맥과 물의 원류, 물의 하류의 위치 등을, 눈썹처럼 벌여 놓고 손바닥처럼 표시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기록해야

53 『大東水經』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다음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노경희, 2020, 『대동수경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

54 양보경, 1996, 앞의 글.

55 正祖, 『弘齋全書』 권50, 『驟勢』, “獨我東儒者, 最疎於名物之學, 所傳地理書, 不過『勝覽』, 『備考』, 一二種而已.”

56 正祖, 『弘齋全書』 권50, 『驟勢』, “此豈足爲經世博聞之一助乎.”

한다”⁵⁷라는 요구에 직면하면서, “또한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사물을 널리 아는 선비들을 재차 뽑아서, 상흥의 『수경』과 역도원의 『수경주』를 참조하여, 『동국수경』 한 부를 편찬한다”⁵⁸라고 답했다. 정조는 정약용의 문필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대책문을 으뜸으로 선정해 어비(御批)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조 생전에 『동국수경』을 완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조 승하 이후에 유배지에서 이 하천지리지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대동수경』에서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하천인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등 6개만을 수록하고 있다. 양보경의 연구에 따르면, 정약용은 생전에 임진강 이남 지역의 하천을 포함한 온전한 『대동수경』을 이미 완성했지만, 불행하게도 서적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비록 『대동수경』은 일부 내용만을 남겼지만, 여러 역사, 지리 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해서 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수경주』의 서술 방식과 풍격을 엄격하게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대동수경』에 수록된 모든 하천을 ‘모수(某水)’로 개칭했다. 예를 들면, 압록강은 록수로, 두만강은 만수로 변경했다. 둘째로 『대동수경』의 서술 방식은 짧고 강렬한 경문 하나의 구절로 시작하여 해당 경문 뒤에 긴 주문 문장을 추가하여 덧붙였다. 셋째로 주문 부분에서는 대량의 역사와 지리 자료를 인용하여 나열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경주』의 서술 방식과 거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대동수경』 「록수」과 『수경주』 「하수」를 대조해 비교하도록 한다. 하천 본문을 서술하기 전에, 양자는 모두 하천 발원지인 산맥을 소개했다. 『대동수경』은 세 개의 경문으로 장백산의 지리적 상황을 서술했다. 각각 “장백산은 신주의 동북쪽에 있다”, “우리 한양과의 거리는 2,140리이다”, “그

57 正祖, 『弘齋全書』 권50, 「墜勢」, “名山支山之分 出水受水之所 眉列掌示 圖臚表識.”

58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8, 「地理策」, “選好奇博物之士, 又倣桑欽之『經』, 鄺道元之『註』, 撰次『東國水經』一部.”

의 높이가 200리인데, 동방의 곤륜산이다”⁵⁹이다. 마찬가지로 『수경주』도 세 개의 경문으로 곤륜산의 지리 상황을 서술했는데, 각각 “곤륜하는 서북쪽에 있다”, “승산으로부터의 거리가 50,000리며, 이는 땅의 중심이다”, “그의 높이는 1,000리인데”⁶⁰이다. 두 저자는 동시에 하천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갔다. 전자의 두 경문은 “록수”, “그 서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한다”⁶¹이다. 후자는 극히 유사하게, “히수”, “그 동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한다”⁶²이다. 비교 결과, 『대동수경』이 거의 『수경주』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약용은 문장의 배열순서나 용어의 선택에서 『수경주』의 문헌적 특징과 양식을 엄격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두 책에서 해당 부분의 원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대동수경』과 『수경주』의 내용 대조

『大東水經』	長白山在神州東北	去我漢陽二千一百四十里	其高二百里, 東方之崑崙也	浚水	出其西南隄
『水經註』	崑崙墟在西北	去嵩高五萬里, 地之中也	其高萬一千里	河水	出其東北隄

『대동수경』은 기존 지리지의 서술 틀을 벗어나 하천을 주제로 쓴 지리서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이 책에서 다양한 역사·지리 자료를 수록하고 각종 지도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고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조선 전역의 하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선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정약용의 관심이 드러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양보경, 오상학 등의 견해에 찬성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동수경』이 한국 역사상 유일한 하천지리지라고 주장하며, 그중 하천 이름을 변경한 것은 정약용이 한번

59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5, 『大東水經』 「浚水」, “長白山在神州東北”, “去我漢陽二千一百四十里”, “其高二百里, 東方之崑崙也.”

60 酈道元, 『水經註』 권1, 『河水』, “崑崙墟在西北”, “去嵩高五萬里, 地之中也”, “其高萬一千里.”

61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5, 『大東水經』 「浚水」, “浚水”, “其出西南隄.”

62 酈道元, 『水經註』 권1, 『河水』, “河水”, “其出東北隄.”

도 하천의 독자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인식했다.⁶³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자적으로 만든 하천지리지는 확실히 『대동수경』 한 편뿐이지만, 비슷한 주제의 지리지인 신경준의 「수경」과 「수위」는 반세기 전에 이미 출간되었다. 게다가 다른 두 부의 하천지리지도 아직 남아 있다. 그 다음으로, 역도원의 『수경주』에서 거의 모든 하천을 ‘모수’로 개정했는데, 정약용이 정말로 한반도 하천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했다면 당시 하천의 이름을 통일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 변화로 인해 한반도 하천의 명칭은 역도원의 『수경주』와의 차이가 더 모호해지며, 도리어 이른바 독자성이 더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정약용이 『수경주』를 본떠 『동국수경』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나 『대동수경』의 구성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한반도 하천의 독자성을 부각시킨 의도는 찾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대동수경』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거장이자 역도원의 『수경주』를 완벽하게 모방한 저서로 평가할 수 있다.

5.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네 명의 저자와 그 저작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경주』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서술 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수용한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종휘, 성해응, 그리고 정약용은 모두 『수경주』를 참조하면서 자국의 「수경」을 찬술한 내용을 명백하게 제기한 적이 있었다. 신경준의 경우, 『수경주』를 참고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조와 서수호의 평가, 그리고 『산수고』 중의 「수경」과 「수위」에 나타난 독특한 문헌적 특징을 고려하면, 신경준이 『수경주』를 직·간접적으로 참고했다는 것은 역시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63 관련 내용은 다음 저술을 참조할 수 있다. 양보경, 1996, 앞의 글; 오상학, 2015, 『한국전통지리학사』, 서울: 들녘, 368쪽.

둘째, 조선 본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강력한 관심을 보이며, 풍부한 역사지리학적 학술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신경준은 『산수고』 외에도, 한반도의 역대 강역 변천 상황을 다룬 『강역고』, 한반도 연해(沿海), 연변(沿邊) 지대의 지리 상황에 관한 『사연고(四沿考)』 및 전국 각지 불교 사찰 위치와 연혁에 관한 『가람고(伽藍考)』 등 다양한 역사지리 저술을 찬술했다. 이종휘는 1권으로 여러 가지 한반도의 역대 역사지리 문제를 다룬 『동국여지잡기』를 남겼다. 성해응과 정약용도 역시 매우 많은 역사지리 저술을 간행했다. 정약용이 작성한 방대한 『지리권』의 내용만으로도 그의 학술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하천 자연 상황에 대한 답사를 실천한다는 학술 이념을 가졌던 점이다. 신경준과 이종휘는 둘 다 산수를 사랑한 사람으로, 두 사람의 산천에 대한 다양한 현지 조사는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해응은 산천 지리 문제를 연구할 때, “몸소 탐문하여 목격한다”⁶⁴라고 현지답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그는 「수경」의 편찬에서 현지답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정약용은 자신의 다른 저작인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에서 답사에 대한 열정과 실천 정신을 보여 주었다. 북한강 일대를 유람하면서 해당 지역의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고찰을 진행하고, 관련 자연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산수심원기』라는 저술을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용의 답사 정신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⁶⁵ 요컨대 네 명의 하천지리지 저자는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하는 일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답사를 통해 하천의 수문 상황을 조사했다. 그들은 현지답사를 통해 문헌 기록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넷째, 이 네 명의 저자들이 모두 동시기 청나라의 고증학 학풍의 영향을 받았던 점이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중국 학계에서는 소위 건가

64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十一·文三, 「東水經序」, “躬履而目擊.”

65 임정연·김기혁, 2017, 「다산 정약용의 북한강 하천 체계 인식 연구: 山水尋源記를 중심으로 A」, 『문화역사지리』 27-3; 양보경, 1996, 앞의 글.

고거학(乾嘉考據學)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다. 이 시기에 고증학의 학풍, 연구 이론과 방법 및 중국의 역사지리학 저술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네 명의 조선 하천지리지 저자들은 이러한 고증학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하천지리지 편찬에서도 활용했다. 신경준은 당대 학자로부터 “총명하고 박식한 선비이며, 그의 기술은 고증하지 않거나 의거가 없는 곳이 없고, 부실한 글자나 문장이 하나도 없다”⁶⁶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휘도 유사한 찬사(讚辭)를 받았다. 동일한 시대의 실학자 홍양호는 이종휘를 “특히 조선 지리지에 다하여 잘 통달하여 ... 항상 분리되고 병합된 곳에 대하여 (이종휘는) 모두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극절하게 증명했다. (그의) 세밀하고 조리 있는 분석은 장을 대조하여 규를 안 듯이, 소매를 연결하여 옷을 만든 듯이, 명백히 눈에 나열되었다. 정심하고 박대하게 노력했는데 (그가) 얼마나 훌륭할까”⁶⁷라고 고평가했다. 성해응의 경우, 원래 조선 고증학에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⁶⁸ 한편, 정약용이 고증학을 수용한 사실은 『대동수경』 중의 주도면밀한 문헌 고증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하천지리지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문헌적인 측면에서, 우선 『대동수경』 이외에 다른 세 작품은 모두 완질본(完帙本)이며, 전자는 한반도 남부 하천 기록이 누락된 산질본(散帙本)이다. 그 다음으로 각 작품의 길이가 다른데, 이종휘의 「수경」이 가장 짧고, 『산수고』 중의 「수경」과 「수위」, 그리고 『대동수경』은 상대적으로 길어서 더 많은 하천과 역사 기록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술 방식이 다른데, 『산수고』 중의 「수경」 부분은 하천 수계와 유로의 기록으로 구성된 순수한 경문이며, 「수위」는 역도원의 『수경주』의 주문에 해당했다. 『동수경』은 『산수고』 중의

66 楊應秀, 『白水先生文集』卷13, 『家乘序』, “精明博洽之士, 其所記述, 莫不有所考據, 無一字一句之不實.”

67 李種徽, 『修山集』, 『修山集序』, “尤明於東方地誌, … 離合無常者, 率皆旁引曲證, 縷分絲絡, 如合璋而知珪, 連袂而成衣, 粲然羅列於目中, 其用功之專且博, 何其偉也.”

68 앞에서 언급한 成海應이 고증학에 대한 학술 관점을 소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수정하고 약간의 역사 기록인 주문을 추가했다. 그러나 후자의 주문 서술이 불규칙해서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이종휘의 『수경』은 매우 짧지만, 한 개의 강을 기술한 문단에서는 인근 구역 내의 여러 하천과 관련된 역사지리 기록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엄밀히 말한다면, 『대동수경』은 『수경주』의 기술 방식을 엄수한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역사지리학적 측면에서, 신경준은 기술한 하천 수와 범위가 가장 많으며, 현대적 지리학과 가장 가까운 지식을 지녔다. 『산수고』에서는 분류와 지류 개념, 하천 분등(分等) 개념, 수계 유역 개념, 하구와 익곡(溺谷) 개념, 전문적 수문학 용어와 정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은 하천 유로 연안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 인문 지식을 수록·분석·정리했기 때문에 역사 지리적으로는 사료 가치가 높다. 성해응은 신경준의 『산수고』를 답습한 것이라서 『동수경』 내용상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이종휘의 글은 짧지만, 자신의 계통적 지리 인식과 지리 개념은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만주 지역의 하천을 수록한 것은 이종휘의 만주고토회복의식을 구현한 것이다. 각 저자들은 분류와 지류의 표준, 어떠한 하천이 중요하고 기록해야 할지에 관한 판단 등 하천 지리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로 사상사적 측면에서, 이종휘는 자국사상과 만주고토회복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한반도 밖의 만주에서 흐르는 요수, 혼동강을 기록했다. 나머지 학자들은 한반도 내부의 역사와 지리 상황에 방점을 두어 본국의 지리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적 측면에서는 거시적 지리 의식과 지리 정보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종휘의 「수경」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었지만, 반면에 다른 저자들은 한반도 전체의 하천 체계와 수계망을 더 완벽하게 묘사했다.

IV. 중국 역도원의 『수경주』와의 비교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경주』는 중국 남북조시대 북위 학자인 역도원이

한(漢)나라 상흠(桑欽)의 『수경』⁶⁹에 주석을 달아 준 보조적인 하천지리지이다. 상흠의 『수경』에서는 오직 137개의 주요 하천의 상황을 만여 자로 간단히 수록하였으며, 각 하천의 발원지와 유로, 수계망의 양상, 그리고 하천 유역의 지리적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은 체계적이지 않고 자세하지 않았다. 북위 때의 역도원은 『수경』이라는 하천지리지의 편찬 방식을 받아들이지만, 그 책에 존재한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40권, 30만여 자로 구성된 방대한 편폭의 『수경주』를 완성하였다. 『수경주』에서는 1,252개의 하천을 수록하였으며, 각 하천의 발원지부터 하구까지의 주류, 지류, 하곡의 높이, 하도의 깊이, 수량, 그리고 해당 하천 유역의 폭포, 호수, 평양, 산맥, 수리시설, 도시, 향촌, 사찰, 능묘 등 매우 풍부한 자연·인문 지리적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원래의 『수경』과 비교하여 『수경주』에 수록된 문헌 자료의 유형과 양이 극히 증가하였으며, 결국 『수경주』는 『수경』의 명성을 뛰어넘어 명·청시기에 이르러 『수경주』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학문인 역학까지 형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경주』를 연구한 학술 열풍이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전파되었다. 역대도 『수경주』의 제작 경위, 문헌적 내용과 특징 등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상황하게 늘어놓지 않기로 한다.⁷⁰

먼저,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와 중국 역도원의 『수경주』 사이의 공통점부터 살펴보자. 조선과 중국의 하천지리지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양국 학자들은 모두 자연 하천의 유로를 주요한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하천과 관련된 자연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하천 연안 구역의 다양한 자연과 인문 지리

69 『수경』의 저자와 제작 연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와 「구당서(舊唐書)』 「경적지」 등에서는 진(晉)나라 시기의 관박(郭璞)을 『수경』의 편찬자나 저자로 기재하고 있으며,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와 「통지(通志)」 「예문약(藝文略)」 등에서는 해당 책의 저자를 한나라 시기의 상흠으로 표시하고 있다. 송(宋)나라 시기 이후 대부분의 학자는 상흠설에 동의해 왔다. 이 글에서는 상흠설을 채택하기로 한다.

70 현재까지 역도원과 『수경주』에 관해서 陳橋驛의 일련의 연구를 참조할 만하다. 陳橋驛, 2018, 『陳橋驛全集』. 北京: 人民出版社.

정보를 주목했다. 다시 말해, 양국의 학자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의 자료를 인용하여 증명하고 자연과 인문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하천의 자연적 유로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인 경문의 글쓰기 방식이 비슷하다. 양국 학자들은 모두 하천의 기원, 흐름 방향, 연안 지역, 합류 지점 등의 내용을 엄격하게 기록했다.⁷¹ 구체적인 글자에 대한 사용과 문장의 형식이 거의 일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역도원의 『수경주』에서 사용한 하천 합류를 나타내는 용어인 “과(過)”, “회(會)”, “입(入)” 등의 한자는 신경준의 『산수고』 「수경」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됐다. 게다가 신경준은 이러한 용어를 한층 더 상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큰 하천이 작은 하천을 합병하는 것을 ‘과’라고 한다”, “수량이 엇비슷한 두 하천이 합류하는 것을 ‘회’라고 한다”, “작은 하천이 큰 하천에 합류하는 것을 ‘입’이라고 한다”⁷²라고 설명했다.

셋째, 경문과 주문이 함께 있는 지리서의 체례(體例)를 엄격히 지니고 있다. 경문에서는 하천 수문 지리 정보만을 기록하고, 주문에서는 해당 하천 구간과 연안의 각 자연과 인문 지리 정보를 추가하여 수록했다. 조선 하천 지리지들은 각각의 주문에 대한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경문과 주문을 분리시킨 서술 방식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서술 방식에서 경문과 주문에 대한 배치와 나열이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경주』는 짧은 문장 하나인 경문 아래에 긴 주문이 따르는 형식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에서는 신경준이 경문과 주문을 독립된 두 부분으로 만들었고, 성해응은 작은 하천의 수문 상황을 기록한 경문 뒤에 주문을 추가하지 않았다. 나머지 두 부의 하천지리지는 오히려 『수경주』의 서술 방식과 기본

71 뒷글에 언급한 「大東水經」과 「水經注」를 비교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72 申景濬, 『旅蘆全書』 권13, 「山水考」 권4, 「水經」, “大水合小水曰過”, “兩水勢均相入曰會”, “小水入大水曰入.”

적으로 일치하지만 역시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주문 중에 수집된 지리 정보에 대한 의도가 다르다. 역도원의 『수경주』에서는 전고, 민속, 명승고적, 도시와 향촌, 사찰, 수리시설 등 다양한 문헌 기록을 인용했지만,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에서는 정약용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 이야기만을 수록했다. 또한 역도원은 높은 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어서 그의 『수경주』에 있는 많은 글이 우수한 문학 작품으로 아직도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셋째, 수록된 하천의 기준, 수량 및 정확성에서 저자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 특히 『수경주』보다 신경준의 『산수고』는 작은 하천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하천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지리 정보의 정확성도 매우 높다. 또한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는 한반도의 수계망을 체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하천지리지의 경우, 『수경주』에서는 수록된 하천의 수가 적고 수계망도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리 정보가 적지 않았다.

넷째, 양국 하천지리지의 규모와 권수의 차이가 현저하다. 중국 역도원의 『수경주』는 40권 30만 자 이상의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하천지리지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 최대 2~3권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글자 수를 따지면 가장 적은 분량은 한자 천 글자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국 하천지리지 간의 차이가 생긴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양국의 지리 상황은 현저히 다르다. 중국은 면적이 크고 지형이 다양하여 전국에 많은 하천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계망도 더 복잡하다. 반면에 조선은 대부분 국토가 한반도에 위치하고 전체 면적도 중국 국내의 비교적 큰 성 하나의 크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선 전국 하천의 수량은 적고 길어도 짧으며 당연히 역도원의 『수경주』보다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은 국토 면적 덕분에 조선 하천지리지에 수록된 하천의 정보는 『수경주』보다 전체성과 정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둘째로 한중 양국의 하천지리지의 집필·간행 연대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각 저자가 처한 역사 배경과 사회 환경은 매우 달랐다. 중국의 역도원은

분열한 남북조시대 중 북위조의 인물로, 당시 중국 남쪽의 지리 자료와 전국 지리 문헌을 얻기 어려웠다. 반면에 조선 하천지리지가 등장한 영·정조 시기는 통일의 시대로, 국가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대규모 국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조선 하천지리지가 탄생한 시대 환경은 중국 역대원의 『수경주』의 시대에 비해 훨씬 나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로 양국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역사 문헌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많다. 중국에서는 『한서』 「예문지」만으로도 13,269권의 책이 남아 있었고, 남북조시대에는 다양한 지리 문헌이 300여 종이나 됐다.⁷³ 그러나 조선의 경우에는 조선조 이전의 역사 문헌이 매우 부족하여, 조선 후기 학자들은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인용된 내용에 대해 제약이 심하다.

V. 맺음말

이 글은 먼저 조선 후기 네 부의 하천지리지가 등장한 역사 배경을 분석한 후, 이들 하천지리지의 저자 생애, 제작 과정, 내용 특징,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를 중국 역대원의 『수경주』와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17~18세기의 험악한 국제 환경은 조선 사람들의 국가의식과 강역의식을 급격히 심화시켜 역사지리학 연구를 인기 있는 분야로 만들었다. 또한, 변방 지역과 산악 지역, 그리고 해도 지역의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신경준, 이종휘, 성해웅, 정약용이 창작한 네 부의 조선 하천지리지가 탄생하였다. 이 네 명의 하천지리지 저자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전국지리지 편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학문적 교류도 매우 빈번하게 이뤄졌다. 그 학자들은 역

73 王俊傑, 1980, 「魏晉南北朝時期的史學」, 『史學史資料』 2.

도원의 『수경주』를 직·간접적으로 참고하거나 모방하여, 대동소이할 수 있는 조선의 하천지리지를 완성했다. 네 부의 조선 하천지리지에서 정약용의 『대동수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경주』의 편찬과 서술 방식을 어느 정도 변형시켰다. 이는 조선 후기 학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학문적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와 역도원의 『수경주』 사이의 차이점은 먼저 한중 양국 지리 환경의 막대한 차이, 천여 년이라는 집필 시기의 차이, 그리고 참고 가능한 자료의 양의 큰 차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의 등장과 편찬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로, 보다 다양한 자료와 비교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게다가 역도원의 『수경주』 단 하나의 하천지리지만을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북위 대 이후 다른 중국 하천지리지와의 비교 연구가 전개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시기의 중국 하천지리지와 다른 국가의 하천지리지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 하천지리지의 국제적·시대적 의의를 더 넓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추후에 다뤄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徐居正, 『東文選』.
成海應, 『研經齋全集』.
申景濬, 『旅庵遺稿』.
_____, 『旅庵全書』.
楊應秀, 『白水先生文集』.
酈道元, 『水經注』.
李家煥, 『錦帶殿策』.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瀾, 『星湖先生全集』.
李種徽, 『修山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正祖, 『弘齋全書』.
- 姜錫珉, 2006, 「18世紀 朝鮮의 領土論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春善, 1998, 「조선후기 한인의 만주로의 ‘犯越’과 정착과정」, 『白山學報』 51.
노경희, 2020, 「『大東水經』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
朴仁鎬, 1996,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서울: 以會文化社.
_____, 1998, 「조선시기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의 추이와 특성」, 『조선사연구』 7.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서울: 一志社.
서경요, 1982, 「성해응의 경학사상에 관한 고찰」, 『大東文化研究』 15.
손용택, 2021,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 60-4.
申采浩, 1982, 『朝鮮上古史』, 서울: 人物研究所.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2,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

- 해」, 『토지연구』 3-3.
- _____, 1996, 「丁若鏞의 地理認識 : 『大東水經』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2.
- 양진석, 2013,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43.
- 오상학, 2015, 『한국전통지리학사』, 과주: 들녘.
- 원재린, 2003, 『전선후기 星湖學派의 학풍 연구』, 서울: 혜안.
- 유봉학, 1995, 『燕岩一派北學思想研究』, 서울: 一志社.
- 장유승, 2007, 「이종휘(李種徽)의 자국사 인식과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 『민족문학사연구』 35.
- 정연·김기혁, 2017, 「다산 정약용의 북한강 하천 체계 인식 연구: 汕水尋源記을 중심으로 A」, 『문화역사지리』 27-3.
- 조성을, 2008, 「『我邦疆域考』와 『大東水經』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 13.
- 한영우, 1987, 「18세기 중엽 소론학인 이종휘의 역사의식」, 『東洋學』 17.
- 李花子, 2019, 『清代中朝邊界史探研: 結合實地踏查的研究』,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 王元周, 2013, 『小中華意識의 嬗變: 近代中韓關係의 思想史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 王俊傑, 1980, 「魏晉南北朝時期的史學」, 『史學史資料』 2.
- 陳橋驛, 2000, 「水經注版本和校勘的研究」,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1.
- _____, 2018, 『陳橋驛全集』, 北京: 人民出版社.

국문초록

이 글은 먼저 조선 후기 네 부의 하천지리지가 등장한 역사 배경을 분석한 후, 이들 하천지리지의 저자 생애, 제작 과정, 내용 특징,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를 중국 역도원의 『수경주』와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17~18세기의 험악한 국제 환경은 조선 사람들의 국가의식과 강역의식을 급격히 심화시켜 역사지리학 연구를 인기 있는 분야로 만들었다. 또한, 변방 지역과 산악 지역, 그리고 해도 지역의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신경준, 이종휘, 성해응, 정약용이 창작한 네 부의 조선 하천지리지가 탄생하였다. 이 네 명의 하천지리지 저자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전국지리지 편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학문적 교류도 매우 빈번하게 이뤄졌다. 이 학자들은 역도원의 『수경주』를 직·간접적으로 참고하거나 모방하여, 대동소이할 수 있는 조선의 하천지리지를 완성했다. 네 부의 조선 하천지리지에서 정약용의 『대동수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경주』의 편찬과 서술 방식을 어느 정도 변형시켰다. 이는 조선 후기 학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학문적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와 역도원 『수경주』 사이의 차이점은 먼저 한중 양국 지리 환경의 막대한 차이, 천여 년이라는 집필 시기의 차이, 그리고 참고 가능한 자료의 양의 큰 차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제어〉

조선 후기, 하천지리지, 신경준, 이종휘, 성해응, 정약용, 중국, 역도원

ABSTRACT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of *Hacheon jiriji* (geographical book on rivers): A Comparison Li Daoyuan's *Shuijingzhu* of China

Li, Hao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which the four editions of *Hacheon jiriji* (geographical books on rivers) were published, and delves into the authors' lives, publication process, and the distinctive contents of the four geographical books produced in the late Joseon period. Finally, the paper compares *Hacheon jiriji* with *Shuijingzhu* authored by Li Daoyuan of China. The challe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notably catalyzed a heightened national and regional consciousness among the Joseon people, thereby fostering a surge in the popularity of research on historical geography. Scholars actively contributed to the exploration and understanding of border areas, mountainous regions, and coastal islands during this period. Against this backdrop, many scholars employed geographical documents and philological methods originating from China to investigate various historical geography issues within Korea. The intricate interplay of these historical factors ultimately culminated in the production of four geographical books on river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by scholars such as Sin Gyeongjun, Yi Jonghwi, Seong Haeung, and Jeong Yakyong. These scholars shared close relationships, had collective experiences in nationwide geography projects, and frequently engaged in scholarly exchanges centered on classical Chinese writings. Some directly emulated Li Daoyuan's *Shuijingzhu*, resulting in variations among the geographical books on rivers compiled in Joseon. These discrepancies can be attribut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eographical environments of Korea and China, as well as variations in the availability of reference materials during their respective production periods. With the exception of Jeong Yakyong's *Daedongsugyeong*, the other geographical books on river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underwent varying degrees of stylistic transformation under the influence of *Shuijingzhu*, reflecting the unique intellectual endeavors and academic aspirations of scholars during that era.

Keywords

late Joseon Dynasty, *Hacheon jiriji* (河川地理志), Sin Gyeongjun (申景濬), Yi Jonghwi (李種徽), Seong Haeung (成海應), Jeong Yakyong (丁若鏞), China, Li Daoyuan (酈道元)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정연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I. 머리말
- II. 한국과 일본의 섬 이름
- III. 다케시마(竹島)와 이소타케시마(磯竹島)
- IV. ‘竹島’와 ‘松島’의 크기
- V. ‘竹島’와 ‘松島’의 조합 여부
- VI. 맺음말

1. 머리말

필자는 일본이 과거에 울릉도와 독도를 부르던 이름 죽도(竹島)와 송도(松島)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섬 이름 대섬, 솔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그 이름은 큰 섬, 작은 섬이라는 뜻의 우리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최근에 제기한 바 있다.¹ 울릉도는 큰 섬이고 독도는 그에 비해 작은 섬이므로 죽도와 송도라는 이름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이름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울릉도와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섬이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일본에서는 16, 17세기에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불렀는데, 그 이름은 한자의 뜻에 따라 대나무섬, 소나무섬으로 해석해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일본어 이름으로 다케시마, 마쓰시마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竹島’와 ‘松島’는 결국 한국인들이 쓰던 이름인 대섬, 솔섬의 한자 표기를 가져간 것일 뿐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관리, 경영해 왔으나, 한국은 독도의 존재조차 몰랐고 독도를 부르는 이름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른바 고유영토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 결과 현재는 주류 학설에서 멀어져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이 주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만약 고유영토설을 고집하려면 죽도와 송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일본어나 한자의 뜻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²

우선 ‘竹島’, ‘松島’의 일본어 이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큰 섬, 작은 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 일본어의 다케(take)와 마쓰(matsu)는 크

* 논문 투고일: 2023.10.15, 심사 완료일: 2023.11.5, 게재 확정일: 2023.11.8.

1 정연식, 2019, 「울릉도, 독도의 옛 이름 대섬[竹島], 솔섬[松島]의 뜻」, 『역사학보』 241; 정연식, 2023, 『조선 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우리말 이름들』, 주류성.

2 이 글에서 동해의 ‘竹島’는 언제나 울릉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竹島’를 ‘다케시마’로, ‘松島’를 ‘마쓰시마’로 부르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죽도, 송도’로 쓴다. 그렇게 해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다, 작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중세일본어의 마쓰(matsu)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중고일본어에서는 마투(matu)였을 터인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다케, 마쓰'가 '크다, 작다'로 해석될 수 없더라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일본에서 큰 섬은 죽도로 작은 섬은 송도로 부르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죽도, 송도가 우리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또한 '竹島, 松島'라는 이름을 일본이 대나무, 소나무와 연결하여 붙인 이름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울릉도의 '竹島'라는 이름은 의아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울릉도에는 커다란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의 '松島'라는 이름에는 문제가 있다. 독도에는 소나무가 없었고 기후, 토양 등의 생태환경으로 보아 지금은 물론이고 과거에도 소나무가 자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럴싸한 해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울릉도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 죽도라 불렀고, 독도에는 소나무가 없지만 일본에서 송(松)과 죽(竹)이 짝을 이루는 말로 많이 쓰였기에, 죽도와 한 쌍으로 대비되는 독도에 송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한 해석은 확실한 근거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 개연성도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즉 울릉도와 독도 말고 일본열도 안에도 서로 짝을 이룬 죽도와 송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도 죽도와 송도라는 이름을 지닌 섬이 적지 않다. 그 섬들에 대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일본에서도 대체로 죽도는 큰 섬이고, 송도는 작은 섬인지 확인해 본다. 둘째로 일본에서 죽도와 송도라는 이름이 서로 대비되어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일본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별칭이었던 이소타케시마(磯竹島·磯竹島)라는 이름은 어떤 뜻의 이름이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 한다.

II. 한국과 일본의 섬 이름

2013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은 3,348개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숫자는 남한의 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³ 100여 년 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한 5만분의 1 지형도 728개에 이름이 기록된 섬은 모두 2,776개였고, 그중에 이름이 들인 섬이 88개가 있어, 모두 2,864개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⁴

이 가운데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여럿이 있고, 순수한 본래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중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동서남북(東西南北), 상중하(上中下), 내외(內外), 전후(前後)’나, 크기를 표시하는 ‘대중소(大中小), 장광세(長廣細)’와 같은 수식어가 붙은 이름들이 있다. 그것들은 수식어가 붙지 않은 상태의 이름이 그대로의 뜻을 간직한 것으로 이해된다.

계도(鷓島)를 예로 들자면 ‘상계도(上鷓島)’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글자가 덧붙거나, ‘대계도(大鷓島)’처럼 크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덧붙은 것들은 계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두 계도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다른 글자가 덧붙으면 계도의 뜻을 그대로 간직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예컨대 ‘민계도(敏鷓島)’나 ‘납계도(蠟鷓島)’와 같은 이름이 그렇다. 화도(花島)와 매화도(梅花島)나, 마도(馬島)와 안마도(鞍馬島)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순수 이름에 위치와, 넓이·길이를 포함한 크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덧붙은 이름까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합하여 개수가 많은 것부터 20위까지 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표 1>에서는 순수 이름은 ‘-島’로, 위치나 크기를 나타내는 글자를 덧붙인 이름은 ‘△-島’로 나타내고,

3 섬을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아 섬의 개수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https://www.kiostr.ac.kr/cop/bbs/BBSMSTR_000000000098/selectBoardArticle.do?nttlid=23126).

4 이 숫자와 표의 숫자는 예전 글에서 밝힌 숫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전과는 달리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숫자를 세고, 두어 군데 중복된 오류를 수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그 밖의 다른 글자가 덧붙은 것은 '▽-島'로 열게 표시하여 참고로 함께 제시하였다.⁵

20위 안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위부터 살펴보면 대섬(竹島)은 큰 섬이고, 솔섬(松島)은 작은 섬이며, 목섬(項島)은 큰 섬이나 육지에 바짝 붙어 좁은 물목을 만드는 섬이다. 장구섬(長鼓島·缶島)은 장구처럼 가운데가 잘록한 섬이고, 새섬(鳥島·間島)은 사이에 놓인 섬이며, 긴섬(長島)과 <표 2>의 뱀섬(蛇島)은 모두 길쭉한 섬을 뜻한다. 닭섬(鷄島)은 대개 돌섬을 가리키고, 형제섬(兄弟島)은 둘 이상의 섬이 나란히 늘어선 것이며, 까치섬(鶺鴒島)은 작은 섬을 뜻한다.⁶

<표 1> 한국의 섬 이름 순위

	이름	-島	△-島	합계	▽-島	총계
1	竹島(대섬)	73	27	100	6	106
2	松島(솔섬)	62	15	77	0	77
3	項島(목섬)	32	9	41	7	48
4	長鼓島(장구섬) 缶島	19 8	4 0	31	0 1	32
5	鳥島(새섬) 間島	15 5	9 1	30	4 2	36
6	長島(긴섬)	24	6	30	5	35
7	鷄島(닭섬)	21	5	26	2	28
8	花島(꽃섬)	12	11	23	12	35
9	石島(돌섬)	21	0	21	3	24
10	栗島(밤섬)	17	3	20	1	21
11	兄弟島(형제섬)	18	2	20	0	20
12	鶺鴒島(까치섬)	19	0	19	2	21
13	牛島(소섬)	17	1	18	10	28
14	馬島(말섬)	6	11	17	24	41
15	黃島(노랑섬)	14	3	17	2	19
16	獐島(노루섬)	12	4	16	0	16
17	茅島(띠섬)	13	2	15	0	15
18	沙島(모래섬)	12	2	14	11	25
19	大島(큰섬)	10	4	14	9	23
20	小島(작은섬)	14	0	14	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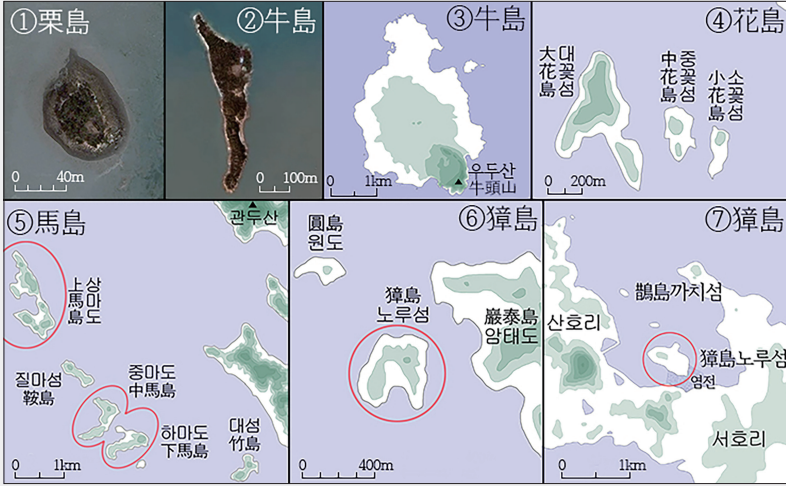
* '-島'는 제시된 이름 그대로의 것이고, '△-島'는 위치를 표시하는 '東西南北, 上中下, 内外, 前後'나 크기를 표시하는 '大中小, 長廣細'가 앞에 붙은 것이며, '▽-島'는 그 밖의 글자가 붙은 것이다.

* 순위는 '-島'와 '△-島'를 더한 합계를 기준으로 하되, 합계가 같을 경우 '▽-島'까지 더한 총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것도 같으면 '-島'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 이상은 이후의 표에도 적용된다.

5 <표 1>에서 鳥島에는 乙島가, 花島에는 華島가, 黃島에는 老浪島와 老郎島가, 石島에는 礫島가 각각 하나씩 포함되어 있고, 長鼓島에는 長古島, 長口(九·久)島, 將求島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곳에 모여 있는 大兄弟島·小兄弟島와 三兄弟島, 五兄弟島는 모두 兄弟島 하나로 계산했다.

6 정연식, 2023, 앞의 책, 139~142쪽.



〈그림 1〉 전라남도 여러 섬의 이름과 모양(등고선간격 20m)

* ①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② 목포시 울도동, ③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신앙〉(1975)·〈우도〉(1976), ④ 완도군 금당면 육신리 〈금당〉(1975), ⑤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진도〉(1918), ⑥ 신안군 임태면 오상리 〈임태〉(1975), ⑦ 영암군 산호읍 산호리 〈木浦〉(1936)·〈靈巖〉(1918), 출처: ①, ②는 카카오맵 스카이뷰(2008), ③~⑦의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립지리원의 1:25,000지형도는 〈 〉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의 1:50,000지형도는 〈 〉로 표시했다.

그리고 〈그림 1〉에 보이듯이 밤섬(栗島)은 밤톨처럼 생긴 섬이고(①), 쇠섬(牛島)은 우두도(牛頭島), 우이도(牛耳島) 또는 우각도(牛角島)로서 귀와 뿔이 달린 쇠머리 또는 쇠뿔 모양의 섬을 가리킨다(②, ③). 그리고 짐게발이 꼬챙이처럼 생긴 게를 꽃게(花蟹·串蟹)라고 하듯이 꼬챙이처럼 뾰족한 섬을 꽃섬(花島) 또는 꽃섬·꽃섬(串島)으로 불렀다(④). ‘꽃’은 중세국어에서 ‘꽃’이었으므로 서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말에서 말뿔, 말잡자리처럼 아주 커다란 것에는 ‘말’을 붙이듯이 말섬(馬島)도 그저 큰 섬이 아니라 아주 큰 섬을 가리키는 말이다(⑤). 그리고 공사장에서 대못을 뽑는 노루발이나 재봉틀의 노루발은 앞굽이 양쪽으로 갈라진 노루발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인데, 노루섬(獐島)도 노루발섬(獐趾島)을 줄인 말로서, 섬의 모양이 ㄷ자 모양으로 갈라졌거나(⑥), ㄷ자 모양으로 갈라진 지형의 안쪽에 놓인 섬을 가리키는 말이다(⑦).⁷

7 육지측량부 지도 〈天台洞〉(1938)에는 평안북도 정주군의 獐趾島가 內獐島와 外獐島 사이에 있다.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모든 섬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해석에 부합된다. 나머지 모래섬(沙島)이나 큰섬(大島), 작은섬(小島)은 이름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노랑섬(黃島)과 락섬(茅島)의 의미는 잘 알 수 없다.

이 섬들을 이름의 의미 (표 2) 뜻으로 분류한 한국의 섬 이름 순위

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10위까지 제시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의 섬 이름 순위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큰 섬을 뜻하는 죽도(竹島), 마도(馬島), 대도(大島)의 합계와 작은 섬을 뜻하는 송도(松島), 작도(鵲島), 소도(小島)의 합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⁸

그렇다면 일본의 섬 이름은 어떤지 알아본다. 1987년에 일본 해상보안

	뜻	이름	-島	△-島	합계	▽-島	총계
1	큰 섬	竹島(대섬) 馬島(말섬) 大島(큰섬)	73 6 10	27 11 4	131	6 24 9	170
2	작은 섬	松島(솔섬) 鵲島(까치섬) 小島(작은섬)	62 19 15	15 0 0	110	0 2 0	112
3	돌섬	鷄島(닭섬) 石島(돌섬)	21 21	5 0	47	2 3	52
4	큰 섬에 근접한 섬	項島(목섬)	32	9	41	7	48
5	길쭉한 섬	長島(긴섬) 蛇島(뱀섬)	24 5	6 5	40	5 1	46
6	가운데가 잘룩한 섬	長鼓島(장구섬) 缶島	19 8	4 0	31	0 1	32
7	사이에 놓인 섬	鳥島(새섬) 間島	15 5	9 1	30	4 2	36
8	꼬챙이 모양 섬	花島(꽃섬) 串島(꽃섬)	12 2	11 2	27	12 6	45
9	밤들 모양 섬	栗島(밤섬)	17	3	20	1	21
10	나란히 놓인 섬	兄弟島(형제섬)	18	2	20	0	20

청은 일본의 섬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는 모두 6,852개의 섬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3년 2월에 일본 국토지리원(GSI)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 시 물 위에 있는 지역으로서 둘레가 100m 이상인 것'을 섬으로 규정하여 재조사한 바로는 14,125개라 한다. 현재 일본의 섬 이름들을 일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의 지도에 실린 이

8 육지측량부 지도의 △竹島의 △로는 大(6), 小(7), 上(4), 下(4), 内(2), 外, 中, 長(2), 甲, 金, 巽, 周, 鎮, 黃이 있고, △松島의 △로는 上(5), 下(4), 大(3), 小(3), 中, 北이 있다. △大島의 △로는 廣(2), 納, 小, 長, 項, 車, 江, 光, 老, 上老, 下老(2)가 있고, △小島는 없다.

름들을 자료로 하여 확인해 보았다.⁹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섬 이름에 위치를 나타내는 글자나 크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덧붙여진 예가 많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미카와오시마(三河大島)’처럼 지명이 붙거나, ‘시라제키타고지마(白瀬北小島)’처럼 지명과 방위가 함께 붙어 위치를 표시한 섬 이름이 상당수가 있다.

일본의 섬 이름도 순수 이름과 수식어가 붙은 이름의 현황을 조사하여 <표 3>을 작성하였다.¹⁰ <표 1>의 한국 섬 이름과 <표 3>의 일본 섬 이름에서 20위까지를 비교해 보면 동질적인 면도 있지만 이질적인 면도 작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 섬 이름에 큰 섬을 뜻하는 대섬(竹島), 말섬(馬島), 큰섬(大島)과 작은 섬을 뜻하는 솔섬(松島), 까치섬(鶻島), 작은섬(小島)이 131개와 110개로 압도적으로 많듯이, 일본 섬 이름에도 작은 섬을 뜻하는 고지마(小島)와 큰 섬을 뜻하는 오시마(大島)가 223개와

<표 3> 일본의 섬 이름 순위

	이름	-島	△-島	합계	▽-島	총계
1	小島(고지마)	91	132	223	61	284
2	弁天島[벤텐시(지)마]	87	3	90	0	90
3	大島(오시마)	75	8	83	5	88
4	黒島(구로시마)	68	13	81	6	87
5	松島(마쓰시마)	64	6	70	6	76
6	横島[요코시(지)마]	35	3	38	1	39
7	平島(히라시마)	32	6	38	1	39
8	中ノ島[나카노시마]	38	0	38	0	38
9	赤島(아카시마)	32	2	34	1	35
10	高島(다카시마)	28	5	33	4	37
11	沖ノ島[오키노시마]	32	0	32	0	32
12	前島[마에지마]	23	1	24	2	26
13	野島(노지마)	21	1	22	10	32
14	長島[나가시마]	22	0	22	3	25
15	鳥島(도리시마)	16	3	19	19	38
16	中島[나카지(시)마]	15	3	18	4	22
17	竹島[다케시마]	18	0	18	1	19
18	裸島[하다카시(지)마]	17	1	18	1	19
19	鍋島(나베시마)	15	1	16	2	18
20	靑島(아오시마)	15	1	16	0	16

* 이름의 ‘島’ 앞에 ‘ノ’ 또는 ‘ヶ’가 들어간 것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여 松ヶ島(1), 竹ヶ島(4), 竹ノ島(1), 高ノ島(3), 前ノ島(4)는 松島, 竹島, 高島, 前島에 넣지 않았고, 中島와 中ノ島, 沖島(6)와 沖ノ島도 별도로 다루었다. 다만 ‘의’와 ‘之’는 ‘ノ’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中の島(4)와 中之島(2)는 中ノ島에, 沖의島(6)와 沖之島(1)는 沖ノ島에 넣었다.

* 弁天島에는 辨天島(3), 弁財天島(3), 弁財島(1)가 포함되어 있다.

* 小島는 오시마로, 平島는 다이리지마로 부르기도 한다.

9 일본의 섬 현황은 일본 国土交通省 国土地理院 地理院地圖(<https://maps.gsi.go.jp/>)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지도도 모두 그곳에서 내려받은 것이다.

10 버딕가에 섬의 형태로 돌출되어 이름에 ‘島’가 붙은 것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섬에 포함하였다. 다만 끝에 ‘島’가 붙은 지명 중에는 내륙의 것들도 많은데 그것들은 제외하였다.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83개로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나라와 꽤 다르다. 우선 특히 90개로 오시마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벤텐시마(弁天島)라는 섬 이름은 매우 일본적이다. 변천(弁天)은 고대 인도에서 숭배되던 하천, 물, 풍요의 여신 사라스바티가 불교에 들어와 정착한 변재천(辨才天·辨財天)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신도(神道)와 불교의 습합(習合)에 의해 재물을 가져다 주고, 물에서의 안전을 지켜 주는 신으로 여겨서 바닷가나 섬 이곳저곳에 변재천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다.¹¹

그리고 20위까지의 섬 이름 가운데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오시마(大島), 고지마(小島)와 도

〈표 4-1〉 일본의 竹島와 松島

소재지	竹島	松島	
青森(아오모리)		平内町 中泊町 ▽立	1
岩手(이와테)		田野畑村 大槌町(2) 釜石市 大船渡市(2) 陸前高田市 ▽有 陸前高田市 ▽青 山田町 ▽沖	2 3-4 5 6-7
宮城(미야기)	南三陸町	A 氣仙沼市(2) 南三陸町(3) 石巻市	8-9 10-12 13
新潟(니가타)		佐渡市(2)	14-15
石川(이시카와)		能登町 七尾市	16 17
福井(후쿠이)		坂井市 △越前	18
愛知(아이치)	蒲郡市	B 蒲郡市 南知多町	19 20
兵庫(효고)		香美町 姫路市 姫路市 △小	21 22 23
和歌山(와카야마)		那智勝浦町 那智勝浦町 △紀ノ	24 25
鳥取(돗토리)		岩美町	26
島根(시마네)	知夫村 松江市	C D 隱岐の島町(6) 海士町 松江市(3) 安來市 大田市 浜田市	27-32 33 34-36 37 38 39
岡山(오카야마)		倉敷市	40
廣島(히로시마)		吳市 △大 吳市 △小	41 42
山口(아마구치)	長門市 山口市	E F 萩市(4) 長門市	43-46 47
香川(가가와)	高松市 ▽矢	東かがわ市 直島町	48 49
愛媛(에히메)		今治市(2) 愛南町(3)	50-51 52-54
高知(고치)		大月町	55

11 홍사성 主編, 1993, 『불교상식백과』, 불교시대사, 96~97쪽; Wikipedia 日本語版(<https://ja.wikipedia.org>).

리시마(鳥島), 나가시마(長島)까지 6개는 자주 출현하는 섬 이름으로 우리나라와 중복되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다르며 의미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竹島’, ‘松島’의 숫자도 우리나라에서는 100개, 77개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18개, 70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죽도와 송도가 일본에서는 17위, 5위로서 순위

가 훨씬 낮다.¹² 물론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섬이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논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열도의 죽도와 송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에서는 일본열도의 죽도와 송도를 찾아내어 그중에 순이름의 ‘-島’와 위치나 크기를 표시하는 글자를 덧붙인 ‘△-島’를 대상으로 죽도에는 알파벳을, 송도에는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알파벳과 번호를 붙인 죽도와 송도의 위치를 <그림 2>의 지도에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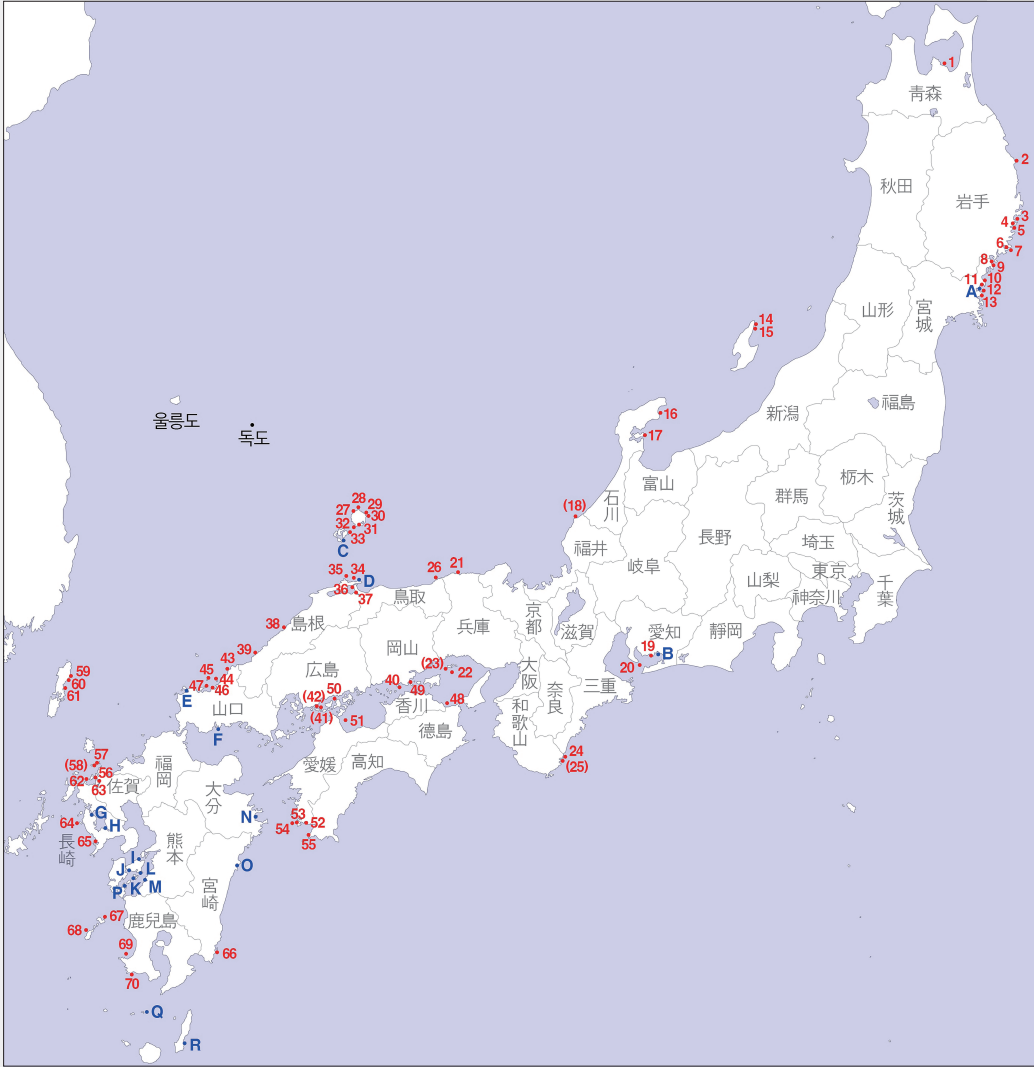
<표 4-2> 일본의 竹島와 松島

소재지	竹島		松島	
佐賀(사가)			唐津市(2) 唐津市 △小	56-57 58
長崎(나가사키)	西海市 諫早市	G H	對馬市(3) 松浦市(2) 西海市 長崎市 對馬市 ▽孤 新上五島町 ▽若	59-61 62-63 64 65
熊本(구마모토)	天草市(3) 上天草市 芦北町	I-K L M		
大分(오이타)	佐伯市	N		
宮崎(미야자키)	日向市	O	日南市	66
鹿兒島(가고시마)	長島町 三島村 南種子町	P Q R	薩摩川内市(2) 南さつま市(2)	67-68 69-70
합계	18, ▽1		64, △6, ▽6	

* 2개 이상인 경우는 () 안에 숫자를 표시하였다.
* 竹島の ‘▽矢’는 矢竹島, 松島の ‘△小’는 小松島이다.

12 물론 이 숫자는 육지측량부 지도에 이름이 표기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그림 2〉 일본의 竹島와 松島

* 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에는 竹島, 松島가 없어서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 竹島는 알파벳으로, 松島는 숫자로 표시하였고, (표 4)의 △松島 번호는 ()로 표시했다.

III. 다케시마(竹島)와 이소타케시마(磯竹島)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본 기록에서 울릉도의 별칭 '竹島'는 에도막부가 1625년에 두 상인 가문에게 발급한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에 처음 나타난다. 그러나 죽도라는 이름은 그보다 수십 년 전 1561년에 명(明)의 정약중(鄭若曾)이 지은 『일본도찬(日本圖纂)』에 이미 나와 있다.¹³ 정약중이 1550년대의 자료를 토대로 편찬한 그 책의 지도에는 호키주(伯岐州) 북쪽의 커다란 섬을 '竹島'라고 표시했고, 이를 다시 본문에서 호키(伯耆) 북쪽 30리에 '竹島'가 있다고 설명했다.¹⁴ 그리고 그 '竹島'는 『일본도찬』을 비롯하여 호종헌(胡宗憲)의 『주해도편(籌海圖編)』(1562),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1621) 등에 '타계십마(他計什麼, 他計什麼)', '타계즙마(他計汁麻)' 등으로도 표기되었는데, 그것은 '竹島'의 일본음 '다케시마'를 한자로 옮긴 것임이 분명하다.¹⁵ 이로써 16세기 중엽에는 일본에서 이미 '竹島'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중국인들이 일본의 정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부르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한자로 옮긴 것일 뿐,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후 1587년과 159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 고지도에 '竹島'가 이소타케시마, 즉 기죽도(磯竹島)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의죽도(磯竹島)라는 이름으로도 보인다.¹⁶

기죽도와 의죽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에도 있었다. 『속중실록』에는 1614년(광해군 6)에 쓰시마번에서 의죽도를 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동래

13 中村榮孝, 1969, 「竹島と鬱陵島」, 『日鮮關係史の研究』(下), 東京: 吉川弘文館, 451쪽.

14 『鄭開陽雜著』 권4, 「日本圖纂」 日本紀略.

15 中村榮孝, 1969, 앞의 글, 451쪽;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46~52쪽.

16 아키오카 다케지로, 2013, 「동해(일본해) 서남의 송도(松島)와 죽도(竹島)」, 『일본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학적 연원』, 지성인, 215쪽(秋岡武次郎, 1950, 「日本海西南の松島と竹島」, 『社會地理』 27); 中村榮孝, 1969, 위의 글, 451쪽.

부에 요청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¹⁷ 같은 해에 이수광(李睟光)이 완성한 『지봉유설(芝峰類說)』에도 왜인들이 울릉도를 기죽도 또는 의죽도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⁸

그런데 이소타케시마(磯竹島·磯竹島)란 무슨 뜻의 이름일까? ‘磯’와 ‘磯’는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글자 모양도 비슷하고, 뜻도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를 모두 ‘이소’로 읽고 통용했다. 그리고 대체로 기죽도를 해안에 돌이 많은 섬으로 해석해 왔으며, 때로는 해안에 대나무가 자라는 섬으로 이해하기도 했다.¹⁹ 그러나 ‘磯竹島’라는 이름은 다른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1013)에서는 ‘磯’를 석암(石巖)이라 하였는데,²⁰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암(巖)을 안(岸)이라 하였다.²¹ 한편 단옥재(段玉裁)의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서는 ‘巖’을 애(厓)라 하면서 ‘磯(磯)’가 ‘石巖’, ‘石厓’를 가리킨다 하였다. 암(巖), 안(岸), 애(厓)는 모두 비탈, 언덕, 낭떠러지를 표현하는 ‘邑(阝)’이 들어 있는 글자이다.²² 결국 ‘磯’는 돌로 이루어진 비탈, 절벽을 뜻한다.

그리고 『설문해자』에서는 ‘磯’를 ‘물이 부딪치는 커다란 돌’로 풀이하고 있는데,²³ 그것은 모래나 작은 자갈이 평평하게 깔려 있어 물이 밀려들어 오는 바닷가가 아니라, 바위 비탈 또는 절벽이 형성되어 있거나 거대한 암석들이 놓여 있어 물이 밀려들어 오지 못하고 거세게 부딪치는 바닷가를 표현한 것이다. 예컨대 해식애(海蝕崖)가 대표적인 ‘磯’이며, 울퉁불퉁한 거대

17 『속중실록』 권26, 숙종 20년 2월 23일 신묘.

18 『芝峰類說』 권2, 地理部 島. “近聞倭奴占據磯竹島 或謂磯竹 卽蔚陵島也.”

19 정영미, 2015, 앞의 책, 26쪽; 유미림, 2016, 「이소타케시마 어원에 관한 일고(一考)」, 『영토해양연구』 12, 46~47쪽.

20 『大廣益會玉篇』 권22, 石部351【磯】 嶽峯 崎磯 石巖.

21 『說文解字』 권17, 9篇下 山部【巖】 岸也.

22 『說文解字注』 권17, 9篇下 石部【磯】 石巖也, 巖 厓也, 石巖 石厓也, 玉篇作磯; 山部【巖】 厓也 各本作岸也 今依太平御覽所引正 厂部曰 厓者 山邊也 厓亦謂之巖 故厂下云.

23 『說文解字』 권17, 9篇下 石部【磯】 大石激水也.

한 바위가 놓인 해안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험한 바위나 돌이 삐죽삐죽 내밀어 있는 험한 곳을 우리말로는 ‘너설’, 또는 ‘바위너설’이라 하는데 이 또한 ‘磯’에 합당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물가를 표현하는 한자는 빈(濱)이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의 빈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빈(沙濱)이나 자갈로 이루어진 역빈(礫濱)을 말하고, 그와 달리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이나 용암이 솟구쳐 비탈이나 절벽을 형성한 화산해안은 별도로 기(磯) 또는 의(磯)라 하며 일본어로는 ‘이소’라 부른다.²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磯竹島’ 또는 ‘磯竹島’라는 명칭은 화산 활동으로 해저에서 분출된 용암이 형성한 울릉도에 적합하다. 하지만 정작 일본열도에는 이소타케시마(磯竹島·磯竹島)라는 이름의 섬이 없다.

일본에서는 울릉도의 이름으로 기죽도와 죽도라는 이름이 공존해 있던 시기가 있었고, 후에는 죽도라는 이름만 남았으며 그것이 현재는 영뚱하게 독도의 이름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어떠했을까?

기죽도와 죽도라는 이름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물론 기죽도와 죽도가 처음부터 동시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은 대체로 ‘磯竹島’, ‘磯竹島’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 약칭으로 ‘竹島’라는 이름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 왔다.²⁵ 하지만 그런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논리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 연도로만 보더라도 현재 남은 자료로는 16세기 중엽에 이미 죽도가 있었고, 기죽도는 16세기 말의 자료에 보인다.

과거에 울릉도를 오갔던 일본인들은 대체로 산인지방(山陰地方) 사람들이었다. 그곳 시마네현(島根縣)에는 죽도가 둘이 있다(〈그림 2〉의 C와 D). 그 두 섬은 〈그림 3〉의 항공사진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해안선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죽도라고 불러도 무방한 섬들이다. 그런데 〈그림 3〉의 죽도C는 동

24 石川縣教育センター, 1996, 『石川の自然』 20, 2쪽.

25 内藤正中, 2000, 「竹島渡海免許をめぐる問題」,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東京: 多賀出版, 51~52쪽; 유미림, 2016, 앞의 글; 정영미, 2015, 앞의 책.

서 방향으로 160m 정도이고, 죽도D도 300m 정도로 아주 작은 섬이다. 이에 비하면 울릉도는 동서 방향으로 11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으로 시마네현의 두 죽도와는 너무도 다른 섬이다. 게다가 울릉도는 오키 제도 도고지마에서도 240km가 넘는 아득한 거리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 섬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울릉도 '竹島'를 일본열도의 '竹島'와 이름으로도 구분하여 '磯竹島·磯竹島'라는 별칭으로도 부르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그림 3〉 시마네현의 竹島
출처: Google Earth.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에서 '竹島'를 속칭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고도 한다고 했던 것도, 본래 이름은 죽도인데 항간에 이소타케시마(磯竹島·磯竹島)라는 별칭으로 불렀다는 사정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울릉도의 '竹島'라는 이름은 '磯竹島'의 약칭이 아니다. 죽도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일본열도의 죽도와 구분하기 위해 기죽도라는 별칭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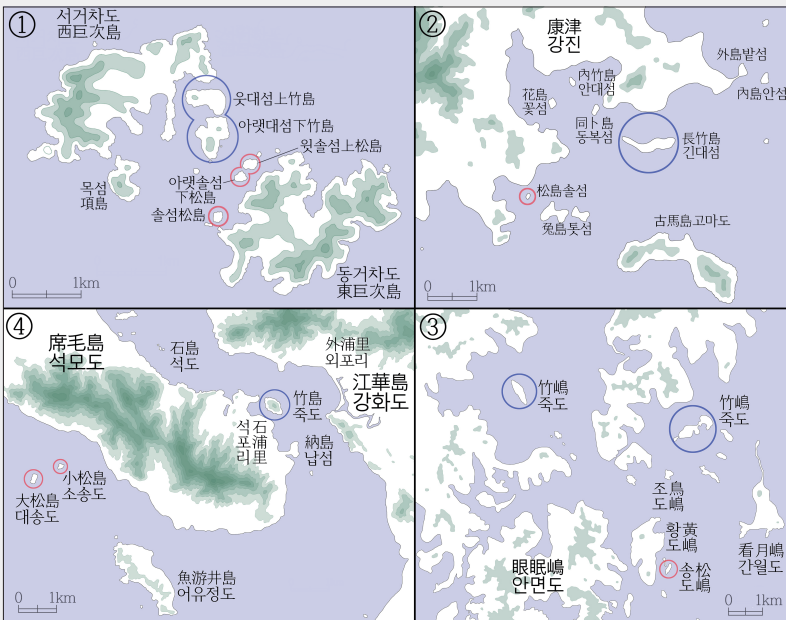
IV. '竹島'와 '松島'의 크기

우리나라의 대섬(竹島)은 대개 주변의 섬들보다 크고 솔섬(松島)은 작다. 물론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개중에는 큰 송도나 작은 죽도도 있다. 그리고 그

26 田保橋潔, 1931, 「鬱陵島, 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3, 2쪽.

경우에는 대나무나 소나무가 자라는 섬이라서 죽도, 송도라고 이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말에서 유래된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죽도는 크고 송도는 작다.

그리고 큰 죽도와 작은 송도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짝을 이룬 경우들도 발견된다. <그림 4>의 ①에 보이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사이에 있는 큰 죽도 둘과 작은 송도 둘은 불과 400m의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그밖에 해남군 북일면의 기다랗고 커다란 장죽도(長竹島)와 자그만 송도는 직선거리로 2.2km 거리에 놓여 있고②, 서산시 부석면의 죽도와 태안군 안면읍의 송도는 3.6km 거리에 있다. 죽도와 송도는 모두 10리 이내에 서로 보이는 자리에 있다③. 그리고 석모도 남부에 동서로 놓여 있는 죽도와 소송도(小松島)는 5.5km 거리에 있어 서로 약간 멀기도 하고



<그림 4> 한국의 큰 섬 죽도와 작은 섬 송도의 대비(등고선간격 40m)
출처: ① 전남 진도군 조도면: 《居次群島》(1918), ② 전남 해남군 북일면: 《梨津》(1918), ③ 충남 서산시·태안군: 《安眠島北部》(1919)
④ 인천 강화군 삼산면: 《江華》(1936)·《溫水里》(1917).

서로 보이지 않는 지점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변에 자잘한 섬들이 거의 없어 죽도와 송도가 짝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④).

이제 일본열도에서도 죽도는 크고 송도는 작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정리해 둘 것이 있다. 다케가시마(竹ヶ島), 다케노시마(竹ノ島), 마쓰가시마(松ヶ島)와 아울러 마쓰시마(松島)라는 이름이 붙은 군도에 대해서이다.

일본에는 현재 다케시마(竹島) 외에 다케가시마(竹ヶ島)라는 이름을 지닌 섬이 에히메현(愛媛縣)에 둘, 도쿠시마현(徳島縣)과 오이타현(大分縣)에 각각 하나로 모두 4개가 있으며, 가고시마현(鹿兒島縣)에는 다케노시마(竹ノ島)가 하나 있다. 그리고 마쓰시마(松島) 외에 '마쓰가시마(松ヶ島)'라는 이름을 지닌 섬이 미야기현(宮城縣)에 하나 있다. 이들 다케가시마, 다케노시마, 마쓰가시마는 '대나무의 섬', '소나무의 섬'을 뜻하는 이름으로서 섬의 크기와는 무관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²⁷

그리고 해안선 가까이 늘어선 자잘한 섬들을 '松島'라는 이름으로 일괄하여 부르기도 한다. 미야기현 마쓰시마만(松島灣)에 260여 개의 작은 섬들이 있어 이를 리쿠젠마쓰시마(陸前松島)라 하고, 구마모토현(熊本縣)의 오야노시마(大矢野島)와 아마쿠사카미시마(天草上島) 사이에 있는 대소 20여 개 섬을 총칭하여 아마쿠사마쓰시마(天草松島)라 부른다. 이 군도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섬이 여럿이 있어서 이를 모두 뭉뚱그려 '松島'라고 부른 것이다. 이들은 개별적인 섬이 아니고 이름도 소나무가 자라는 섬이라는 뜻으로 붙인 것이므로 이들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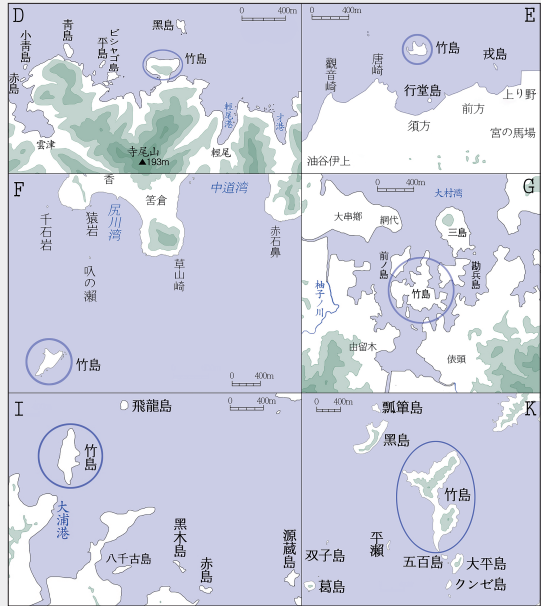
그런 다음 죽도 18개를 살펴보면 <그림 5>에 보이듯이 죽도의 크기는 다양하다. 가고시마현의 죽도Q는 예외적으로 너무도 크다. 그러나 나머지 죽도들은 크기가 각각각색이어서 죽도를 큰 섬이라 부르기 어렵다. 하지만 죽

27 竹ヶ島 넷 가운데 둘은 비교적 크고 둘은 비교적 작다. 가고시마현의 竹ノ島와 미야기현의 松ヶ島는 주변 섬들보다 크거나 작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림 5〉 일본 죽도의 모양과 크기(등고선간격 20m)

* Q는 공간이 좁아서 축척을 달리하였다.
출처: 이후 일본지도는 모두 國土交通省 國土地理院 地圖 (<https://maps.gsi.go.jp/>)를 토대로 그린 것이다. 인공적인 방파제는 그리지 않았다.



〈그림 6〉 대형 죽도 6개(등고선간격 40m)

* D: 시마네현, E·F: 아이무치현, G: 나가사키현, I·K: 구마모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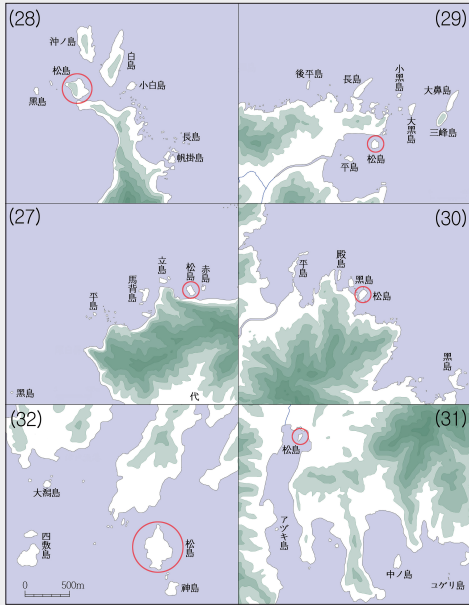
도를 큰 섬이라 할 수 있는지는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주변 섬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완벽하게 분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죽도 18개 중에 주변 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섬으로는 〈그림 6〉의 D, E, F, G, I, K 6개와 Q를 들 수 있고, 크기를 말하기 어려운 중간 크기의 섬으로는 B, L, M, O, P, R 6개(〈그림 7〉)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섬으로는 A, C, H, J, N 5개(〈그림 8〉)가 있다. 죽도 전체에서 주위 섬들에 비해 큰 섬이 숫자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결과로는 죽도를 큰 섬이라 말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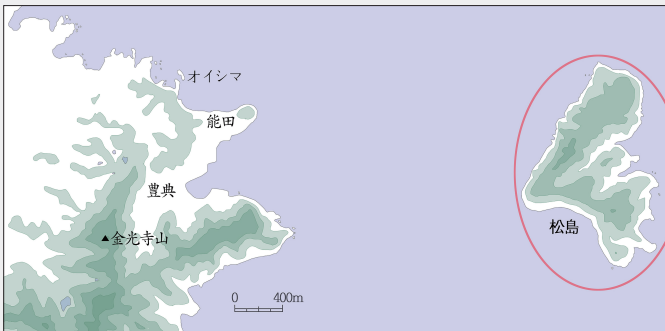
다음은 송도의 경우이다. 〈표 3〉에 보이듯이 죽도(竹島)는 18개에 불과하지만 송도(松島)는 70개에 이른다. 이 글에서 70개를 모두 확인해 보기는 어

섬에 빙 둘러 6개가 있고 도젠(島前)의 나카노시마(中ノ島) 동쪽으로 1개가 있다(그림 9)).

도고의 송도들을 보면 6개 가운데 (32)는 매우 크고, (27~30)도 주변 섬들에 비해 작은 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직 (31)만이 작은 섬이라고 할 만하다(그림 10)). 그리고 도젠의 (33)은 (32)보다도 몇 배 크다(그림 11)). 송도는 너무 많아서 이 글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지만 오키제도의 나머지 송도도 일반적으로 작은 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竹島’와 ‘松島’라는 이름은 큰 섬과 작은 섬의 의미로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림 10) 오키제도 도고(島後)의 송도(27~32)(등고선간격 40m)



(그림 11) 오키제도 도젠(島前)의 송도(33)(등고선간격 40m)

V. '竹島'와 '松島'의 조합 여부

태종 때 안무사(按撫使)로 울릉도에 파견되었던 김인우(金麟雨)는 1417년(태종 17)에 돌아와 보고하기를 “땅이 기름지고 대나무가 (굵기가) 기둥 같고, 쥐는 고양이만큼 크고, 복숭아씨는 뒷박만 하다”라고 보고하였고,²⁸ 이는 『동국여지승람』에도 그대로 옮겨졌다.²⁹ 그래서 일반적으로 울릉도의 죽도라는 별칭은 울릉도의 대나무 때문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러했고³⁰ 현재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도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³¹ 과연 대나무가 울릉도를 대표할 만한 식물인지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독도에는 자연환경으로 보아 예전부터 소나무가 없었을 터인데 독도를 '松島'라고 한 것을 보면, 울릉도에 붙인 '竹島'라는 이름도 대나무와 연결지어 이해해도 무방한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불일치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19년에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은 '松島'와 '竹島'라는 이름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해서가 아니라 '松竹'을 나란히 칭하여 상서롭게 하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³² 즉 '松'은 '竹'과 짝을 이루는 글자로서 송도라는 이름을 관념적인 이름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이해는 지금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³³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송·죽·매(松·竹·梅)가 세한삼우(歲寒三友)로

28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5일 임술; 『세종실록』 권153, 地理志 江原道 蔚珍縣.

29 『東國輿地勝覽』 권45, 江原道 蔚珍縣.

30 『속중실록』 권26, 속중 20년 2월 23일 신묘,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島中多産竹 亦有竹島之稱”; 『속중실록』 권27, 속중 20년 8월 14일 기유.

31 田保橋潔, 1931, 「鬱陵島, 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3, 2쪽.

32 中井猛之進, 1919, 「鬱陵島植物調査書」(田保橋潔, 1931, 「鬱陵島の名稱に就て」, 『靑丘學叢』 4, 106쪽에서 재인용).

33 신용하, 1998, 「독도·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 『한국학보』 91·92합, 33쪽.

언급되었고, 17세기 중국에서 문인화의 화제(畫題)로 등장한 사군자에는 매·란·국·죽(梅·蘭·菊·竹)이 있었다. 이 식물들 가운데 일본의 섬 이름에 등장하는 것으로는 ‘松島’, ‘竹島’뿐이다. 우메지마(梅島)가 넷, 란시마(蘭島)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섬이 아니라 육지의 지명으로 있을 뿐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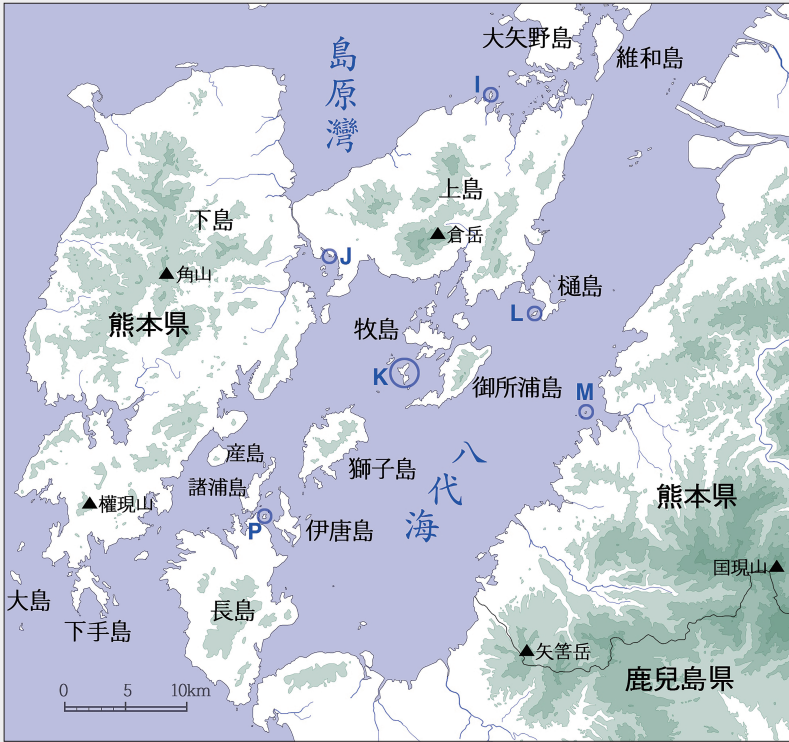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일본에서 죽도와 송도가 서로 대조되는, 또는 보완되는 나란한 이름으로 존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즉 죽도와 송도가 가까운 곳에 나란히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면서 존재한다면 비록 독도에 소나무가 없더라도 울릉도의 죽도와 짝이 되는 이름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죽도 근처에 송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본다.

일본의 ‘竹島’ 18개 가운데 A, B, C, D 넷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주변에는 직선거리로 20km 안에 ‘松島’가 없다. <그림 12>를 보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구마모토현에는 18개 죽도 중 다섯이나 있어 죽도가 가장 많고 근처에 가고시마현의 죽도까지 여섯이나 있다. 그런데 주변에는 송도가 하나도 없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87km나 떨어져 있어도 죽도와 송도로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해 망망대해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만이 있으므로 그 둘은 거리가 멀더라도 짝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열도 안의 죽도와 송도는 주변에 섬들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 죽도와 송도가 20km 안에도 놓여 있지 않다면 도저히 짝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20km 안에 있는 나머지 넷도 죽도와 송도가 짝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먼저 <그림 13>의 미야기현의 죽도와 송도를 보면, 직선거리로 죽도(A)에서 송도(12)는 4.5km, 송도(11)은 8km, 송도(10)은 12km 떨어져 있다. 섬들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면 그리 멀지 않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바닷가 근처에 있다면 이 정도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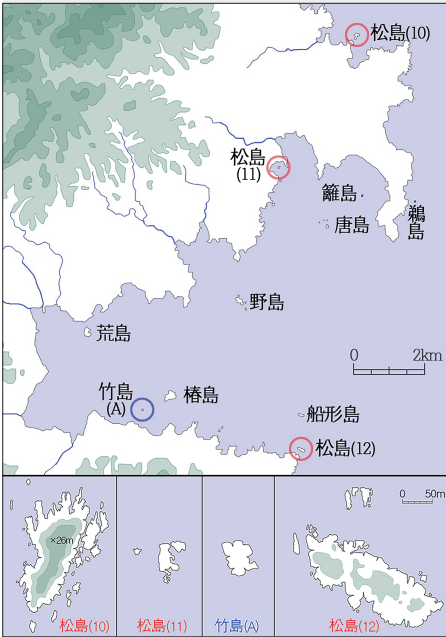
34 육지 지명 梅島는 도쿄도의 아다치구(足立區), 아마나시현의 난부초(南部町), 시즈오카현의 하마마쓰시(浜松市)와 가와네촌초(川根本町)에 있고, 蘭島는 홋카이도 오타루시(小樽市)에 하나가 있다. 와카야마현 아리다군(有田郡) 아라기시마(あらぎ島)의 ‘蘭島’ 표기는 정식 표기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菊島는 육지 지명으로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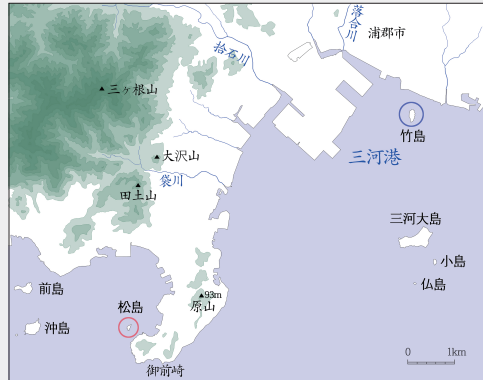
〈그림 12〉 구마모토현의 竹島(I~M)와 가고시마현의 竹島(P)(등고선간격 100m)

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죽도와 송도가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죽도 주변에는 쓰바키지마(樁島), 아라시마(荒島), 후네가타시마(船形島), 노지마(野島) 등 다른 이름을 지닌 섬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죽도와 송도가 짝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림 14〉의 아이치현의 죽도(B)도 마찬가지이다. 죽도와 송도(19)는 직선거리로 7.5km 떨어져 있으며 두 섬 사이에는 남쪽으로 뻗은 고편사키(御前崎)가 나와 있고 하라야마(原山)가 중간에 솟아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 있는 데다가 각자 주변에는 다른 섬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만약 짝을 이룬다면 ‘竹島’는 미카와오시마(三河大島), 고지마(小島), 호토케시마(仏島)와 짝을 이룰 것이고, ‘松島’는 마에지마(前島), 오키시마(沖島)와 짝을 이룰 것이다.



〈그림 13〉 미야기현의 竹島(A)와 松島(10·11·12)(등고선간격 40m, 아래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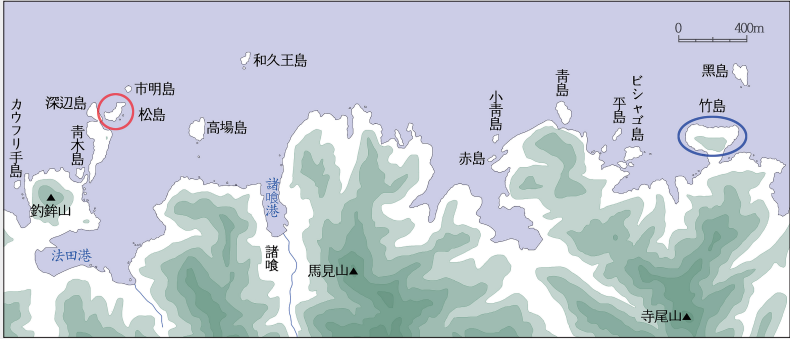
〈그림 14〉 아이치현의 竹島(B)와 松島(19)(등고선간격 40m)

‘竹島’와 ‘松島’가 짝을 이룰 수는 없다.

남은 것은 시마네현의 죽도와 송도이다. 시마네현에는 죽도가 둘이 있다. 하나는 시마네반도의 마쓰에시(松江市)에 있고, 다른 하나는 오키제도(隠岐諸島) 도젠(島前) 지부리지마(知夫里島)의 동쪽 끝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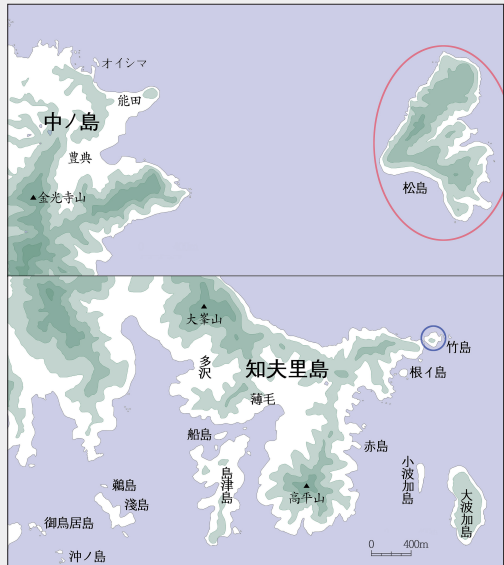
시마네반도에 좁고 낮은 목으로 연결되어 북쪽으로 돌출된 죽도(D)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반도와 단절된 섬이었던지는 모르겠으나 섬 모양으로 돌출되어 죽도라 부른다(그림 3)).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송도는 서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있다(그림 15)). 거리로만 본다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지도에도 보이듯이 두 섬 사이에는 아오시마(靑島), 아카지마(赤島), 다카바시마(高場島) 등 여러 섬이 있어 죽도와 송도가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본열도의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이름의 섬들



〈그림 15〉 시마네현의 竹島(D)와 松島(34)(등고선간격 40m)

한편 지부리시마 동쪽의 죽도(C)는 동서 길이가 160m의 작은 섬인데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송도(33)은 남북 길이가 1.6km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섬으로 죽도에서 직선거리로 13km 거리의 나카노시마(中ノ島) 동쪽에 있다(〈그림 9·16〉). 이 경우에도 죽도(C) 근처에는 지부리시마 주변으로 섬들이 여럿이 있는데 굳이 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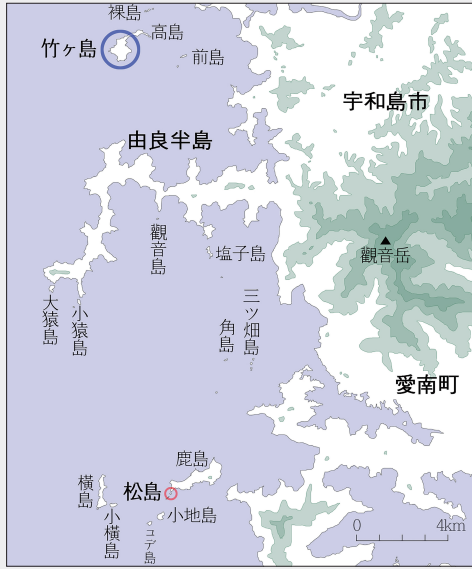


〈그림 16〉 시마네현 도젠의 竹島(C)와 松島(33)(등고선간격 40m)

떨어진 나카노시마 동쪽의 송도(33)과 어울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송도(33)에는 예전에 울창한 숲이 있었다 한다. 그러므로 죽도와 관념적으로 짝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소나무가 많아서 송도라 불렀을 것이다.

마쓰시마(松島)와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케시마(竹島)만이 아니라 '대

나무의 섬'이라는 이름의 다케가시마(竹ヶ島)나 다케노시마(竹ノ島)도 마찬가지로이다. 마쓰시마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에히메현 우와지마시(宇和島市)의 다케가시마가 있는데, 에히메현 아이난쵸(愛南町) 가시마(鹿島)의 남서쪽 끝에 있는 松島(54)와 직선거리로 19km나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사이에는 거대한 유라반도(由良半島)가 가로막혀 있어서 둘이 짝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그림 17)).



〈그림 17〉 에히메현의 다케가시마와 松島(54)(등고선간격 200m)

일본열도 안에서 '竹島'라는 이름의 섬 주변에 있는 어떤 섬에 '竹島'와 짝을 이루는 의미에서 '松島'라는 이름을 붙인 사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과거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대나무가 자라는 울릉도는 '竹島'라 부르고, 비록 소나무는 자라지 않지만 울릉도와 짝을 이루는 독도를 '松島'라고 불렀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짐작일 뿐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VI. 맺음말

우리나라의 죽도와 송도는, 어긋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큰 섬과 작은 섬을 가리킨다. 과거에 동해의 두 섬 울릉도와 독도는 큰 섬과 작은 섬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16세기 이래로 일본이 울릉도를 부르는

이름 '竹島'와 독도를 부르는 이름 '松島'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이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자나 일본어로는 '竹島'와 '松島'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도 '竹島'와 '松島'가 각각 18개, 70개로 꽤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 죽도와 송도는 우리나라처럼 큰 섬과 작은 섬으로 볼 수가 없다. 적은 예외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경향성이 보인다면 모르겠으나 크기에서 죽도와 송도의 일관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울릉도는 대나무가 자라서 '竹島'라고 부르고, 독도에는 소나무가 자라지 않지만 '松竹'을 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松島'라 불렀다는 견해가 있었다. 독도의 송도라는 별칭은 동해의 두 섬 가운데 하나가 죽도이므로 그에 짝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검증될 수 없는 억측일 뿐이다. 일본의 섬 이름을 조사해 보면 죽도와 송도가 짝을 이룬 사례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18개의 죽도 가운데 14개는 반경 20km 이내에 송도가 없고, 나머지 4개도 3~13km 거리에 송도가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그보다 가까이 다른 자갈한 섬들이 여럿이 있어서 죽도와 송도가 짝을 이루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물론 소나무가 자라지도 않는데 근처의 '竹島'와 짝을 맺게 하려고 '松島'라는 이름을 붙인 예나, 대나무가 자라지도 않는데 근처의 '松島'와 짝을 맺게 하려고 '竹島'라는 이름을 붙인 예도 없다.

그리고 울릉도를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磯竹島·磯竹島(이소타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후에 그 약칭으로 '竹島'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울릉도의 이름 '竹島'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일본인들이 일본열도의 '竹島'와 구분하기 위한 별칭, 속칭으로 '磯竹島·磯竹島'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이 과거에 울릉도와 죽도를 불렀던 이름 '竹島'와 '松島'는 일본어도, 한자의 뜻으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해의 '竹島'와 '松島'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표기했던 이름을 가져다 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섬(竹島)과 솔섬(松島)이라는 섬 이름이 지닌 뜻이 최근에야 밝혀졌듯이, 일본의 섬 이름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열도 안의 '竹島'와 '松島'라는 섬 이름은 한자의 뜻 그대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죽도는 대나무가 자라던 섬이고 송도는 소나무가 자라던 섬으로 해석하면 그만이다. 다만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 일본열도 안에 있는 88개의 죽도와 송도의 식생 상태를 모두 조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입증하려면 현시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고대에, 섬에 처음으로 죽도나 송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시점의 식생 상태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대나무섬, 소나무섬이라는 해석이 유일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東國輿地勝覽』, 『大廣益會玉篇』, 『說文解字』, 『說文解字注』, 『鄭開陽雜著』.

송회영 엮음, 2013, 『일본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학적 연원』, 서울: 지성인.

신용하, 1998, 「독도·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 『한국학보』 91·92호.

유미림, 2016, 「이소타케시마 어원에 관한 일고(一考)」, 『영도해양연구』 12.

정연식, 2019, 「울릉도, 독도의 옛 이름 대섬[竹島], 솔섬[松島]의 뜻」, 『역사학보』 241.

_____, 2023,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우리말 이름들』, 서울: 주류성.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광주: 한국학술정보.

홍사성 主編, 1993, 『불교상식백과』, 서울: 불교시대사.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東京: 多賀出版.

石川縣教育センター, 1996, 『石川の自然』 20.

田保橋潔, 1931, 「鬱陵島, その發見と領有」, 『青丘學叢』 3.

_____, 1931, 「鬱陵島の名稱に就て」, 『青丘學叢』 4.

中井猛之進, 1919, 『鬱陵島植物調査書』.

中村榮孝, 1969, 「竹島と鬱陵島」, 『日鮮關係史の研究』(下), 東京: 吉川弘文館.

秋岡武次郎, 1950, 「日本海西南の松島と竹島」, 『社會地理』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https://www.kiost.ac.kr>).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

일본 國土交通省 國土地理院地圖(<https://maps.gsi.go.jp>).

Wikipedia 日本語版(<https://ja.wikipedia.org>).

국문초록

16, 17세기에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竹島'로, 독도를 '松島'로 불렀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울릉도는 대나무가 자라는 섬이므로 죽도라 불렀고, 독도에는 소나무가 없으나 '松竹'을 짝을 이루는 상서로운 말로 여겨 독도를 송도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竹島'와 '松島'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섬 이름 대섬, 솔섬의 한자 표기였으며 그것은 큰 섬, 작은 섬이라는 뜻의 우리말 이름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에서도 큰 섬을 죽도라 하고 작은 섬을 송도라 했다거나, 죽도 주변에 송도라는 이름의 섬이 짝을 이룬 사례들이 보인다면 죽도, 송도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일본열도에 있는 18개의 '竹島'와 70개의 '松島'를 조사해 보면 죽도가 크고 송도가 작은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죽도 주변 반경 20km 이내에 송도가 있는 경우는 4개밖에 없으며 그것들도 죽도와 송도라는 이름이 서로 대비되어 명명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일본인들이 죽도와 송도를 짝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열도의 '竹島, 松島'는 대나무, 소나무와 연관된 이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울릉도, 독도의 '竹島, 松島'라는 이름은 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기원을 소급해 보면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볼 수 없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竹島, 松島, 磯竹島

ABSTRACT

The Island Names, “Takeshima” and “Matsushima,” in the Japanese Archipelago

Chung, Yeon Sik

(Honorary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Japan referred to Ulleungdo as Takeshima(竹島), and Dokdo as Matsushima(松島). The general understanding is that Ulleungdo was called Takeshima as the island was quite abundant in bamboo. Dokdo, on the other hand, was called Matsushima, despite the island's lack of pine trees, while the Chinese characters '松' and '竹' are deemed auspicious when paired together.

However, it has recently been argued that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 islands' names, “竹島(Jukdo)” and “松島(Songdo),” were read as Daeseom and Solseom, which translate to “big island” and “small island” in old Korean. These were the most common island names in Korea.

For any reason, if the Japanese also referred to big islands as Takeshima and small islands as Matsushima, or if there was any case where an island named Matsushima existed around Takeshima in the Japanese Archipelago, the argument that it was Koreans who named the islands “Jukdo” and “Songdo” is weak.

The Japanese Archipelago has 18 islands named Takeshima(竹島) and 70 islands named Matsushima(松島), but they do not show any tendency of Takeshima being bigger islands with Matsushima being smaller islands. In addition, there are only four Matsushima islands within a radius of 20 km around 18 Takeshima islands, and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pairs of Takeshima and Matsushima. Therefore, Takeshima or Matsushima in the Japanese Archipelago, is thought to have been named in connection with bamboo and pine trees as per their meanings in Chinese characters. If so, it is not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names, “竹島” and “松島”, were given by the Japanese.

Keywords

Ulleungdo(鬱陵島), Dokdo(獨島), Takeshima(竹島), Matsushima(松島), Isotakeshima(磯竹島)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역사학계의 14~15세기 압록강· 두만강 유역 인식

박정민 전북대학교 부교수

- I. 머리말
- II. 『중조변계사』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적 시각
- III 『고대 중조 종변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의 동북공정 관점
- IV. 후속세대의 확대 재생산과 압록강·두만강 변경 인식
- V. 맺음말

1. 머리말

2002년에 시작되어 2007년에 공식적으로 완료된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 학계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초기에는 고구려와 발해 등 한국 고대사에 집중되어 해당 분야의 연구가 크게 진작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전신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며 많은 논리와 학술적 저변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7년에 동북공정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중국에서 관련 연구가 하루아침에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중국에서는 연계 사업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포스트(Post) 동북공정’이라 부른다.¹

2007년 이후 연구를 통하여 동북공정의 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동북공정 초기의 주장을 보완·심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둘째, 연구자의 지역적 외연이 넓어지고, 신진 연구자가 증가하였다. 셋째, 자료집성과 번역 사업으로 연구 기반이 확장되었다. 넷째, 동북 지역 역사에 대한 대중서도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누적되며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한 동북 3성에 대한 연구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중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²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고려와 조선시대 관련 연구 성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중심으로 한중관계사를 해석하여 조공체제와 종번질서(宗藩秩序)로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³ 이러한 인식에는 필연적으로 변경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다오슈런(刁書仁)과 왕충스(王崇時)가 집필한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번계사 연

* 논문 투고일: 2024.4.8, 심사 완료일: 2024.6.2, 게재 확정일: 2024.6.3.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인(NAHF-2023-기획연구-10).

1 윤희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2 김현숙,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 - 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 16쪽.

3 김현숙, 2022, 위의 글, 19쪽.

구(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北京大學出版社, 2021)는 위의 경향을 잘 보여 주는 최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⁴

이 책의 후기에서 밝힌 것처럼 왕충스가 선진(先秦)부터 요·금·원까지 담당하고, 다오슈런은 명·청을 집필하였다. 하지만 최종 출판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출간이 미루어졌다. 다오슈런은 계속 관련 연구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고, 왕충스가 담당할 부분도 수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출간된 책은 다오슈런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

다오슈런은 동베이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 역사학과 교수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센터 동북공작소 상무부역장 등을 역임하였고, 동북공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장백산문화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장백총서(長白叢書)』의 편집장을 지냈다. 그리고 동북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중조(中朝)관계·강계(疆界) 등 연구 성과를 이룬 명·청대 한중관계 연구의 대표적 학자이다.⁶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다오슈런이 집필한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는 동북공정의 핵심논지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⁷ 특히, 중국과 조선의 변경사 연구는 최근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까지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중요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오슈런이 주장하는 구체적 영토관이 무엇인지, 그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선과 중국의 영토와 관련된 연구는 백두산 정계비 문제 및

4 刁書仁, 2021, 『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5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손성욱의 논문에도 다루고 있다. 2022, 『최근 중국학계의 전근대 종번과 변강 인식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78, 92~93쪽. 이 글에서는 영토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다.

6 東北師範大學 歷史文化學院 홈페이지 참조, <https://www.x-mol.com/university/faculty/237456> (검색일: 2023.7.2).

7 손성욱, 2022, 앞의 글, 95~96쪽; 劉陽, 2022, 『《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評介』, 『中國史研究動態』 22-1.

여기에서 파생된 을유·정해감계, 간도 영유권 등에 집중되었고,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였다.⁸ 위의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조선 전기 소위 4군 6진 개척의 결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 학자들은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학자들은 조선이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이 지역으로의 확장을 당연한 사명으로 여겼고, 영토 확장 과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⁹

반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만주와 조선의 국경을 큰 의미가 없는 ‘무소속의 분쟁지’라고 보여 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야 일제는 조선을 넘어 만주까지 지배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는 1923년과 1924년에 「조선폐사군고(朝鮮廢四郡考)」라는 논문을 3편에 걸쳐 발표하였다.¹⁰ 여기에서 그는 4군의 폐지가 조선의 영토 방기이며 그 결과 여진인이 살았던 장소였음을 강조하였다.¹¹

중국 학자(이하 중국 역사학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한다. 또한, 요·금·원을 중국의 국가로 인식하며 이들이 지배했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은 당연히 그들의 영토에 속한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명 초에 만주 및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였던 여진인이 중국의 위소(衛所)에 속하므로 명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조선은 4군 6진을 개척하였고, 이를 계기로 압록강과 두만강

8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형종이 작성한 ‘한중 국경문제의 기원과 논점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20, 「문헌 연구와 실제 답사를 결합한 한·중 국경 문제의 재검토—이화자,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 해안, 2019—, 『동양사학연구』 151, 226~233쪽.

9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인영, 1954, 『한국만주관계사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송병기, 1973, 『東北·西北界의 收復』, 『한국사』 9; 방동인·차용걸, 1994, 「4군 6진의 개척」, 『한국사』 22.

10 瀨野馬熊, 1923·1924, 「朝鮮廢四郡考」上·中·下, 『東洋學報』 13-1, 13-3, 13-4.

11 이와 관련된 논의 과정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정민, 2022, 「세종대 4군 개척의 담론 다시 생각하기」, 『역사비평』 139.

을 경계로 하는 영토를 확정하였다. 하지만 중국 학계는 이 일대의 영토를 양보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동북공정과 맞물리며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젊은 연구자까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심화되고 있다. 이 분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한 리우양(劉陽)도 위와 같은 관점을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였지만 일부분에서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 학계(이하 중국 역사학계)의 조선 전기 압록강과 두만강 변경 인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논지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를 형성하여 확대·재생산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대 한중 간의 국경을 연구한 가장 전문적인 국경 연구서라는 평가를 받는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吉林人民出版社, 1993)¹²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다오슈런의 『고대 중조 중변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를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이후 세대 연구자들의 경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학계가 조선 전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중조변계사』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적 시각

1993년에 출간된 『중조변계사』의 주편(主編)인 양자오취안(楊昭全)은 1933년 생으로 지린성(吉林省) 사회과학원에서 근무하며 조선연구소 소장, 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중국과 조선의 국경사, 관계사, 한국독립운동사 등을 연구하였다.¹³ 이 책은 한국 연구의 제1세대 중국 대표 학자가 한중관계사를 국경사의 시각으로 통시대적으로 이해한 최초의 중국인 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이 책은 역대 한중 간의 국경사를 연구한 전문서적으로 중국의 한국 국경사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12 楊昭全 외, 1993, 『中朝邊界史』,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13 바이두백과(百度百科) 홈페이지 참조, https://baike.baidu.com/item/%E6%9D%A8%E6%98%AD%E5%85%A8/1810050?fr=ge_ala (검색일: 2023.7.2).

근간이다.¹⁴

여기에서는 『중조변계사』 가운데 4장 「원~청초 중조강계」의 2절 ‘명대 중조강계’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 책은 한반도 북부 지역은 원의 강역이었으나 공민왕과 우왕의 영토 확장으로 한반도 서북부와 동북부 대부분이 고려의 소속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금부터 원 이래 조선반도 동북부와 서북지역은 중국의 세력이었고, 중국의 소수 민족인 여진족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였다.¹⁵

양자오취안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요·금·원이 중국의 왕조였고, 한반도 동북부와 서북지역은 중국 왕조의 영토라는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그 영토에 거주하는 민족은 한반도의 고려·조선인이 아닌 ‘중국의 소수 민족 여진족’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고려·조선과 관련 없는 지역이 되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뿐만 아니라 백두산까지 명과 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¹⁶

양자오취안은 동북 3성을 포함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원을 대신한 명이 이 지역에 요동도사(遼東都司)와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를 설치하며 지배력을 강화했던 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이 여진족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명대 여진인을 건주여진(建州女眞), 해서여진(海西女眞), 야인여진(野人女眞)으로 나누었고, 이 중 조선과 가장 가까이에 거주한 건주여진의 거주 범위를 송화강 상류, 목단강 상류와 두만강 유역 남북 양안이라고 하였다. 명 중엽 이후 건주여진 가운데 일부분은 장백산(백두산) 이남 압록강 이북, 서쪽으로 혼하(渾河) 상류에 이르고, 서남으로 요동도사와 인접한 지역의 안으로 이동하였다고 서술하였다.¹⁷ 이처럼 양자

14 남의현은 「中朝邊界史」을 바탕으로 한중 국경문제를 분석하였고,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남의현, 2018, 「중국의 「中朝邊界史」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중조변계사』에 대한 비판과 14세기 이전 「鴨綠水[鴨綠江]」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 57) 양자오취안 이전에 한중 국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부터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15 楊昭全 외, 1993, 앞의 책, 132~133쪽.

16 윤유탉, 2019,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중국사연구』 119.

17 楊昭全 외, 1993, 앞의 책, 135쪽.

오취안은 두만강 남북 양안과 백두산의 남쪽까지 여진족이 거주한 곳이라고 본 것이다.

양자오취안이 두만강 남부 지역을 포함한 주요 근거는 1405년(영락 3, 태종 5)에 두만강 남안의 알목하(幹木河, 회령)에 거주하는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건주좌위를 개설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동맹가첩목아의 건주좌위는 1410년에 조선의 모련위 정벌 여파로 이듬해 이만주(李滿住)가 있는 봉주(鳳州)로 옮겼다. 이후 1423년(영락 21, 세종 5)에 동맹가첩목아가 부족민을 이끌고 두만강 남안의 알목하에 돌아왔다. 양자오취안은 이를 “명이 또다시 그 두만강 강역을 회복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1433년(선덕 8, 세종 15)에 동맹가첩목아가 양목답울(楊木答兀) 등에게 살해당하였고, 남은 세력은 1440년에 300여 호를 거느리고 소자하(蘇子河, 혼하상류) 일대로 이주하였다. 이에 양자오취안은 명의 건주좌위가 마침내 두만강 북안으로 이동하였고, 이때부터 명은 두만강 남안의 강역을 잃고 두만강은 비로소 명과 조선의 경계가 되었다고 보았다. 조선은 이를 기회로 신속히 두만강 남안에 6진으로 대표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였고, 회령 독산 연대부터 경원 훈융진까지 수백 리의 장성을 수축하면서 두만강 남안을 조선의 영토로 넣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두만강은 완전히 명과 조선의 경계가 되어 그 남쪽은 조선, 북쪽은 명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¹⁸

한편, 압록강 방면에 대해서는 금대부터 그 하구인 보주(의주)가 경계를 이루었지만, 그 이북 지역은 그렇지 않고 원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원 말에 고려가 원의 쇠퇴를 틈타 대규모 북진 정책을 통해 압록강 중류 지역의 창성, 벽동, 강계 등지에 성과 진을 수축하며 확장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행정기구와 사민 정책 등을 통해 이 구역을 자신의 판도에 넣었다고 하였다. 이후 4군의 설치로 압록강 유역에는 16개의 성과 25개의 작은 보를 설치하고, 대량의 백성이 유입되어 압록강이 명과 조선의 경계가

18 楊昭全 외, 1993, 위의 책, 137~138쪽.

되었다고 이해한 것이다.¹⁹

양자오취안의 이러한 논의 구조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먼저, 아직까지 노아간도사가 명대 내내 실재한 것인지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양(楊場)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논리로 요·금·원의 영토를 중국의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명이 원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으므로 노아간도사는 원의 영토를 지배하기 위한 진출이었으며 그 관할의 여진 위소는 명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²⁰ 이러한 주장은 양양이 주편한 『명대동북강역연구(明代東北疆域研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²¹

반면 남의현은 노아간도사를 요동도사에 부속된 임시적 초무기구로 보며 양자 간에 종속적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실상 노아간도사는 설치 이후 상설 기구가 되지 못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10여 차례 군사적 활동을 하는 임시 기구 역할로 축소된 것이다. 특히, 선덕 연간에 이르면 그 기능을 상실하며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 오히려 명의 위소를 개설받았던 여진인은 명과 조선에 조공하고 관직을 받으며 양속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요동도사 동부와 조선의 변경을 약탈하면서 세력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명은 요동변장을 축조하며 소극적 방어 정책으로 변화되었다.²²

한편, 여진 위소의 주장이 정기적으로 명에 조공하고, 관직과 상사(賞賜)를 받았으므로 명에 속한 지방 위소라고 한다. 명이 관할하는 지방 위소라면 여진인이 명에 조세나 공물 등을 내면 되지 굳이 명에 조공하고, 관직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진 위소는 명의 관원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여진의 추장을 그대로 임명하였으며, 관직을 세습하면서 독자성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명의 여진 위소 설치의 사실상 여진인에게 위소 관직을 수여해 주는 일종

19 楊昭全 외, 1993, 위의 책, 138~139쪽.

20 楊場, 1982,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 河南: 中州書畫社.

21 楊場 主編, 2008, 『明代東北疆域研究』,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22 남의현, 2006, 「15세기 明의 女眞地域 進出試圖와 女眞의 成長-奴兒干都司와 建州女眞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1.

의 수직(授職)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²³ 그렇다면 명으로부터 책봉이나 관직을 받은 모든 지역은 명의 영역 안에 속한다는 것이 되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여진이 위소 체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과연 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소수 민족이 거주한 지역을 명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양자오취안과 양양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근 중국의 장성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상충되는 양상도 보인다.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역대 왕조의 장성을 중화민족 전체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압록강 하구 단동의 ‘호산산성’을 명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명대에 축조한 요동변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조선과 역사적 경계를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한정하려는 내용과 모순을 이룬다.²⁴

둘째, 건주좌위 동맹가첩목아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두만강이 명과 조선의 영토가 되었다는 점도 설득력이 약하다.²⁵ 동맹가첩목아가 명으로부터 건주좌위를 개설받고 여러 차례 이주하는 과정이 잘 요약되어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과연 그가 건주좌위를 개설받았다고 해서 명의 소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맹가첩목아는 이미 그 이전부터 조선으로부터 경성 등처 만호 등의 관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조공을 바쳐 긴밀한 관계를

23 한성주, 2019, 「조선시대 접경공간의 시대적 변동양상 연구-압록강·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앙사학』 50.

24 우성민, 2022,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변화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78, 39~40쪽.

25 이러한 시각은 이후 형성된 두만강 유역 일대 영토에 대한 중국 학계의 일반적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王冬芳은 명대 중조 변경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이 한대부터 원 말인 15세기까지 1500여 년간 한반도 북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원래 고려 말에는 강원도 영흥에서 압록강 하류 정도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의 영토 확장으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영토가 확정되었고, 이곳에 거주하던 여진인을 조선에서 물리친 것이라고 보았다. 楊昭全의 논의처럼 王冬芳도 건주좌위의 설치와 영락제의 11차 여진인의 승인으로 영토를 빼앗긴 것이라며 그 자세한 과정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楊昭全과 楊鳴처럼 큰 이론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한 것은 아니고 그 개별 사례 분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7, 「關於明代中朝邊界形成的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3)

맺고 있었다. 물론 그가 명에 입조하는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고, 1410년의 여진 정벌 여파로 1411년에 이만주에게 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조선에 관하인을 보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²⁶

동맹가첩목아가 명과 조선의 관계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넘어 양자오취안의 핵심 주장도 검토할 만하다. 동맹가첩목아가 사망하고, 그의 세력이 소자하 일대로 이주했기 때문에 두만강 남안의 영토가 조선에 편입되었다는 논리 역시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 그가 사망했을 당시 아들 동창(童倉)과 동생 범찰(凡察) 등은 원래 거주지였던 알목하(회령)에서 남서쪽에 있는 보을하(유선)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²⁷

게다가 이들이 1440년에 300여 호를 이끌고 소자하로 이주하였을 때 동맹가첩목아의 아들인 어허리(於虛里) 등은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었다. 특히, 조선은 어허리의 아들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에게 특별히 인신(印信)을 수여하며 우대하였다. 여진인이 조선의 국왕에게 인신을 받은 것은 동맹가첩목아 이후 그가 유일한 것으로, 조선이 그를 대표적 추장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²⁸ 즉, 동소로가무를 비롯한 진주좌위의 상당수 인물들은 여전히 회령 일대에 남아 있었다.

이외에도 두만강 일대에서 동맹가첩목아와 비슷한 시기에 명에 입조하여 관직을 받았던 여진인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양자오취안의 논리라면 회령뿐만 아니라 두만강 남쪽의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지도 명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명과 조선에 양속하며 자신들의 생존을 최우선시 했고, 조선인과 여진인이 함께 거주하며 점차 조선의 ‘번리(藩籬)’ 혹은 ‘번호(藩胡)’라고 불리며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²⁹ 이러한 맥락을 본다

26 한성주, 2011, 『조선시대 수직여진인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7 박정민, 2017, 「한왕산성과 건주좌위 -조선의 6진 개척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76.

28 木村拓, 2021, 「朝鮮による女真人・倭人への授印政策」,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 東京: 汲古叢書, 120~122쪽.

29 한성주, 2018, 『조선시대 藩胡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면 단순히 동맹가침목아의 이주만으로 두만강 일대를 경계로 하는 선부를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셋째, 압록강 중류는 원의 옛 땅이었기 때문에 원을 계승한 명의 소유이지만, 조선에서 4군 설치로 경계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고려는 공양왕 대에 갑산까지 진출하였고, 늦어도 태종 초년에 압록강 상류 지역인 혜산, 여연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후일 자성이었던 지령괴는 이미 태종 대 여연의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⁰ 그렇다면 조선이 4군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대한 실효 지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중조변계사』에서 압록강 방면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고 논리가 빈약한 것은 동맹가침목아와 같은 사례조차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원래 원의 옛 땅이었으므로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선언적 의미 및 두만강 일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술일 뿐이라고 보인다.

Ⅲ. 『고대 중조 중번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의 동북공정 관점

여기에서는 『고대 중조 중번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 가운데 9장 「명조와 이씨조선 근세 강계의 기본 확립」을 중심으로 보겠다. 앞서 이 책을 분석한 손성욱과 리우양이 언급했듯이 다표슈런은 고대 중조 중번관계와 중조의 강계를 동북공정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다표슈런의 시각은 고대사부터 잘 드러나는데 그는 조선이 진국-삼한-신라와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의 언설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30 박정민, 2021, 「여말선초 압록강 중상류 영토의 재검토」, 『만주연구』 32.

(1) 명 조정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고구려와 후대의 고려를 혼동하였다. 고구려는 당시 漢唐 중앙 정권하의 동북 지방 소수 민족 정권으로 427년 환도성(지금의 지린성 지안)에서 한반도 평양으로 천도하였고, 668년에 멸망하였다. 고려는 한반도 신라인 왕건이 918년에 신라를 멸망시키고 건립한 조선의 봉건왕조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³¹ (밑줄은 필자)

(1)에서 보이듯이 다오슈런은 고구려를 한당(漢唐)의 지방 소수 민족 정권으로 바라보며 동북공정의 관점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또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라 신라인이었던 왕건이 건립한 것으로 신라 계승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역사 구조에 반박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는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 북부 지역이 중국의 소수 민족 정권이므로 모두 중국의 영토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인다.

다오슈런은 『중조변계사』보다 진일보한 방식으로 명대의 영토 의식을 표현하였다. 그는 홍무제때 철령위를 설치하려다 마찰을 빚은 이후 그 계획을 바꾸어 요동에 설립한 것부터 다루었다. 즉, “몇 주의 땅(문주·고주·화주·정주 등)이 고려의 말대로 하면 그 땅이 고려에 예속되어야 마땅하나 사리와 형세로써 말하건대 지난날에는 원에서 통치하였으니 지금 요동에 예속되어야 마땅하다”³²라는 사료를 인용하며 철령 이북의 땅이 요동의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홍무제의 계획대로 철령위를 설치했다면 명은 원의 옛 땅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홍무제는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다오슈런은 이 때문에 조선이 중국 강토를 차지하게 된

31 刁書仁, 2021, 앞의 책, 307쪽.

32 『明太祖實錄』卷190, 洪武 21年 4月 18日. “上諭禮部尚書李原名曰 數州之地 如高麗所言 似合隸之以理勢言之 舊既為元所統 今當屬於遼.”

구실을 준 것이라며 철령위 설치의 후퇴를 조선에게 영토를 잃게 된 하나의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 영락제(조선 태종) 대의 삼산(參散) 등 10처 여진 귀속 분쟁을 다루고 있다. 1404년(영락 2, 태종 4) 4월에 영락제는 왕가인(王可仁)을 사신으로 보내 삼산과 독로울(禿魯兀) 등 동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 10처 여진인을 초유하겠다고 통보하였다.³³ 이에 조선은 김침을 명에 보내 10처 여진은 오래전부터 조선의 호적에 편입되었다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영락제는 조선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³⁴

그러나 다오슈런은 여기에 포함되었던 함흥 이북이 발해와 요·금·원대에 계속해서 중국에 속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고려의 5도 양계가 모두 함흥 이남이었다면서 고려가 건국된 지 400년 이상 동안 함흥까지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예종 대 여진 정벌 과정에서 2년간만 함흥대도독부를 설립했고, 그 최북단은 길주로 두만강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다오슈런은 조선의 중종이 여러 대신들과 상의하면서 함경도가 원래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함경도가 고려에 속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조선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영락제가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소위 천하 공주관념(共主觀念)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명이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인식의 부재와 한족 외의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중국 변경 지구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락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는 ‘정난의 역’으로 황제권이 아직 공고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³⁵

33 『태종실록』 권7, 4년 4월 4일 갑술.

34 동북면 10처 여진인의 관할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의현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12, 「元未明初 朝鮮·明의 요동쟁탈전과 국경분쟁 고찰」, 『한일관계사학』 42.

35 刁書仁, 2021, 앞의 책, 314~315쪽.

두만강 일대 여진인에 대한 다오슈런의 인식은 『중조변계사』와 거의 유사하다. 그는 두만강 유역에 거주한 알타리와 올랑합, 올적합 등 여진인이 영락 초기에 명에 귀부해서 명 관할의 지방위소에 예속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여진 각 위소의 추장은 정기적으로 명에 조공하고, 명으로부터 관직과 상사(賞賜)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논리라면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 추장들은 모두 명 위소의 관원이 되는 것이다.

실상 건국 이전부터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조선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이 명에 입조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태종은 경원의 무역소를 폐지하였고,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여진인이 1406년에 경원 지역을 침입하였으며 점차 양자의 관계는 틀어진 것이다. 1410년에 혐진올적합(嫌眞兀狄哈) 김문내(金文乃)가 경원을 공격하여 병마사 한홍보가 살해당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태종은 이들을 정벌하였고, 모련위 유과이손(劉把兒遜)을 비롯한 8지휘와 수백 명에 달하는 여진인이 살해당하고, 가옥이 불태워졌다.

다오슈런은 이를 ‘두문혈안(豆門血案)’³⁶이라고 명명하고, 양자관계의 중요 변곡점으로 삼았다. 먼저, 조선이 마음대로 명의 관원인 이들을 응징한 것은 영락제로부터 문죄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선 역시 이 사건으로 외교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 여진인의 침입에 대응하여 군대를 보냈다고 설명하였고, 영락제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오슈런은 이 문제를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한 여진인이 명의 관원이자 그 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조선의 영토가 퇴축되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이후 여진인은 유과이손 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경원 일대를 자주 공격하였고, 조선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조선이 두만강 일대로 영

36 다오슈런은 조선의 일방적 학살에 주목하여 이 사건을 ‘두문혈안’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연구는 ‘두문사변’, ‘제1차 여진 정벌’ 등으로 기술하였다. 한편, ‘두문혈안’이라는 용어는 장야디에게도 이어졌다.

역을 확보한 근본적인 명분 중 하나는 이성계의 고조였던 이안사 부부의 무덤인 덕릉과 안릉이 두만강변인 공주(현 경흥) 일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용흥지지(龍興之地)’라며 이 지역 영토 확보의 당위성을 역설해 온 것이다.

여진인의 침입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태종은 덕릉과 안릉을 함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이듬해에는 경원진도 혁파하여 경성으로 철거하였다. 다오슈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두만강 일대 여진인이 조선에 강경하게 대응한 결과 두만강 일대의 영토 확장 의지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결국 두만강 일대 영토를 명조가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하며 원래 이 지역에 대한 연고권이 중국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1433년에 동맹가첩목아 등이 살해당한 후 세종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때 세종은 “알목하는 본래 우리나라의 경계 안이다”라고 하였는데, 다오슈런은 이를 “명백한 역사 사실의 왜곡이다”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알목하가 조선에 예속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전혀 논쟁할 사실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가 이 부분에 관심을 둔 이유는 알목하가 명의 관직을 받은 동맹가첩목아의 거주지로, 그의 논리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명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회령진 설치를 비롯한 6진 개척은 명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논지로 연결된다.

이후 다오슈런은 6진 개척의 과정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건치연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6진 개척 결과 중국과 조선의 동쪽 경계는 두만강 이남에서 북쪽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이를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두만강 이남에 살고 있는 여진인을 명의 관할이라고 보며 두만강 일대의 영토가 명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압록강 중상류 방면에 대해서도 다오슈런의 인식은 『중조변계사』와 거의 유사하다. 원말명초에 고려가 원의 쇠퇴를 기회로 한반도 서북부 압록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조선의 북진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여연, 자성, 무창, 우예가 압록강 남안에 위치하면서 조선은 각종 진보를 설치한 후 사민 정책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압록강 남안은 조선의 점유가 되고 압록강이 그 경계가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4군의 폐지를 언급하며 압록강 상류는 여전히 효과적인 관할권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다오슈런의 명과 조선의 영토 인식은 그 이전의 연구인 『중조변계사』를 근간으로 더 세밀한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사례들을 들고 있다.³⁷ 하지만 그가 기본적으로 동북공정의 입장을 가지고 영토관을 서술하고 있어 몇 가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들이 보인다. 또한, 한국 측 학자들이 민족주의 사관에 영향을 받아 “중국 여진족이 한반도 북부에 대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조선왕조 때의 북척 강토를 여진의 침입을 물리친 것으로 미화”³⁸했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논지와 어긋나는 사료 및 주장들은 사실의 왜곡으로 처리하였다. 그의 관점이 다른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사실관계의 오류, 자의적 해석, 연구 방법 등의 문제 등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이 알목하는 원래 조선의 경계 안에 있다고 한 것을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 부분이다. 다오슈런은 별다른 논증 없이 동맹가첩목아가 알목하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맹가첩목아의 오도리는 원래 현재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이란(依蘭)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원 말 혼란기에 화이아(火兒阿)·탁온(托溫)과 함께 남하하여 두만강 일대에 정착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길림과 돈화, 동녕 등 다양한 곳을 경유하

37 刁書仁의 주장을 잘 수용한 연구도 보인다. 孫春日과 李秀玉는 후술할 연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劉陽의 연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실시한 북방 개척과 사민 정책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刁書仁의 연구를 수용,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이 여진인의 활동 지역이었으나 조선에서 4군과 6진을 확장했던 과정을 나열하였고, 사민을 통해 여러 관방체계를 구축하며 강고한 영토를 구축했다고 보았다.(2018, 「朝鮮前期“北拓”政策與“徙民”圖們江、鴨綠江流域過程」,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1)

38 刁書仁, 2021, 앞의 책, 18쪽.

여 두만강 일대에 정착했다고 보고 있다.³⁹

동맹가첩목아가 두만강 일대에 들어온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회령조를 보면 두만강 일대 어느 곳에 있던 동맹가첩목아가 태종 때에 빈틈을 타고 들어와 거주하였다고 한다.⁴⁰ 이보다 앞선 1399년 1월에 정종은 길주도진무 신분을 보내 수주(愁州) 올랑합 만호(萬戶) 유괴아손과 오음회(吾音會) 오도리 만호 동맹가첩목아와 골간 울적함에게 술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⁴¹ 그렇다면 최소한 1399년 이전에 그의 세력이 알목하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 높다.

실제로 동맹가첩목아가 조선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에 우리들이 울적함(兀狄哈)과 서로 싸워서 가족(家屬)을 거느리고 떠돌아다니다가 본국(本國)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⁴² 또한, 동맹가첩목아가 알목하에 입거하기 전부터 이성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는 두만강 유역의 어딘가에 거주하면서 왜적을 방어한 공까지 있었다. 이러한 공로 등이 반영되어 조선은 그에게 경원(혹은 경성) 등처 관군 만호의 인신을 수여했었던 것이다.⁴³ 이를 종합하면 동맹가첩목아는 헤이룽장성 이란에서 두만강 일대에 이르렀고, 두만강 남안의 경원 혹은 경성의 지면에 거주하다가 태조 말년에 알목하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닐슨의 주장처럼 원래 알목하가 동맹가첩목아의 영역이었던 것처럼 볼 수 없다.

양자오취안이나 닐슨이 주장한 것처럼 1405년에 명에 입조하여 위소를 개설받았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면 그 이전에 동맹가첩목아 등이 조선의 관직을 받고, 조공을 바쳤던 점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

39 이와 관련된 세설은 다음 연구의 2장에 정리되어 있다. 박정민, 2016,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 - '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52

4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0, 함길도 회령도호부, 건치연혁, “本高句麗舊地 胡言鞞木河 一云吾音會 本朝太宗朝 鞞朵里童孟哥帖木兒乘虛入居.”

41 『정종실록』 권1, 1년 1월 19일 경인.

42 『태종실록』 권9, 5년 5월 16일 경술.

43 『태종실록』 권9, 5년 2월 23일 기축.

다. 조선은 동맹가침목아가 명에 입조하기 전부터 상만호,⁴⁴ 만호,⁴⁵ 상호군,⁴⁶ 등의 직함을 내렸다. 게다가 『태조실록』과 『용비어천가』 등에서 이성계가 잠저 시절부터 함께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렇다면 1405년 이전의 동맹가침목아는 조선의 관하이므로 그가 거주했던 지역은 당연히 조선의 영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만으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 논박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논지에 맞지 않으면 왜곡이라고 단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다오슈런은 1435년 7월에 세종이 함경도 도절제사에게 내린 내용을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2)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판회령부사 이징옥은 알목하에 거주하는 알타리 부(部)의 무리들이 조선의 군정(軍丁)에 의거하여 ①“번(番)을 나누어 읍성(邑城)을 수비하도록 하고”라며 조선의 준백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종 왕은 이 여진들을 ②“경내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 명조의 속민으로 조선과는 ③“본래부터 통속이 없는” 관계라고 여겨 ④“그들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아 훗날의 근심을 없도록 하는 것이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좋은 계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여진인을 조선 경내에 기거하는 명 조정의 속민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하여 ⑤“또 기미(羸靡)하고 무유(撫綏)하여 그들이 오면 후하게 대우해 주고, 가면 뒤쫓지 않을 뿐이니, 심복(心腹)으로 친근히 믿고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⁴⁷

(2)를 보면 판회령부사 이징옥이 알목하에 거주하는 알타리인에게 조선

44 『태조실록』 권8, 4년 윤9월 8일 기사.

45 『정종실록』 권1, 1년 1월 19일 경인.

46 『태종실록』 권7, 4년 3월 7일 무신.

47 刁書仁, 2021, 앞의 책, 340쪽.

의 백성처럼 동일한 군정을 나누려고 하자 세종은 이들이 명의 속민으로 조선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을 명의 속주민으로 간주한 태도를 가지고 조선의 백성으로 보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세종이 이들을 명의 백성으로 인정한 듯한 발언을 통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원문은 다오슈런이 이해한 바와 전혀 달랐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종실록』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卿)이 전일에 서울에 와서 친히 아뢰되, ‘판회령부사(判會寧府事) 이징옥이 회령부 부근에 거주하는 알타리 범찰(凡察) 등의 동류인(同類人)을 본국의 군정(軍丁)에 의거하여 ① 강제로 번(番)을 나누어 읍성(邑城)을 수비하도록 하고, 혹은 적이 침입한 소식이 있으면 불러 모아서 거느리고 변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예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무리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므로,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어서, 배반할 마음을 품어 믿기가 어려우며, ⑤ 또 기미(黠)하고 무유(撫綏)하여 그들이 오면 후하게 대우해 주고, 가면 뒤쫓지 않을 뿐이니, 심복(心腹)으로 친근히 믿고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다만 이 무리들은 본디 원한을 품은 적(敵)이 있으니, 만약 당을 지어 원수를 갚는다 핑계하고 와서 공격하는데, 혹은 잡아서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전일에 친근히 믿고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의리를 잃게 될 것이며, 만약 군사를 일으켜 구원한다면, 이것은 대신 그 화(禍)를 받아 틈이 생기고 원망이 엄청나게 될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 끝까지의 일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 관계되는 일이 가볍지 않은 것이다. 지금부터는 기미(黠)하고 무유(撫綏)하여 성실로써 대우하고 후하게 접대할 것이며, 그들을 거느리고 읍성을 수비하는 역사(役事)는 정파(停罷)시켜, ④ 그들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지 말아서, 뒷날의 근심을 없도록 하는 것이 실로 오랜 세

월 동안 좋은 계책이 될 것이다. 다만 이미 일찍이 그들을 믿고 일을 같이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폐지하여, 저들과 우리의 한계를 엄하게 한다면 반드시 의심을 낼까 염려되니, 절대로 이런 의사는 드러내지 말고 은근히 개유하되, ‘② 너희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의지해 살고 있으니, 국가에서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있다. 너희들은 스스로 나고 저질로 자라서 본래부터 ③ 통속(統屬)이 없기 때문에, 공역(公役)에 복무하며 애를 쓰는 노고는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가에서는 차마 너희들에게 공역에 복무하는 일을 맡길 수 없으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읍성을 수비하는 역사는 폐지하도록 하여 생업에 안정하게 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국가에서 너희들에게 대우하는 지극한 뜻을 알아서 안심하고 직업을 경영하여 영구히 끊임없이 살아가는 즐거움을 보전할 것이다.’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변경의 일은 먼 곳에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변경의 눈으로 직접 본 이해 문제의 진술을 기다려야만, 계책이 빈틈이 없어서 반드시 능히 성사(成事)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징옥과 더불어 위의 항목의 이해 문제로써 세밀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⁴⁸

(2)에서 다오슈런이 직접 인용한 부분을 (3)에서 밑줄을 그어 보았다. (3)은 세종이 회령에 거주하는 알타리들에게 군정을 부과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다. 필자가 우둔해서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세종이 여진인을 명의 속

48 『세종실록』 권69, 17년 7월 26일 을미. “傳旨咸吉道都節制使 卿前日到京親啓 判會寧府事李澄玉 將本府附近住居幹梁里 凡察同類人等 依本國軍丁 ①勒令分番 守禦邑城 或有聲息 徵聚率領待變 已曾成例. 我今思之 此輩非我族類 人面獸心 反側難信. ⑤且羈縻撫綏 來則厚待 去則不追 不可以爲腹心 親信共事也. 但此輩素有讎嫌之敵 若結黨類託 以復讎來攻 或執而與之 或坐視不救 則殊失前日親信撫綏之義. 若興兵救援 則是代受其禍 生靈構怨 實非細故 靜思其終 關係匪輕. 自今羈縻撫綏 待之以誠 接之以厚 停罷率領守禦之役 ④勿與親濟共事 以絕後患 實爲永世長策. 但慮已曾親信共事 而一朝無緣遽罷 以嚴彼我之分 則必生疑貳 慎勿露此意 惑勸開諭曰 ②爾等寄生境內 國家至極憐憫. 汝等自生自育 ③本無統屬 不知服役奔走之勞 今國家不忍加以服役之事 許罷率領守禦之役 俾安生業 汝等當知國家待汝至意 安心營業 永保生生之樂. 然邊事難以遠度 必待邊將目擊利害 然後可以算無遺策而必能集事 其與李澄玉將上項利害 熟議以啓.” (밑줄은 필자)

민이라고 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세종은 ②와 같이 이들을 조선의 안에 살고 있는 이민족으로 국가에서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 대우하고 있다.

다오슈런은 ②와 같이 경내에 기생하여 사는 명나라 속민으로 해석했는데, 삭제된 “국가에서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뒤의 문장을 합하면 “경내(境內)”는 ‘조선의 국경 안’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문장 어디에도 명의 속민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③의 “조선과는 본래부터 통속이 없는 관계”도 실상 앞뒤 문장을 따진다면 ‘여진인은 본래부터 일정한 통제 아래에 속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⑤도 실상은 명의 속민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는 ‘오면 어루만져 주고, 가면 잡지 않는다(來則撫之 去則不追)’는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3)은 세종이 범찰을 비롯한 알타리를 조선의 국경 안에 사는 이민족으로 인정하고, 원래부터 누군가의 통제 아래 살지 않는 이들을 조선의 통제 하에 두지 말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오슈런은 이 사료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뒤 단어를 잘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IV. 후속세대의 확대 재생산과 압록강·두만강 변경 인식

최근에도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 이 시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박사학위논문을 받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주목하고자 한다.⁴⁹ 먼저, 지난 2021년에 동베이사범대학에서 「동아봉공체제하 양강유역 전사연구(東亞封貢體制下兩江流域戰事研究)」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야디(姜雅迪)이다.⁵⁰ 그는 동아시아의 봉공체제를

49 cnki를 검색하였지만, 관련 연구는 많지 않아서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50 姜雅迪, 2021, 「東亞封貢體制下兩江流域戰事研究—以10至17世紀中葉女真向民族統一演進爲主

기반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벌어진 전쟁을 분석하여 10세기에서 17세기 중엽까지 여진족이 통일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장야디는 중국의 왕조인 요·금·원·명과 고려, 조선의 사이에서 여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살펴보기 위한 핵심 장소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선정하였다. 장야디의 지도교수는 다오슈런으로 이 논문에서 그의 학설을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그의 논문 2장에 해당하는 ‘명조 중전기 양강 유역의 전투와 여진 통일 추세’를 중심으로 보겠다. 장야디는 요·금·원·명 왕조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효과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고 보았다. 즉, 중국의 일반적 학설과 동일하게 15세기 중반 이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고대 중국의 역사적 영역 안에 있었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논리를 전개하기에 명 초의 상황이 매우 이질적이었다. 요·금·원대에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 이들의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국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비롯한 요동 지역은 일종의 힘의 공백 상태였다. 실제로 명 초 연산관(連山關)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수백 리의 요동팔참(遼東八站) 지역은 명과 고려의 국경 중립지대였다.⁵¹

반면 장야디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족이 명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기본 인식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래야만 명의 강역을 최대한 넓힐 수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명의 영토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를 위해 장야디는 여진인의 분포와 조선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명의 관할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線],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51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56쪽. 김한규 역시 명대의 요동은 중국 국가에 의해 점유되었다기보다 사실상 여진에 의해 혹은 중국 국가와 여진에 의해 분점되어 있었던 시기로 이해하였다.(2002, 『한중관계사』 2, 서울: 아르케, 562쪽)

위하여 조무와 책봉을 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장야디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명 초부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홍무제의 철령위 설치 시도와 결부시켰다. 그는 홍무제가 철령위 설치를 시도하였다가 고려의 반대로 요동으로 철수시켰지만,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의 토지와 인민에 대해 여전히 자신의 판도 안에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역시 앞서 본 것처럼 다오슈런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⁵²

이후 1403년에 영락제의 두만강 유역 여진인 조무를 비교적 자세히 분석하였고, “이로써 두만강 유역의 올랑합 여진은 공식적으로 명에 속하게 되었다”라며 두만강 유역을 명의 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³ 그는 이 지역의 유력자였던 동맹가첩목아와 유파아손 등의 내조를 계기로 명이 위소(衛所)를 설치했다는 선행 연구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이다.⁵⁴

장야디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설치한 위소가 중원과 요동에 설치한 위소와 다르다고 보았다. 중원의 위소는 군사시설이지만 여진 지역에 설치된 것은 기미위소로 변방 지역의 여진 수령을 명에 귀속시키기 위해 칙서(勅書)와 인신(印信)을 주어 명의 신분을 인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명조를 대신하여 변경을 지키는 것과 때에 맞춰 조공하는 의무가 있다며 명의 관할 아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명의 영역 안에 있던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였지만 그는 세종 대 4군과 6진을 설치하면서 중국과 조선의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밀려났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양강의 경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 행성, 연대와 봉수 등 방어시설을 축조하며 영역화한 점에 주목하였다.⁵⁵

52 刁書仁, 2021, 앞의 책, 307~308쪽.

53 姜雅迪, 2021, 앞의 글, 89쪽.

54 陳慧, 2007, 「試析15世紀中葉圖們江成爲中朝界河」, 『中國邊疆史地研究』 2007-3; 楊鳴 主編, 2008, 『明代東北疆域研究』,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鄭紅英, 2014, 「論明朝初期與高麗的女真之爭」, 『韓國研究論叢』.

55 姜雅迪, 2021, 앞의 글, 233쪽.

이 논문은 기존 중국 학계의 시각을 거의 답습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 기존과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장야디는 봉공체제⁵⁶ 아래에서 명과 조선, 여진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그는 조선이 건주삼위를 두 차례에 걸쳐 협공하는 등 명의 봉공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국가였다고 이해하였다. 물론 조선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사사롭게 여진과 통교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명은 핵심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한 조선을 최대한 포용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 예로 1410년에 태종이 모련위(毛隣衛)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유파아손 등을 살해한 것을 두둔했다며 양국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졌다고 하였다. 이후 성화제가 두 차례에 걸쳐 건주여진 정벌 등을 추진하며 공조관계는 더욱 두드러졌다.⁵⁷ 반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에게 명과 조선의 이러한 행위는 배신감을 안겼고, 양국에 원한을 갖게 되었다고 이해하였다.⁵⁸

장야디는 조선이 봉공체제를 활용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할 수 있었고, 명 선덕제(宣德帝)와 정통제(正統帝) 때 이르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할 수 있었다며 조선이 봉공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기존 연구들에서 보이지 않던 것으로 최근 유행하는 봉공체제를 접목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진 저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명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영토를 조선에 인정해 준 것을 봉공체제라는 큰 틀에서 조선이 명에 순응한 번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조선이 북방을 개척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명의 시혜에 의한 것이 되고, 조선의 지주성은 반감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명과 조선의 확

56 장야디가 설정한 봉공체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알기 쉽지 않다. 다만 그가 사용한 맥락을 봤을 때, 종번(宗藩) 혹은 조공(朝貢) 등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손성욱에 따르면 청사공정의 방교지(邦交志) 편찬 총책임 맡은 천상성(陳尙勝)은 중번관계에 비판적으로, 책봉과 조공을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으로 보며 봉공관계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손성욱, 2022, 앞의 글, 102쪽.

57 물론 조선은 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있다. 이규철, 2022, 『사대와 정벌』, 서울: 역사비평사.

58 姜雅迪, 2021, 앞의 글, 155~158쪽.

고한 봉공체제 안에서 세력을 강화하여 대제국을 건설한 여진인의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한편,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학자는 리우양이다. 그는 2015년에 연변대학에서 「조선 초기 중조 자연계하적 형성연구(朝鮮初期中朝自然界河的形成研究)」라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⁵⁹ 이후 텐진사범대를 거쳐 현재는 난카이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리우양은 10세기부터 15세기 중엽 4군 6진 개척까지 살펴보았는데, 박사학위 이후에도 관련 분야로 논문을 작성하며 중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리우양은 조선이 4군 6진을 개척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배경으로 3장에서 ‘조선 건국 초 중조변계의 새로운 변화’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분포를 살펴보고 명이 어떻게 이들을 관할하려고 했는지 다루었다. 그 역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이 영락제가 구상한 명의 위소체계에 편입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명의 강역과 경계가 확장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다만 기존의 시각과 다른 점은 이때 두만강 이북 위주로 여진 위소가 설치되었다고 본 것이다.⁶⁰

지금까지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동북면 10처 여진인의 관할권과 동맹가 첩목아를 비롯한 두만강 유역 여진인에 대한 초무였다. 리우양은 위 사건을 명의 두만강 일대에 대한 이해와 영토 관념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였다. 조선은 10처 여진인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명이 초유를 통해 그들의 관할권을 돌려받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10처 여진인을 조선에서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한국 학계의 대표적 입장이었다.⁶¹ 반면 앞서 본 것처럼

59 劉陽, 2015, 「朝鮮初期中朝自然界河的形成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60 劉陽, 2015, 위의 글, 29쪽.

61 한국 학계의 대표적 입장은 다음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유재춘, 2015, 「麗末鮮初 朝·明간 女眞 귀속 경쟁과 그 意義」, 『한일관계사연구』 24.

중국 학계에서는 10처 여진인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색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리우양도 기본적으로 두만강 남쪽이 중국의 영토였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건주여진의 초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동맹가침목아 등이 명에 입조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외교 실패라고 보았다. 그리고 영락제가 이 지역 영토에 대한 무관심과 종주국으로서 번속국에 대한 포용 때문에 조선의 관할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조선은 성공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⁶²

이후 리우양은 조선의 4군 6진의 개척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 조선이 4군 6진을 개척한 배경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고려 공민왕이 원래 잃어버린 영토의 범위를 넘어 북진 정책을 실시하였고, 조선은 이를 계승하여 북진이라는 전략을 최우선 방어책으로 삼아 4군 6진을 개척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강변방위체계를 구축한 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영토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³

리우양은 학위논문 제출 이후에도 여전히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15세기 중엽 이후 조선과 명의 영토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며 그 역사적 근원을 탐구하였다. 리우양 역시 조선이 통일신라와 고려의 판도를 계승하였다는 인식을 보인다. 특히, 조선이 전통적인 북진 개척 의식을 계승하였다고 보았는데, 그 사례 중 하나가 신라 진흥왕의 북진 개척이었다. 이는 다오위안이 제시한 신라-고려-조선으로 계승되는 역사인식 체계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

62 劉陽, 2015, 앞의 글, 34~35쪽.

63 劉陽, 2015, 위의 글, 93~94쪽. 한편, 그는 박사학위에 포함되는 논문들을 학술지에 발표하며 학계에 조선의 4군과 6진의 개척 과정을 소개하였다. 해당 논문은 다음과 같다. 劉陽, 2013, 「朝鮮王朝北方“六鎮”之慶源鎮的設置沿革」, 『朝鮮·韓國歷史研究』 13; 2013, 「朝鮮王朝北方“六鎮”之會寧鎮與鍾城鎮的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4; 2014, 「朝鮮王朝北方“六鎮”之穩城鎮的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5; 2015, 「朝鮮王朝北方“六鎮”之富寧鎮的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6; 2016, 「朝鮮王朝慈城、茂昌、虞芮三郡設置考」, 『東疆學刊』 2016-4; 2016, 「朝鮮王朝北方“六鎮”之慶興鎮的設置沿革」, 『朝鮮·韓國歷史研究』 17.

만 여기에 더하여 고려의 ‘고토(古土) 회복’ 인식, 즉 고구려-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인식이 있었고, 조선은 고구려의 구지(舊地) 회복 의식에 더하여 조상의 구지를 회복하기 위한 점을 강조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⁶⁴

리우양은 기존의 역사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조금씩 투여 하며 이전과 약간 다른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후속 논문으로 세종 대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쌓았던 장성(障城)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장성(障城)은 조선 연변 방어체제의 핵심으로 북방의 여진인과 조선을 구분하는 ‘화이(華夷)’의 분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⁶⁵ 물론 명백하게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 남안의 영역을 확보한 시기를 다룬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해당 지역 영토 확보를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리우양은 명과 조선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각각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관한 지리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⁶⁶ 그는 명의 관찬사서인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요동지(遼東志)』, 『전요지(全遼志)』, 『원사지리지(元史地理志)』, 『환우통지(寰宇通志)』 등을 살펴보았다. 리우양은 명의 각종 관찬사서들은 조선의 관찬사서에 비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대한 내용이 소략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리우양은 그 원인으로 중원을 중시하고 변강을 경시하는 전통적 인식과 ‘화이지한(華夷之限)’, 즉 이적 세계에 대한 멸시 관념, 요동도사(遼東都司) 외의 지역은 여진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했던 점 등을 들고 있다.⁶⁷ 반면 조선은 북방의 군사적 요구와 개척, 왕실의 발상지라는 상징성 등으로

64 劉陽, 2017, 「15世紀中葉以來中朝鴨綠江與圖們江界河形成的歷史根源探析」,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3.

65 劉陽, 2017, 「朝鮮王朝前期的北方沿江行城建置及其防禦功能」, 『世界歷史』 2017-3.

66 劉陽, 2017, 「明代中朝官修地理志書中的鴨綠江、圖們江地理認識」, 『史學史研究』 2017-3.

67 앞서 명이 이 지역에 대한 지리인식과 한족 외의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중국 변강 지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한 다오슈련의 입장과 일치한다. 刁書仁, 2021, 앞의 책, 314~315쪽.

오히려 세밀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대 압록강과 두만강에 대한 인식과 지리 관념이 영토의식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조선이 양강을 실효 지배하였고, 명은 여진인의 땅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명과 조선은 동아시아 체계에서 중주국과 번속국으로 신분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보았다. 결국 리우양도 역사적 실체와 중국 학계의 입장 사이에서 중주국과 번속국의 차이로 해명을 시도한 것이다.

한편, 리우양은 조선의 폐사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세종 대 압록강 중상류에 위치한 4군을 개척하면서 조선은 압록강을 경계로 한 영토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조선은 오이라트의 침입 등으로 1555년(단종 3)과 1559년(세조 5)에 차례로 4군을 폐지하였고, 숙종 대에 이르러서야 점차 복설하기 시작하였다.⁶⁸ 따라서 4군의 폐지 이후 압록강 중하류의 영토를 조선이 차지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⁶⁹

리우양은 4군의 폐지를 조선이 개국한 이래 압록강 상류의 남안 개척에 힘써 왔지만 한 차례 후퇴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100여 년 이상 이곳을 비워 두어 일종의 무주공산지가 되어 여진인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은 선대의 영토 확장 의식을 토대로 군사를 파견하는 등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에 주목하였다.⁷⁰

그런데 이듬해 작성한 연구에서 리우양은 세노 우마쿠마의 의견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의 4군 폐지로 여진인이 몰려들어 실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여진 또한 대부분 명의 위소 관리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실상 이 지역은 명의 속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68 이인영, 1954, 앞의 책, 59~60쪽.

69 세노 우마쿠마는 4군의 폐지로 이곳은 조선의 영역 바깥이고, 조선 후기에 복설될 때까지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았다.(瀬野馬熊, 1923·1924, 앞의 글) 반면 이인영은 군사방어선의 후퇴라는 관점을 유지하였다.(1954, 앞의 책) 이후의 논의 과정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정민, 2022, 앞의 글.

70 劉陽, 2018, 「朝鮮王朝前期의 “廢四郡”問題研究」, 『暨南史學』 15.

서 조선에서 이 일대에 대한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조선에서 이곳을 여전히 속지라고 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후대에 복설하였고, 중국과 조선의 경계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⁷¹

리우양이 4군의 폐지를 주목한 것은 결국 당대의 영토가 근현대 국경처럼 고정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조선이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결국 힘의 공백 상태가 유지되며 여진인이 거주하였고, 조선의 군신들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수백 년 동안 4군 폐지 문제가 이어졌다고 한 것이다. 조선이 4군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연구들에서 조선이 폐4군 지역의 여진인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였고, 계속해서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조선이 방기하지 않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⁷² 아마 두 의견 사이에 합의점은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깊은 학술적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야디와 리우양도 기본적으로 이전 연구들의 영향을 받아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 원래 명의 영역이었으나 조선의 복진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 학계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선행 연구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점차 세대가 내려오면서 유연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71 劉陽, 2019, 「朝鮮王朝“四郡”撤廢事件考」, 『東疆學刊』, 36-3.

72 河內良弘, 1992, 「中宗·明宗時代の朝鮮と女眞」,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 김순남, 2010, 「조선 중종대의 북방 野人 驅逐」, 『조선시대사학보』 54; 박정민, 2017, 「溫河衛의 성립과 조선과의 관계」, 『군사연구』 143; 박정민, 2019, 「溫河衛의 세력확대와 조선의 대응」, 『만주연구』 28.

V. 맺음말

동북공정은 동북3성의 역사와 현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2~2007년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중국은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동북공정의 시작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결국 중국은 공식적으로 2007년에 동북공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연구는 대부분 고구려와 발해 등 고대사에 집중되었지만 최근 백두산(장백산)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청과 연결된 여진족(만주족)의 역사를 내세워 '백두산=여진족의 뿌리'라는 인식을 토대로 백두산과 만주 지역의 역사·문화적 연고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장백산문화론으로 연결되며 백두산뿐만 아니라 동북3성,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대한 연고권까지 확장하고 있다. 즉, 백두산을 비롯한 수계 권역 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백두산의 모든 것을 중국 문화권에 귀속시키기 위한 논리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⁷³

이 글에서는 중국 학계에서 조선 전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인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논지와 논리를 살펴보았다. 먼저 1993년에 출간된 『중조변계사』를 분석하였다. 저자인 양자오취안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기반으로 요·금·원이 중국의 왕조였으므로 한반도 동북부와 서북지역은 중국 왕조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수 민족인 여진족(만주족)이 거주하므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뿐만 아니라 백두산까지 명과 청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오취안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첫째, 명이 요동도사와 노아간도사를 설치하여 동북3성 일대를 지배하였다는 것이다. 즉,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 양안에 거주하는 여진인이 모두 명의 위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둘

73 윤취탁, 2018, 「중국의 '백두산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에 관한 試論-」, 『중국근현대사연구』 78.

째, 알목하 일대에 자리 잡았던 동맹가첩목아 등의 이주를 검토하며 봉주에 거주하였다가 알목하로 돌아온 사실을 두만강 일대 영토의 회복이라고 보았다. 셋째, 압록강 중류부터 상류까지 금대부터 원대까지 중국 왕조의 영역이었고, 고려 말에서야 비로소 고려가 중류의 창성과 벽동, 강계 등지에 성과 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즉, 압록강 중상류는 원래 원의 땅이었고, 조선에서 4군을 개척하기 전에 명의 영토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노아간도사는 초반을 제외하고 임시 기구로 역할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덕 연간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명의 위소를 개설받았던 여진인도 명과 조선에 양속적이면서 명과 조선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진인이 거주한 지역을 명의 영토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맹가첩목아의 사례를 들었지만 실상 그가 명에 입조하기 전부터 조선의 관직을 받아 이미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사후 범찰과 동창 등이 이주하였다고 했지만 어허리 등은 여전히 회령 일대에 남아 조선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압록강 중상류가 조선이 4군을 개척하기 전에 명의 영토라고 보았으나 실상 조선이 4군을 개척하기 전인 늦어도 태종 대에 압록강 상류의 혜산, 여연까지 진출하였고, 실효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대 중조 주변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는 『중조변계사』보다 명확하게 동북공정의 관점으로 중조 강계를 바라보았다. 다오슈런은 조선이 진국-삼한-신라와 백제-통일신라-고려로 이어진다고 보았고,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소수 민족 정권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국의 영토에 편입할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다. 그리고 명대 영토 의식을 『중조변계사』보다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홍무제의 칠령위 설치부터 시작하며 동북면 일대의 영토가 명에 속했다는 논리로 접근하였고, 영락제 때 동북면 10처 여진인 귀속 분쟁을 다루며 원래 영락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허가해 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후 1410년의 ‘두문혈안’으로 조선이 경성으로 퇴축하며 잃었던 명의 영토를 확보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1433년에 동맹가첩목아가 사망하며 세종이 비로소 6진을 개척하였고, 두

만강을 경계로 하는 영토가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다오슈런이 『중조 변계사』보다 더 세밀한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많은 사례를 들었지만, 동북공정의 체현이라는 목표 아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 서술이나 자의적 해석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신진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야디는 다오슈런의 지도를 받았고, 그의 학설을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즉, 장야디 역시 15세기 중반 이전에 압록강·두만강이 중국의 역사적 영역 안에 있었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이 명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명의 관할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역시 다오슈런과 같이 홍무제의 철령위 설치, 영락제의 동북면 여진 초무와 위소 설치 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세종 대의 4군 6진 개척으로 명의 영토가 밀려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기존과 다른 시각을 노정하기도 한다. 조선이 봉공체제를 활용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할 수 있었다며 그 수혜자로 파악한 것은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분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학자는 리우양이다. 그는 조선의 4군 6진 개척 과정을 검토하며 조선과 명의 변경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그 역시 명 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이 명에 편입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논지를 전개할 때 영락제가 설치한 위소를 두만강 이북 위주라고 보았고 동북면 10처 여진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조선에서 이들을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고려가 신라를 계승하였다는 시각을 가진 한편, 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인식도 있음을 동등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적 합리적 주장들이 발견되는 경향은 여러 차례 보이고 있는데, 그가 역사적 실체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장야디와 리우양의 기본 시각은 『중조변계사』와 『고대 중조 중변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의 인식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다오슈런이 서문의 마지막에 “본서는 중요한 학술 가치가 있고, 현실 참고의 중요성을 겸비

하였다. 중국 학계 내 하나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새로운 연구 수준을 보여 주었다”라고 자신하였다.⁷⁴ 지도학생인 장야디와 비슷한 전공을 하는 리우양이 그의 의견을 거스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신진학자들이 세부 논리를 전개하면서 다오슈런이 정의한 내용과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기술한다는 점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중국 역사학계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후속 세대로 바뀌면서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볼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악화된 한중관계에 편승하여 서로 평행선을 긋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론의 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역사적 실체에 한 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74 刁書仁, 2021, 앞의 책, 2쪽.

참고문헌

-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明實錄』.
- 고광의, 2023,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와 성과」, 『동북아역사논총』 80.
- 김순남, 2010, 「조선 중종대의 북방 野人 驅逐」, 『조선시대사학보』 54.
- 김현숙,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
- 김형중, 2020, 「문헌 연구와 실지 답사를 결합한 한·중 국경 문제의 재검토-이화자」,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 혜안, 2019-, 『동양사학연구』 151.
- 남의현, 2006, 「15세기 明의 女眞地域 進出試圖와 女眞의 成長-奴兒干都司와 建州女眞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1.
- _____,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 _____, 2012, 「元末明初 朝鮮·明의 요동쟁탈전과 국경분쟁 고찰」, 『한일관계사학』 42.
- _____, 2018, 「중국의 『中朝邊界史』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 -『중조변계사』에 대한 비판과 14세기 이전 ‘鴨綠水(鴨綠江)’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 57.
- 노기식, 2004, 「중국의 淸 前期 만주(동북) 및 조선관계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변방 연구 동향분석』.
- 문상명, 2022,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동북아역사논총』 78.
-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_____, 2017, 「濼河衛의 성립과 조선과의 관계」, 『군사연구』 143.
- _____, 2017, 「한왕산성과 건주좌위-조선의 6진 개척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76.
- _____, 2019, 「2000년 이후 중국학계의 조선과 여진 관계 연구 동향」, 『동양학』 74.
- _____, 2021, 「여말선초 압록강 중상류 영토의 재검토」, 『만주연구』 32.
- _____, 2022, 「세종대 4군 개척의 담론 다시 생각하기」, 『역사비평』 139.
- 방동연·차용걸, 1994, 「4군 6진의 개척」, 『한국사』 22.

- 손성욱, 2022, 「최근 중국학계의 전근대 중변과 변강 인식문제」, 『동북아역사논총』 78.
- 송병기, 1973, 「東北·西北界의 收復」, 『한국사』 9.
- 우성민, 2022,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변화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78.
- 유재춘, 2015, 「麗末鮮初 朝·明간 女眞 귀속 경쟁과 그 意義」, 『한일관계사연구』 24.
- 윤휘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 _____, 2018, 「중국의 ‘백두산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에 관한 試論-」, 『중국근현대사연구』 78.
- _____, 2019,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중국사연구』 119.
- 이규철, 2022, 『사대와 정벌』, 서울: 역사비평사.
- 이인영, 1954, 『한국만주관계사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한성주, 2011, 『조선시대 수직여진인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_____, 2018, 『조선시대 藩胡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_____, 2019, 「조선시대 접경공간의 시대적 변동양상 연구-압록강·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앙사학』 50.
- 姜雅迪, 2021, 「東亞封貢體制下兩江流域戰事研究—以10至17世紀中葉女眞向民族統一演進爲主線」,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瀨野馬熊, 1923·1924, 「朝鮮廢四郡考」 上·中·下, 『東洋學報』 13-1, 13-3, 13-4.
- 劉陽, 2013, 「朝鮮王朝北方“六鎮”之慶源鎮的設置沿革」, 『朝鮮·韓國歷史研究』 13.
- _____, 2013, 「朝鮮王朝北方“六鎮”之會寧鎮與鍾城鎮的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4.
- _____, 2014, 「朝鮮王朝北方“六鎮”之穩城鎮的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5.
- _____, 2015, 「朝鮮王朝北方“六鎮”之富寧鎮的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6.
- _____, 2015, 「朝鮮初期中朝自然界河的形成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6, 「朝鮮王朝北方“六鎮”之慶興鎮的設置沿革」, 『朝鮮·韓國歷史研究』 17.

- _____, 2016, 「朝鮮王朝慈城, 茂昌, 虞芮三郡設置考」, 『東疆學刊』 2016-4.
- _____, 2017, 「15世紀中葉以來中朝鴨綠江與圖們江界河形成的歷史根源探析」,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3.
- _____, 2017, 「明代中朝官修地理志書中的鴨綠江, 圖們江地理認識」, 『史學史研究』 2017-3.
- _____, 2017, 「朝鮮王朝前期的北方沿江行城建置及其防禦功能」, 『世界歷史』 2017-3.
- _____, 2018, 「朝鮮王朝前期的“廢四郡”問題研究」, 『暨南史學』 15.
- _____, 2019, 「朝鮮王朝“四郡”撤廢事件考」, 『東疆學刊』 36-3.
- _____, 2022, 「《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評介」, 『中國史研究動態』 22-1.
- 木村拓, 2021, 『朝鮮王朝の侯国の立場と外交』, 東京: 汲古叢書.
- 孫春日·李秀玉, 2018, 「朝鮮前期“北拓”政策與“徙民”圖們江, 鴨綠江流域過程」,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1.
- 楊昭全 외, 1993, 『中朝邊界史』,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 楊暘, 1982,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 河南: 中州書畫社.
- 楊暘 主編, 2008, 『明代東北疆域研究』,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 王冬芳, 1997, 「關於明代中朝邊界形成的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3.
- 鄭紅英, 2014, 「論明朝初期與高麗的女真之爭」, 『韓國研究論叢』.
- 刁書仁, 2021, 『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陳慧, 2007, 「試析15世紀中葉圖們江成爲中朝界河」, 『中國邊疆史地研究』 2007-3.
-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真史の研究』, 同朋舍.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중국 학계에서 조선 전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인식을 분석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논지와 논리를 살펴보았다. 먼저 1993년에 출간된 『중조변계사』를 분석하였다. 저자인 양자오취안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을 기반으로 요·금·원이 중국의 왕조였으므로 한반도 동북부와 서북지역은 중국 왕조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수 민족인 여진족(만주족)이 거주하므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뿐만 아니라 백두산까지 명과 청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중조 종변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는 『중조변계사』보다 명확하게 동북공정의 관점으로 중조 강계를 바라보았다. 비록 다오슈런이 『중조변계사』보다 더 세밀한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많은 사례를 들었지만, 동북공정의 체현이라는 목표 아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자의적 해석 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은 신진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장야디와 리우양의 기본 시각은 『중조변계사』와 『고대 중조 종변관계와 중조변계사 연구』의 인식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신진학자들이 세부 논리를 전개하면서 다오슈런이 정의한 내용과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기술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주제어>

중국 학계, 동북공정, 조선 전기,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여진, 통일적다민족국가론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Yalu and Tumen Rivers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 in the Chinese History Academia

Park, Jung Min

(Associate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Zhongchao bianjieshi*, published in 1993 by Yang Zhaoquan(楊昭全). Based on the theory of the unified multi-nation state, Yang argues that since the Liao(遼), Jin(金), and Yuan(元) Dynasties were Chinese, the northeast and northwest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areas inhabited by the Jurchens such as the Yalu and Tumen River basins and even Baedusan Mountain, could be considered part of the Ming(明) and Qing(清) territory.

“A Study on the Suzerainty Relations and the History of Frontiers Between Ancient Korea and China” provides a clearer perspective of the Sino-Korean border from the viewpoint of the Northeast Project, compared to *Zhongchao bianjieshi*. Although Diao Shuren(刁書仁) develops his arguments more meticulously and provides numerous examples, his work shows problems such as deviation from objective facts and arbitrary interpretations aimed at realizing the Northeast Project. These discussions have also influenced young scholars. Zhang Yadi(姜雅迪) and Liu Yang(劉陽) do not deviate from the perceptions of *hongchao bianjieshi* and “A Study on the Suzerainty Relations and the History of Frontiers Between Ancient Korea and China”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 new scholars’ description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those of Diao Shuren.

Keywords

Chinese academia, Northeast Project, early Joseon Dynasty, Tumen River, Yalu River, Baekdusan Mountain, Jurchens, unified multi-nation state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전후, 실효적 지배에 관한 고찰

이서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규범연구실 전문연구원

- I. 머리말
- II. 영토 취득 방식에 관한 역사적 논의
- III. 1928년 이전, 실효적 지배
- IV. 1928년 이후, 실효적 지배 관련 판례
- V. 맺음말

I. 머리말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 effective control, effective possession)는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¹ 실효적 지배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1928년 팔마스(Palmas) 섬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팔마스 섬 사건²의 단독 중재재판관 막스 후버(Max Huber)가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창조해 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을 도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실효적 지배 개념의 발전 과정을 분석해 보고,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팔마스 섬 영유권에 관한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분쟁은 1906년에 시작되었다. 장기간 협의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양국은 1925년 1월에 팔마스 섬 영유권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막스 후버를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 이 사건은 근대 영토관계법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국가 권력의 지속적·공개적이고 평화로운 행사’라는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제

* 논문 투고일: 2024.4.30, 심사 완료일: 2024.6.14, 게재 확정일: 2024.6.14.

* 이 논문은 제22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자대회 제2·3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실효적 지배는 영문으로 “effective occupation”, “effective control”, “effective possession”이며, 이 용어는 개념의 구분 없이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혼용되고 있다. [최철영, 2014, 『로마법상 무주지 개념과 실효적 지배를 통한 국가영역획득』, 『성균관법학』, 제26권 제1호, 8쪽]

2 팔마스 섬 사건은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발발한 분쟁이다. 필리핀 군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팔마스 섬 면적은 2,6km²로 이 사건 판정 당시 약 7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매우 작은 섬이었다. 미국-스페인 전쟁이 1898년에 종결된 후, 양국은 필리핀 군도를 미국에 할양하는 파리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 경계선 내 팔마스 섬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섬을 할양받았다고 주장하였다.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 USA), 4 April 1928, Reports o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II. (이하,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37.) 1906년 1월 21일, 미국의 한 관리가 팔마스 섬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과 네덜란드 간 분쟁이 발발하였다. 한편, 스페인은 16세기 발견을 통해 이 섬의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였다. 약 20년 동안,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사이에서 팔마스 섬 영유권에 관한 외교적 논쟁이 지속되다가, 1925년 국가들 간 합의를 통해 PCA에 회부되었다.

시켰기 때문이다.³

팔마스 섬 사건 판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에서는 영토 취득 요건으로서 발견(discovery)의 정의와 그 효력을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스페인의 발견을 근거로 팔마스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⁴ 이와 관련하여 중재재판관은 “발견”을 ‘영토 취득이 완료되었다는 상징적 행위가 없다고 해도, 육지 혹은 섬이 목격되었다는 사실’로 정의하였다.⁵ 판정문에서는 발견이 불완전한 권원(an inchoate title)이라고 하면서 19세기부터 단순히 도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해당 영토의 권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⁶ 둘째, 이 사건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 국제법에서 선점의 효력을 요구하는 주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하면서,⁷ 팔마스 섬에 대한 네덜란드 주권 확립의 시작은 곧 선점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⁸ 셋째, 이 사건에서는 네덜란드가 팔마스 섬의 모섬인 상기(Sangi) 섬과 탈라우어(Talauer) 섬에 보호령을 설치했다고 해서 타국에 이를 통지하거나 공적인 권한 행사를 시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표시할 때 다른 강대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에 관해 언급하였다. 1885년 당시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에 보호령을 설치할 때, 서로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타국에 통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규칙은 아프리카 외 타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⁹ 넷째, 이 사건에서는 실효적 지배에 의한 영토 취득 권원의 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발견은 불완전한 권원이기에 합리적인 기간 내 실효적 지배를 통해 권원이 완성되어야

3 David Hunter Miller, 1925, "Political Rights in the Arctic," *Foreign Affairs*, Vol. 4, Issue, 1, p. 56.

4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37.

5 1928년 팔마스 섬 사건에서 스페인은 16세기 발견을 통해 이 섬의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였다.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p. 837, 839; Surya P. Sharma, 1997,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p. 40~47.

6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46.

7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39.

8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70.

9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68.

한다고 보았다. 설령, 불완전한 권원이 존재했었고, 평화조약에 따라 해당 영토가 할양 대상에 포함된 것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타국의 지속적이고 평온한 권능 행사, 즉 실효적 지배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중재재판관은 영토주권의 권원이 ‘국가 권력의 지속적·공개적이고 평화로운 행사’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¹ 다섯째, 팔마스 섬 사건에서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에 관해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는 네덜란드의 주권 표시가 적었으나, 팔마스 섬에 대한 네덜란드의 영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판정 당시 팔마스 섬 인구가 700여 명으로 그 밀도가 희박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팔마스 섬에 대해 연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¹² 결국, 중재재판관은 네덜란드가 팔마스 섬에 대한 영유권을 1700년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권력 행사를 통해 취득했다고 결론지었다.¹³

이 글에서는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팔마스 섬 사건 판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1928년 전후 시기 실효적 지배에 관한 학설과 논의,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으로 국제법에서 논의된 영토 취득 방식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적 지배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토 취득 관점에서 실효적 지배를 살펴보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이전 시기의 실효적 지배 개념을 1870년 포르투갈과 영국 간 발생했던 블라마(Bulama) 섬 사건과 1875년 델라고아(Delagoa) 만 사건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근대 시기의 실효적 지배를 다룬 1931년 클리퍼턴(Clipperton) 섬 사건¹⁴과 1933년 동부 그린란드(Eastern

10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46.

11 팔마스 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국가의 권력 행사가 지속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p. 838, 868.

12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 840.

13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pp. 868~869.

14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에서 클리퍼턴 섬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클리퍼턴 섬은 멕시코 아래 위치해 있고, 거리상으로는 프랑스보다 멕시코에 더 가깝다.

Greenland) 사건¹⁵을 통해 이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영토 취득 방식에 관한 역사적 논의

근대 국제법에서 실효적 지배는 문명국이 영토를 결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¹⁶ 그러나 실효적 지배가 과거 국제법 학자들이 제시한 영토 취득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활동하던 당시, 국가의 영토는 군주의 사유재산과 거의 동일시되었기에 그로티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사유재산 취득에 관한 로마법을 국가의 영토 취득 방식에 적용하였다.¹⁷ 로마법에 따른 고전 국제법상 영토 취득 방식은 대체로 무주지 선점(occupation of terra nullius), 정복(subjugation, conquest),¹⁸ 침부(accretion),¹⁹ 시효취득(prescription),²⁰ 할양(cession)²²으로 구분되

15 그린란드 전체 섬에 대해 주권을 주장해 온 덴마크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헌장 제36조 제5항에 따라 강제관할권 조항을 원용하여 노르웨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였다. PCJ헌장 제36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36 of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which are still in force shall be deemed,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to be acceptances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the period which they still have to run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16 John Westlake, 1904,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2.

17 Lassa Oppenheim, 1905, *International Law—A Treatise*, 1st edition, Longmans, Green & Co., p. 265.

18 정복이란, 오로지 무력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간 영토 취득을 의미한다. 김대순, 2022, 『국제법론』 제21판, 삼영사, 1076쪽.

19 침부는 자연작용을 통한 영토 취득 방식이다.

20 시효취득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타국 영토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점과 시효취득 모두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 그러나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시효취득의 대상은 해당 영토의 주인국가가 있는 영토이다. 시효취득의 경우, 무주지 선점보다 실효적 지배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으며, 시효취득이 완성 되려면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 주인국가의 목인이 요구되었다. 시효취득은 최초의 점유에 기망이나 폭력이 섞여 있더라도 시효의 진행과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점유가 개시될 때 선의가 요구되지 않았다. 김대순, 2022, 앞의 글, 1055~1056쪽.

었다.²³ 원칙적·이론적으로 이 구분은 분명하였으나²³, ‘Family of Nations’ 구성원 국가의 영토 취득 방식에 관한 당시 국제법(Law of Nations)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²⁴ 대부분의 국제법 학자들은 이 다섯 가지 영토 취득 방식을 인정하였으나, 일부 학자들은 영토 취득 방식 중 두세 가지만 인정하였다.²⁵ 예컨대, 고전적 방식에 따른 선점과 시효취득의 구분은 모호했다.²⁶ 시효취득이 영토 취득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침부가 국가의 영토 변경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정복이 영토 취득 방식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영토를 선점하거나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영토를 양도받는 것은 국제법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기에 국제법이 적용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²⁷

근대 국제법상 국가의 영토 개념에서 사유재산이 사라지자, 국가의 영토 취득은 곧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취득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사유재산 취득에 관한 로마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대 국제법에서 영토 취득 방식은 국가들의 실제 관행을 따라야 했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된 여러 구역으로 구성되어

21 할양이란, 조약을 근거로 한 국가의 일부가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할양은 국가 간 매매나, 영토 교환의 결과를 의미하였다.(Abodul Ghafur Hamid, 2006, *Public International Law: A Practical Approach*, Pearson Prentice Hall, p. 112.) 과거 국가들은 할양조약 체결을 통해 영토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할양조약 체결이 실제로는 일국이 타국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할양조약 체결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위장된 정복에 지나지 않았다.(김대순, 2022, 위의 글, 1058~1059쪽.) 그러나 오늘날 무력사용 또는 위협을 근거로 한 할양조약은 당연무효이다.

22 Lassa Oppenheim, 1905, *op. cit.*, p. 266; Bardo Fassbender and Anne Peter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pp. 239~240.

23 Bardo Fassbender and Anne Peters, 2012, *Ibid.*, pp. 239~240.

24 ‘Family of Nations’는 유럽에 위치한 기독교 국가들, 즉 문명국의 집단을 의미하였다. ‘Law of Nations’은 이 집단 국가들의 법이며 국제법을 의미한다. ‘Law of Nations’는 ‘국가들의 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문맥상 본문에서는 ‘국제법’으로 번역하였다. Lassa Oppenheim, 1905, *op. cit.*, p. 265.

25 Lassa Oppenheim, 1905, *Ibid.*, p. 267.

26 Bardo Fassbender and Anne Peters, 2012, *op. cit.*, pp. 239~240.

27 Lassa Oppenheim, 1905, *op. cit.*, pp. 265, 267.

있었다. 어떤 구역은 다른 국가의 양여를 받거나, 침부로 인한 결과였다. 국가가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하면서도 타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던 구역도 있었다.²⁸

국제법 학자 라사 오펜하임(Lassa Oppenheim)이 저술한 『국제법-조약(International Law-A Treatise)』 1905년판에 따르면, 당시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였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가만이 영토를 취득할 수 있었다. 국가 창설은 법이 아닌 사실의 문제였기에, 신생국은 승인(recognition)을 받음으로써 ‘Family of Nations’ 구성원 국가이자,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승인을 받기 전에 어떤 방식을 통해 이 영토를 취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개인이나 법인이 ‘Family of Nations’ 범주 밖에 있는 국가의 영토를 취득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 영토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Family of Nations’ 구성원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²⁹

1909년에 발간된 『국제공법 편람(Handbook of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는 당시 국제법상 인정되었던 영토의 유효한 권원으로 무주지 선점, 정복, 침부, 시효취득, 할양을 제시하였다.³⁰ 타국의 영토를 승계하지 않는 침부와 무주지 선점이 시원적 취득 방법(original modes of acquisition)에 해당한다면, 타국의 영토를 승계하는 시효취득, 할양 그리고 정복은 파생적 취득 방법(derivative modes of acquisition)으로 분류되었다.³¹ 이는 고전 국제법에서 제시된 영토 취득 방식과 동일하였다.

당시 영토에 대해 유효한 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견이 아닌 무주지 선점을 통해 영토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선점의 대상인 무주지는 ‘문명국의 영토가 아닌

28 Lassa Oppenheim, 1905, *Ibid.*, p. 266.

29 Lassa Oppenheim, 1905, *Ibid.*, pp. 263~265.

30 T. J. Lawrence, 1909, *Handbook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ition, Macmillan and Co., pp. 49~54.

31 김대순, 2022, 앞의 글, 1048쪽.

지역'에 한해 적용되었으며, 선점은 병합(annexation)과 정착(settlement)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³² 병합은 영토의 강제적 취득(forcible acquisition)으로 넓게 정의되었으며,³³ 이러한 병합은 병합 대상 영토가 소멸하고 병합국이 확대된 상태로 존속하는 것을 의미하였다.³⁴ 병합은 반드시 국가의 행위여야 하며 개인이 시도하는 경우 무효가 되었다. 또한, 병합국은 병합 대상 영토의 국가나 민족에게 해당 영토를 자국으로 병합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했다. 한편, 정착은 문명화된 정부 아래 있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해당 영토에 정착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영토의 선점을 의미하였다. 이들의 정착은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병합과 정착이 공존해야 선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며,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³⁵

실효적 지배는 무주지 선점이 완성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이해되었으며, 발견, 무주지 선점 이후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이기도 하였다. 필마스 섬 사건 판정 이전 200여 년 동안의 국가실행에 따르면, 실효적 지배를 의미하는 '영토주권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표시(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가 선점과 시효취득 모두에서 발생하는 유효한 권원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32 T. J. Lawrence, 1909, *op. cit.*, p. 50.

33 Lauri Mälksoo, 2002, *Illegal annexation and state continuity: the cas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Baltic states by the USSR*, Humboldt University Berlin, p. 30; Ilya Nuzov, 2016, "National Ratification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The Decision Validating Russia's Incorporation of Crimea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ision of 19 March 2014, No. 6-P," *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 12, Issue 2, p. 369; Juergen Bering, 2017, "The prohibition on Annexation: Lessons from Crimea,"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49, Issue 3, p. 758; Christina Luo, 2019, "Creating Strangers in Their Own Land: Settlements as De Facto Annexation in Palestine and Tibet,"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7, Issue 2, p. 418.

34 정인섭, 1999, 「통일과 조약승계」,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213쪽.

35 T. J. Lawrence, 1909, *op. cit.*, p. 50.

한다.³⁶ 다만, 실효적 지배가 선점의 요건 중 하나인 정착과 동의어는 아니었다. 북극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비행기와 무선통신 설치를 통해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⁷

근대 시기에는 ‘영토에 대해 실효적 지배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면 불완전한 권원만 부여되며, 이후 합리적인 시간 내 실효적 지배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영토에 완전한 권원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영토에 대한 추정적 포기로 간주되어 권원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후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즉, 일단 영토에 완전한 권원이 부여되고, 일정 기간 내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영토에 대한 권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범위에 관해서도 논의되었다. 영국의 법학자 트래버스 트위스(Travers Twiss)는 ‘한 국가가 어떤 국가를 발견하고 이를 통치하면, 그 국가는 정착지의 독립과 안보에 필수적인 자연경계를 넘어 발견한 국가 전체를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영미권의 오랜 견해이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한 국가는 평시에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영토를 선점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즉, 국가는 실질적으로 선점하거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실효적 지배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³⁹

36 Bardo Fassbender and Anne Peters, 2012, *op. cit.*, pp. 239~240.

37 David Hunter Miller, 1925, *op. cit.*, p. 56.

38 John Westlake, 1904, *op. cit.*, p. 103.

39 Amos Shartle Hershey, 1912, *Essentials of International Public Law*, Macmillan Co., pp. 187~188.

III. 1928년 이전, 실효적 지배

1. 주요 사건

1) 블라마 섬 사건

포르투갈과 영국 사이에서 발생한 1870년 블라마 섬 사건은 실효적 지배의 문제를 다루었다. 블라마 섬에 대한 포르투갈의 영유권 주장은 1446년 이 섬을 발견한 이후,⁴⁰ 1500년대 후반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섬에서 목재를 벌목하면서 시작되었다.⁴¹ 블라마 섬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었다. 1699년 이전에 블라마 섬의 원주민 부족인 비아파레스(Biafares)가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또 다른 원주민 부족 비사고스(Bissagos)는 비아파레스를 블라마 섬에서 몰아내고, 이 섬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비사고스는 블라마 섬 전체를 점유하지 못했고, 이 섬 일부인 농지를 경작하였다. 즉, 두 부족 모두 블라마 섬 전체를 점유하지는 못했다.

1792년 영국 해군과 영국 정착민들이 블라마 섬에 도착(arrival)하면서 이 섬의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다.⁴² 포르투갈은 1753년 4월 4일에 자국이 블라마 섬을 최초로 발견하고⁴³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당시 영국은 포르투갈이 국제법적 권위(international legal authorities)에 따라 블라마 섬 주권을 다른 국가에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정착이나 농지 경작도 이루어지지

40 블라마 섬은 볼라마 섬(Bolama)이라고도 한다. 블라마 섬은 서아프리카 서부의 대서양에 면한 기니비사우공화국 비사고스 제도의 일부이다. Charles Philip Snyder, 1939, "Jurisdiction and Polar Areas," *International Law Studies Series, US Naval War College*, Vol. 1937, p. 73.

41 Douglas Howland, 2019, "Sovereign Claims and Possessions—The Beginnings of the Territorial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Vol. 7, Issue 6, p. 74.

42 Douglas Howland, 2019, *Ibid.*, p. 74.

43 John Bassett Moore, 1898, *History & Digest of the Intl Arbitrations to Which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Party*,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1911.

않았다고 하면서 1753년 포르투갈의 공식적인 영유권 주장은 “공허한 의식(empty ceremony)”이라고 하였다.⁴⁴ 양국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869년 1월 13일, 미국 대통령 윌리시스 그랜트(Ulysses Grant)에게 중재자 권한을 부여하였다.⁴⁵

포르투갈은 블라마 섬을 발견한 이후 실효적 지배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⁴⁶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포르투갈은 1824년에서 1828년 사이에 자국민들이 블라마 섬 원주민들의 목재 벌목을 지원하였고, 원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⁴⁷ 둘째, 포르투갈은 1828년 블라마 섬의 카나바크(Canabacs) 족장 데미안과 비아파레스 족장 리오그란테가 그들 스스로 포르투갈의 속국이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셋째, 포르투갈은 1829년까지 블라마 섬에 병영(barracks)과 기타 공공건물을 건설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포르투갈은 1830년에 자국민들이 블라마 섬 양쪽 강둑에 정착촌을 설립하였고, 해당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 700여 명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이 포르투갈 국내법에 따라 지배를 받았다고 하였다. 즉, 포르투갈은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이 포르투갈 식민지 개척자들이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다섯째, 포르투갈은 블라마 섬에 자국과 교류했던 수많은 공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⁴⁸

이에 대해 영국은 카나바크 족장 데미안과 비아파레스 족장 리오그란테의 1828년 선언이 반야만적인 사람들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포르투갈의 주장에 반박하였다.⁴⁹ 아울러 영국은

44 Douglas Howland, 2019, *op. cit.*, p. 74.

45 John Bassett Moore, 1898, *op. cit.*, p. 1914.

46 다만, 이 사건 판정에서는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지속적인 선점(continued occup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는 실효적 지배와 동일한 의미로 사료된다.

47 United Nations, 2007,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XXVIII*, United Nations, p. 135.

48 John Bassett Moore, 1898, *op. cit.*, pp. 1911~1912; United Nations, 2007, *Ibid.*, p. 135.

49 John Bassett Moore, 1898, *Ibid.*, pp. 1911~1912.

노예무역을 위한 목적으로 포르투갈인이 블라마 섬에 정착했다고 하였다.⁵⁰ 그 밖에도 영국은 1830년 포르투갈인들이 블라마 섬을 점령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영국 간 분쟁이 1834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⁵¹

영국은 1792년, 1827년 두 개의 증서(조약)를 근거로 블라마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 두 개의 증서를 통해 블라마 섬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포르투갈에 대한 다양한 적대 행위를 통해 이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는 것이 영국 주장의 핵심이다.⁵² 아울러 영국은 블라마 섬의 카나바크 족장 자롤렘과 벨초어가 ‘블라마 섬과 인근 특정 영토를 공식적으로 영국에 양도하였고, 이후 영국인들이 이 섬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1793년까지 이 섬에 거주했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주장에 따르면, 카나바크 족장은 1792년에 블라마 섬을 양도하는 조약을 영국과 체결하였다. 영국은 자국이 블라마 섬 영유권을 양도받은 조약을 체결한 해인 1792년에 275명의 영국인이 블라마 섬에 이주하여 정착했으며, 이후 1814년에 시에라리온 총독이 영국인 6명의 블라마 섬 정착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이 블라마 섬에 재정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이 섬에 영국인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정착촌이 형성되었으나, 1816년 이웃 섬에서 온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인해 정착촌이 붕괴되었다고 하였다.⁵³

영국은 1827년에 블라마 섬의 주권과 본토를 영국에 양여한다는 내용의 할양조약을 원주민 부족인 비아파레스와 한 번 더 체결했다고 주장하였다.⁵⁴ 포르투갈은 이 할양조약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나, 영국은 이 조약 체결의 목적이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⁵⁵ 아

50 United Nations, 2007, *op. cit.*, p. 135.

51 John Bassett Moore, 1898, *op. cit.*, p. 1909.

52 John Bassett Moore, 1898, *ibid.*, p. 1913.

53 John Bassett Moore, 1898, *ibid.*, pp. 1912~1914.

54 United Nations, 2007, *op. cit.*, p. 135.

55 Douglas Howland, 2019, *op. cit.*, p. 74.

올러 영국은 1827년 할양조약을 통해 블라마 섬 소유자들로부터 양여받았던 권원이 자국의 일시적인 포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영국은 자국의 중위인 켈렛(Kellett)이 1839년 블라마 섬에 정착한 포르투갈 선박을 나포하고 이 선박에 탑승한 노예들을 체포하면서 포르투갈 국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때 블라마 섬이 자국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1860년 당시 블라마 섬 인구가 714명이었는데, 이 중 포르투갈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1814년에 시에라리온 총독이 영국인의 정착 허가증을 발급한 사실은 곧 포르투갈과 영국 사이에서 블라마 섬 영유권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은 1839년 켈렛의 행위와 영국의 공고문 게시에 대해 자국이 즉각 항의했다고 주장하였다.⁵⁷

결국, 블라마 섬 사건의 중재자는 영국이 원주민 부족인 비아파레스와 체결한 1827년 할양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⁵⁸ 포르투갈이 블라마 섬을 발견한 이후에 이 섬을 지속적으로 선점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⁵⁹ 포르투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⁶⁰

이 사건에서 잘 나타나듯이, 당시 유럽국가들은 영유권 취득을 위해 해당 영토 원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영유권의 근거로서 포르투갈이 주장한 실효적 지배와 영국이 주장한 할양조약 모두 블라마 섬 원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당시 실효적 지배를 위해 해당 영토 원주민 지도자가 자국에 복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한편, 프랑스와 영

56 John Bassett Moore, 1898, *op. cit.*, pp. 1909~1914.

57 John Bassett Moore, 1898, *ibid.*, pp. 1909~1914.

58 United Nations, 2007, *op. cit.*, p. 136.

59 United Nations, 2007, *ibid.*, p. 134.

60 John Bassett Moore, 1898, *op. cit.*, p. 1910.

국은 무역, 군사동맹의 목적뿐만 아니라,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으로 서 원주민과의 조약 체결을 택했다고 하였다.⁶¹ 그러나 블라마 섬 사건에서는 영토 권원의 근거로서 할양조약 체결보다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였다.

2) 델라고아 만 사건

포르투갈과 영국 간의 분쟁인 1875년 델라고아 만 사건 역시 실효적 지배의 문제를 다루었다.⁶² 이 사건의 당사자인 포르투갈은 16세기에 자국 항해자들이 델라고아 만을 최초로 발견한 이후, 자국민들이 이곳을 수시로 방문했으며 17세기와 18세기에도 이 만의 다양한 지점들을 선점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델라고아 만에 무역기지를 건설하고, 델라고아 만 전체와 거래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⁶³ 이에 반해 영국은 포르투갈의 정착과 상관없이 1823년에 델라고아 만 원주민과 체결한 할양 조약을 근거로 델라고아 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결국, 프랑스 대통령 루이 아돌프 티에르(Louis Adolphe Thiers)가 이 분쟁의 중재를 담당하게 되었고, 후임자인 파트리스 드 마크마옹(Patrice de MacMahon)이 1875년 7월 24일에 중재 판정을 내렸다.

델라고아 만 사건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델라고아 만 사건에서 중재자는 발견이 불완전한 권원임을 확인하였다. 델라고아 만 사건의 중재자는 해당 영토를 소유하려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선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중재자는 일국의 대표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발견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점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국가의 영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⁶⁴ 다만, 중재자가 이 사건에서 언급한 발

61 Douglas Howland, 2019, *op. cit.*, p. 75.

62 델라고아 만은 모잠비크 해협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마푸토 만(Maputo Bay)이라고 한다.

63 A. P. Sprague, 1875, "Modifications Required in the Law of Nations, and the Conformity of Municipal Law to International Obligations," *Law Magazine & Review and Quarterly Digest of All Reported Cases*, Vol. 1, Issue 1, p. 132; United Nations, 2007, *op. cit.*, p. 160.

64 A. P. Sprague, 1875, *ibid.*, pp. 134~135.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견이 영토 권원 취득을 위한 별도 방식으로 간주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영토의 선점과 관련하여 발견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간주되었는지는 판정문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⁶⁵

다음으로, 델라고아 만 사건의 중재자는 블라마 섬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원주민이 체결한 할양조약이 아닌 포르투갈의 실효적 지배를 델라고아 만의 영토 권원으로 인정하였다. 중재 과정에서 영국은 포르투갈이 델라고아 만에 대한 실효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중재자 역시 영국이 델라고아 만 원주민과 할양조약을 체결했던 19세기 초반에 델라고아 만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한이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재자는 포르투갈이 16세기 초 발견 및 점유를 통해 델라고아 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일시적인 권한의 중단만으로는 영토 권원을 폐지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영국이 델라고아 만 원주민과 체결한 할양조약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⁶⁶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중재자는 주변국이 델라고아 만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원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 사건은 영토 취득 시 주변국의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⁶⁷

2. 실효적 지배 관련 영토의 권원

1) 발견

국제법 초기에는 미지의 땅에 대한 발견(discovery)이 국가 소유권의 주요 근원이자,⁶⁸ 대표적인 영토의 권원이었다. 1797년에 발견된 바텔(Emer de

65 Moritz Holm-Hadulla, "Delagoa Bay Arbitra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ssl.oca.korea.ac.kr/display/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122?rskey=qP0pZW&result=1&prd=MPIL> (검색일: 2024.4.1), para. 5.

66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op. cit.*, pp. 160~161.

67 Edwin Dewitt Dickinson, 1933, "Editorial Comments [com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Issue 1, p. 132.

68 David Hunter Miller, 1925, *op. cit.*, p. 55.

Vattel)의 『국가들의 법(Law of Nations)』에 따르면, 항해사들이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 섬이나 사막 국가를 발견하면 자국의 이름으로 해당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을 존중받았다고 하였다.⁶⁹ 이후 팔마스 섬 사건의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선임되었던 막스 후버는 영토 취득을 위한 상징적 행위가 없다고 해도 육지 혹은 섬이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상징적 행위나 활동에는 국기 게양, 예포 발사, 십자가와 같은 기념물이나 상징물 건설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⁷⁰

대략 19세기 이전 시기에는 국가가 영토를 발견하면 해당 국가에 영토 소유권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는 단순히 영토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영토에 대한 충분한 권원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다.⁷¹ 근대 국제법에서 완전한 권원을 창출하려면 영토를 발견한 이후 선점과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⁷² 즉, 발견은 불완전한 권원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영토 권원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⁷³ 다만, 발견이 해당 영토에 대한 타국의 정착 또는 식민화를 제한하는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견해는 있었다.⁷⁴

2) 무주지 선점

무주지 선점은 19세기 후반에 국가들이 영토를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법적 방법 중 하나였다.⁷⁵ 무주지(*terra nullius*)는 선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선점이 무주지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선점은 무주지 취득을 의미하였다. 국제법상 무주지란, 처음부

69 Emer de Vattel, 2008, *The Law of Nations*, Liberty Fund, p. 214.

70 Surya P. Sharma, 1997, *op. cit.*, pp. 40~47.

71 Moritz Holm-Hadulla, *op. cit.*, para. 5.

72 John Westlake, 1904, *op. cit.*, p. 102.

73 Amos Shartle Hershey, 2012, *op. cit.*, p. 188; David Hunter Miller, 1925, *op. cit.*, p. 55.

74 Amos Shartle Hershey, 2012, *Ibid.*, p. 188.

75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5*, paras. 79~80.

터 어떤 국가에 귀속되어 본 일이 없거나 국가가 버린 영토를 의미하였다.⁷⁶ 그러나 역사적으로 무주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국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춘 종족 또는 민족이 거주한 영토도 무주지로 정의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⁷⁷ 이후 1975년 서사하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실행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춘 종족 또는 민족이 거주하는 영토는 무주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⁷⁸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 영토가 무주지로 간주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영토에 거주자가 있다고 해도 해당 지역은 주인 없는 영토로 정의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밝혔다.⁷⁹ 즉, 과거 강대국들은 어떤 영토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해도 국가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주인 없는 영토로 판단하고 무주지로 간주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무주지 선점은 강대국이 19세기에 영토를 취득하는 근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주지 선점은 ‘국가가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⁸⁰ 또한, 팔마스 섬 사건과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도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때 해당 도서가 무주지에 해당하는지 선결적으로 검토한 후, 무주지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의 실제적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고 하였다.⁸¹ 따라서 무주지 선점의 충족 요건은 ‘국가가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76 김대순, 2022, 앞의 글, 1052쪽.

77 오시진, 2016, 「무주지 선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근대 국제법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45호, 50쪽.

78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5*, para. 80.

79 오시진, 2016, 앞의 글, 50쪽.

80 김대순, 2022, 앞의 글, 1053~1054쪽.

81 박기갑, 2000, 「도서 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지배 내지 점유 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45호 제2호, 104, 112쪽.

의사'와 '국가 권력의 실제적 행사', "실효적 지배"로 정리할 수 있으나, 이 요건이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3. 베를린 회의에서 논의된 실효적 지배 관련 내용

근대 시기, 영토 취득을 위한 절차로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영국 법학자 바론 스토웰(Baron Stowell)은 "사실의 통지(notification of the fact)"를 영유권의 세 번째 요소라고 하면서, 통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강대국과의 명시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⁸² 아프리카 부족들은 당시 국제법 주체인 유럽국가와 국제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선점은 문명국 사이에서 유효한 영토 권원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유럽국가들이 영토를 선점하려면 원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주민을 정의롭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885년 베를린 의정서는 각 서명국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새로운 영토를 취득할 경우, 다른 서명국에 통지하도록 적시하였다. 통지에는 항상 "특정 한계의 결정(a certain determination of limits)"이 수반되어야 했으며, 통지가 완료되면 실효적 지배가 시작되었다.⁸³ 이와 같이 1885년 베를린 의정서에 따라, 아프리카 연안에 한해 실효적 지배 원칙이 명시적으로 승인되었다.⁸⁴

1884~1885년에 개최된 베를린 회의에서 허구적인 선점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효적 지배 원칙을 채택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의 등장이었다. 세력권은 이 회의에서 실효적 지배 원칙 채택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고도 해당 영토를 선

82 David Hunter Miller, *op. cit.*, p. 55.

83 T. J. Lawrence, 1909, *op. cit.*, pp. 51~52.

84 John MacDonell, 1899, "Occupation and Res Nullius," *Journal of the Society of Comparative Legislation*, Vol. 1, Issue 2, p. 280.

점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한 국가가 어떤 지역에 대한 세력권을 주장하면, 그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를 때까지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세력권은 예비적인 선점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력권의 개념에서 예비적인 선점의 의미는 사라졌고, 일부 국가는 영토의 일체성(integrity)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영토를 대상으로 세력권을 설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⁸⁵

IV. 1928년 이후, 실효적 지배 관련 판례

1. 실효적 지배의 요건

1) 클리퍼턴 섬 사건

1931년 클리퍼턴 섬 사건은 멕시코와 프랑스 사이에서 발생했던 분쟁이다. 멕시코는 1896년에 자국을 식민지배했던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했다는 점,⁸⁶ 1897년 12월 13일에 자국이 클리퍼턴 섬으로 포함(砲艦)을 과점했다는 점, 멕시코 장교 및 병사들이 이 섬에 상륙하여 미국 국기를 내리고 멕시코 국기를 게양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⁸⁷ 아울러 멕시코는 스페인이 이 섬의 소유권을 자국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⁸⁸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단독 중재재판관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Vittorio Emanuele) 3세는 스페인이 클리퍼턴 섬을 발견했다는 증거가 없으

85 Thomas Barclay, 1917,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with Appendices*, Sweet and Maxwell, p. 70.

86 1821년, 멕시코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Todd Jay Parriott, 1986, "Territorial Claims in Antarctica: Will the United States be Left Out in the Cold,"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Issue 1, p. 83.

87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932, "Arbitral Award on the Subject of the Difference Relative to the Sovereignty over Clipperton Island,"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2, p. 392.

88 Todd Jay Parriott, 1986, *op. cit.*, p. 83.

며, 설령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클리퍼턴 섬에 대한 주권을 정당하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⁸⁹ 아울러, 이 섬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에 있다고 해도, 멕시코의 실제적인 국가 권력 행사는 자국의 국기를 클리퍼턴 섬에 게양하는 상징적인 행위뿐이었기에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⁹⁰

프랑스 역시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클리퍼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중재재판관은 프랑스의 무주지 선점 선언이 영유권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프랑스 해군 대위는 1858년 11월 7일에 클리퍼턴 섬을 발견하였고,⁹¹ 무주지 선점을 선언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11월 20일에 클리퍼턴 섬을 떠난 프랑스 해군 대위는 이 섬의 발견 사실을 호놀룰루에 위치한 프랑스 영사관에 통지하였고, 프랑스 영사관은 12월 8일에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폴리네시아(The Polynesian)』이라는 저널에 클리퍼턴 섬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알리는 영문광고를 게재하였다.⁹² 이후, 1887년 말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 섬에 대해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 시기까지 클리퍼턴 섬에 거주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⁹³

즉, 프랑스는 앞에서 살펴본 근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인 발견을 시작으로 무주지 선점을 선언하였고, 다른 강대국에 이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후 이 섬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1897년 11월 24일, 클리퍼턴 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구아노를 채취하고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소재 인산염 회사 소속의 미국인 세 명이 프랑스 함

89 Steven Wei Su, 2005,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Tiaoyu/Senkaku Islands: An Updat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6, Issue 1, p. 50.

90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932, *op. cit.*, pp. 392~393; 역사적 권원에 대해서는 박현진, 2014, 「영토분쟁과 권원 간 위계-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지배의 권원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는총』 제59권 제3호, 120~121쪽 참조.

91 Edwin Dewitt Dickinson, 1933, *op. cit.*, p. 132.

92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932, *op. cit.*, pp. 391~392.

93 Edwin Dewitt Dickinson, 1933, *op. cit.*, p. 132.

대를 보고 미국 국기를 게양했을 때, 프랑스 해군 태평양 정찰대 중 한 명은 이 세 명을 추방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였다.⁹⁴

이에 대해 중재재판관은 프랑스가 1858년 당시 무주지인 클리퍼턴 섬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주권 행사 없이 해당 섬을 발견하는 것은 불완전한 권원일 뿐이며, 국가가 해당 영토의 권원을 취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하였다.⁹⁵ 그러나 중재재판관은 1858년 프랑스 해군이 클리퍼턴 섬에 상륙한 이후, 프랑스 영사관이 하와이 정부에 이 섬에 대한 발견과 주권을 통지하고, 이 사실을 신문 및 잡지에 공시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주권 주장에 항의한 행위는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즉, 중재재판관은 실효적 지배의 필수요건을 하나 또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현실적인 점유로 간주한 것이다.⁹⁶ 아울러 프랑스가 1887년까지 이 섬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는 이 섬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섬의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지가 분명했다고 하였다.⁹⁷ 또한,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완성된 영토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⁹⁸

마침내 중재재판관은 1858년 무주지인 클리퍼턴 섬에 대한 프랑스의 선점이 실효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프랑스는 이 섬에 대한 권원을 취득했다는 판정을 내렸다.⁹⁹ 추가적으로 중재재판관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실제적 행사의 방법으로서 해당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이 지역의 법을 규율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의 창설을 강조하였다.¹⁰⁰

94 미국에 해명을 요구한 이 사건을 계기로 클리퍼턴 섬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야기되었다.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932, *op. cit.*, p. 392.

95 Clipperton Island case(Mexico v. France), 28 January 1931, *Reports o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II*, (이하, '클리퍼턴 섬 사건'), p. 1110.

96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932, *op. cit.*, pp. 391~393.

97 Steven Wei Su, 2005, *op. cit.*, p. 50; Laurent Mayali & John Yoo, 2018, "Re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The Case of Dokdo,"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Issue 3, p. 542.

98 Edwin Dewitt Dickinson, 1933, *op. cit.*, p. 132.

99 클리퍼턴 섬 사건, p. 1110.

100 Charles G. Fenwick, 1948, *International Law*, Appleton-Century-Crofts, p. 351.

2) 동부 그린란드 사건

1933년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는 분쟁 당사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동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PCIJ는 양 분쟁 당사국이 누가 더 상대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했는지에 따라 해당 영토의 주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PCIJ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국가 권력의 실제적 행사를 통한 권원의 계속적·평화적·실제적 표시’로 제시하였다.¹⁰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덴마크가 주장한 실효적 지배는 발견, 무주지 선점, 통지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PCIJ가 동부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실효적 지배로 간주했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IJ는 덴마크가 제출한 역사적 자료, 특히 18세기에 동부 그린란드와 관련된 교역 관련 입법 조치, 영토 관련 법 제정, 거주민 처벌 기록을 명백한 주권 행사 형태 중 하나로 보았다.¹⁰²

둘째, PCIJ는 1814년부터 동부 그린란드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여 타국과 체결한 다수 조약의 입법적·행정적 규정에 이를 적용했다는 덴마크의 주장에 대해 덴마크가 식민화 지역뿐만 아니라 비식민화 지역을 포함한 전체 그린란드 지역에 권원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충분히 표시했다고 판단하였다.¹⁰³ 즉, PCIJ는 덴마크가 체결한 양자 및 다자 조약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덴마크의 의지와 의도를 충분히 보여 준다고 인정하였다.¹⁰⁴

셋째, PCIJ는 1921~1931년 동안 덴마크가 동부 그린란드와 관련된 입

101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PCIJ Report Series A/B, No. 53(1933)*(이하, ‘동부 그린란드 사건’), pp. 45~46.

102 *Ibid.*, p. 48.

103 동부 그린란드 사건, pp. 44, 52, 54, 68~69; 제성호, 2006, 「동부그린란드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묵인의 법리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3쪽.

104 PCIJ는 덴마크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또는 다른 문서에서도 타국이 그린란드 주권을 주장했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PCIJ 재판부는 여러 조약에서 덴마크의 주권이 승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부 그린란드 사건 pp. 23, 68~69.

법 및 행정조치를 채택하였으며, 덴마크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하였다.¹⁰⁵

노르웨이는 동부 그린란드 영유권의 근거로 무주지 선점 선언을 주장하였다. 노르웨이 사냥꾼들은 1931년 6월에 동부 그린란드 일부를 점거한 이후, 이곳을 몇 차례 탐험하였다.¹⁰⁶ 노르웨이는 같은 해 7월 10일 동부 그린란드에 대한 무주지 선점을 선언하였다.¹⁰⁷ 이에 대해 PCIJ는 노르웨이의 선점 선언과 관련 조치는 기존의 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¹⁰⁸ 이 사건에서 PCIJ는 덴마크가 노르웨이에 비해 더 강력한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해당 영토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2. 실효적 지배의 정도

클리퍼턴 섬 사건 관정에 따르면, 영토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 권력 행사의 정도는 높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국가가 해당 영토에 사법기구를 설립했을 때 국가 권력 행사의 정도가 충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클리퍼턴 섬 같이 작고,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가 1858년에 이 섬을 선점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주권을 선언한 것만으로도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중재재판관은 프랑스가 1858년에 클리퍼턴 섬을 취득했다는 관정을 내렸으며, 실효적 지배가 요구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기도 하였다.¹⁰⁹

105 동부 그린란드 사건 pp. 63~64; Mineitcirô Adatci, 1938,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 *World Court Reports: A Collection of the Judgments Orders and Opinions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Vol. 3, p. 195.

106 동부 그린란드 사건, p. 42

107 Lawrence Preuss, 1932, "The Dispute Between Denmark and Norway over the Sovereignty of East Greenlan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Issue 3, p. 481.

108 Charles G. Fenwick, 1948, *op. cit.*, pp. 45~46.

109 클리퍼턴 섬 사건, p. 1110; Charles G. Fenwick, 1948, *op. cit.*, p. 351.

1933년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도 PCIJ는 그린란드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렵고, 기후조건이 가혹하여 사람이 정착하기 어려운 영토이기에, 국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시켜야 하는 타당성에 관해 설명하였다.¹¹⁰ PCIJ는 실효적 지배가 반드시 현실적·물리적인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지역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가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PCIJ는 1931년까지 덴마크 이외 국가가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접근이 어렵고 거주민이 없는 그린란드에 대한 지속적·적극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였다. PCIJ는 그린란드처럼 인구가 희박하고 정주민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곧 실효적 지배라고 하였다.¹¹¹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전후,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전, 실효적 지배의 문제를 다룬 블라마 섬 사건과 델라고아 만 사건을 검토하였다. 블라마 섬 사건은 영토 취득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라는 법적 절차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할 때 주로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블라마 섬 사건에 중재가 도입되면서 법 관련 언급이 증가했다고 한다.¹¹² 이처럼 영토 취득 관련 법적 절차 도입의 시발점이 된 블라마 섬 사건과 이후 델라고아 만 사건의 중재자 모두 할양조약 체결보다 실효적 지배를 더 강력한 영토 권원으로

110 동부 그린란드 사건, pp. 45~46, 50.

111 동부 그린란드 사건, p. 46.

112 Douglas Howland, 2019, *op. cit.*, p. 74.

인정하였다.

영토 취득의 방식에 관한 역사적 논의를 검토했을 때, 실효적 지배는 근대 국제법에 따라 인정된 영토의 유효한 권원이었던 무주지 선점과 직결되었다.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발견, 무주지 선점 선언, 통지가 선행되었다. 그러나 이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발견 이후 무주지 선점 선언 없이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통지는 베를린 회의에서 당시 강대국이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영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 필수 요건이었다. 블라마 섬 사건과 델라고아 만 사건에서 통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지는 실효적 지배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팔마스 섬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다만, 1931년 클리퍼턴 섬 사건에서는 베를린 회의 개최 이전 시점이었던 1858년 당시 프랑스 해군 대위가 클리퍼턴 섬 발견 사실을 호놀룰루에 위치한 프랑스 영사관에 통지했고, 프랑스 영사관은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폴리네시아인』 지에 클리퍼턴 섬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알리는 영문광고를 게재했는데, PCA는 이와 같은 프랑스 행위를 클리퍼턴 섬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도 통지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통지가 영토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발견, 무주지 선점 선언, 통지 절차 없이 실효적 지배만으로도 영유권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대략 19세기부터는 발견만으로 영유권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 권력의 실제적 행사로 구현되는 실효적 지배가 영토 취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에도 영유권 취득의 강력한 기준으로서 실효적 지배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1933년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는 발견, 무주지 선점 선언,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만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PCIJ는 무주지 선점 선언을 주장한 노

르웨이와 아닌 역사적으로 지속된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제시한 덴마크에 영유권을 부여하였다.¹¹³ 이처럼 PCIJ는 어떤 국가가 해당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갖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비교적 그 증거가 분명한 최근 현상을 중심으로 국가 권한의 시현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입장은 20세기 초반 이후의 각종 영토분쟁 판례에서도 지속되었다.¹¹⁴ 그 결과, 오늘날 영토분쟁 관련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권한 행사의 상대적 우열을 판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제재판소는 실효적 지배가 요구되는 정도는 낮다고 하면서 예외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즉, 면적이 좁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인구가 희박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작은 상징적인 활동만으로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클리퍼턴 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실효적 지배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기도 하였다.¹¹⁵ 이처럼 실효적 지배는 대상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일반 지역과 주민이 거의 없는 황무지나 극지, 상당수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113 Douglas Howland, 2019, *Ibid.*, pp. 45~46.

114 *Minquiers & Ecrehos case(France/U.K.)*, *Judgment*, *I.C.J Reports 1953*, pp. 53, 55~56;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Judgement*, *I.C.J Reports 2001*, pp. 674~686.

115 클리퍼턴 섬 사건, p. 1110; Charles G. Fenwick, 1948, *op. cit.*, p. 351.

참고문헌

- 김대순, 2022, 『국제법론』 제21판, 서울:삼영사.
- 박기갑, 2000, 「도서 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지배 내지 점유 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45호 제2호.
- 박현진, 2014, 「영토분쟁과 권원 간 위계-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지배의 권원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 오시진, 2016, 「무주지 선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근대 국제법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45호.
- 정인섭, 1999, 「통일과 조약승계」,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 제성호, 2006, 「동부그린란드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목인의 법리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 최철영, 2014, 「로마법상 무주지 개념과 실효적 지배를 통한 국가영역확득」, 『성균관법학』 제26권 제1호.
- Adatci, Mineitcirô, 1938,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 *World Court Reports: A Collection of the Judgments Orders and Opinions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Vol. 3.
- Barclay, Thomas, 1917,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with Appendices*, Sweet and Maxwell.
- Bering, Juergen, 2017, "The prohibition on Annexation: Lessons from Crimea,"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49, Issue 3.
- Dickinson, Edwin Dewitt, 1933, "Editorial Comments [com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Issue 1.
- Fassbender, Bardo and Anne Peter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 Fenwick, Charles G., 1948, *International Law*, Appleton-Century-Crofts.
- Hamid, Abodul Ghafur, 2006, *Public International Law: A Practical Approach*, Pearson Prentice Hall.
- Hershey, Amos Shartle, 2012, *Essentials of International Public Law*, Macmillan Co.
- Howland, Douglas, 2019, "Sovereign Claims and Possessions-The Beginnings of the Territorial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Vol. 7, Issue 6.

- Lawrence, T. J., 1909, *Handbook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ition, Macmillan and Co.
- Luo, Christina, 2019, "Creating Strangers in Their Own Land: Settlements as *De Facto* Annexation in Palestine and Tibet,"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7, Issue 2.
- MacDonell, John, 1899, "Occupation and Res Nullius," *Journal of the Society of Comparative Legislation*, Vol. 1, Issue 2.
- Mälksoo, Lauri, 2002, *Illegal annexation and state continuity: the cas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Baltic states by the USSR*, Humboldt University Berlin.
- Mayali, Laurent & John Yoo, 2018, "Re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The Case of Dokdo,"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Issue 3.
- Miller, David Hunter, 1925, "Political Rights in the Arctic," *Foreign Affairs*, Vol. 4, Issue 1.
- Moore, John Bassett, 1898, *History & Digest of the Intl Arbitrations to Which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Party*,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uzov, Ilya, 2016, "National Ratification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 The Decision Validating Russia's Incorporation of Crimea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ision of 19 March 2014, No. 6-P," *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 12, Issue 2.
- Oppenheim, Lassa, 1905, *International Law-A Treatise*, 1st edition, Longmans, Green & Co.
- Parriott, Todd Jay, 1986, "Territorial Claims in Antarctica: Will the United States be Left Out in the Cold,"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Issue 1.
- Preuss, Lawrence, 1932, "The Dispute Between Denmark and Norway over the Sovereignty of East Greenlan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Issue 3.
- Sharma, Surya P., 1997,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 Snyder, Charles Philip, 1939, "Jurisdiction and Polar Areas," *International Law Studies Series, US Naval War College*, Vol. 1937.

- Sprague, A. P., 1875, "Modifications Required in the Law of Nations, and the Conformity of Municipal Law to International Obligations," *Law Magazine & Review and Quarterly Digest of All Reported Cases*, Vol. 1, Issue 1.
- Su, Steven Wei, 2005,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Tiaoyu/Senkaku Islands: An Updat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6, Issue 1.
- United Nations, 2007,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XXVIII*, United Nations.
- Vattel, Emer de, 2008, *The Law of Nations*, Liberty Fund.
- Westlake, John, 1904,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판례

1) 상설중재재판소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 USA), 4 April 1928, Reports o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II.

Clipperton Island case (Mexico v. France), 28 January 1931, Reports o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II.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Judgment, P.C.I.J Report 1933,

3) 국제사법재판소

Minquiers & Ecrehos case (France/U.K.), Judgment, I.C.J Reports 1953.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5.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Judgment, I.C.J Reports 2001.

기타문서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932, "Arbitral Award on the Subject of the Difference Relative to the Sovereignty over Clipperton Island,"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2.

Moritz Holm-Hadulla, "Delagoa Bay Arbitra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ssl.oca.korea.ac.kr/display/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122?rskey=qP0pZW&result=1&prd=MPIL> (검색일: 2024.4.1).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1928년 팔마스 섬 사건이 제시한 실효적 지배는 근대 시기 영유권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단독 재판관 막스 후버(Max Huber)가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창조해 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을 도입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전 국제사회의 논의와 학설, 블라마 섬 사건과 델라고아 만 사건을 통해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추적하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근대 시기의 실효적 지배 개념의 발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의 실효적 지배는 당시 영토의 유효한 권원이었던 무주지 선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발견을 시작으로 무주지 선점, 통지, 이후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졌으나, 이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실효적 지배는 영토 취득의 강력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클리퍼턴 섬 사건과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를 낮게 요구하였고,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주제어〉

실효적 지배, 팔마스 섬 사건, 블라마 섬 사건, 델라고아 만 사건, 클리퍼턴 섬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ABSTRACT

Effective Control Before and After the 1928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Lee, Seo Hee

(Senior Researcher, Korea Maritime Institute)

Effective control, the most potent standard for determining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modern era, was first articulated in the landmark 1928 Island of Palmas case. The case, widely recognized as establishing modern territorial law, defined effective control as “the continuous, public and peaceful 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rough international debate and scholarly analysis, this study meticulously traces the origins of the concept of effective control before the 1928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by examining the Island of Bulama Arbitration, Delagoa Bay Arbitration, and vividly describes its dynamic evolution in the modern era. The findings reveal that effective control, long associated with th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was a legitimate source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shift in the understanding of effective control, which traditionally followed discovery, occupation of *terra nullius*, and notification. However, the absence of any of these elements did 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effective control serving as the basis for a claim.

From the mid-to-late 19th century onward, effective control—as embodied in the actual exercise of state power—became a crucial foundation for sovereignty. Since the 1928 Island of Palmas case, the level of effective control mandated by international tribunals in cases such as the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and Eastern Greenland case has been minimal, allowing for the consideration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Nevertheless, effective control has evolved into a significant criterion for territorial acquisition, underscoring its relevance and importance in modern territorial law.

Keywords

Effective control,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The Island of Bulama Arbitration, Delagoa Bay Arbitration,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Eastern Greenland Case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오승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투쟁
- III.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부정 논리
- IV.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론적 쟁점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일본 정부가 ‘이승만 라인(Syngman Rhee Line)’으로 지칭하는 ‘평화선(Peace Line)’에 대한 불인정 또는 부정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¹ 한국의 평화선 선포와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논리를 부정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평화선 선포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고, 해양경계설정의 주체와 정당화에 대한 부정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해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는 이른바 평화선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해양주권’ 선언이고 ‘평화’선이지만,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 ‘이라인(李ライン)’으로 명명한다. 1952년 초 ‘어업보호수역안(漁業保護水域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을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 확대, 수정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 의결을 거쳐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행사한다.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또는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셋째,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 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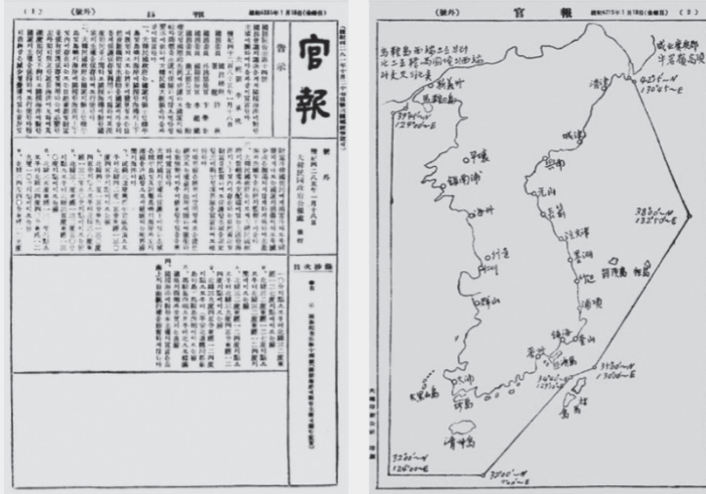
* 논문 투고일: 2024.4.11, 심사 완료일: 2024.5.31, 게재 확정일: 2024.6.3.

* 이 논문은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AHF-2023-기획연구-02).

1 이 글에서는 가끔적 명칭을 평화선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다만, 일본 측의 자료를 직접 인용하고, 일본의 주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승만 라인’으로 표기한다.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및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넷째, 인접 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그림 1〉 국무원 고시 14호와 이승만 라인³

* 출처: 동북아역사넷.

평화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그 의미를 분석해 왔다. 한국과 일본, 미국의 외교사료를 바탕으로 해양법 발전과정의 단계에서 국제법적, 정책적, 역사적 연구⁴들을 추적해 왔다. 평화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면적이고 중첩적이다.⁵ 평화선 자체가 어족자원의 보호와 영해권 설정의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평화선」, 『한국대백과사전』.

3 동북아역사넷, 2024, 「『평화선』 선언과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독도」,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ddok_d_0004_0080_0030 (검색일: 2024.4.10).

4 송희영, 2021,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논거 비판」, 『일본근대학연구』 71, 333쪽.

5 신용욱, 2012, 「『평화선』 획정 과정의 논리 전개와 그 성격」, 『史叢』 76, 97~142쪽.

의미를 갖고 있었고, 한일회담 과정에서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⁶ 일본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으로서 한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주권 선언이었다.⁷ 일본과 여러 쟁점이 충돌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평화선은 한국이 인접해양에 대한 이익을 보전하고 독도 영유의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취한 자위권적인 조치였다.⁸

평화선은 '이승만을 극렬히 비판하는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승만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1950년대는 제국주의 전후 처리의 과도기에서 새롭게 해양 레짐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였다.¹⁰ 당시의 국제법과 규범, 원칙 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결국 평화선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인해 종료되지만, 한일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평화선은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발간하는 독도 관련 연구서에서도 독도를 분명하게 한국 측 영토로 주장하고 구체적인 경계를 제시했던 한국 측 입장으로 제시되고 있다.¹¹ 물론 일본은 이승만 라인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역시 부정하기 위해 언급하고 있지만, 분명 한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주장했던 명시적인 근거로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앞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축적해 온 국제법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을 통해 밝혀낸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종론적 관점에서 인정/부정 논의를 집중 분석한다.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 클라크 라인(Clarkline), 이

6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李鍾元, 1996, 『東아시아冷戰と韓米日關係』,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등.

7 조윤수, 2008,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28, 119~223쪽.

8 홍성근, 2015, 「평화선 선언과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이해」, 『독도연구』 제18권, 167~192쪽.

9 이택선, 2021, 『우남 이승만 평전』, 서울: 이조, 174쪽.

10 신용옥, 2012, 앞의 글.

11 近藤康男, 1975, 『近藤康男著作集 第11卷 日本漁業經濟論』, 東京: 農山漁村文化協會.

승만 라인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이에 대한 부정 근거, 그에 대한 한국의 주장과의 상호 반박 과정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일본 국회의사록에 기록된 이승만 라인 관련 발언, 참의원법제국에서 발간한 자료인 『이승만 라인과 조선방위수역』,¹² 일한어업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이라인 문제와 일본의 입장』¹³ 등 주요 1차 사료들과 관련 연구서,¹⁴ 신문 기사 등을 검토하여 이승만 라인에 대한 쟁점을 재구성하여 살펴본다. 이 글을 통해 평화선 선포 7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평화선이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고, 향후 논란이 예정되고 있는 한일 간 해양경계 획정 문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II.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투쟁

일본은 평화선을 어떠한 논리로 부정하는가? 이 글에서는 인정보다 부정 개념에 보다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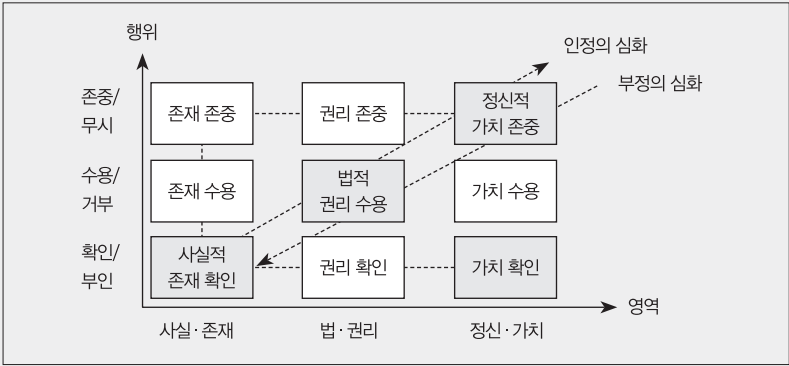
악셀 호네트(Axel Honneth)는 인정(Anerkennung)과 무시(Missachtung) 개념을 바탕으로 인정투쟁(Kampf um Anerkennung) 논의를 발전시켰다. 호네트가 사용한 ‘무시’ 개념은 영문 저서에서는 ‘disrespect’로, 한글로는 무시, 불인정, 비인정, 부정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라는 주체가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인정 행위, 인정되지 않는 비인정 상태, 아

12 參議院法制局, 1954, 『李承晩ラインと朝鮮防衛水域』, 東京: 參議院法制局.

13 日韓漁業対策本部(編), 1953, 『李ライン問題と日本の立場』, 東京: 日韓漁業対策本部.

14 특히 부정 논리에 관한 연구로는 최장근, 2017, 「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 『日本文化學報』, 73, 31~51쪽; 최장근, 2016,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과 “미일행정협정”의 모순적 주장에 대한 검증」, 『일본근대학연구』, 52, 247~269쪽; 최장근, 2012,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불법성 주장의 부당성 논증-평화선 선언 직후의 일본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54, 445~464쪽; 최장근, 2011, 「일본 정부의 “이승만라인 철제”의 본질 규명-일본의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국회의사록 분석」, 『일어일문학연구』, 76(2), 331~349쪽이 있다. 또한 어업협정 평화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윤수, 2008, 앞의 글; 이승진, 2021, 「전후 일본 신문 미디어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표상 고찰-1945~65년까지의 시기에 주목하여」, 『日本學』, 55, 251~276쪽 등이 있다.

직 인정되지 않은 미인정 상태, 무시, 적극적인 거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림 2〉 인정-부정의 개념

출처: 오승희, 2023, 『동아시아인정투쟁』, 서울대출판문화원, 9쪽.

오승희의 연구¹⁶에서는 호네프의 인정의 단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인정과 부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적 존재확인, 법적 권리 수용, 정신적 가치 존중으로 단계화해서 인정의 세분화를 시도했다. 이 글에서는 인정의 반대로서의 부정 역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부정의 단계를 사실과 존재를 ‘부인’하거나, 법적 권리를 ‘거부’하거나,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여기서 부정은 불인정, 비인정, 미인정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주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선’을 선언했다. 평화선을 선언하자 일본 정부는 1월 24일 외무성 정보문

15 악셀 호네프 저, 문성훈·이현재 역, 2012,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사월의 책, 249 쪽; 독일어 원문은 Axel Honneth, 1994,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영어 번역본은 Axel Honneth,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Cambridge, UK: Polity Press 참조.

16 오승희, 2023, 『동아시아 인정투쟁』, 서울대출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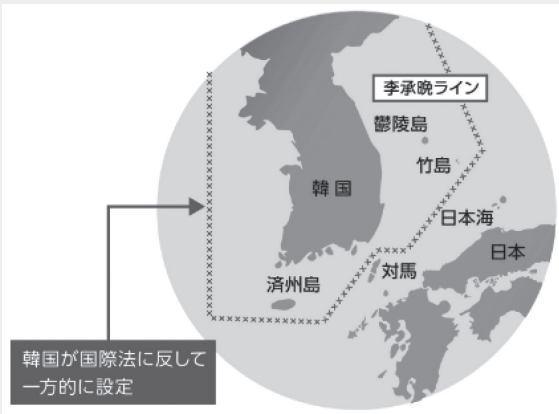
화국장 담화로 항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28일부로 구상서를 통해 정식으로 한국 측에 항의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이승만 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⁷

1. 1952년 1월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해양주권 선언’을 통해 국제법에 위배되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 안쪽의 광활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다케시마를 이 라인 안에 포함시켰다.
2. 1953년(쇼와 28년) 3월,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재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한국인도 다케시마 및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 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어민들에게 다케시마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던 한국 공안에 의해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3. 이듬해인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해안경비대 주둔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죽도 주변을 향해 중이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에서 총격을 받아 한국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4. 한국 측은 현재도 계속해서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면서 숙소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다.
5.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 긋기이며,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점거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해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행위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 나라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한국 측이

17 外務省, 2024, “『李承晩ライン』の設定と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senkyo.html (검색일: 2024.4.10).

독도를 둘러싼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할 때마다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그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일본은 ‘이승만 라인’ 또는 ‘이라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독도가 포함된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에 반한 일방적인 설정’이라는 것이다. 이승만 라인은 공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 긋기이고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법에 기반한 법적 쟁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도덕과 규범을 강조하는 일본의 정치적 레토릭 외교의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일본 외무성의 ‘이승만 라인’ 설명

* 출처: 外務省, 2024, “『李承晩ライン』の設定と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

일본 시마네현의 ‘웹죽도문제연구소’에서는 ‘이승만 라인’으로 인해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¹⁸

1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18,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동북아역사재단, 2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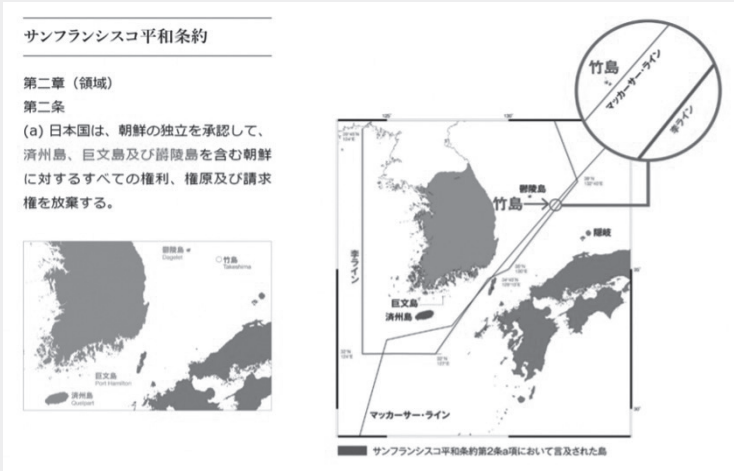
일본과 한국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1952년 1월 18일,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양주권 선언(이른바 이승만 라인 선언)을 발표하며 다케시마가 이승만 라인에 포함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후 한일 양국은 서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조사단 파견과 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항의 등이 계속되어 왔는데, 1954년 한국은 무장요원을 상주시켜 다케시마를 점거했습니다. 1960년 12년간에 걸친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양국 간의 대화도 진척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되어 국교가 정상화되었지만, 기대했던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강조하고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기에 일본 영토라는 점을 그림으로 제시한 뒤, 이승만 라인을 설명한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여 공해상의 광범위한 해역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독도를 이라인 안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제주도 남쪽 어장을 중심으로 이 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일본인 선원들이 억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설명한다.¹⁹

이러한 문제 인식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 선언이 공해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평화선과 독도 영유권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음도 강조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한 10가지 쟁점’ 중 9번째 쟁점은 “한국은 공해상에 국제법에 위배되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

19 内閣官房, 2024, "平和条約署名、李承晩ライン", <https://www.cas.go.jp/jp/ryodo/taiou/takeshima/takeshima02-05.html> (검색일: 2024.4.10).



〈그림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승만 라인에서의 독도문제

* 출처: 内閣官房, 2024, "平和条約署名, 李承晩ライン".

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였다”라는 것이다.²⁰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계발하고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 국내외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일본 대사관의 대외 발신과 유식자나 보도 관계자의 초빙 및 파견, 동영상과 팸플릿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스마트폰 앱의 작성 및 배포 등에 힘써 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선을 둘러싼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존재, 권한, 가치 차원에서의 부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법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논쟁이 표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층적 차원에서 다양한 부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역시 감정에 호소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과 부정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

20 外務省, 2024, “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日本の一貫した立場”,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검색일: 2024.4.10).

점은 특히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일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과 부정의 주체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이 갖는 특징과 한계에 대해 다음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I.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부정 논리

1. 존재 부정: 일방적 위법 선언

우선 평화선의 존재 부정 논리를 살펴본다. 먼저 명칭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 즉 한국에서는 ‘평화선’으로 명명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선언한 불법경계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승만 라인’ 또는 ‘이라인’으로 통용된다.

평화선이 선포되자마자 일본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된 조치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제시하는 맥아더 라인, 클라크 라인 등 관련 근거들 역시 합법적이지 않으며 이승만 라인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1955년 일본 중의원 본회의 질의에서 제기된 이승만 라인과 맥아더 라인, 클라크 라인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이승만 정권의 국제 관행을 무시한 이승만 라인 설정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21 赤路友藏, 1955, “第2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9号” 昭和30年12月14日”, <https://kokkai.ndl.go.jp/txt/102305254X00919551214/15> (검색일: 2024.4.10).

나도 자명한 이 사실을 감히 감추고 평화선이라 칭하며, 심지어 이를 침범하는 자는 포격, 격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무모함을 서슴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 점을 일단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49년 8월 15일, 당시 연합국 측에 의해 맥아더 라인이 설정되었고, 1952년 1월 19일, 이승만 라인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해 4월 28일, 아시다시피 맥아더 라인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27일, 다시 미국 정부에 의해 방어선이라며 클라크 라인이라는 것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클라크 라인의 설정이 이승만을 통해 휴전선이 한국의 방어선, 혹은 평화선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백수) 일본 정부의 요구가 있든 없든, 당연히 미국 정부의 책임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승만 라인은 물론 맥아더 라인, 클라크 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국제법에 반하게 ‘이승만 라인’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광대한 어업관할권 주장과 동시에 일본영토인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고, 한국은 이승만 라인으로 독도를 취득, 점유했다는 것이다. 맥아더라인은 ‘단순한 일본 점령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일방적인 지령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맥아더 라인도 일본의 요청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측 영역이 확장된 것이었다.²² 맥아더 라인

22 맥아더 라인은 1945년 11월 30일 1차 맥아더 라인 확장, 1946년 6월 22일 2차 맥아더 라인 확장(SCAPIN 1033호), 1949년 9월 19일 3차 맥아더 라인 확장(SCAPIN 2046호)으로 재설정되며 일본 측 범위가 확대되었다. 홍성근, 2015, 앞의 글, 175쪽.

의 소멸과 강화조약의 제9조²³에 의한 희망하는 연합국과의 어업협정교섭 문제는 '상호 관련 없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²⁴

일본은 클라크 라인은 방위수역(sea defense zone)으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의 것이며, 그 목적은 조선 연안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 국제연합군의 보급선을 확보하고 전시금제품을 밀수하거나 적스피아가 한국 영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고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인해 클라크 라인의 폐지가 예상되면서 다시 이승만 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 방지를 위한 성격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한국은 일본만이 아닌 북한과의 경계설정에서도 평화선을 강조하고 있었다.

일본은 평화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승만 라인과 맥아더 라인과 클라크 라인과 연계성을 분리한다. 한일 간 어업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평화선이 아닌 한일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한일 어업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일회담의 주요 과제로 평화선 문제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일회담이 쉽게 타결되지 않으면서 실존하는 평화선에 대한 괴리와 이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한 요구에도 대응해야 했다. 이승만 라인의 존재는 부정하지만, 이승만 라인에 근거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2. 권한 부정: 국제법 위반

권한 차원에서의 평화선 부정 근거를 살펴본다. 앞서 다룬 내용이 이승만 라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권한 부정은 이승만 라인이 적용될

2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9조, 일본은 공해상의 어업의 규제나 제한, 그리고 어업의 보존 및 발전을 규정하는 양자 간 및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는 연합국들과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

24 參議院法制局, 1954, 앞의 글.

수 없도록, 권한을 부정하는 논의에 해당한다. 주로 법적 성격과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평화선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설정인 동시에,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불법 점거로 인해 독도에 대한 모든 조치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 레짐과 규범에 기반하여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당시 일본이 주장한 국제법은 ‘공해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나라들이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해양 자유의 원칙이다. 1609년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인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제시한 개념으로, 공공재인 자연(해양, 물, 공기, 빛, 태양 등)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영국이 북해를 소유하려고 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양 무역을 독점하고자 하는 시도를 제한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국가들이 해양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배타적 주권을 주장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1945년 미국 근해의 대륙붕 천연 자원에 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고, 이어 다른 국가들도 해양경계를 설정하면서 해양경계의 법제화 필요성이 높아졌다.²⁵ 이에 따라 1958년 4월 29일 개최된 제1차 UN 해양법회의에서 대륙붕조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이 등장한다.²⁶

한국이 주장한 평화선은 1945년 대륙붕과 연안어업 보호에 대한 트루먼 선언과 1947년 칠레의 200해리 영해 선언을 선례로 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1952년 남미 국가들의 산티아고(Santiago) 선언, 1970년의 몬테비데오(Montevideo) 선언과 리마(Lima) 선언이 관행으로 이어졌다. 1972년, 케냐는

25 정민정, 2020,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의원법조사처 연구보고서 1714호.

26 오승희·박창건, 2022, 「중일 대륙붕 경계획정의 정치적 함의: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5(2), 83~109쪽.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전체 자원은 연안국의 것이라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제안했다. 이는 대륙붕에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의 지지를 얻어 국제관례가 되었고, 1982년 5월 유엔해양법협약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국제법화 되었다.²⁷

당시 일본은 트루먼 선언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의 선언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평화선이 국제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1945년 9월 28일에 발표된 트루먼 선언 중 수산업보존수역에 대한 내용에서 미국영해에 근접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미국민만이 출어하는 수역에 대해 배타적 어업권을 요구하고, 다른 국가의 국민도 함께 출어하는 수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지한다. 즉 트루먼 선언은 타국이 출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협정에 의해 합의에 근거하여 어족보존의 조치를 구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일본 어업의 기득권을 무시하여 폐쇄적 어업수역을 설정한 이승만 라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²⁸

중남미 국가들의 선언에 대해서는 대륙붕에 관한 것으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의 3개국은 200해리까지 공해에 주권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트루먼 선언의 내용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국제법의 현단계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이 공해에서의 어족 보존조치를 취하는 구역, 접속수역, 대륙붕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접속수역에 배타적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공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권 독점은 불가능하며 독점적 어업은 영해 내에서만 허가되는 것으로 공해의 어업은 자유롭다고 반론한다.²⁹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서는 이승만 라인 발표 당시 미국이 이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문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27 배규성, 2013,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일본문화연구』 47, 235쪽.

28 參議院法制局, 1954, 앞의 책 6~9쪽.

29 參議院法制局, 1954, 위의 책, 6~7쪽.

의 해양주권 선언이 모든 국가에 인정되는 공해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선언이 허용될 경우 어느 국가든 일방적으로 선언을 발동하여 공해를 영해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 등을 지적하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외교사료관의 문서를 소개한다.

나는 미합중국 정부가 이 포고령의 조항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고려하고 있음을 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고문이 집행된다면, 이 포고문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 의해 공해로 간주되어 온 넓은 해양 지역을 대한민국의 배타적 관할권과 통제권 내에 두게 될 것이며, 이 수역과 상공에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항행을 대체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주권의 행사에서 그러한 통제권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항의 면책조항이 미국 정부의 우려를 경감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주권 주장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에서 파생된 권리 아니라 대한민국에 부여된 특권으로 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잘 확립된 국제적 선례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선언이 한국 주권의 확장에 대한 합법적 선례로 인정될 수 있는 국제법상 인정된 원칙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1945년 9월 28일 미합중국 대통령이 대륙붕의 자원 및 인접 공해 어업의 보존에 관한 미국의 정책에 관하여 발표한 두 개의 선언과는 달리, 한국 선언은 그 선언에 명시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국가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두 개의 미국 선언문은 기존 미국 영해의 확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밑줄은 필자)

일본은 이승만 선언은 접속수역을 부당하게 확장하고 접속수역에서 배타적 어업권을 주장하고, 이를 폐쇄적인 어업구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해자유의 원칙을 강조하고, 어족 보존을 이유로 폐쇄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관계국들 간의 협의가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가치 부정: 나포와 억류

평화선이 선포되자 처음에는 일본 어선의 침범 조업이 적었으나, 몇 개월 후 다시 급증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선포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³⁰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1952년 9월 20일 ‘ABC 라인(日本警備區域線)’을 설정하여, 자국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이처럼 평화선 선포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본 어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정부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승만 라인이 시행되면서 한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넘어온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나포된 어선의 어부들은 ‘불법 어로 활동’을 죄목으로 한국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이후에도 평균 10개월 정도의 추가 수용소 생활을 거친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³¹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어민들을 가족과 생이별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수용소에 억류한 것은 비인도적인 조치였다고 비판한다.³²

1965년부터 200해리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도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 및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는 지금까지의 경위로 법 적용 제외를 하였습니다.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앞의 글.

31 日韓漁業協議會(編), 1968, 『日韓漁業對策運動史』, 東京: 日韓漁業協議會, 140~156쪽(최영호, 2016, 『평화선』 침범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한일관계사연구』 55, 360쪽에서 재인용).

32 최영호, 2016, 위의 글, 377쪽.

이에 따라 1965년 미국, 소련방이 200해리 수역을 설정하면서 양국 수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들이 어장을 잃고 1천 톤에서 2천 톤이 넘는 대형 트롤 어선들이 대거 우리 고장이지만 홋카이도 주변 수역으로 몰려와 연중 조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장 경합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홋카이도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구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1천 톤에 달하는 대형 트롤 어선의 조업으로 명태 등 저어자원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어장 파괴를 초래하는 등 그동안 어업인들은 오랜 세월 부당하게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혼슈의 일본해 측 등에서도 오랜 한국 어선의 위반조업과 자원관리를 무시한 무모한 조업으로 인해 많은 어구피해를 입는 등 큰 영향을 받음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이 전국적인 어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어선에 대해 200해리 배타적 수역을 즉시 적용하도록 큰 운동을 전개해 온 바 있습니다.

(밑줄은 필자)

일본 참의원법제국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승만 라인 선언을 ‘국가 의 복지와 방위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해안선에 접속하는 대륙봉에 그 심도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접속수역에 천연자원의 관리보호지구를 설정하고, 여기에 주권을 행사한다’는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정리한다.³³ 이승만 라인 문제에서 접속수역과 대륙봉 논의에 기반한 어업과 자원 문제로 초점을 두었다.³⁴ 일본 어민의 피해를 부각시킴으로써 이승만 라인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주장한 ‘주권 선언’의 탈식민주의적 정당성을 약화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한국 측에 보낸 구상서에 대해, 한국 측이 1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접속수역의 주권은 국제적 선례가 있고, 맥아더 라인은 다른 국제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한국이 설정한 보호수역은 일본인과 마

33 參議院法制局, 1954, 앞의 책, 1쪽.

34 參議院法制局, 1954, 위의 책, 3쪽.

찬가지로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며, 보호수역은 영해의 확장이 아니라, 점, 접속수역의 지위는 국제법상 확립되고 있고 접속수역에서 어업의 절대적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선박의 자유항행은 보증한다는 점을 밝혔다. 2월 8일 한국은 다시 성명을 발표하여 접속해양상의 주권이라는 어구가 부정확한 표현이었다고 하고 주권의 요구를 철회하고 양국의 합의에 의해 공평하게 경계선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인 일한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2월 8일 성명에서 '주권'의 요구가 철회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해양주권 선언은 주권 선언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일한 양국의 합의 위에 인접수역에 천연자원보전조치와 배타적 어업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해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주권' 표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관할권을 의미하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평화선에 근거한 일본 어선 나포와 어민의 억류로 일본 사회에서의 평화선과 이승만 정부, 한국에 대한 부정론은 더욱 강화된다.³⁵ 한국의 '이라인'에 의한 불법나포, 주권침해, 폭력의 이미지가 강화된 것이다. '한일어업문제 해결촉진국민회의'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평화선의 주장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공해에서의 폭력행위를 정지해야 하며, 인도주의를 무시한 일본인 선원의 부당한 억류를 해제해야 하고 나포어선과 어획물을 반환해야 하고, 일본 정부가 출어하는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일 방위협정을 재검토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신속히 공정한 어업협정의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⁶

일본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한일어업협회에서는 『이라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이승만 라인으로 인해 인양될까 두려워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일본 어민들의 피해

35 内海愛子, 2010, 「李ラインと戦後日本人の韓国認識」, 内海愛子, 宮本正明外, 『(海の上の国境線)について考える』, 大阪: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최영호, 2016, 앞의 글.

36 조윤수, 2008, 앞의 글, 218쪽.

상황을 전달한다. 이라인은 일본어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공해상에 마음대로 주권을 선언하고 다른 나라 어선을 쫓아’내어 국제 질서와 일본 어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전례가 남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근해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밀무역이나 간첩행위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는 구실에 불과하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반일을 조성하고, 한일회담에서 유리한 위치에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에서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의 국적이나 대우,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 처분, 전쟁 전 조선에 있는 일본 선박의 문제, 양국 간 어업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식민지하에서의 일본에 부당하게 침해당해 온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고려는 나타나지 않고, 이라인으로 인해 선채, 어구, 어획물이 몰수당하고 승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음에 대한 부당함만 강조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 다시 회고된 이승만 라인에 대해 일본에서는 국교정상화까지 나포된 일본 어선은 300여 척이 넘었고, 억류된 승무원은 약 3,900명에 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⁷ 최근에는 1952년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약 4,000명의 일본 어부가 나포되고 8명이 사망했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본래 지불했어야 할 배상금을 일본이 1965년 협정시에 포기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³⁸

1950년대 이승만 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형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목이 <이승만 라인>이라는 라디오 드라마극도 있었다.³⁹ 작가는 우치무라 나오야(内村直也)로 방송일은 1959년 7월 29일이었는데 방송시간대가 변경되어 8월 5일로 조정되었다가 야구 경기 등을 이유로

37 近藤康男, 1975, 앞의 책, 247쪽.

38 松川るい, 2022, “第208回国会参議院予算委員会 第11号令和4年3月10日”, <https://kokkai.ndl.go.jp/txt/120815261X01120220310/72> (검색일: 2024.4.10).

39 内村直也, 1959, 『李承晩ライン(ラジオ劇場)』, 東京: NHK; めざら資源, 2024, “ラジオドラマ資源: 1959年放送記録”, <http://mezala.la.coocan.jp/radiodrama/rd1959.html> (검색일: 2024.4.10).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그림 5〉 '이승만 라인' 관련 라디오 드라마극 대본과 사진

* 출처: (위 왼쪽) 内村直也, 1959, 『李承晩ライン(ラジオ劇場)』, 東京: NHK. (위 오른쪽) “竹島: 「人の心 隔たりない」 「竹島」描くラジオドラマ脚本 県立図書館所蔵 1950年代執筆か / 鳥取, 『毎日新聞』, 2021.3.23. (아래) “[歩く聞く考える]李承晩ライン宣言70年 拿捕・抑留 悲痛な声を後世へ 写真家 川上讓治さん”, 『中国新聞』, 2022.1.22.

방송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보다 감정적으로 이승만 라인이 일본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부정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있는 무인도(人のいる無人島)〉라는 제목의 극에서는 1952년 한국이 주변 해역에 설정한 ‘이승만 라인’과 1953년 발생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한 달 전쯤 보안부 순시선이 총격을 당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1953년 돗토리현(鳥取縣)의 시민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드라마 대본으로, 이 역시 방송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⁴⁰ “인간의 마음은 정말

40 “竹島: 「人の心 隔たりない」 「竹島」描くラジオドラマ脚本 県立図書館所蔵 1950年代執筆か / 鳥取, 『毎日新聞』, 2021.3.23, <https://mainichi.jp/articles/20210323/ddl/k32/040/385000c> (검색일: 2024.4.10).

칸막이 같은 건 없어. 다만, 그것이 나라라는 이름의 울타리와 그리고 왜곡된 선입견이 인간을 지배하고 도량을 깊게 하고 있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여 이 드라마 대본을 오키노시마 정(隠岐の島町)의 주민들이 연기하는 낭독회를 개최하고 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그림책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거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으며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¹ 나포 억류된 선원들이 귀환했을 때의 사진들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일상 생활에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쟁점이 평화선의 부정 이유로 언급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어업협상에서 자국의 해양경계설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언급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피해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는 감정적인 대응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IV.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론적 쟁점

1. 정체성 괴리와 존재론적 안보

평화선을 둘러싼 한일관계를 분석하는 데 인정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들이 안전 보장과 번영을 위해 해양에서 자원을 얻으려는 접근에서

41 “竹島題材の幻のラジオドラマが朗読劇に”, 『産経新聞』, 2019.9.16,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916-EJPZUCQRXVPDDPDHBJGAQGCDF/> (검색일: 2024.4.10).

42 “李承晩ライン70年「苦難知って」帰還した漁船員の写真発見”, 『毎日新聞』, 2022.1.12, <https://mainichi.jp/articles/20220112/k00/00m/040/053000c> (검색일: 2024.4.10); “[歩く聞く考える]李承晩ライン宣言70年 拿捕・抑留 悲痛な声を後世へ 写真家 川上譲治さん”, 『中国新聞』, 2022.1.12, <https://www.hiroshimapeacemedia.jp/?p=114792> (검색일: 2024.4.10).

비교적 덜 중요하게 보이는 관념적인 가치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 대해 형성하고 있던 탈식민주의에 기반한 쟁점들은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탈식민과 주권 회복이라는 과제 속에 해당 쟁점들이 놓여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 간 인식의 괴리가 존재한다.

한국의 관념적인 접근에 대해 일본은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감정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국제법을 내세우며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자신과 구별한다.

이는 평화선, 독도문제, 영토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이 한국과 일본의 부정적 정체성의 회복과정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게 해양주권의 회복은 탈식민 과제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독도만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독립국가 정체성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1945년 일본은 패전국이 되어 6년간 연합국의 지배하에 놓였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드디어 독립국가로 회복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일본은 연합국과의 강화조약,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 등을 통해 전후처리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려고 했다. 미국과의 제한적 조건하에서의 전후 사회 개혁과 미일안보조약의 시작은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었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 놓인 미국이 설정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협상을 통해 확보해 나가야 했다.

여기에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에 기반한 생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국가로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1950년대 초반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 구성과 확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영토를 확보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의 의미를 넘어선다. 또한 독립국가로 전환된 국민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선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면, 한국

과 일본은 상대국의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국의 '탈식민 독립국' 정체성과 일본의 '탈패전국 독립국' 정체성 간 상호 이해에 이르지 못하고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괴리 속에서 해양주권과 어업권이 충돌했다.

한국이 '해양주권 선언'을 통한 식민지 정체성 극복과 주권 회복이라는 의미에 보다 집중했다면, 일본은 평화선 설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일본 어민의 억류로 인한 인도적 피해를 강조했다. 한국에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이권을 침탈하는 위협 이미지가, 일본에게 한국은 불법적 폭력 이미지가 남아 있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국제법적 근거 자료들이 제시되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형성되었다.

국민 여론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계 설정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어선 나포와 어민 억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도,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정부의 대응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긴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었다.

정부가 상대방에 대한 부정 논리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에 반일과 혐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평화선을 주지시키고 피해를 강조하며 혐한의 상징으로 발신해 온 부분도 있다. 한국 역시 반일과 반공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승만 라인인 식민지배 이후 주권회복, 한국의 어업자원 보호, 공산주의자 침입 방지라는 가치를 가진 행위였다. 무엇보다 평화선 선포 이후 이에 따른 집행은 한국이 독립한 이후 주권에 입각한 경계 설정과 이에 기반한 자국의 이익 행사였다. 일본 어민들이 왜 한국 연안에서 계속 조업하고 있던 것인가. 이는 식민지 시기 일본의 한국에서의 조업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한국 연안을 일본 관할권에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⁴³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해양주권 선언이 갖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⁴⁴ 논의에 따르면 국가들은 ‘연속된 자아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⁴⁵ 국가 정체성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체성을 안정화시켜 존재론적 안보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정체성 구성과정에서 신체처럼 기능한다(geo-body).⁴⁶ 국제환경과 질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이전부터 연속된 자아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론적 안보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일본과 한국의 ‘고유영토론’ 담론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고유영토’, ‘원래 우리 땅’이었던 독도는 국민을 응집시키는 국가 정체성에 연속된 지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안정감을 주는 존재론적 안보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이러한 지속된 연속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대국의 영유권 주장은 ‘위협적인 타자’로 인식됨으로써 다시 한 번 국가 정체성의 결집을 확보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면서 존재론적 안보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화선과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환기 독립국가의 국가 정체성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존재론적 안보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43 남기정, 2006, 「國民族主義の展開と日韓關係: 分析的研究のための試論」, 『일본연구논총』 24, 211~239쪽.

44 Robert D. Laing, 1969, *The Divided Self: An Existential Study in Sanity and Madness*, England: Penguin Books, pp. 41~43.

45 은용수·김성철, 2022,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의 동학: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미중경쟁」, 『국제정치논총』 62(2), 67~105쪽.

46 김진욱, 2020, 「주관적 경계선과 물리적 충돌: 중일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인정투쟁론적 접근」, 『지역과 세계』 44(4), 74쪽.

2. 미국에 의한 인정과 한미일 삼각관계

한국과 일본은 영토주권을 누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가? 인정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영토 주권의 인정은 타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국가건설(state-building)의 과정이자, 국가로서 실체를 유지하는 과정이다.⁴⁷ 평화선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정투쟁은 국가 건설과정에서 인정이 필요한 미국과 그리고 상호 간의 인정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주권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살펴본다. 평화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행정명령, 맥아더 라인, 클라크 라인, 트루먼 선언과 연계하고자 했고 일본은 이를 분리하고자 했다. 독도문제에서 항상 쟁점이 되어 왔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조의 변화 과정과 해석 논란 역시 미국에 대한 치열한 요구와 조정 과정이 이어졌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제외 과정 역시 미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이었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고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인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의 인정 여부를 중요시하면서도, 미국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한 불만과 부정이 나타난다. 일본은 맥아더 라인이 설정되었을 때도 초반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측에 보다 유리한 설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점차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 측 영역을 확장해 갔다.

맥아더 라인이 한국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강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위치를 강조하며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트루먼의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멕시코,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 등에서 채택한 유사한 선언, ‘클라크 라인’은 평화선과 권한의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정 발언도 나타

47 김진욱, 2020, 위의 글, 77쪽.

났다.

1953년 11월 4일 행정협정과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독도가 훈련 목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처분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항의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요구하며 한일 양자 간 관계가 부정적일 때는 미국은 미일관계와 한일관계 모두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애매모호한 전략을 취하며 미국 주도의 삼각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분석틀에 따르면,⁴⁸ 한일은 부정적인 관계이지만 한미, 한일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 로맨틱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편에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불개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안정적인 존재론적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대립할 때는 자신과 미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대방과 미국의 관계를 단절하고 부정하고자 한다. 상대방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미국을 두고 경쟁하는 로맨틱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과 미국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안정적 결혼관계(stable marriage)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한일 간 긍정적인 관계로 선회하여 삼자공존관계(menage a trois)로 변화할 수 있다. 때문에 평화선을 둘러싼 한일 간 인정 경쟁은 미국과 상대방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우선시되었다.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국제법에 기반한 이성적인 일본의 대응과 이에 대비되는 감정적이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한국이라는 틀이었다. 즉, '국제법에 기반한 일본'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이라는 구

48 Lowell Dittmer,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pp. 485~515.

도다. 한국이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영토 주장을 내세우면서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억지주장에 기반한 국제법 위반 국가라는 인식을 형성하면서 평화선, 더 나아가 독도 문제, 그밖에 한일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

일본 측 주장을 살펴보면, 일본이 평화선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평화선이 ‘일방적이고 국제법 위반’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평화선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평화선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평화선 문제만이 아니라 한일 간 갈등이 되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정 논리다. 일본은 한국이 특히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제법에 입각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본다.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감정적인 역사 문제가 아닌 냉철한 영토문제라는 점을 한국과의 논의에서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⁴⁹ 그리고 동시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을 부각한다.

일본은 법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논쟁이 표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존재-권한-가치의 다층적 차원에서 다양한 부정 양상이 나타났다. 일본 역시 한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호소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과 부정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일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

49 松原仁, 2006, “第164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18号 平成18年5月31日”, <https://kokkai.ndl.go.jp/txt/116403968X01820060531/76> (검색일: 2024.4.10).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표1) 한국의 평화선 인정 요구와 일본의 부정

인정/부정	일본	한국
사실·존재 차원	존재의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만 개인의 주장 • 일방적 설정 • 철회 요구 	존재의 존중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주권 선언 • 평화선
법·권한 차원	법적 권리 수용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행위 • 국제법적 무효 	법적 권리 수용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 행위 • 주권 행사
정신·가치 차원	정신적 가치의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나포, 어민 억류 항의 • 인권침해 비난 	정신적 가치 존중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배 이후 주권회복 • 한국의 어업자원 보호 • 공산주의자 침입 방지
인정 방식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규범	ICJ 회부 이유 없음
인정 권한	주권적 행위 + 미국, 국제사회	
인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협정 공해 자유의 원칙 • ABC 라인(日本警備區域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루먼,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 멕시코·페루·칠레·코스타리카 등 선언 • 클라크 라인
타결	한일 우호 협력, 한일어업협정 (1965 한일 당사자성에 기반한 국제규범 형성 및 적용)	

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정과 부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근대화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일본의 인정투쟁의 동기가 국제법 수호국, 국제법 준수 국가로 드러나고, 반면 타자로서의 한국은 국제법 위반국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로 대표되는 미국이 인정 부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드러난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고, 일본과 한국의 평화선과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정 부여 주체로서의 미국과 제한된 주권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인정 욕구는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일 간 외교 전략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형성과정이나 독도 폭격 사건 당시 미국의 독도 폭격 연습 통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인정을 갈구한다. 그러나 인정 주체였던 미국

은 한일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하게 대처하면서, 인정보다는 비인정 상태로 남겨진 문제들에 대한 한일 간 해석의 논란을 남겼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인정을 요구하며,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항의하고 요구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을 인정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국의 치열한 항의와 요구 끝에 결국 애매모호한 결과로 남겨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과정에서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과 부정의 주체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들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대로 한국은 국제법 위반국가인가. 1950년대는 해양법 관련 규정이 공백에서 채워져 가는 시기였다. 전관수역 12해리설은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와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수설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1977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국제법적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⁵⁰

평화선은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이 없었을 때 주변 국가의 수역 구분과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평화선 선포는 “당시 새롭게 변경된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조치였으며, 현재의 배타적 어업수역과 EEZ의 창설에 기여한 ‘법창설적 효력’을 지닌 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¹ 따라서 평화선 선언은 당대의 국제법에 부합했다고 일본의 부정 논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² 필요한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50 최영호, 2016, 앞의 글, 360쪽.

51 양재영·이윤철, 2018, 「평화선 논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30(2), 67~106쪽.

52 양재영·이윤철, 2018, 위의 글, 67~106쪽.

EEZ가 평화선보다 더 넓은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방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는 부정의 논리에 대항하여 당시의 국제법상의 공백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란 문제의 향후 과제로도 분석의 의미가 있다.

평화선이 선포된 1952년 시점은 아직 UN해양법회의의 관련 조약이 발표되기 전이다. 또한 제국주의 식민지배 이후, 일본의 경우에는 점령통치를 끝내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영토를 비롯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제도가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일본은 국제법과 규범의 준수뿐 아니라,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일본은 자국의 입장이 해양법과 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해양 레짐을 뒷받침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사와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위원 선출 등 국가적 차원의 인력과 재정적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심해저 질서 구축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BBNJ)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약속'에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⁵³

평화선 선포 이후 다양한 국제법과 규범이 형성되어 왔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 1972년 대륙붕협정,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한일 EEZ 경계 획정 문제 등이 존재했다. 특히 1974년 1월 30일 체결되었고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50년이 되는 2028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료 3년 전에 상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2025년 6월 종료 통보 시한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협조 거부로 공동개발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종료 통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동 개발 또는 신어업협정 등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53 外務省, 2021,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1/pdf/index.html>.

협이가 필요하다.⁵⁴

일본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해 논의를 해 오기는 했지만 공동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고, 2018년 5월에 수립한 해양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경계가 일부 미확정인 상황에서 일본의 법적 지위와 해양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⁵⁵

V. 맺음말

일본은 일방적 선언, 국제법 위반, 일본 어민·선박 등 피해를 강조하며 평화선을 부정해 왔다. 또한 한국이 주장했던 주권 선언의 의미와 국제법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부정해 왔다. 평화선은 결국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종료됐다. 결국 일본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던 평화선이 소멸한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선 선포가 가진 의미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 해양법과 규범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공간을 마련하였고, 한일 합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으며, 양국 간 협의로 어업 수역 및 경계획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전히 독도문제는 영토문제 및 해양 경계획정에 있어 양국 간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바 식민지로부터 독립 후 해양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의 의의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평화선을 둘러싼 담론을 인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들은 정체성과 결부된 자신의 주장을 상대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적극 원용하여 정당화하고자 했다. 국제 해양 규범이 형성

54 박창건, 2023,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아시아브리프』, 3권 17호.

55 石月英雄, 2021, “第204回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4号 令和3年2月19日”, <https://kokkai.ndl.go.jp/txt/120404889X00420210219/65> (검색일: 2024.4.10).

되고 변화하며 정립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을 해석하고 자국의 법률을 도입하여 영유권 및 주권적 권리를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의 정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⁵⁶ 이러한 정치성에 입각해 타국의 부정 논리에 대응하는 인정 논리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협상과 그중에서도, 국제규범을 형성으로의 영향력 강화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해양 경계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평화선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국제법과 규범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룰과 규칙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면서, 새롭게 필요한 국제규범의 개념과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어 있는 한중일 해양경계설정과 관련해서도 국제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만들어 가는 주체적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규범 설정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56 오승희·박창건, 2022, 앞의 글, 88쪽.

참고문헌

- 김진욱, 2020, 「주관적 경계선과 물리적 충돌: 중일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인정투쟁론적 접근」, 『지역과 세계』 44(4).
- 남기정, 2006, 「韓國民族主義의展開と日韓關係: 分析的 연구のための試論」, 『일본연구논총』 24.
- 동북아역사재단, 2019, 『일제침탈사바로알기01-일본의 거짓 주장 독도의 진실』,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18,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창건, 2023,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아시아브리프』 3권 17호.
- 박창건·윤석정, 2022,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대륙붕경계획정」, 『국제학논총』 제35집.
- 배규성, 2013,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일본문화연구』 47.
- 송휘영, 2021,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논거 비판」, 『일본근대학연구』 71.
- 신용옥, 2012, 「『평화선』 획정 과정의 논리 전개와 그 성격」, 『史叢』 76.
- 악셀 호네트 저, 문성훈·이현재 역, 2012,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사월의 책.
- 양재영·이윤철, 2018, 「평화선 논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30(2).
- 오승희, 2021, 「과거사를 둘러싼 인정투쟁: 일본 수상담화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국제정치논총』 61(2).
- _____, 2023, 『동아시아 인정투쟁: 패전국 일본, 분단국 중국, 식민지 한국의 국교정상화』,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 은용수·김성철, 2022,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의 동학: 미국의 대중강정책과 미중경쟁」, 『국제정치논총』 62(2).
- 이승진, 2021, 「전후 일본 신문 미디어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표상 고찰-1945~65년까지의 시기에 주목하여」, 『日本學』 55.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택선, 2021, 『우남 이승만 평전』, 서울: 이조.
- 정민정, 2020,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1714호.

- 조운수, 2008,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28.
- 지철근, 1992, 『수산 부국의 야망』, 서울: 한국수산신보사.
- 최영호, 2016, 「'평화선' 침범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한일관계사연구』 55.
- _____, 2021, 『국가와 인권의 관점에서 평화선을 다시본다』, 서울: 논형.
- 최장근, 2011,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철폐”의 본질 규명-일본의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국회의사록 분석」, 『일어일문학연구』 76(2).
- _____, 2012,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불법성 주장의 부당성 논증-평화선 선언 직후의 일본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54.
- _____, 2016,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과 “미일행정협정”의 모순적 주장에 대한 검증」, 『일본근대학연구』 52.
- _____, 2017, 「'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 『日本文化學報』 73.
-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평화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홍성근, 2015, 「평화선 선언과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이해」, 『독도연구』 18.
- 内村直也, 1959, 『李承晩ライン(ラジオ劇場)』, 東京: NHK.
- 日韓漁業対策本部(編), 1953, 『李ライン問題と日本の立場』, 東京: 日韓漁業対策本部.
- 日韓漁業協議會(編), 1968, 『日韓漁業対策運動史』, 東京: 日韓漁業協議會.
-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参議院法制局, 1954, 『李承晩ラインと朝鮮防衛水域』, 東京: 参議院法制局.
- 近藤康男, 1975, 『近藤康男著作集 第11卷 日本漁業經濟論』, 東京: 農山漁村文化協會.
- Dittmer, Lowel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 Honneth, Axel, 1994,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Cambridge, UK: Polity Press (독일어 원문: Axel Honneth, 1994,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 Laing, Robert D, 1969, *The Divided Self: An Existential Study in Sanity and*

Madness. England: Penguin Books.

Ringmar, Erik, 1996, "On the Ontological Status of the Stat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4).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넷, 2024, "‘평화선’ 선언과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독도",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ddok.d_0004_0080_0030 (검색일: 2024.4.10).

めざら資源, 2024, "ラジオドラマ資源: 1959年 放送記録", <http://mezala.coocan.jp/radiodrama/rd1959.html> (검색일: 2024.4.10).

川上貫一, 1953, "第17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5号 昭和28年11月4日", <https://kokkai.ndl.go.jp/txt/101703968X00519531104/152> (검색일: 2024.4.10).

内閣官房, 2024, "平和条約署名, 李承晩ライン", <https://www.cas.go.jp/jp/ryodo/taiou/takeshima/takeshima02-05.html> (검색일: 2024.4.10).

外務省, 2021,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1/pdf/index.html> (검색일: 2024.4.10).

外務省, 2024, "「李承晩ライン」の設定と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senkyo.html (검색일: 2024.4.10).

外務省, 2024, "「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日本の一貫した立場」",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 개의 포인트",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검색일: 2024.4.10).

石月英雄, 2021, "第204回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4号 令和3年2月19日", <https://kokkai.ndl.go.jp/txt/120404889X00420210219/65> (검색일: 2024.4.10).

石月英雄, 2021, "第204回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4号 令和3年2月19日", <https://kokkai.ndl.go.jp/txt/120404889X00420210219/63> (검색일: 2024.4.10).

吉川貴盛, 1998, "第144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1号 平成10年12月11日", <https://kokkai.ndl.go.jp/txt/114403968X00119981211/86> (검색일: 2024.4.10).

毎日新聞, 2021, "竹島: 「人の心, 隔たりない」 「竹島」描くラジオドラマ脚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 本, 県立図書館所蔵 1950年代執筆か / 鳥取”, <https://mainichi.jp/articles/20210323/dtl/k32/040/385000c> (검색일: 2024.4.10).
- 池田勇人, 1964, “第46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15号 昭和39年3月19日”, <https://kokkai.ndl.go.jp/txt/104605254X01519640319/14> (검색일: 2024.4.10).
- 赤路友藏, “第2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9号 昭和30年12月14日”, <https://kokkai.ndl.go.jp/txt/102305254X00919551214/15> (검색일: 2024.4.10).
- 松川るい, 2022, “第208回国会 参議院 予算委員会 第11号 令和4年3月10日”, <https://kokkai.ndl.go.jp/txt/120815261X01120220310/72> (검색일: 2024.4.10).
- 松原仁, 2006, “第164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18号 平成18年5月31日”, <https://kokkai.ndl.go.jp/txt/116403968X01820060531/76> (검색일: 2024.4.10).
- 産経新聞, 2019, “竹島題材の幻のラジオドラマが朗読劇に”,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916-EJPZUCQRXVPDDPDHBJGAQGCDFA/> (검색일: 2024.4.10).
- 新藤義孝, 2010, “第174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12号 平成22年4月14日”, <https://kokkai.ndl.go.jp/txt/117403968X01220100414/112> (검색일: 2024.4.10).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 정부가 ‘이승만 라인(Syngman Rhee Line)’이라고 지칭하는 ‘평화선(Peace Line)’을 부정하는 담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이 평화선을 일방적 선언과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일본 어민 및 선박에 대한 피해로 간주하며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 또한, 한국이 주장한 주권 선언의 의미와 국제법의 진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평화선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선포가 지닌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평화선 선포는 국제 해양법과 규범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한일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고, 양국 간의 어업 수역 및 경계 확정 협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 해양 규범이 형성되고 변화하며 정립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을 해석하고 자국의 법률을 도입하여 영유권 및 주권적 권리를 주장한다. 이 글을 통해 해양경계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정 투쟁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인정과 부정 논리로 활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의 정치성을 확인한다.

〈주제어〉

평화선, 이승만 라인, 해양경계, 부정, 독도

ABSTRACT

The Peace Line vs. The Syngman Rhee Line: An Analysis of Japan's Non-Recognition Discourse of the Peace Line

Oh, Seung Hee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non-recognition of the 'Peace Line,'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refers to as the 'Syngman Rhee Line.' Japan has consistently disregarded the Peace Line, viewing it as a unilateral declaration,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a source of harm to Japanese fishermen and vessels. Moreover, Japan has dismiss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proclaimed sovereignty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the Peace Line was officially terminated wit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its significance has been remained meaningful. The Peace Line established a political arena for consensus on international maritime law and norms, served as a negotiating tool in Korean-Japanese agreements,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discus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fishing zones and maritime demarcations. As international maritime norms are created, changed, and established, states interpret them in their favor and introduce their own laws to assert their territorial and sovereign rights. This study identifies the mechanisms of the struggl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maritime boundaries and territorial issues, and examines the political interests and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s that shape and change international law and norms, which are utilized as grounds for (non)recognition.

Keywords

Peace Line, Syngman Rhee Line, maritime delimitation, non-recognition, Dokdo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주변국’의 지정학과 해양패권
- III. 1950년대 일본의 국가전략과 평화선
- IV. 평화선에 대한 인식과 오인
- V. 맺음말

I. 머리말

1952년 1월 18일 평화선(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선포는 한국 스스로 만들어 낸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의 탄생을 의미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았다. 동시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언제든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했다.¹ 한편, 일본은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이라고 지칭하며 시마네현(島根縣) 어민들의 피해를 전면에 내세웠다. 평화선은 당시 약소국에 불과한 한국이 해양영토 주권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평화선은 국가 정체성을 해양국가로 확장시키며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지정학적 담론을 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후 제국으로부터 탈제국으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평화주의 국가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처럼 1945년 이후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각각 지정학적 전략을 모색했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평화선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본문에서는 첫째, 주변국의 시각에서 지정학적 국가전략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둘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국가전략[또는 그랜드전략(グランドストラテジー)]인 요시다 독트린의 안보전략을 검토하고 비무장노선과 경제우선주의 정책, 미일안보조약이 평화선과 독도 영유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경찰 예비대 창설과 일본 본토 4개 섬의 전수방위와 독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여 고찰한다. 셋째, 1950년대 일본이 내세운 지정학적 정체성으로서 평화주의와 평화선 불인정이라는 딜레마를 검토한다. 결론으로 1950년대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가운데 여전히 한반도와 독도에 대해서는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적 인식에서 벗

* 논문 투고일: 2024.4.30. 심사 완료일: 2024.6.1. 게재 확정일: 2024.6.3.

1 전재성, 2017, 「한미관계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이슈브리프』, EAI 동아시아연구원.

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 연구에서 평화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평화선과 독도 영유권, 어업문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지철근(1979)은 평화선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와 제정과정, 외무부와 수산국의 입장에 대해서 상세히 밝혔다. 최영호(2020)는 평화선 선포의 배경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가 과정을 분석했다. 최장근(2020)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맥아더리인의 어업수역결정을 독도 영유권과 결부하여 설명했다. 또한 최장근(2017)은 일본의 '평화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양재영·이운철(2018)은 1952년에 주목하여 평화선 선언에 대한 관련 국가 간 논쟁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²

평화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논의도 다수 이루어졌다. 배규성(2013)은 해양법의 발전으로부터 평화선이 지니는 국제법적 의의와 선언 과정을 제시했다. 정인섭(2006)은 평화선 선언의 배경과 내용, 해양관할권 확장 경향과 유엔 해양법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화선을 검토했다. 유하영(2020)은 1947년 학술조사대 파견과 1952년 평화선 선언을 통해 과도 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 독도에 대한 포기나 방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³

어업문제와 관련하여 최영호(2016)는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확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교했다. 한국 정부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주권 행사였던 반면 일본 정부는 비인도적인 조치였다고 보았다. 현대송(2016)은 한일 외교문서를 통해 선박문제가 어업과 평화선, 독도 문제와 착중되는 과정을 제시했다. 박창건(2014)은 GHQ-SCAP 자료를

2 지철근, 1979, 「평화선」, 범우사; 최영호, 2020,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 배경과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76호; 최장근, 2020, 「해방 직후부터 평화선 선언까지 '경계수역 변경'에 따른 독도·영유권에 미친 영향」, 『일어일문학』 85; 최장근, 2017, 「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 『일본문화학보』 제73권; 양재영·이운철, 2018, 「평화선 논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海事法研究』 30(2).

3 배규성, 2013,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일본문화연구』 47; 정인섭, 2006,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유하영, 2020,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2).

통해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변경된 과정을 추적하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했다. 광진오(2010)는 평화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정리하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조윤수(2008)는 1965년 한일 어업협상의 핵심 쟁점 사항으로 평화선에 주목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 문서를 통해 평화선 선포 배경과 과정을 분석했다. 김동하(2020)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을 제시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전후 일본의 어업협정 대책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들은 평화선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⁴

반면, 1965년 한일어업협정 이후 평화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일본에서 평화선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2024년 일본에서 검정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는 평화선에 대해 부정적인 기술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자유사(自由社)와 같이 우익 성향의 교과서에는 ‘이승만 라인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평화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 어민들이라는 내용으로 평화선을 비판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⁵ 이뿐만 아니라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평화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23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는 제18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함께 ‘다케시마’ 자료실에서는 특별전시로 ‘이승만 라인과 다케시마문제’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 내용은 ‘이승만 라인’에 대한 배경과 선언 내용, 일본 어업에 미친 영향과 어민들의 피해를

4 최영호, 2016, 『평화선』침범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한일관계사연구』 55; 현대승, 2016, 『한일회담에서의 선박문제: 어업 평화선 독도 문제와의 4중주』, 『한국정치학회보』 50(1); 박창건, 2014,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일본연구논총』 39호; 광진오, 2010, 『한국의 평화선과 일본의 대응한계: 일본의회 독도관련 속기록을 중심으로(1952~1953)』, 『일본문화학보』 제47권; 조윤수, 2008,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제28호; 김동하, 2020, 『한일 독도 영유권과 어업문제 연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52권.

5 2023년 검정통과 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역사, 공민 교과서 등에서 ‘이승만 라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2024.3.22;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더욱 노골화…강제 징용은 회색’, 『YTN』, 2024.3.22)

강조하는 포스터로 이루어졌다.⁶

이 글에서는 왜 평화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평화선에 대한 비판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주목할 점은 일본 내에서 평화선은 일본 어민들의 피해나 어업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선이 지닌 본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글에서는 평화선이 선포된 시점으로 돌아가 본래 평화선이 지닌 가치 즉, 국가전략으로서의 평화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해양영토에 대한 국가전략이 부재했으며 이는 제도적 미비로 이어졌음을 밝힌다. 반면, 한국에서는 비록 불안정한 정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선을 선언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과 독도 영유권을 국가전략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주변국'의 국가전략을 검토한다. 3장은 1950년대 일본에서 해양영토와 주변 섬에 대한 국가전략이 부재했음을 밝힌다. 4장은 일본 내 여론을 통해 평화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인이 확산되었음을 제시한다. 결론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평화선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밝힌다. 한국에서는 평화선이 해양영토 주권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⁷으로서 자리매김했다. 반면, 현대 일본에서는 지역 어업과 어민에 대

6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에서 개최한 제18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 특별전시의 전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52년 1월 18일,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해양주권 선언'(이른바 '이승만 라인 선언')을 발표했다. 독도 문제는 한국이 이승만 라인 내에 독도를 끌어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선언에서 벌써 70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한국은 독도의 불법점거를 지속하여 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점령 아래 어업허가구역인 맥아더 라인이나 연합국,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관계가 있으며 또 한일국 교정상화 교섭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지금도 독도문제나 어업문제의 형태로 꼬리를 잡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이승만 라인의 설정 배경과 선언의 부당성, 시마네현 내의 움직임,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 어업문제 등 그 후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2023년 2월 22일, 第18回 '竹島の日'記念特別展示, 「李承晩ラインと竹島問題」)

7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은 사회의 비예측적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역사적 전환'의 일부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결정적 분기점은 크고 불연속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평화선'이 등장한 이후 해당 선언이 한일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세, 해양영토 주권, 어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평화선'은 역사적 전환의 일부이자 결정적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한 피해를 강조하며 ‘평화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II. ‘주변국’의 지정학과 해양패권

1. 지정학과 ‘주변국’ 인식

지정학(geopolitics)이란 일반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정치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루돌프 헬렌(Rudolf Kjellén)의 저작인 『유기체로서의 국가(Staten som Lifsför)』(1916)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학의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은 위치와 공간이다. 지정학자들은 국경선의 확립과 중요 해상통로에 대한 접근,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고려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앨프리드 세이어 머헨(Alfred Thayer Mahan)은 전략요충지를 차지하고 제해권을 장악한 국가가 세계 해양 패권을 가진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머헨은 “해양세력은 지리적 위치, 영토의 크기, 물리적 접근, 국민과 정부의 성격, 국가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다. 머헨은 해양세력론의 시각에서 미국과 일본의 환동해를 둘러싼 제국의 팽창을 설명했다.⁸ 니컬러스 J.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은 강대국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질서로 보았다. 그는 미국과 다른 지역 간 세력 균형을 지정학적으로 분석했다. 스파이크먼은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 모두 반월지대(Rimland)를 기반으로 대륙과 해양에 진출했다고 보았다. 스파이크먼은 동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⁹ 유라시아를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 세계사가 달라진다는 이른바

8 배규성, 2018, 「환동해 국제관계의 역사와 지정학적 맥락」, 『獨島研究』 제24호, 163쪽.

9 신영환, 2021, 「중국의 협력적 대륙전략과 팽창적 해양전략: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지정학 이론을 중심으로」, 『中國研究』 第87卷, 186쪽.

‘심장지대(hertland)’론을 주장한 해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 역시 인류의 역사를 대륙과 해양 권력의 투쟁의 역사라고 보았다.¹⁰ 매킨더와 머헨 모두 아시아에서 일본이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¹¹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¹²

한 국가의 지정학적 전략(geostrategy)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지정학이 미치는 범위는 패권 국가의 전략을 통해 결정되었다. 패권 국가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배하는 국가와 떠오르는 국가 간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¹³ 패권 국가는 대륙과 해양 가운데 관심을 가지는 공간에 따라 대륙패권과 해양패권으로 나뉜다.¹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 영토 확장은 지정학적 전략에 부합했다. 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 권리이며 지정학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학은 이론적으로 침략전쟁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정학 연구는 지리적 공간과 국제관계를 바탕에 두고 해양과 영토에 관련된 정치권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리적인 환경이 정치, 군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다루나 최근에는 미시

10 매킨더는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심장지대로 불렀다. 그는 “동유럽을 지배하는 것이 심장지대를 지배하며, 심장지대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 섬을 지배하며, 세계 섬을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했다. (해퍼드 존 매킨더 저, 임정관 최용환 역, 2022, 『심장지대-매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 파주: 글항아리; 김원수, 2014, 『해퍼드 J. 매킨더와 영국의외교정책의 지정학-역사의 지리적 중심축과 관련하여-』, 『사회과학』 53(1), 132쪽).

11 이진일, 2016, 「전간기 유럽의 동아시아 인식과 서술-지정학적 구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61집, 94쪽.

12 배규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해는 한국 전쟁을 전환점으로 소련과 중국, 북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진영이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했다(배규성, 2018, 앞의 글, 192쪽).

13 Gilpin, Robert, 1988, “The Theory of Hegemonic Wa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8, no. 4, pp. 595~596.

14 Manship, H. Kaminer, 1964, “MAHAN'S CONCEPTS OF SEA POWER: A Lecture Delivered at the Naval War College on 23 September 1963,” *Naval War College Review* 16, no. 5, p. 19.

적인 요인에 주목하거나 지역, 정치 요소, 경제적 특성, 가치관, 문화,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⁵

한편, 강대국이 형성한 국제질서 가운데 주변국의 국가전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국제관계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국가전략으로 편승과 균형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첫째는 대두한 세력을 따를 것인가 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이다. 둘째는 균형(Balancing)으로 대외에 정당한 권력 균형을 형성하도록 동맹을 결성하거나 자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 외의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¹⁶

일본의 경우 패전 후 미국에 국가전략과 해양 안보를 의존하는 편승전략을 택했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수상은 국가전략으로 요시다 독트린을 성립시켰다. 요시다 독트린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며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다.¹⁷ 그러나 동시에 해양 국가로서의 입지도 고려했다. 요시다는 회고록에서 “일본은 해양국가로 해외와의 무역을 통해 9천만 국민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통상적 연결고리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하며 기술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깊은 미국과 영국 양국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이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의 문제는 아니다. … 요컨대, 일본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지름길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¹⁸

한국은 편승전략을 따르면서도 해양영토에 대해서는 균형전략을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영토에 대해서만큼은 강대국에 편승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들어 냈다. 평화선은 1965년에

15 최근 연구로는 김남은, 2023, 「근대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안보 인식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93; 신승휴, 2023,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63(3); 김용신, 2023, 「한반도의 집중과 개입·확산의 글로벌 지정학」, 『글로벌교육연구』 15(2) 등이 있다.

16 강봉구, 2005,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러-미 관계」, 『국제정치논총』 45(3), 264쪽.

17 田久保忠衛・太田正利・平松茂雄, 2000, 『日本外交の再点検: 検証「吉田ドクトリン」』, 時事通信社.

18 吉田茂, 2012, 『回想十年』, 中公文庫.

폐지되기까지 약 14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도 평화선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해로 포함시키는 데 매우 유의미한 선언으로 제시된다. 약소국으로 당연히 밴드웨거닝 전략을 따를 것으로 예상한 일본에게 '평화선' 선언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에서는 평화선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다.¹⁹

국가전략과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해양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가졌다. 국가전략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가 내세우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정체성은 국가의 가치와 성격을 말한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국가전략을 세우기 어려웠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인식은 오랜 기간 대륙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발표함으로써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에 대해 주목했다. 평화선을 통해 주권이 미치는 해양영토의 범위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독도를 평화선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반면 일본은 섬나라로 넓은 해양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정학적 인식은 대륙의 팽창에 머물러 있었다. 전쟁 시 바다는 대륙 진출을 향한 통로였으며 섬은 서구 열강들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했다. 전후에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마련하고 붕괴된 산업 재건과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본토'에 집중시켰다. 섬나라 일본은 '본토'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모색했으며 그 결과 '요시다 독트린'을 성립시켰다.

19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집을 참고,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22, 『島根県地方紙における「竹島報道」悉皆調査報告書』, 増補版.

III. 1950년대 일본의 국가전략과 평화선

1950년대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전략으로서 미일관계 중심의 안보환경 구축이다. 둘째, 지리적 공간으로서 섬과 본토를 구분하고 주변 '섬'에 대한 망각과 '본토' 중심주의 인식이다. 셋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비무장 중립국가를 내세운 일본식 '평화주의'이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요시다 시게루의 그랜드전략

전후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은 요시다 수상이 내세운 그랜드전략, 즉 '요시다 독트린'을 통해 볼 수 있다. 요시다 독트린으로 불리는 국가전략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총리대신을 지낸 요시다가 내세운 전략을 말한다. 이 시기 일본의 그랜드전략은 경제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했고 미일안보와 경무장은 일본 경제부흥을 위한 수단이었다. 일본은 안보를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경제 부흥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일본국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전력 불보유를 하게 되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자위대를 설치했다. 경무장을 하게 된 일본은 미국에게 전적으로 안보를 의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시다 독트린의 '미일안보'는 방위뿐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이 밀접한 관련을 맺도록 했다. 경무장 노선은 포츠담 선언에 따른 무장해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었다. 일본이 경제부흥에 집중한 것은 일본을 공산주의 진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닿았다.

요시다 독트린은 경제중심주의와 미일안보, 경무장을 축으로 하며 1960년대까지 일본 국가전략의 토대가 되었다. 요시다 수상은 일본의 경제중심주의에 대한 강대국의 방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불편하다는 점을 강하게 표출했다. 1951년 10월 23일 요시다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은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

일부 대표의 평화 극복 후 일본의 통상 경쟁에 대한 우려는 제가 가장 의외로 느끼는 바이다. 또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토의 상실, 자원부족, 전쟁에 의한 국토의 황폐, 기계 설비의 손상, 향후 배상의 부담 등 경제적으로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패전한 일본에게 타국이 경제적인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양해할 수 없다. … 평화조약에 대해 일본은 공정한 국제상 관행을 준수하도록 서약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한 우리의 해외진출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자유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²⁰

전후 일본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내세운 요시다 독트린은 일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무장, 경제중심, 미일안보라는 기본방침은 일본의 경제부흥과 발전으로 향했다. 이에 대해 “결국 일본은 이승만 라인에 대해 독도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또한 주변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고 일본의 무력행사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다.²¹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패권국으로서 동아시아 역내에서 또는 한일 간 외교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패권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power)의 축적은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높은 경제력과 문화 확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후부터 이어진 국가전략으로서 요시다 독트린과 평화헌법은 군사력 보유와 전쟁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재하므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0 “絶頂からの「吉田ドクトリン」演説—講和発効まで(25)日米外交60年の瞬間”, 『日本経済新聞』, 2013.7.13.

21 “韓国に竹島を「献上」した吉田茂の誤ったシグナルSEALDsも元首相の亡霊に取り憑かれ安本法反対遊びへ…”, 『産経新聞』, 2016.8.22.

2. 섬나라 일본의 ‘본토’ 중심주의와 주변의 섬들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본토와 주변의 섬들로 인식했다. 일본 영토를 지정학적으로 핵심부와 주변부로 분류하고 주로 핵심부 중심의 국가전략을 추진했다. 핵심부는 본방을 이르는 4개 섬으로 혼슈(本州), 규슈(九州), 시코쿠(四国), 홋카이도(北海道)로 한정했다. 주변부는 오키나와(沖繩)를 비롯하여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야에야마(八重山)제도 등이다. 주변부는 핵심부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적인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다. 1951년 9월 7일 요시다 수상은 연설에서 아마미오(奄美大) 섬, 류큐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남쿠릴열도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발언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요시다 수상은 해당 섬들에 대하여 “영토 처분 문제로 아마미오 섬, 류큐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그 외 평화조약 제2조로 국제 연합의 신탁 통치에 놓인 북위 29도 이남에 위치한 섬들의 주권이 일본에 남겨진다는 미국 및 영국의 전언을 나는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승낙한다. 세계 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확립되어 이들 섬이 하루빨리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²²라고 말했다.

요시다 수상의 발언은 곧 현실화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 오가사와라 군도는 1952년 2월 10일, 아마미 군도는 1953년 12월 25일 일본에 반환되었다. 오키나와는 1972년 5월 15일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본토를 제외한 주변 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은 과거 식민지 시기 한반도를 대륙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에서 변방에 위치한 섬에 대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낙도진흥법(離島振興法)을 제정한 이후이다.²³ 섬나라 일본은 혼슈와 시코쿠, 홋카이

22 “絶頂からの「吉田ドクトリン」演説—講和発効まで(25)日米外交60年の瞬間”, 『日本経済新聞』, 2013.7.13.

23 낙도진흥법은 일본에서 1953년 제정되었다. 낙도에 대한 후진성 문제와 도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했으며 10년마다 개정하고 있다(国土交通省, 「離島振興法・離島振興法施行令」, https://www.mlit.go.jp/kokudoseisaku/chirit/kokudoseisaku_chirit_fr_000003.html, 검색일: 2024.2.4.)

도, 규슈,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총 6,852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는 416개로 그중 256개 섬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²⁴ 일본에서는 낙도진흥법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법률로 섬의 가치를 개발, 관리하고 있다.²⁵ 1954년에 제정된 낙도진흥법은 일본에서 행정이 분리된 남쿠릴열도, 오가사와라제도, 오키나와현, 그 외 아마미 군도를 제외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주변의 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낙도진흥법은 섬 자원의 보전과 이용, 자연환경 정비, 배타적경제수역 보전 등을 위한 것으로 지리적·자연적 특성을 살려 섬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낙도진흥법은 섬이 지닌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생활과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기와 수도, 항만, 어항, 도로, 공항 등 사회자본 정비 및 의료와 교육을 개선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11월 낙도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했다. 낙도진흥법의 법적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낙도진흥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낙도진흥법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된다. 섬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관계인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시정촌 등 지자체 단위에서 섬 마을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의료, 디지털, 재생에너지 활용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정을 명시했다. 이처럼 일본은 낙도진흥법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과 해양자원의 이용, 어업활동 지원, 자연환경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경에 위치한 섬에 대한 안보와 방위 등 전략적 가치를 주목하면서 해양안보를 강화할 수 있

24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조사에서 인구가 포함된 섬 또는 시정촌 주민기본 대장에 인구가 등록되어 있는 섬을 '유인도'라고 부르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인도'로 파악하고 있다. 법률로 지정한 유인도 외에는 전부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개수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일본의 인구조사에서는 유인도가 205개였으나 같은 해 국토교통성 자료에서는 유인도 수가 416개로 명시되어 있다.

25 아미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1954년 제정), 오가사와라제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1969년 제정),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1972년 제정), 유인국경도서지역보전 및 특정유인국경도서지역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유인국경도서법')(2017년 제정) 등이 있다. 일본의 낙도진흥법과 섬 정책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석주희, 2021, 「일본의 국경낙도 제도와 대응: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제29호.

도록 국경낙도관리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열도,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해당 섬은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이 같은 흐름을 살펴볼 때 일본은 1950년대부터 유엔해양법 발효 이전까지 독도와 센카쿠열도, 남쿠릴열도뿐 아니라 주변 섬에 대해서도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국내 정책 차원에서 낙도진흥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변 섬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도와 센카쿠열도,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야 지정학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상경비대 창설과 섬 안보의 최소화

전쟁 이후 연합군 점령 시기 요시다 수상은 국가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쟁 이전까지 제국 일본이 영일동맹과 삼국동맹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전쟁 이후 미국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이에 따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최소한 억제한 것이다. 그 결과 안보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사용함으로써 갈등이 야기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은 한반도로 이동했다. 일본 본토 방위는 약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전장이 되었다.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한반도에 병력을 집중시키

26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독도에 관한 설명을 왜곡하고 있다. “1951년(쇼와 26) 9월에 서명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독립 승인을 규정하고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했다.”

는 대신 요시다 수상에게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도록 요청했다. 이 시기 창설된 경찰 예비대는 이후 자위대로 이어졌다. 경찰 예비대에는 다른 한편 제국 육해군 군인 부활의 기회로 여겨졌으며 제국 육군 출신 군인이 다수 기용되었다. 전후 일본의 경찰 제도는 새롭게 창설되었으나 조직과 운영체제, 인력은 제국의 군인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한정적이나마 '재군비'를 하게 되었다. 다만 본토 4개 섬의 전수 방위를 전제로 한 육상 경찰군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1948년 4월 27일에 제정한 해상보안청법(법률 제28호, 5월 1일 시행)에서는 일본에서 재군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령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해상보안청법은 해상보안을 군대로 조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²⁷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에서 독도를 포함한 영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선(일본 측 명칭은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일본에서는 같은 해 4월 해상자위대의 전신인 해상경비대를 창설했다. 평화선 설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해당 영역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불법어업, 침범 등 평화선을 위반할 경우 한국에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어민들과 지역 언론사에서는 일본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무력공격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반면 일본 국회의사록에 따르면 외무, 방위 관료, 해상 보안청 장관 등은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평화선에서 발생한 일본 어민과 한국 정부의 충돌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국의 무력공력이나 침략이라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IV. 평화선에 대한 인식과 오인

평화선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27 竹田いさみ, 2022, 『海の地政学』, 中公新書, 237쪽.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대체되었다.²⁸ 그러나 일본은 현재까지도 평화선을 비판하고 있다. 평화선은 어업과 어민보호, 영토주권의 경계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 간 어업에 관한 교섭을 할 때 세력이 강한 국가일수록 어업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 조업 실적 확보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세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상대국의 어업 활동에 대해 자국 어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이 우위에 있었으며 앞선 기술력을 내세워 동중국해, 황해, 동해 어장에 진출하여 독점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어업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본의 어업 관련 산업을 압박했다.²⁹ 1990년대 유엔해양법에 대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당 조약을 발효한 것은 본격적인 상호 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화선 선언은 한국에서 광복 후 국력이 약한 상태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어족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일본 정부는 평화선 선언에 대해 ① 소위 '다케시마(竹島, 죽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②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에 반한다. ③ 강화조약에 기반하여 양 국가 간 협의를 시작하기 전 일방적 조치라고 항의했다.³⁰ 한국은 ①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② 해양주권 선언은 트루먼 선언이나 남미의 대륙붕 주권 선언이라는 국제선례를 따른 것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³¹

평화선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지역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났다. 시마네현 출신이자 시마네현의회 의원으로 1943년 말레이반도에서 육군 사령관을 역임한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寿)는 평화선에 대하여

28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평화선 선언",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25&sitePage=> (검색일: 2024.1.20).

29 현대승, 2016, 앞의 글.

30 「竹島問題の経緯」, 『海外調査月報』 4卷11号 (1954年11月), 66쪽.

31 외무부 대한민국재외공관 정무과, 1953, 「평화선 선포와 관련된 제 문제」, 국가기록원.

195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독도는 에도 시기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952/5/23, 제13회 국회중의원 외무위원회)라고 주장했다. 평화선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한반도)에서 어업권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 선언을 했다. 우리들은 맥아더 라인에 너무 얽매어 있는 것 같다”(1952/2/20, 국회중의원 외무위원회)라며 평화선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는 “시마네현 현민 및 어민들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을 기다렸다. … 독도 문제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당국의 견해를 묻는다”(1955/5/30, 제22회 국회중의원 외무위원회)라고 발언했다. 1958년에는 평화선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에게는 “일본은 결코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 … 한국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말하는데 일본은 왜 가만히 있는가. 방위청 장관이 자위대가 출동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이다”(1958/2/27, 제28회 국회 참의원 외무위원회 제7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시마네현 이즈모시 출신으로 일본 외무상공 관료와 참의원 의원과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고다키 아키라(小瀧彬)는 평화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미국에서 국무성이 외교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다케시마’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미국의 해군력 등을 이용해서라도 이 섬을 일본의 주권 아래에 두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1958/2/27, 중의원 외무위원회) 고다키 아키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두려는 논의를 했다. 평화선에 대하여 언론의 비판도 이어졌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평화선(이승만 라인)³²에 대하여 “24일 외무성이 입수한 부산발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일 국방 상임 위원회에서 지도와 같이 동쪽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를

32 본문에서 일본 문서를 인용한 경우 ‘평화선’을 일본식 표기인 ‘이승만 라인’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일본 문서와 한국 문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포함하여, 이승만 라인 내에서 일본 어선과 그 외 외국 어선의 출어를 금지시켰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제주도에서는 출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 이승만 라인 문제에 대해 수산청에서는 이승만 라인은 제주도 남부를 연결하는 맥아더 라인을 넘어 넓은 해역으로 저인망 트롤 어업을 하는 데 중요한 어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 해역은 정어리, 고등어, 고래 등이 주요 어장이다. 공해 자유의 원칙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협정에서도 명백히 인정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보도했다.³³

또 다른 기사에서는 외무성에서 한국에 전달한 구상서와 관련하여 “외무성은 28일 주일한국대표부에게 지난 19일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이라인’ 설정 선언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은 공해 자유의 원칙 및 공해의 수산자원의 보호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원칙에 반하며 일본 정부는 이 선언에 따를 수 없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고 ‘다케시마’에 관한 영토권을 주장하지만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³⁴

『시마네신문』은 “다케시마 중심의 연안어업으로”라는 제목으로 후지타(藤田) 당시 현 수산부장이 맥아더라인과 독도 인근어장 관련하여 한 발언을 실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후지타 수산부장은 “맥아더 라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이후 당연히 철폐되었다고 생각한다. … 현의 입장에서는 맥아더 라인을 철폐한 이후에 ‘다케시마’를 중심으로 오키, 대화퇴 등 앞바다의 어장을 준비했다. 올해 처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선언으로 본 현의 ‘다케시마’를 포함하는 해역은 한국 영토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서도 한일 어업 조약 체결 등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해, 항행의 자유 원칙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한일 공동 경영으로 어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³⁵라고 했다.

33 “李承晩ラインを宣言—韓国側、領海の拡張を主張”, 『朝日新聞』, 1951.1.25.

34 “李承晩ラインに反論—外務省韓国代表に口上書”, 『朝日新聞』, 1952.1.29.

35 “竹島中心の沿岸漁業に”, 『島根新聞』, 1952.3.18.

『시마네신문』에서는 이승만 선언에 대하여 일본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19일 ‘해양선언’은 한일 어업회담을 직전에 두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이후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조선(한반도) 수역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시마네현 수산업계의 기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 선언에 따르면 한국 연안에서 가까이 위치한 쓰시마가 이승만 라인 내에 위치한다. 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서 일본 영토로 확인된 오키시마, 다케시마가 제한선 안쪽에 설정된다는 사실은 어업이 전전으로 복귀할 것을 논의한 시마네현 업계에 큰 타격이다. 전쟁 이전 시마네현에서는 소규모 저인망선 수 척이 조선의 수역에서 조업을 했다. 현의 계획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이후 맥아더 라인을 철폐한다면 다시 동 수역에 진출하고 동시에 현재 법으로 규정된 130도선 제한(본 현의 어업은 이서 조업은 금지하고 있다)의 철폐를 요구하고자 했다. 이후 쓰시마 해역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 선언에 완강히 반대한다”라고 보도했다.³⁶ 이 같은 보도는 시마네현에서 식민지 지배 이후에도 어업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탈을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패전 이후에도 일본 어민이 한반도 해역에 진출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단순한 정보 오류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양 관련 전략과 정책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위의 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선에 대한 정보의 오류가 언론 기사를 통해 확산되었다. 일본에서는 한일 간 독도가 문제가 된 것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한 이른바 ‘이승만 라인’의 결과라고 보았다. 일본 어민들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전전의 조선 수역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보도는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 인식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당시 일본

36 “奇怪な‘李宣言’—絶対反対水産業界に大反響”, 『島根新聞』, 1952.1.26.

언론의 보도는 평화선을 둘러싼 한일 간 양국에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뿐만 아니라 시마네현 어민들의 피해를 보도함으로써 한국의 평화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다.

둘째, 평화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자국 어민들의 어업에 대한 피해를 말하면서 ‘어업의 전진 복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결국 이 같은 언론사의 보도 등을 통해 일본 어민들은 한국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일본 국내에서 평화선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일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평화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평화선의 진정한 의미는 일본의 식민지 배로부터 탈피하여 한국 어민들이 정당한 어업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양세력 간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은 약소국 혹은 주변국에게 불가피한 피해와 희생을 불러일으켰다. 전후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가 붕괴한 가운데 미국은 지역질서의 안정화를 모색했다. 1945년 이후 불거진 전통적 강대국과 신흥 국가의 해양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논쟁은 1994년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조약을 탄생시켰다. 1958년부터 1982년까지 유엔해양법 회의를 개최한 끝에 30년에 걸쳐서 유엔해양법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국가 간 해양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는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이자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잠정적 분쟁 지역으로 부상했다. 센카쿠열도 주변의 해양자원과 안보, 해상교통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역내 국가들이 대

럽하고 군비를 경쟁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센카쿠열도 및 난세이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2024년 수송부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평화선은 사실상 맥아더 라인이 폐지된 이후 한국 어민들을 보호하고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해양주권 선포이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소 대립, 냉전, 한반도 분할점령 등 긴박하게 이루어진 국제정세와도 관련된다. 1945년 9월, 유엔총사령부는 일본 근해에 맥아더 라인을 선포하고 일본 어선의 항행과 어업 활동을 제한했다. 맥아더 라인으로 일본의 어장은 전쟁 이전보다 약 3분의 1로 공간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일본 어선은 맥아더 라인을 넘어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을 지속했다.³⁷ 맥아더 라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4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은 동해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했다.

평화선을 선언한 배경에는 맥아더 라인 철폐 후 일본 어선이 동해에 대량 출어함으로써 한국의 어업이 거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맥아더 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이 지속해서 한반도 연안에서 조업을 이어 갔기 때문이다. 평화선 선언 이후에도 일본은 나포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침범했으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이어 갔다. 일본은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을 공포하고 평화선 이내를 자원보호수역으로 설정하여 어업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 금고,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1965년 평화선을 폐지하기 전까지 일본 어선은 평화선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나포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평화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계속해서 평화선 관련한 논의를 펼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 일본에서는 어업과 독도 영유권 관련하여 강력한 제도나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에서 자국 어민들의 피해를 강조하나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당시 일본에서는 국내 언론을 통해 평화선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37 박창건, 2014, 앞의 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일본은 제국에서 주변국으로 세력이 쇠퇴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소련, 강대국 사이에 패전국으로서 적절한 자리매김을 모색해야 했다.

현재 평화선은 폐지되었으나 일본에서는 독도 관련 자료관, 홍보물, 교과서 등에서 평화선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2024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우익 성향의 출판사의 경우 평화선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이전보다 늘어났다. 일본에서 평화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선은 매우 혼란한 국제정세 가운데 약소국으로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영토주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일 양국은 평화선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역사적·제도적 관점에서 상생 가능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봉구, 2005,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러-미 관계」, 『국제정치논총』 45(3).
- 곽진오, 2010, 「한국의 평화선과 일본의 대응한계: 일본의회 독도관련 속기록을 중심으로(1952~1953)」, 『일본문화학보』 제47권.
- 김남은, 2023, 「근대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안보 의선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98호.
- 김도은·김명기, 2022, 「독도 관련 평화선 해도의 국제지도증거법상 의미 연구」, 『일본문화학보』 93.
- 김동하, 2020, 「한일 독도 영유권과 어업문제 연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52권.
- 김영수, 2018,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포섭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고시'의 유무」, 『동북아역사논총』 제62호.
- 김용신, 2023, 「한반도의 집중과 개입·확산의 글로벌 지정학」, 『글로벌교육연구』 15(2).
- 남상구, 2012,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제3권.
- 도시환 편, 2021,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II』, 동북아역사재단.
-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 박창건, 2014,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일본연구논총』 39호.
- _____, 2019, 「일본 독도정책의 특징과 딜레마-시마네현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7권.
- 박한민·석주희, 2023, 「202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 『한국사학보』 90.
- 배규성, 2013,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일본문화연구』 47.
- 배진수·유하영·홍성근·심정보·오강원·정영미·김영수, 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석주희, 2021, 「일본의 국경나도 제도와 대응: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제29호.
- _____, 2021, 「중·참의원 의사록(1948-2020)에서 나타나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관련 발언 및 인식」, 『국제학논총』 제34집.

- 신승휴, 2023,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63(3).
- 외무부 대한민국재외공관 정부과, 1953, 「평화선 선포와 관련된 제 문제」, 국가기록원.
- 전재성, 2017, 「한미관계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이슈브리프』, EAI 동아시아연구원.
- 정인섭, 2006,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 조윤수, 2008,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제28호.
- 지철근, 1979, 『평화선』, 범우사.
- 최영호, 2020,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 배경과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76호.
- _____, 2021, 『평화선을 다시본다』, 논형.
- 최장근, 2017, 「‘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 『일본문화학보』 제73권.
- 홍성근, 2015, 「평화선 선언과 독도 폭격연습지 지정에 대한 법 정책적 이해」, 『독도연구』 18.
- 현대송, 2016, 「한일회담에서 선박문제: 어업 평화선 독도 문제와의 4중주」, 『한국정치학회보』 50(1).
- 吉田茂, 2012, 『回想十年』, 中公文庫.
- 大平正芳, 1978, 『私の履歴書』, 日本經濟新聞社.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22, 「本編: 竹島·李承晩ラインを巡る報道など」, 『島根県地方紙における「竹島報道」悉皆調査報告書』増補版.
- 田久保忠衛·太田正利·平松茂雄, 2000, 『日本外交の再点検: 検証「吉田ドクトリン」』, 時事通信社.
- 「竹島問題の経緯」, 『海外調査月報』 4卷11号, 1954年11月.
- 竹田いさみ, 2022, 『海の地政学』, 中公新書.
- 片岡千賀之, 2006, 「日中韓漁業関係史I」, 『長崎大学水産学部研究報告』 第87号.
- Gilpin, Robert, 1988, “The Theory of Hegemonic Wa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8, no. 4.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

Manship, H. Kaminer, 1964, "MAHAN'S CONCEPTS OF SEA POWER: A Lecture Delivered at the Naval War College on 23 September 1963," *Naval War College Review* 16, no. 5.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2024.3.22.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더욱 노골화…강제 징용은 희석”, 『YTN』, 2024.3.22.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평화선 선언”,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25&sitePage=>(검색일: 2024.1.20).

“絶頂からの「吉田ドクトリン」演説—講和発効まで(25)日米外交60年の瞬間”, 『日本経済新聞』, 2013.7.13.

“韓国に竹島を「献上」した吉田茂の誤ったシグナル SEALDsも元首相の亡霊に取り憑かれ安保法反対遊びへ…”, 『産経新聞』, 2016.8.22.

『島根新聞』, 1952.1.26.

『島根新聞』, 1952.3.18.

『朝日新聞』, 1952.1.25.

『朝日新聞』, 1952.1.29.

2023년2월22일, 第18回 ‘竹島の日’記念特別展示, 「李承晩ラインと竹島問題」.

국문초록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종식은 지정학(geopolitics)이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 매우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하 ‘평화선’)을 발표했다. 혼란한 상황에 형성된 평화선은 이후 독도 영유권 수호에 매우 중대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화선 선언의 배경과 준비과정에 대한 연구나 주로 국내정치와 한일관계, 어업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평화선은 어업과 독도 영유권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점에서 다른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접근으로서 주변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평화선이 지닌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국가전략을 통해 일본이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전략이 제한적이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독도와 주변 해양에 대해 수산자원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평화선의 지정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밝힌다.

정리하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모색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산물로서 해양영토를 바라보았으며, 평화선과 독도에 대한 제한된 인식과 오인이 형성되었다.

<주제어>

평화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지정학, 국가전략, 해양영토

ABSTRACT

Japan's Perception of "Peace Lin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Suk, Ju Hee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end of World War II suggested that geopolitics was no longer exclusive to great powers. Despite being a very confusing period, President Syngman Rhee released the President's Declaration on the Sovereignty of the Nearby Ocean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January 18, 1952. The Peace Line, which was formed in an unforeseen and chaotic situation, later became a "critical junction" for protecting Dokdo's sovereignty.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preparation process of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mainly domestic politics, Korea-Japan relations, and fishing. Although the Peace Line has significant strategic values in terms of geopolitics, fishing, and sovereignty over Dokdo, few studies have dealt with this issu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examine Japan's perceptions of the Peace Lin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First, the study discusses the geopolitical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s a theoretical approach. Second, it analyzes Prime Minister Yoshida Shigeru's national strategy to suggest that Japan's strategy for maritime territory issues was limited. Furthermore, this paper reveals that there is a very limited recognition of the geopolitical value and meaning of the Peace Line, such as recognizing Dokdo and its surrounding oceans as objects of exploitation for fishery resources.

In summary,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ok effect, Korea and Japan pursued a new geopolitical strategy in East Asia. However, there were misconceptions about the Peace Line and Dokdo in Japan, because they recognized maritime territorial issues with the focus on political interests rather than historical facts.

Keywords

Peace Line, San Francisco Peace Treaty, geopolitics, national strategy, maritime territory

자료소개



- **김종근** | 한국과 일본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 **박한민** | 1901년 울릉도 출장을 다녀온 스미스가 작성한 영문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과 일본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 독도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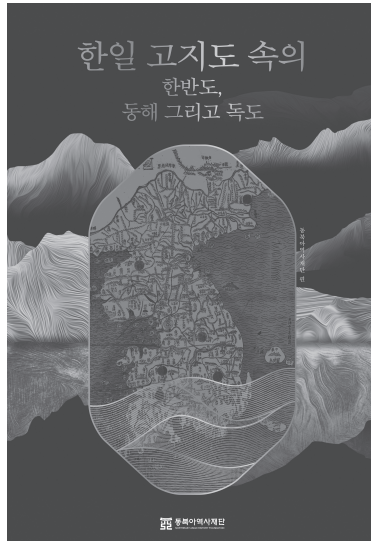
- I. 머리말
- II. 한국 고지도 속 독도와 동해 표기
- III. 일본 고지도 속 독도와 동해 표기
- IV. 맺음말

I. 머리말

2024년 4월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 독도실 독도연구소에서는 독도 영유권 및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고지도상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양상을 분석한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를 발간했다. 독도연구소에서는 2009년 이래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동서양 고지도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으로 2021년에는 『서양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재단 및 국내외 도서관에 소장된 동해 표기 및 독도 관련 한국과 일본 고지도를 정리 및 연구하는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지도집은 필자의 편찬 책임하에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오상학 교수와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심정보 교수가 참여하여 고지도 선정, 해제 작성, 논고 작성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총 4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이 책자에는 지도 도판 126개와 논고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도판을 수록한 제1부 '도판과 해제'에는 고지도상에 재현된 한반도의 형태 변화 및 독도와 동해 표기의 변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한국 고지도 74점과 일본 고지도 52점 등 총 126점이 수록되어 있다. 제2부는 고지도 전문가인 집필자 3명의 논고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논고에서는 한국과 일본 고지도상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양상, 한국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인식의 변천, 일본 고지도에 등장한 한반도와 주변 해역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한국과 일본 고지도상에 기재된 독도 및 동해 표기 양상을 총정리하는 것을 발간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지도의 선정 및 논고 해제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책자에 논고의 형태로 수록한 필자의 글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자료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림 1〉『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표지

II. 한국 고지도 속 독도와 동해 표기

1. 한국 고지도 속 독도

1) 전국지도류와 도별도류

한국 고지도 가운데 독도인 우산도가 나타나는 지도에는 전국지도류, 도별도류, 군현지도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전국지도류 중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팔도총도〉이다. 이 지도는 현존하는 고지도 가운데 우산도가 기재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며, 이 두 책 모두 조선시대에 지리교과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조선의 지리를 파악할 때 이 책자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전국지도에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18세기 중엽)

가 있으며,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제대로 표현된 최초의 지도이다. 이 지도는 정상기가 그린 후 그의 후손인 정항령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영조가 본 후 모사하도록 한 지도이다.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고안하여 기존의 한반도 지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이 지도는 한반도의 형태를 사실과 유사하게 그린 조선 최초의 지도이다. 이 때문에 정상기는 조선 후기 지도 발달사에 있어 확을 그은 중요한 인물이다. 이 지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난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으며, 대표적인 지도가 19세기에 작성된 <해좌전도>이다. 이와 같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 변화는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울릉도쟁계’를 통해 바로잡히게 된 결과였다.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는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다수 활용되었다. 이처럼 <동국대지도>를 모사한 지도들은 도별도 형태로 분리되어 많이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국대지도>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사용하기에 다소간 불편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상기의 지도를 활용한 지도류 가운데 울릉도와 우산도가 기재된 지도가 많았는데, 국내의 다수의 도서관에 이러한 지도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규장각에 소장된 『팔도지도』의 <강원도 지도>에는 강원도에 속한 군현 및 섬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우산도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비교적 크고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울릉도에는 산지 표시와 함께 주토굴, 죽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주토굴과 죽전은 조선 정부의 수토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수토사들이 울릉도를 수토한 이후 염료로 사용되는 붉은 흙과 대나무를 조정에 수토의 증거로 제출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 점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수토제 운용의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를 모사한 지도는 조선 정부와 민간에 널리 활용되었다.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조선전도>와 목판본 <해좌전도>는 그 중요한 증거이다.

우선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조선전도>(1845년)는 정상기의 지도가 조선

을 넘어 유럽까지 전래된 사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는 어릴 적 마카오로 건너가 천주교를 배워 우리나라에 전파한 인물이다. 마카오에서 천주교 관련 공부를 한 뒤 조선으로 건너온 김대건 신부는 1845년에 한성부 서고에 있던 지도를 모사한 〈조선전도〉를 작성하여 마카오의 파리외방전교회로 보냈다. 그는 이 지도를 프랑스 신부들이 해로를 통해 조선으로 입국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했다. 이 지도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조선 각지의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지도에는 총 400여 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선의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각지의 도별명칭, 군현명칭, 그리고 섬의 명칭이 다수 기재되었다(김종근, 2020a). 서울을 ‘Seoul’이라는 로마자로 표기한 지도는 이 지도가 처음으로 한 것이다.

독도인 우산도가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에 기재된 이후 다수의 지도들에서 우산도가 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의 사본지도 2매와 1860년에 제작된 〈라틴어본 조선전도〉, 미국 해군장교 펠란이 1868년에 작성한 〈조선전도〉, 파리지리학회지에 1855년에 소개된 〈조선전도〉,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1874년) 내 〈조선지도〉, 리텔 주교의 『한불자전』(1880년) 내 〈조선지도〉에도 우산도가 기재되었다(김종근, 2020b).

한편 〈해좌전도〉는 제작자 미상의 19세기 중반 지도이며, 목판본 지도이다. 이 지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국내외 다수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는 목판으로 대량생산된 〈해좌전도〉가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도는 동시대의 필사본 지도에 비해 그 수준은 다소간 떨어지는 편이나 중요 자연 및 인문지리정보는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좌전도〉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 묘사된 한반도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산과 산줄기, 하천, 섬 등의 자연지형과 수도, 군현, 역원, 병영, 진보, 도로망 등 인문지리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 주변에 우리나라의 간략한 역사 및 역대 왕조의 행정구역 정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속리산, 지리산 등 총 20개의 주요 명산 및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덕적도 등의 섬에 대한

정보, 주요 사찰 및 관동팔경 등에 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해좌전도>에는 울릉도와 관련한 역사적, 지리적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울릉도를 중요한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이와 더불어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기재된 점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과 동시에 울릉도와 함께 우리의 중요한 영토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울릉도와 우산도 상세 지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상세하게 기재된 대축척지도에는 군현지도책 지도, 전국지도첩(책) 지도, 대축척 단독지도, 지리서 내 지도 등이 존재한다. 현재 까지 확인된 울릉도·우산도가 상세하게 기재된 고지도는 총 24매이며 자세한 목록은 <표 1>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현지도책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나타난 군현지도는 크게 회화식과 방안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회화식은 6매, 방안식은 7매의 지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회화식 지도의 경우 규장각에 소장된 『광여도』, 『여지도』, 『지승』, 『해동지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여지도』, 『팔도여지도』, 『대한지도』 내 존재하는 7장의 지도가 확인된다.

7장의 지도에 묘사된 울릉도는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소위 우산도’가 쓰여 있고, 남쪽에 섬 5개가 존재한다. 울릉도의 한 가운데에는 성인봉인 중봉이 표시되어 있고, 사방으로 산들이 뿔뿔하게 그려져 있다. 아울러 산지 사이로 하천이 5개가 흐르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명칭은 존재하지 않고 큰 하천(大川)이라는 표시만 있다. 섬의 북쪽에는 공암이 해안선 안쪽에 그려져 있다. 마을 명칭에는 저전동이 동북쪽에 표시되고, 이외 섬의 서쪽에 대풍소, 동쪽에 외선창 등에 거주가능(可居)이라는 표시가 함께 되어 있다. 집터(基址 혹은 基地)는 5군데 표시되어 있고, 돌무지무덤의 경우도 석장이라는 명칭으로 남쪽과 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곳을 의미하는 죽전(竹田)은 섬의 해안선 인근에 6군데 기재되어 있다. 수

〈표 1〉 울릉도 고지도 목록

유형 1	유형 2	지도책 및 지도명	시기	소장처	비고
군현지도책	회화식	『해동지도』	18세기 중반	규장각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여지도』	18세기 중반	규장각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여지도』	18세기 초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팔도여지도』	18세기 중반	국립중앙도서관	필자 추가
군현지도책	회화식	『지승』	19세기 초	규장각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광여도』	19세기 초	규장각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조선지도』	18세기	규장각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지도』	18세기	장서각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팔도지도』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지도』	18세기	고려대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해동여지도』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강역전도』	18세기 후반	일본 동양문고	필자 추가
군현지도책	방안식	『팔도군현지도』	19세기	영국 국립도서관	필자 추가
대축척 전국지도	회화식	『청구도』	1834년	규장각	김기혁(2006)
대축척 전국지도	회화식	『동여도』	19세기 중반	규장각	김기혁(2006)
대축척 전국지도	목판	『대동여지도』	1861년/1864년	규장각 외 다수	김기혁(2006)
대축척 전국지도	회화식	『대동여지도』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연구원	필자 추가
대축척 낱장지도	회화식	〈울릉도도형〉(박석창)	1711년	규장각	김기혁(2006)
대축척 낱장지도	회화식	〈울릉도외도〉(이규원)	1882년	규장각	김기혁(2006)
대축척 낱장지도	회화식	〈울릉도내도〉(이규원)	1882년	규장각	김기혁(2006)
대축척 낱장지도	회화식	〈울릉도도형〉(미상)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대축척 낱장지도	회화식	〈울릉도도형〉	미상	삼척박물관	필자 추가
대축척 낱장지도	회화식	〈울릉도도〉	미상	천안박물관	필자 추가
지리서 내 지도	회화식	『동여도지』	1830년대	영국 국립도서관	필자 추가

토사의 방문과 관련한 정보에는 각석입표, 각판입표 등이 지도의 오른쪽과 왼쪽에 쓰여 있다. 수토사가 울릉도를 수토한 증거로 제시한 붉은 흙이 나오는 주토굴의 경우 섬의 서쪽에 기재되어 있다. 총 7장의 지도 가운데 『해동지도』에는 다른 6장의 지도와 달리 지리정보가 더 많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북쪽 해안에는 선유대, 우각암, 쌍포암 등이 그림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도장구미, 주토구미, 석성문기지, 탐사찰기지 등의 지명도 다른

지도들에는 없는 지명들이다. 아울러 주토굴의 경우도 섬의 서쪽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있다. 이러한 『해동지도』 내 울릉도지도는 1711년 울릉도를 수도한 박석창이 그린 〈울릉도도형〉을 참조하여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상학, 2006, 88쪽).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진 ‘방안지도’에는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지도』, 한국학중앙도서관 장서각에 소장된 『지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해동여지도』, 『팔도지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지도』,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강역전도』,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팔도군현지도』 등 7개의 지도책자에 들어 있는 지도들이다. 이 방안식 지도들 내에 그려진 울릉도는 회화식 지도들과 달리 좌우가 길쭉한 타원형 형태이다. 그리고 주변에는 우산도 이외 섬이 5개 그려져 있다. 회화식에서는 우산도에 ‘소위’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나, 이 지도에는 ‘소위’가 사라졌다. 그리고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신경준의 『동국문헌비고』의 울릉도와 우산도 내용이 반영된 지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73쪽).

한편 이들 지도에 그려진 울릉도 내부 지형은 회화식 지도와 달리 중봉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산맥이 뻗어 있는 연맥식 형태의 산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산맥들 사이로 6개의 하천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지도상에 기재된 지명의 수는 회화식 지도보다 적은데 중봉, 공암, 대천, 석장, 죽전(5개), 대풍소, 각석입표, 각관입표, 관활, 선박 등이다.

3) 대축척 전국도

이 유형의 지도에는 김정호가 그린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및 사본지도들이 있다.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판본과 모사본들이 존재하나 지면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지도인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우선 『청구도』의 경우 울릉도의 형태는 방안식 지도에 나타나는 울릉도의 형태와 유사하다. 아울러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기재되어 있고 남쪽에 섬이 5개 그려져 있다. 산맥 형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봉에서 연결된 산맥들이 뻗어 있고, 산지 사이로 7개의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다. 지명의 경우도 방안식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여 중봉, 공암, 대천, 석장(2개), 죽전(5개), 대풍소, 각석입표, 각관입표, 관활 등이 있고, 이외 저전동이 추가되었다.

『동여도』와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경우 울릉도가 타원 형태에 가깝게 그려졌고, 주변에 섬은 3개가 그려졌다. 아울러 우산도는 생략되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 우산도가 그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목판본이므로 판각의 여유가 없어서 우산도를 생략한 것이다’(이상태, 2011, 195쪽)라는 해석과 ‘우산도에 대한 『해동여지도』 계통의 지도와 『국조보감』의 기록이 서로 달라 지도에 분명하게 그럴 만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다’(이기봉, 2020, 226쪽)라는 해석이 있다.

한편 필사본 『대동여지도』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 소장한 필사본 『대동여지도』에는 우산도가 기재되어 있다. 이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경우 김정호 사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모사자가 우산도를 추가로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생략한 우산도를 왜 다른 모사자가 그려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

4) 대축척 단독지도

수토사들이 수토사업 이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유형의 지도에는 박석창이 그린 〈울릉도도형〉, 이규원이 그린 〈울릉도내도〉, 〈울릉도외도〉, 작자 미상의 〈울릉도도형〉 2장 및 〈울릉도도〉 1장 등 총 6장이 있다. 이들 지도는 모두 수토사가 수토 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도들은 모두 그려진 형태가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우선 박석창이 그린 〈울릉도도형〉은 1711년 수토 후 작성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서쪽이 지도의 위쪽에 배치되어 있다. 울릉도는 사각형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울릉도 안쪽에는 중봉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들이 뺄뺄하게 그려져 있다. 하천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하천과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길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하천 9개는 짧게 표시되어 있다. 이외 저전동, 각석 입포, 각관입포, 주토굴, 집터(基址) 5곳, 돌무덤(石塚) 2곳, 왜선창, 그리고 대나무서식지(竹田) 10곳 등이 표시되어 있다. 울릉도의 북동쪽 해안에는 공암 및 돌봉우리(石峯) 6개가 표시되어 있고, 동쪽에는 ‘소위우산도’가, 동남쪽에는 무기명의 섬 5개가 그려져 있다. 특히 ‘소위우산도’에는 해장죽 서식지(海長竹田)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계에서는 ‘소위우산도’는 우산도인 독도가 아니라 죽도를 뜻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이 지도를 참조하여 그린 회화식 울릉도 지도에 나타나는 ‘소위우산도’ 역시 죽도를 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오상학, 2006; 이기봉, 2020).

이규원의 <울릉도내도>와 <울릉도외도>는 1882년 울릉도를 검찰한 결과로 제출된 『울릉도검찰일기』와 함께 제출한 지도로 알려져 있다. <울릉도내도>는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주변 산봉우리가 묘사되어 있고, <울릉도외도>에는 울릉도의 해안선 일대가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울릉도의 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깝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울릉도도형>은 박석창의 지도와 명칭은 동일하나 그려진 형태 및 내용은 상이하다. 이 지도상에는 산을 표현한 것이 좀 더 큰 편이고, 해안가에 있는 바위와 섬들도 크게 그리고 있다. 지명에는 대풍소, 추봉 등 산지 지명, 소우도, 대우도 등 섬지명, 공암, 용암, 후죽암, 황토굴, 소황토구미, 현포구미, 도장구미, 평탁구미, 왜선창구미, 천저구미 등 해안지명, 닥나무밭인 저전(楮田), 모시풀밭인 저전(苧田), 대나무밭인 죽전(竹田) 등 산물 관련 지명 등이 있다.

5) 지리서 내 지도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시대까지 삼척에 소속된 도서였기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그린 지도는 군현별로 기록이 존재하는 지리서 내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소장 『동여도지』에는 울진편에 이어서 울릉도 지도 및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도상에 기재된 내용의 경우 군현지

도 중 방격지도에 해당되는 지도와 유사한 형태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다만 동쪽에 그려진 지도에는 우산도라는 표기가 없다.

2. 한국 고지도 속 동해 표기

한국 고지도상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는 8가지 유형이 존재한다(양보경, 2004).

〈표 2〉 한국 고지도상 나타난 동해 표기 유형

지명 유무	지명 표기 방식	표기 예
지명이 있는 경우	동해 표기(바다)	東海, 東洋, 東洋海
	동해 표기(육지)	東海
	대한해	大韓海
	기타 표기	滄海
	일본해	日本海
	일반적 명칭	大海, 海, 東抵大海, 東接大海, 東大海, 南大海
지명이 없는 경우	여백에 방위 표시	東, 卯
	무표기	없음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바다와 육지에 동해가 명확하게 표기된 경우 및 대한해와 기타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바다에 쓰인 동해 표기

동해가 바다에 표기된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는 1740년대에 작성된 ‘비변사인방안지도’, 즉 비변사 도장이 찍힌 방안지도 중 하나인 『영남지도』이다. 『영남지도』 가운데 〈경주〉, 〈울산〉 도엽에 동해가 표기되어 있다.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여지도』 〈홍해군〉 도엽, 『광여도』 〈울산부〉 도엽에도 동해 표기 지도가 존재한다. 1750년 경에 작성된 『해동지도』 〈홍해군〉 지도, 『경주도회좌통지도』의 〈홍해〉 지도, 『관동승람』의 〈통천〉 지도에도 동해 표기가 나타난다. 정조 대에 작성된 『여지도』에는 〈천하도〉, 〈아국총도〉,

〈조선, 일본, 유구국도〉, 〈경상도〉 도엽에 동해가 표기되어 있다. 1872년에 작성된 지방지도 중에도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무산지도〉, 〈평해군지도〉, 〈울산목장지도〉 등이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인 지도 가운데에서도 동해가 바다에 표기된 지도가 3매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서북괴야양계만리일람지도〉와 『각읍지도』 내 〈경주〉와 〈울산〉 지도 등이다.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지도 내에도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도서관의 미국지리학회컬렉션(AAG)에 소장된 『여지도』 내 〈전도〉와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여지도』 내 〈집역전도〉에도 동해가 쓰여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는 개화기에 작성된 『집역지도』 내에 〈대조선전도〉와 〈경상도도〉 내에 각각 ‘東洋’과 ‘東海’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작성한 책자 내에도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중국의 위원이 작성한 『해국도지』라는 지리서에는 〈조선지도〉와 〈원대서북강역연혁도〉에도 동해가 표기되어 있다.

2) 육지에 쓰인 동해 표기

독도가 표기된 고지도로 널리 알려진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팔도총도〉에는 독도인 우산도뿐만 아니라 동해도 표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해 표기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 표시된 점이다. 이러한 까닭은 이 지명이 동해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당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팔도총도〉를 모사한 지도들에서는 계속 육지에 동해 표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1872년에 작성된 지방지도 중에도 육지에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단천부지도〉, 〈삼척부지도〉, 〈삼척진지도〉 등이 있다.

3) 대한해 표기 지도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 동해에 ‘대한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여러 지도에서 그 흔적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남대학교 도서

관과 서울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대한신지지』 내 <대한전도>(1907년)와 현공림이 제작한 <대한제국지도>(1908년) 등이 있다.

4) 기타 표기

1872년에 작성된 <양양지도>에는 ‘창해’가 기록되어 있고, <거제부지도>에는 ‘동명대해’가 기재되어 있다.

III. 일본 고지도 속 독도와 동해 표기

1. 일본 고지도 속 독도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일본 고지도는 작성 시기, 작성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작성 시기의 경우 서양의 지도에 영향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하며, 작성 대상의 경우 일본과 주변 바다를 그린 지도, 조선과 주변 바다를 그린 지도,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도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일본 고지도를 분류한 후 해당되는 지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유형은 <표 3>과 같다.

1) 우산도, 울릉도 기재 지도

이 유형의 지도는 조선 전기 정책과 양성지가 그린 조선 전도류 지도가 일본으로 전해진 후 모사된 지도들이 해당된다. 조선 전기 지도들에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기재되었는데, 이 형태가 그대로 모사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가고시마 현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지도>(17세기),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1748년), <청조일통도>(1835년) 등을 들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세기 중반에도 이러한 지도가 일본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인데, 당시 조선의 지리정보가 부족하였던 일본에서 조선 침략을 준비하

〈표 3〉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 방식에 따른 구분

유형	표기	시기	특징
1	우산도, 울릉도	18세기 / 19세기 중반	조선 전기 한반도 지도 모사/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
2	울릉도: 다케시마(竹島) 독도: 마쓰시마(松島)	1870년대까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울릉도 와 독도를 부르던 방식
3	아르고노트: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1840년 이후 19세기 말 까지	독일인 지볼트가 일본 지도를 작성하면서 생겨난 현상/ 19세기 후반에 나온 지도 대부분에 해당
4	아르고노트: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독도: 리양코루도, 랑코도 등	1860년대 이후	서구 해도를 모사한 지도에서 주로 나타남 (사례 지도는 소수임)
5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독도: 다케시마(竹島) (리양코루암)	1904년 이후	러일전쟁 발발 이후 발간 지도
6	일본 영역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독도	1870년대 이후~1904년	

기 위한 지리정보의 필요성에 따라 필사본이 양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지도에는 대표적으로 〈조선국도〉(1863년), 〈조선국세견전도〉(1873년),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1874년) 등이 있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서양의 해도를 모사한 형태의 지도에도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점이다. 〈칭십팔성여지전도〉(1874년)에는 칭나라와 한반도가 나타나는데, 한반도의 형태는 1840년대에 작성된 프랑스와 영국의 해도상에 나타나는 한반도의 형태가 그려져 있고, 울릉도와 독도는 각각 ‘莞凌島’, ‘千山島’ 등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이 유형의 지도에는 지명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울릉도와 우산도 형태를 그린 지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개정신전조선전도〉(1875년)가 존재한다.

2)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한 지도

메이지 유신 이전 시기 일본 전도를 그린 지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 유형의 지도는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지

도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일본여지로정전도>(1775년)와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 1791년 등)가 있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는 “다케시마 혹은 이소타케시마(竹島—云磯竹島)”로,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두 섬 앞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것은 오키의 지역 지리를 기술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에 보이는 내용으로 일본 서북의 경계는 오키 섬까지라는 뜻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또 다른 지도에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1785년)와 <대삼국지도>(1802년)가 있다.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에는 울릉도에 다케시마(竹島)만 표기되어 있지만, 이 지도와 유사한 <대삼국지도>에는 독도에 마쓰시마(松島)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유형의 지도에는 일본 전도류가 아닌 울릉도와 독도만을 그린 지도도 있으며, <죽도지회도>(1695년) 및 <기죽도약도>(1877년)가 그에 해당된다. 특히 <기죽도약도>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인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일본과 관련 없다는 내용을 기록한 ‘태정관지령’에 부속된 지도이며, 이런 까닭에 독도 영유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지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내무성은 지적(地籍,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사항을 담은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針)」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한다. 이 질의서에 첨부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점 등을 통해 태정관지령에서 언급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의 “일도(一島)”가 독도임을 알 수 있다.

3) 아르고노트 섬을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한 지도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생활하였던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는 본국으로 귀환한 후인 1840년에 일본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표기되었는데, 지볼트는 당시 서구 해도상에 존재한 아르고노트 섬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인 다즐레 섬에 마쓰시마(松島)라고 표기하였고, 이후 서구에서 작성한 일본 지도에서는 이와 같은 표기법이 표준이 되었다. 개항 이후 이러한 지도가 일본에 유입되자 일본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한 지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동판조선국전도>(1872년), <조선전도>(1875년), <조선여지전도>(1875년), <장중일본전도>(1876년), <대일본해륙전도> 내 <조선국전도>(1877년), <청국여지전도>(1880년), <실측조선전도>(1894년), <조선여지도>(1894년) 등이 있다.

4) 아르고노트 섬을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 독도를 리앙코루도로 표기한 지도

서구 열강들이 작성한 해도를 일본에서 번역하면서 아르고노트 섬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에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리앙코루도라고 표기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대일본연해약도>(1867년), <조선동해안도>(1876년) 등이 존재한다. <대일본연해약도>는 영국 해도를 참조하여 작성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독도에 “리엔 코우루토 록크”라 표기하였다. 1849년 프랑스 선박인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프랑스 해군 수로국에 보고하여 등재된 이후 서구 국가들의 공인 해도상에 독도는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로 등재되었다. 영국에서는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한 후 호넷 섬(Hornet Island)이라고 해도상에 기재하였다가 1860년대 이후 리앙쿠르암초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러시아는 독도를 메넬라이 섬과 올리부차 섬이라 명명하였고, 해도상에 표기하였다. <조선동해안도>(1876년)는 러시아가 작성한 <조선동해안도>를 번역하여 제작한 지도인 까닭에, 독도의 서도와 동도에 올리부차(オリウツ)와 메네라이(メネライ)라 기재하였다. 한편 1875년에 작성된 <대일본연해지도>에는 아르고노트 섬은 완전히 사라지고, 울릉

도에는 마쓰시마(松島), 독도의 서도와 동도에 올리부차(オリウツ瀬)와 메네라이(メネライ瀬)라고 기재되었다.

5)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지도

일본 해군 수로국에서는 강화도조약 직후인 1876년부터 조선의 남해안과 서해안에 대한 해도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청일전쟁 직후인 1896년 일본 수로국에서는 그간 진행한 한반도 일원의 해안 측량 및 지도 제작의 성과를 보여 주는 지도인 <조선전안>(1896년)을 작성하였다. 이 해도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일본이 남해안 일부 지역과 평안북도 해안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수로 조사를 완료한 점이다. 한편 이 지도는 한반도 해안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울릉도는 ‘鬱陵島(松島)’라 표기했고, 독도는 ‘리안코루도암초(リアンコルド岩)’라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는 10년 뒤 인 1906년에 수정, 보완되어 발간되었는데, 이 지도에서는 울릉도만 남고 독도는 지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1905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토 편입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불법 편입하면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일본의 민간 지도에서는 1904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지칭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 지도에는 <극동전요지도>(1904년), <일로관충전국면대지도>(1904년), <한국전도>(1904년), <한국전도>(1905년) 등을 들 수 있다.

6) 일본 영역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은 지도

19세기 말까지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그들의 영토를 표현한 지도에서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 공인 지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본 내무성 지리국 지지과에서 1881년에 작성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독도가 존재하는 수역을 표시하지 표현하지 않았다. 아울러 1899년에 작성된 <시마네현전도>에도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일본 고지도 속 동해

일본 고지도 내에서 기재된 동해 수역 명칭에는 ‘북해’, ‘조선해’, ‘일본해’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명칭 가운데 ‘북해’와 ‘조선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해 수역을 ‘북해’로 표기한 지도

심정보의 연구에 의하면 북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지도는 1842년 이케다 도리(池田東籬)의 <월후국세견회도(越後國細見繪圖)>, 1849년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의 <하이국연혁도(蝦夷國沿革圖)> 등의 지방도뿐이다.(심정보, 2013)

2) 동해 수역을 ‘조선해’라 쓴 지도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의 『북사문략(北槎聞略)』에 수록된 <아세아전도(亞細亞全圖)>(1794년)는 일본의 고지도에서 최초로 조선해(朝鮮海) 지명이 표기된 것이다. 다이코쿠야 고다유(大黒屋光太夫) 등이 1782년 폭풍을 만나 캄차카에 표착한 이래 10년간 러시아에 머물다 일본에 귀국한 일이 있었다. 일본 막부의 의사였던 가쓰라가와 호슈는 그들의 체험과 견문에 근거하여 1794년에 『북사문략』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이들의 여정, 러시아의 언어, 지명, 풍토, 지리, 역사, 산업, 교육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이들 일행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10장의 사본 및 번역 지도가 있다. 그 가운데 <황조여지전도(皇朝輿地全圖)>에는 러시아어로 고려해(高麗海)가 적혀 있고, <아세아전도(亞細亞全圖)>에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조선해(朝鮮海)가 표기되어 있다(심정보, 2013).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는 일본에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막부는 1807년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에게 서양서적에 근거하여 세계지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가능한 지리정보를 수집하여 1809년에 <신전총계전도(新鐫總界全圖)>와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를 제작했으며, 1810년에는 <신정만국전

도(新訂萬國全圖))를 완성하였다.

이 지도들의 영향으로 19세기 전반기 동안 작성된 지도상에 동해수역을 “조선해”라 기재한 지도들은 다수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구리하라 노부아키(栗原信晁)의 <가영교정동서지구만국전도(嘉永校訂東西地球萬國全圖)>(1835년), 미쓰구리 쇼고(箕作省吾)의 <신제여지전도(新制輿地全圖)>(1844년), 야스다 라이슈(安田雷州)의 <본방서북변계략도(本邦西北邊界略圖)>(1850년), 스키타 겐잔(杉田玄端)의 <양반구도(兩半球圖)>(1851년), 나카지마 스이도(中島翠堂)의 <지구만국방도(地球萬國方圖)>(1853년), 구도 도헤이(工藤東平)의 <대일본연해요경전도(大日本沿海要境全圖)>(1854년) 등이 있다(심정보, 2013).

3) 동해 수역에 바다이름을 병기한 지도

19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까지 일본 지도상에서 동해 수역을 표기하는 방식은 ‘조선해’와 ‘일본해/북대양/일본서해’를 병기하는 방식, ‘일본해’만 표기하는 방식 등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두 지명이 병기된 지도에는 구체적으로 후지와라 아사로(藤原朝呂)의 <대일본총계략도(大日本總界略圖)>(1865년),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齋)의 <관허대일본사신전도(官許大日本四神全圖)>(1868년), 미야자키 류조(宮崎柳城)의 <만국신도(萬國新圖)>(1874년), 스즈키 시게유키(鈴木茂行)의 <일청한삼국전도(日清韓三國全圖)>(1894년) 등이 있다(심정보, 2013).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일 고지도 중에서 독도 영유권 및 동해 표기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고지도 내 독도의 경우 우산도가 기재된 지도류를 주로 살폈고, 동해 표기의 경우 동해가 바다와 육지에 표기된 지도들을 주로 살폈다. 아울러 일본 고지도 내 독도의 경우 독도인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류를 주로 살폈고, 동해 표

기의 경우 조선해 등 일본해가 아닌 명칭이 기재된 지도류를 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전근대시기 및 개화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고지도는 상당이 많이 존재하며,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도 또한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지도 또한 수집, 분석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연구를 지향하여 제3국의 연구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고문헌편』.
- 김기혁, 2006, 「울릉도 고지도 유형연구」, 『대한지리학회 2006년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 김기혁·오상학·이기봉, 2007, 『울릉도·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종근, 2020a,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조선전도 (Carte de la Corée)」, 『한국고지도연구』 12권 1호.
- _____, 2020b, 「미국 해군장교 펠란이 제작한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권 2호.
- 김호동, 2010, 「일제의 한국침략에 따른 '일본해' 명칭의 의미 변화-일본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2권 2호.
- 남영우·김부성, 2009,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제9호 제1권.
- 독도사전편찬위원회편, 2019, 『독도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심정보, 2013, 「일본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해역의 지명」, 『한국고지도연구』 제5권 2호.
- _____, 2017, 『불편한 동해와 일본해』, 밥북.
- 심정보·정인철, 2011,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영토해양연구』 2.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 2013,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발견 경위와 그 의의」, 『독도연구』 제14호.
- 이기봉, 2020, 『우산도는 왜 독도인가』, 소수출판사.
- 이상균, 2019, 「17-19세기 조선의 독도 인식과 지도표현의 변천사」, 『한국지도학회지』 제19권 제2호.
-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경세원.
- _____,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15호.
- _____, 2014,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이사부와 동해』 제7호.

- 이진명, 2005, 『개정증보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정인철, 2015, 『한반도 서양고지도로 만나다』, 푸른길.
- 최선웅, 2018,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지도학적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제18권 제3호.
- 최장근, 2012,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6집.
- 한철호, 2015,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제169집.
- _____, 2016, 「일본 농상무성의 「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 『한국근대사연구』 제79집.
- 호사카 유지, 2005,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북방사논총』 제7호.

1901년 울릉도 출장을 다녀온 스미스가 작성한 영문보고서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에 세 차례 파견된 시찰단의 조사 보고서
- II. 스미스 영문보고서의 주요 내용
- III. 스미스 영문보고서의 원문과 번역문

I.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에 세 차례 파견된 시찰단의 조사 보고서

1897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였고, 고종은 광무(光武) 황제로 등극하였다. 1876년 개항 이후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해산물 채취와 목재 벌목을 목적으로 몰래 도항을 반복하던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은 대한제국이 수립한 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벌인 작폐(作弊)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는 내부(內部) 및 부산해관에서 근무하던 관리를 울릉도 현지에 파견하였다. 1899년에는 부산해관 세무사(稅務司) 서리 에밀 라포르트(Emile Laporte, 羅保得), 1900년에는 울릉도 시찰위원(蔚陵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과 라포르트, 1901년에는 부산해관 이선청(理船廳) 서리(Acting Harbour Master) F. J. 스미스(F. J. Smith, 士彌須)가 울릉도 현지에 다녀왔다. 세 차례에 걸쳐 울릉도 현지 조사를 마친 이들은 각각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포르트의 출장보고서는 대한제국 해관 총세무사(Chief Commissioner) 맥 레비 브라운(McLeavy Brown)에게 제출되었다. 이 문건은 주한 영국공사 존 N. 조던(John N. Jordan)을 통해 영국 외무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되었다.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라포르트 영문보고서의 존재는 홍성근 박사가 발굴하여 내용 전문을 소개하였다.¹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이 내부(內部) 용지에 작성한 출장보고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 육당문고(六堂文庫)에 소장된 『울도기(蔚島記)』에 실려 있다.² 스미스의 보고서로는 『황성신문(皇城新聞)』 1902년 4월 29일 자 「별보(別報)」에 실린 국한문 번역 기사가

1 홍성근, 2013,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토해양연구』 6.

2 禹用鼎, 『蔚島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 청구기호는 '육당 B8 A39'로, 육당 최남선(崔南善)의 자료를 모아 둔 육당문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우용정의 울릉도 출장과 관련된 기록 이외에 지방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추원의 「건의서(建議書)」,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향약조례(鄉約條例)」가 합철되어 있다. 문서는 모두 내부(內部) 용지에 육필로 작성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³ 또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지방지 『산인신문(山陰新聞)』 1902년 5월 14일 기사로 스미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가 소개하였다.⁴ 그동안 이 두 종류의 번역 기사를 중심으로 스미스의 울릉도 출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서 스미스가 영문으로 작성한 출장보고서 원문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문서철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⁵ ‘당국 세관에서 과견한 관리의 복명보고서를 입수’하여 1902년 4월 12일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송부한 자는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였다. 스미스의 출장보고서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남아 있게 된 이유는 하야시의 부산해관 문건 입수와 본국 외무성으로의 자료 송부에 있었다.

필자는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스미스 영문보고서의 원문, 『황성신문』과 『산인신문』에 소개된 번역 기사 내용을 정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문보고서에는 나오지만 『황성신문』의 번역 기사에는 빠진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당시 울릉도 도감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와 그 성격을 다룰 수 있었다.⁶ 『산인신문』의 일본어 기사는 『황성신문』에 게재된 국한문 번역문을 입수하고, 내용을 좀 더 축약하여 소개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서 발간되던 지방지 『모지신보(門司新報)』에 『산인신문』의 울릉도 기사가 1902년 5월 15일 자료 실렸으며, 내용은 대동소이하되 『산인신문』보다 좀 더 축약된 판본이라는 점도 밝혀

3 『皇城新聞』 기사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기사 원문 이미지를 제시하고, 해당 기사를 한글로 쉽게 풀어서 소개한 자료집도 최근에 간행되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4): 신문기사(1897~1910)』, 동북아역사재단, 162~164쪽.

4 內藤正中, 2000, 「一九世紀末の竹島(鬱陵島)」,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東京: 多賀出版, 148쪽.

5 유미림, 2018, 「현지조사로 밝혀진 대한제국기 울릉도 현황과 일본의 자원 침탈」, 『해양정책연구』 33-1; 박한민, 2024a, 「1901년 부산해관 스미스의 울릉도 출장보고서 연구」, 『韓國史學報』 95.

6 박한민, 2024b, 「1900년 전후 울릉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일의 조사단 파견」, 『歷史學報』 261.

졌다.⁷ 1901년 8월 20일 스미스가 작성하여 제출한 울릉도 출장보고서가 『황성신문』의 번역 기사를 거쳐 일본 지방지로까지 전달되어 내용이 소개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스미스 보고서가 소개된 자료와 발간 일자

일자	수록 기사명 및 자료 출처
1901.08.20	Report on a visit to Dagelet Island made on the s.s. "Chang Riang" on 2 nd August 1901. 『稅關事務關係雜件』第2卷
1902.04.29	『別報』, 『皇城新聞』
1902.05.14	『鬱陵島の日本人』, 『山陰新聞』
1902.05.15	『鬱陵島の日本人(釜山海關吏スミス氏報告)』, 『門司新報』

1901년 8월 20일 부산해관에 제출된 스미스의 영문보고서가 원본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번역문을 수록한 신문 기사 경우 『황성신문』에서 『산인신문』을 거쳐 『모지신보』에 게재될수록 소개하는 내용이 축약되었다. 따라서 1901년 8월 2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현지 조사를 하고 부산으로 복귀한 스미스의 활동과 그가 파악한 울릉도 내의 사회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문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1차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그간 많이 다루었던 『황성신문』 기사는 국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축약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미스의 울릉도 현지 조사 내역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스미스가 작성한 영문보고서 원문의 전체 내용과 더불어 일본 지방지에 수록된 스미스 보고서의 일본어 번역 원문 두 가지를 부록으로 소개하려 한다. 자료 원문의 소개를 통해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 지역에 대한 지방사와 사회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7 박한민, 2024a, 앞의 글.

II. 스미스 영문보고서의 주요 내용

스미스가 울릉도 출장을 다녀온 후 부산해관에 제출한 보고서 제목은 「1901년 8월 2일 기선 창룡호(蒼龍號)로 방문한 울릉도 보고서(Report on a visit to Dagelet Island made on the s.s. "Chang Riang" on 2nd August 1901)」이다. 이 문서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 『세관사무관계잡건(稅關事務關係雜件)』 제2권 가운데 「시게마쓰 도쿠지로(重松徳次郎) 휴대 동화 처분에 관한 원산 주재 영사의 보고 건」에 끼워져 있다.⁸ 원래대로라면 문서 내용상 「울릉도에 관한 세관보고서 사본 한국 주재 공사의 송부 건」에 들어가 있어야 맞다.⁹ 하지만 여러 문서를 하나의 책자로 묶는 과정에서 무언가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자가 최근 연구에서 지적하였다.¹⁰ 보고서는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7장 분량이다. 보고서 중간에 등장하는 한국인 인명의 경우 영어식 발음 표기와 더불어 해당 한자 표기를 수기(手記)로 기재하였다. 현재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홈페이지(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jp>)에서 제공하고 있는 PDF 파일로 레퍼런스 코드(Reference Code)는 'B10073483900'이며, 해당 보고서는 파일의 하단부에 기재된 컷 번호상으로 0302부터 0305까지이다. "Custom House, Fusan, 20th August"로 시작하는 0305부터 역순으로 문서를 보아야 하며, 0302의 하단 "To W. McC. Osborne Esquire commissioner of Customs, Fusan."에서 문서가 끝난다. 문서 상단부의 경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인지 용지가 훼손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존재한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0302)는 상단부의 세 줄 정도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판독하기는 어렵다.

8 「重松徳次郎携帶銅貨処分二關シ在元山領事ヨリ報告之件 明治三十五年五月」, 『稅關事務關係雜件』 第2卷(JACAR Ref. B10073483900: 0302~0305).

9 「鬱陵島二關スル稅關報告書寫在韓國公使ヨリ送付ノ件 卅五年四月」, 『稅關事務關係雜件』 第2卷(JACAR Ref. B10073483700).

10 박한민, 2024a, 앞의 글, 201쪽.

스미스가 작성한 영문 출장보고서에는 창룡호를 타고 울릉도에 간 날짜가 1901년 8월 2일, 보고서를 작성해 부산해관에 제출한 날짜가 8월 20일로 정확하게 나온다. 보고서 작성 당시 스미스의 직책은 부산해관의 외반직(外班職)인 이선청 서리였다. 스미스가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급 관리자는 부산해관 세무사 서리 윌리엄 맥 오즈본(William McC. Osborne)이었다. 창룡호를 타고 울릉도까지 동행한 관리자는 부산해관 서기 김성원(金聲遠)과 영자수(鈴字手, tidewater) 아라키 하루하타(荒木春端), 부산감리서 주사(主事) 정보섭(丁寶燮)이었다.

울릉도로 도항해 현지에 거류하는 일본인 수는 약 550명으로, 이들은 울릉도민과 주로 현물 거래를 하였다. 한국인은 콩 외의 곡물류, 일본인은 쌀과 장류 등의 생필품과 면직물 등을 가지고 교환을 하였다. 하타모토(畑本)와 와키타(脇田)가 거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두 개의 대표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섬 내 작업 구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벌목을 하고, 목재를 반출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하타모토와 와키타는 모두 시마네현 오키노쿠니(隱岐國) 출신으로, 하타모토 기치조(畑本吉藏)와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를 가리킨다.

보고서에는 울릉도 도감으로 일본까지 왕래한 배계주(裴季周), 그가 부재하는 동안 ‘도감 서리’를 칭하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징세를 한 오상일(吳相日)이 나온다.¹¹ 일본인들은 오상일에게 상납한 물품의 영수증을 우용정과 같이 출장을 나왔던 부산영사관 아카쓰카(赤塚) 부영사(副領事)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아카쓰카는 외교관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영사관에 부임한 영사관보(領事官補)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였다. 하지만 오상일의 징세와 일본인들의 현물 상납과 관련된 내용은 『황성신문』을 비롯하여 일본의 지방지 기사에 일절 나오지 않는다. 1900년 4월 러시아 군함의 울릉도 기항, 러시아 관리의 울릉도 체류와 관련된 내용 역시 영문보고서에

11 위우성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 『鬱陵島二於ケル伐木關係雜件』(Ref. B11091460300)에는 ‘울릉도 도감 오상일(吳相鎰)’로 나온다.

만 나오며, 각 신문의 번역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주사 정보섭은 창룡호를 이용하여 울릉도의 물자 교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최병인(崔秉麟), 김성술(金性述) 등의 검사사람들이 관여하였다. 이들 가운데 구금을 당해 대두 156가마를 갚으라고 압박을 받던 김성술이 목을 매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영문보고서에만 나온다. 울도군수 배계주는 김성술이 사망한 후 현장에서 검험(檢驗)을 곧바로 실시하고 검안(檢案)을 작성해서 정부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창룡호를 타고 울릉도에서 급하게 빠져나온 배계주를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평리원(平理院) 검사가 기소하였다. 이 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902년 5월 28일자 『관보(官報)』의 「회보(彙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김성술과 김경중(金敬重), 전사능(田士能)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다는 정황까지 기술되어 있다. 이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한 명은 배를 타고 부산까지 나가 울릉도 내 관리들이 자신들을 수탈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처지를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부산감리의 아들로 현재 고위직에 있는 현상건(玄尙健)의 전언(傳言)으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강영우를 사절로 파견한다는 소식은 영문보고서와 번역문에 모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검사사람들은 강영우가 울릉도에 파견되면 현지 관리 두 명은 해고되고, 더 이상의 관리 임명은 없으리라고 전망하였다. 스미스가 울릉도 거주민들과 만나 알게 된 현지 상황과 분위기는 영문보고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목해 볼 부분이다. 스미스의 영문보고서에는 배계주와 오상일을 비롯한 울릉도 거주민들의 활동과 세금 징수 문제, 정보섭과 현상건 등 대한제국 관리들의 개입과 관여, 비개항장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인들의 세력 형성과 경제활동 등 1900년대 초반 울릉도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Ⅲ. 스미스 영문보고서의 원문과 번역문

1. 보고서 원문¹²

Custom House,
Fusan, 20th. August

Report on a visit to Dagelet Island made on the s. s. “Chang Riang”
on 2nd August 1901

Sir,

I have the honour to report that on the 2nd inst. I left Fusan in company of Mr. Clerk Kim-sung-won, Mr. Tidewaiter Araki, and Mr. Cheung a Chusa of the Fusan Yamen on the Corean s. s. “Chang Riong” for Dagelet Island at which place we arrived the next morning at 7 A. M.

The Japanese population on the island number 550 in round figures, consisting mostly of wood-cutters, ship’s carpenters, and a few shop-keepers. They are all permanent residents some of them having made the island their home for the last 8 years.

During the non-stormy months of the year, that is from commencement of March to end of June 300 to 400 Japanese on an average (including some 50 women) mostly from Sakai, come over in Fishing boats and Schooners, the former to fish, and the latter to

12 현재 사용하는 영단어와 다르게 쓴 옛 표현들이 군데군데 있으며, 창릉호와 배계주의 영문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자료에 기재된 원문 그대로 제시한다.

load goods, such as wood, yellow beans barley, wheat or potato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by the Japanese on the island,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year.

There are at present 32 Japanese women resident on the island.

The Japanese with the money they acquired by the sale of the Dagelet wood in Japan, buy such articles as rice, soy, salt, and sake and piece goods, Those goods are imported into the island and there exchanged with the Coreans for beans, wheat, barley and potatoes, money is very seldom paid for the goods supplied as almost always other goods are given in return as payment.

It seems that the Japanese alleged permanent residents are divided into 2 parties, one represented by a man of the name of "Hatamoto" and the other by "Wakita", who have of their own accord divided the cutting of the wood on the island between them, one taking the north and other the south side. At the same time(on the 15th, July 1901) they(the Japanese) notified the Corean farmers, that they(the Coreans) will not be allowed henceforth to cut nor send any wood away from the island, without having been sanctioned by the Japanese to do so, and if after having received notice any one is caught in the act, or after, the person or persons concerned will be fined accordingly by the Japanese. Fines have already been inflicted several times before on Coreans, starting from August last year. The officials and the people are quite powerless. A case of the kind was brought to my notice. A Corean on the 4th, July 1901, had to pay a fine of 35,000 cash, or the equivalent in goods, for having been found in possession of a few newly-out planks. Another Corean who wanted to cut a tree down which was within his ground, was a few days after told that he would have to pay 30,000 cash value of

the tree, I made careful enquiries into the matter, and according to what I heard, it seems that it's quite true.

The Japanese on the island have been cutting down trees absolutely without permission and they pay no duty on timber or any thing else that send out, or on anything they bring in.

Peh-kai-chu(裴季周) at present in Dagelet has been in charge of the island for the last 6 years. Three years ago he had to go to Japan in connection with some wood that a Japanese junk took from the island. During the time he stayed away somebody on the island of the name of Oh-san-il(吳祥日) told the people that he had received order from Seoul, appointing him temporarily in charge. Now the Japanese say, that for 3 months they have paid to this Oh-san-il(吳祥日) duties on both import and export not actually with the cash money, but the equivalent in goods such as rice, sake, and salt, and that they have the receipts for the amount, which they have handed over to Mr. Akatsuka formerly Japanese Vice-Consul at Fusan, when he came up to the island last year with MR. Laporte. After careful enquiries I have found out that the amount of goods given to "Oh-san-il"(吳祥日) by the Japanese during the 3 months, comes only to 4 bags of rice, 1 tub of sake and a few bags of salt, although the Japanese assert that these goods were given as presents and not otherwise. The Japanese say also that, ever since they have been residing on the island, some 8 years, although they have offered to pay duties on every thing import and export Peh-kai-chu(裴季周) the present man in charge has always refused.

The exact date of these different occurrences, I have been unable to ascertain, as the people do not know them themselves.

There is very little trade done with the island, the only port with

which it does a little in the way of export is Fusan.

The native Koreans living on the island number about 3,000 people and consist almost entirely of farmers. They live on the products of the island, besides other articles such as rice, soy, sake etc., which they get from the Japanese in exchange for wheat, barley, yellow beans and potatoes.

There was a Russian Gunboat, which called at the island last year in April for water and provisions, and at the same time(as reported to me by the Koreans) landed 8 men, including 3 officers, soon after these men were landed the vessel left but returned after, about a week, and retook the men, what were their doings during the week nobody could tell; otherwise no other vessels, nor individuals of any other nationalities have called within recent years at the island.

On the East coast, on the beach in the little bay is where the main body of the Japanese residents are living, wooden huts to the number of 50, having already been built by them, and many more half finished.

Besides the above, Japanese huts are to be found all over the coast in clusters of 4 or 5. The exact number of these huts, I am unable to state, because the Chief Purser of the s.s. "Chang Riong" Mr. Cheung, would not allow the steamer to proceed to another in front of the different villages same as she did last year and to go by land was impossible.

By so doing, I have only been able to gather informations from two villages, as otherwise I could have got from four. The reason the Purser gave for his action, was that he had received orders previously from the Government, that the steamer was only to proceed to Dagelet Island and bring back to Fusan Mr. Pek-kai-

chu(裴季周)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island. If this was the reason, this official being at the time on board, we could have left again for Fusan, but it seems that the true reason why Mr. Cheung would not allow the steamer to proceed to the other places was that he expected 156 bags of yellow beans of his own.

The trip before when the “Chang Riong” called at the island, she had on board from Fusan 100 bags of rice etc., belongings to Mr. Cheung, which were under the name of one of the official on the island named “Chai-piung-in”(崔秉麟) this official was supposed to trade with the rice. On the arrival however of the 100 bags at the island, the Japanese under one pretext or another seized these bags of rice. The officials not being able to get satisfaction from the Japanese arrested a Corean of the name of “Kim-sung-sul”(金性述) whom they accused of having told the Japanese some lies, which induced them to seize the 100 bags of rice. This man “Kim-sung-sul”(金性述) promised to pay back out of his own stock, 156 bags of beans the next day, but instead he was found next morning hung by the neck to the branch of a tree and is supposed to have committed suicide. Mr. Cheung, seeing then that there was no other chance of getting the beans, allowed the steamer to proceed to the west coast, where she took in 70 bags, said to be for the Government.

As regards the difficulties between the officials and the natives, it seems that three men of the name of “Kim-kung-cheng”(金敬重) “Kim-sung-sul”(金性述) and “Chung-sa-rung”(田士能) who with the intention of raising some money by fraudulent means, told the people of the different villages that Mr. Hyun-san-kun(玄尙健) son of the Fusan Kamni, who holds a high official position in Seoul, had said that the Government had decided to send a secret envoy of the

name of “Kang-yung-woo”(姜永佑) who will do away with the present officials, after which there will be no more appointed to the island, but the people will have to subscribe between themselves 700,000 cash, to defray the expenses of this envoy. When the above came to the knowledge of the officials, they in their turn advised the people not to pay anything before the arrival of this envoy not however before many had already paid in their shares. Seeing that their plans had failed, one of the three men, with the money in hand, went to Fusan in a Korean junk, from where he sent several telegrams to the Government to the effect that the people could not stay any longer on the island because the officials were squeezing them too much. Many of the Koreans whom I met, expressed themselves perfectly satisfied with their own officials, but complained bitterly of the way they are treated by the Japanese on the island and of the official not being able to help them in any way. Another reason why some of them paid, is that they believed that by getting the envoy over, the two present officials, will be dismissed and no other appointed in their place, and if such should be the case they would have nothing more to contribute in future. The above information I got from a number of residents, who also gave me to understand that they were being squeezed by the officials, but not much and it seems that the people had no intention of having the island at all, as it was rumoured some time ago, but were [용지 훼손] official reg [용지 훼손].

There were at the time [용지 훼손-문맥상 I arrived]있을 것으로 추정됨] 16 schooners at anchor, besides 5 others fully loaded with wood and ready to sail, and on the beach in the little bay were about 500 hard wood planks and logs, and as long as from 10 to 20 feet and every

one of them cut by the Japanese, besides dried awabi, bicho-de-mar, 300 bags of yellow beans, bird lime, in more or less great quantity, There were also 7 fishing and 3 divers boats all holding licenses issued at Fusan.

The water is very deep round the island. Harbour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there is none, as the coast line is completely open all over. There are 3 little unsheltered bays where a steamer could anchor, and the “Chan Riong” had to go very near shore before she could find bottom to anchor. Large patches of barren ground are to be seen all over the island, but the centre is still thickly wooded.

I have the honour to be

Sir

Your obedient servant

(Signed) F. J. Smith

Acting Harbour Master.

To

W. McC. Osborne Esquire

Commissioner of Customs,

Fusan.

2. 보고서 번역문

부산해관, (1901년) 8월 20일

1901년 8월 2일 창룡호(蒼龍號)로 방문한 울릉도 보고서

제가 (8월) 2일 자 일을 보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기(해관 방관) 김성원(金聲遠), 해관조사원(鈴字手, tidewater)¹³ 아라키(荒木), 조선의 부산감리서 주사 정보섭(丁寶燮)과 일행을 이루어 한국 선박 창룡호를 타고 울릉도로 출발하였고, 우리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의 일본인 수를 대략 파악해 보니 550명이었는데, 대부분 벌목자와 선박을 제조하는 목수로 이루어졌고, 상점을 지키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구 거주자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8년 동안 그 섬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바람이 없는 달 동안에 3월부터 6월 30일까지 평균 300명에서 400명의 일본인들(여성 50여 명 포함)이 사카이(境)에서 고깃배와 증기선을 타고 건너오는데, 전자는 어업을 위해서, 후자는 섬에 있는 일본인들이 집적한 목재, 황두, 밀, 감자 등과 같은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섬에는 현재 32명의 여성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울릉도 목재의 판매로 얻는 돈으로 쌀, 콩, 소금, 술, 단편적인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그 섬으로 수출되며, 한국인들과 콩, 밀, 보리와 감자로 교환합니다. 공급하는 물품에 금전을 거의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는 대가로 대부분 다른 물품을 제공합니다.

영주하는 일본인들은 두 개의 당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타모토’라는 이름의 남자가 대표하며, 다른 하나는 ‘와키타’가 대표합니다. 이들은 그 섬에서 벌목하는 데 각자 합의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북쪽,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취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기에(1901년 7월 15일) 그들(일본인)은 한국 농민들에게 고지하기를, “그들(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고지하는 일 없이는 그 섬에서 어느 목재든지 벌목하거나 내보내는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고지를 받은 후에 누군가 행동을 하다가 붙잡히거나, 혹은 그 후라면 그 사람

13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가 관할하는 조직의 외반(外班) 가운데 하나로, 현화(驗貨, Examiner)와 함께 화물 감정, 선박 조사와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

이나 관련된 자들은 일본인들이 벌금형에 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이미 여러 번 한국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리들과 사람들은 상당히 무력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1901년 7월 4일, 한국인 한 명이 몇 개의 새로 나온 판목(板木)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35,000문(文)의 현금으로 벌금을 내거나, 동등한 값어치의 물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으로 자기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려 한 자는 며칠 후 그가 그 나무의 가격으로 30,000문의 현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그 문제를 조사하였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 섬에 있는 일본인들은 아무런 허가도 없이 벌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재나 기타 어느 것이든 내보내거나 들여오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울릉도에 있는 배계주(裴季周)는 지난 6년 동안 그 섬을 관리하였습니다. 3년 전에 그는 몇몇 목재를 일본 정크선이 그 섬에서 가져간 일과 관련하여 일본에 가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오상일(吳祥日)이라는 이름으로 섬에 있던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서울에서 그를 임시로 담당하도록 임명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3개월 동안 그들은 이 오상일에게 수출입에 대하여 실제로는 현금이 아닌 것으로 관세를 냈는데, 이것은 쌀, 술, 그리고 소금과 같은 물품에 상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납부한 총량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 부산 일본 부영사(副領事) 아카쓰카(赤塚) 씨가 라포르트 씨와 함께 그 섬에 왔을 때, 그들은 영수증을 그(아카쓰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신중하게 조사한 후, 저는 “오상일”에게 일본인들이 3개월 동안 주었던 물품의 양을 확인하였는데, 쌀 4가마, 술 1통 그리고 소금 몇 가마뿐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인들은 이러한 물품을 세금으로 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다른 목적이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섬에 거주하기 시작한 대략 8년 동안, 그들이 모든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현직에 있던 배계주는 이 제안을 항상 거절하였다고 함

니다.

그들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듯이 저는 이렇게 발생한 다른 사건들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섬에서 극히 적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수출 방식으로 약간 이루어진 유일한 항구는 부산이었습니다.

그 섬에 거주하는 현지 한국인들은 대략 3,000명이며, 구성원 전부가 거의 농민입니다. 그들은 섬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생활하며, 쌀, 콩, 술, 기타 물품 같은 것들은 일본인들로부터 얻으며 밀, 보리, 황두, 감자와 교환합니다.

지난해 4월에 이 섬에 들른 러시아 군함은 물과 식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한국인들이 제게 보고하였듯이) 8명이 상륙하였는데, 3명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상륙하자마자 그 선박은 떠났지만 대략 1주일 후에 돌아와 그들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1주일 동안 한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다른 선박이나 다른 어떠한 국적의 개인도 근래에 이 섬을 들르지 않았습니다.

동쪽 해안에서 작은 만(灣)이 있는 해변은 일본인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거점이었습니다. 목재로 된 가옥 수는 50채로 일본인들이 이미 건설하였고, 절반 이상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본인 가옥은 4~5채가 모여 있으며, 모든 해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저들의 가옥 수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룡호의 사무장 정(보섭) 씨는 작년에도 그러하였듯이 다른 마을들 앞에 증기선을 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저는 마을 두 곳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네 군데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장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가 전에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증기선은 울릉도로 가서 이 섬을 담당하는 관리 배계주를 데리고 부산으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유였다면 그 관리가 승선했을 때 우리는 부산으로 다시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섭)

씨가 그 증기선이 다른 장소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그 자신이 소유할 황두 156가마를 예상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창룡호”가 이 섬에 들르기 전 여정에서 그 배는 부산에서 정(보섭) 씨가 소유한 쌀 100가마와 기타 물품을 적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섬의 관리 중 한 명인 최병인(崔秉麟)의 이름이 붙어 있었고, 이 관리가 쌀과 교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 100가마가 도착하자 이런저런 트집을 잡은 일본인들이 이 쌀가마를 압류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관리들은 일본인들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김성술(金性述)’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을 체포하였고, 쌀 100포대를 압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성술(金性述)’ 이 지는 다음날 콩 156포대를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뭇가지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는데, 자살로 추정됩니다. 정(보섭) 씨는 그때 콩을 얻을 다른 기회가 없음을 포착하여 기선을 서쪽 해안에 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거기서 70포대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조선 정부를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김경중(金敬重)’, ‘김성술(金性述)’, ‘전사능(田士能)’이라는 이름의 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셋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서울에서 고위 관리(顯官)를 하고 있는 부산감리(釜山監理)의 아들 현상건(玄尙健) 씨는 “정부가 현직 관리들을 제거하려고 ‘강영우(姜永佑)’라는 이름의 밀사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현직 관리들을 없애고, 이후로 이 섬에는 더 이상 (관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절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70만 문의 금액을 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관리들에게 알려지자 관리들은 사람들에게 이 사절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내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물을 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본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한국 선박을 타고 부산에 갔고, 관리들이 너무 쥐어짜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섬에 머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부에 여러 차례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관리들에게 완벽하게 만족을 표하면

서도, 섬에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리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불평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돈을 낸 또 다른 이유는, 사절 파견으로 두 명의 현직 관리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의 경우에는 그들(관리였던 자들-역주)이 앞으로 더 이상 기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여러 거주민에게 얻었는데, 관리들이 쥐어짜고 있지만 많이는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얼마 전에 소문이 난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섬을 소유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용지 훼손으로 상단의 두 줄은 판독 불가]

제가 섬에 도착했을 때는 돛대가 2개인 범선(스쿠너) 16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재를 가득 싣고 출항 준비를 마친 5척이 있었습니다. 작은 만(灣)의 해변에는 500여 개의 단단한 판목과 통나무들이 있었고, 10피트에서 20피트 길이로 일본인들이 벌목한 것 외에도 말린 전복, 해삼, 황두 300가마, 끈끈이 닳이 어느 정도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어선 7척과 잠수부 선박 3척이 있었는데, 모두 부산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섬 주변의 수심은 매우 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항구는 없는데, 해안선이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선이 닻을 내릴 수 있는 작은 3개의 노출된 만(灣)이 있고, “창룡호”는 닻을 내릴 바닥을 찾기 전에 해안 근처로 가야 했습니다. 섬 전체에 걸쳐 불모지가 여기저기서 보이지만, 중심부에는 여전히 삼림이 울창합니다.

당신의 총복
이선청(理船廳) 서리
F. J. 스미스

부산해관 세무사 (서리) 윌리엄 맥 오즈본 님께

<부록> 일본 지역신문에 소개된 스미스 보고서

1. 「울릉도의 일본인」 『산인신문(山陰新聞)』, 1902년 5월 14일

鬱陵島の日本人

在鬱陵島日本人に關する釜山海關吏スミス氏の報は昨年八月二十日付にて提出せられたるものにて、其の中に左の言あり。

島中日本人口は約百五十人位にて、皆造船材木者及數戸の商家なり。該日人等は此島を以て永遠の居住地と認め、今日及七八年を土着し、尙ほ毎歲三月より六月に至れば、其風靜かにして浪穩かなるに乗じ、日本の男女三四百名は日本サカイ(境か)地方より該島に來泊し、或は漁獵に、或は斫木に従事し、或は日本人の貯蓄したる材木、豆麥、薯蕷等を搭載輸去するもの常に絶へずと云ふ。

日本の女子にして現に島中に居住するもの三十二名にして、凡そ日本の作業は槻木を斫伐して日本に輸出し、是を以て米、鹽、醬油、酒等の食品を始め、其他木綿の如きものを購ひ島中に輸入し、韓民と雜穀を交換し、其錢幣を以て價を償ふは罕に見る感なり。該島居住日人中には兩黨に分れ居れり。即ち、一はハタモト(人名か)なるもの、黨首となり。一はワキタ(人名か)なるもの、黨頭となり。此二黨は南北の疆土に分れ、自ら其森林を領有せり。既に昨年(明治三十三年)七月十五日の如きは、韓民に對し是より以後若し日本人の許可なくんば、擅に伐木は勿論、一木も輸出するを得ず。若し現行者あれば、罰額を應償すべしとの告示をなしたるを以て、此より韓民の被捉せられ罰金に處せらるゝもの屢なるも、該島官民は禁制權力なし。本派員適ま在島時に當り、一案件を以て來り告ぐるものあり。曰く、本年七月の頃、一韓人の所有せる新斫を日人に發見せられ、罰金三萬五千文を償ひ、又一韓人は其居住地内に於て一本を斫倒し、人のために告發せられ、亦た罰金として三萬文を償ひた

りと。以上は事實の事件に係ると云ふ。

該島居住の韓民は人口凡三千に及ぶも、皆細戸、農民の活を爲す者なれば、米、布、醬油、酒等は皆な土産の豆麥、薯蕷を以て日本人と交易し、或は釜山に輸出して賣買すると云ふ。

島東小灣の岸上に白人の投産あり、畧五十戸許りなるが、今方に新築せる者亦多く、沿岸亦た日人四五の村落あるも、本員は他の繁事を以てまた其戸數を索探する能はず。島中人金敬重、金性述、田土能なる者三名は最も奸猾欺騙にして民財を貪歛し、又各村に揚言して曰く、釜山管理の子玄尙健、現に要職に在り謂て曰く、政府より視察姜永祐を派遣し一應島中の現官を免職し、永く島管を置かざる筈なるも、姜視察の所需費額七十萬文を當さに民間より捐納すべし云々と。依て愚民等或は其懲誦を被り、頗る隱納者ありと云ふ。

本員到島の時、兩桅船十六隻海面に碇泊し、又た五隻の船には木材を満載し出帆準備をなし居たり。且つ海岸に於ては五百個の堅綴板材及體木を置きたるが、長十尺或は二十尺にして、皆な日本人の斫伐に係り、且つ漁船七隻及潜水夫艇子三隻あり。皆な釜山の日本領事館より官許を領有したる者なり。又乾鰓、海蔘、及黃豆三百石及雀膠等の物、皆な將さに輸出せんとするものなり。

環島海水は甚だ深く、港灣に密合するが如きは絶無にして、海岸は即ち四面開濶なるも、但た三處の小灣を有し、汽船は碇泊するを得べし。島中處々に韓人の田土あり、全島の中央は森林尙且つ之れを望んで鬱葱なり。

2. 「울릉도의 일본인(부산해관 관리 스미스 씨 보고)」, 『모지신보(門司新報)』, 1902년 5월 15일

鬱陵嶋の日本人(釜山海關吏スミス氏報告)

嶋中日本人口は約百五十人位にて、皆造船材木商及數戸の商家なり。該日人等は此嶋を以て永遠の居住地と認め、七八年を土着し、尙ほ毎歲三月より六月に至れば、其風靜かにして浪穩かなるに乘じ、日本の男女三四百名は日本サカイ(境か)地方より該島に來泊し、或は漁獵に、或は斫木に従事し、或は日本人の貯蓄したる材木、豆麥、薯蕷等を搭載輸去するもの常に絶へず。

▲日本の女子にして現に島中に居住するもの三十二名にして、凡そ日本の作業は槻木を斫伐して日本に輸出し、是を以て米、塩、醬油、酒等の食品を始め、其他木綿の如きものを購ひ島中に輸入し、韓民と雜穀を交換し、其錢幣を以て價を償ふは罕に見る感なり。該島居住日人中には兩黨に分れ居れり。即ち、一はハタモト(人名か)なるもの、黨首となり。一はワキタ(人名か)なるもの、黨頭となり。此二黨は南北の疆土に分れ、自ら其森林を領有せり。既に明治三十三年七月十五日の如きは、韓民に對し是より以后若し日本人の許可なくんば、擅に伐木は勿論、一木も輸出するを得ず。若し現行者あれば、罰額を應償すべしとの告示をなしたるを以て、此より韓民の被捉せられ罰金に處せらるゝもの多きも、該嶋官民は禁制權方なし。

▲該島居住の韓民は人口凡三千に及ぶも、皆細戸、農民の活を爲す者なれば、米、布、醬油、酒類は皆な土産の豆麥、薯蕷を以て日本人と交易し、或は釜山に輸出して賣買すると云ふ。

▲嶋東小灣の岸上に白人の投産あり、略五十戸許りなるが、今方に新築せるもの亦多く、沿岸亦た日人四五の村落あり。

▲本員到島の時、兩桅船十六隻海面に碇泊し、又た五隻の船には木材を満載し出帆準備をなし居たり。且つ海岸に於ては五百個の堅綴板材及體木を置きたるが、長十尺或は二十尺にして、皆な日本人の斫伐に係り、且つ漁船七隻及潜水夫艇子三隻あり。皆な釜山の日本領事館より官許を領有したる者なり。又乾鰻、海蔘、及黃豆三百石及雀膠等の物、皆な將さに輸出せんとするものなり。

▲環嶋海水は甚だ深く、港灣に密合するか如きは絶無にして、海岸は即ち四面開濶なるも、但た三處の小灣を有し、汽船は碇泊するを得べし。嶋中處々に韓人の田土あり。全島の中央は森林尙且つ之れを望んで鬱葱なり。

서평



- 이석용 |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도시환 편, 2023, 동북아역사재단
- 정갑용 | 『독도등대』: 김신 저, 2024, 좋은땅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도시환 편, 2023, 동북아역사재단)

이석용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 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 법리 학술연구서
- II.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검토
- III.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 검토
- IV.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연구의 집대성

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 법리 학술연구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연구총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전문가들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독도에 대한 합의 관련 연구성과를 모은 것으로, 재단이 2022년에 출간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와 함께 독도 영유권 관련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제1부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제2부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제1부에서 제1장 「한국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제2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반식민주의 관련 법리 검토」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진 교수,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구학술팀장 서인원 박사,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비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인 조규현 박사가 쓴 글이다.

제2부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학자 간의 독도 영유권 관련 국제법적 논쟁을 게재한 것이다.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쓰카모토 다카시가,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은 영산대학교 정갑용 교수가, 제7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은 다시 쓰카모토 다카시가,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은 다시 정갑용 교수가 작성한 글이다.

II.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검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되어 1952년 4월 28일에 효력발생에 들어간 48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간의 조약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조약이다. 본래 강화조약은 국가 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여 평화상태를 회복하며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는 조약으로, 영토귀속과 국경선확정, 전쟁책임과 배상 등의 문제가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 강화조약은 전쟁의 결과를 반영하므로 패전국에게는 부담스런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한 일본의 경우에는 더욱 부담스런 조건들이 부과될 수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들은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을 통해 징벌적인 대일 영토정책을 예고했었다. 이들 선언은 1894년 청일전쟁 또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일본이 강탈한 태평양의 도서, 타이완과 평후제도,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획득한 영토를 포기하고,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도취한 모든 지역에서 추방한다고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독도를 포함한 한국이 독립하도록 약속하였다. 그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즉 SCAPIN 제677호 '일부 주변 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지령'은 제3조에서 일본은 혼슈 등 4개의 본도와 약1천 개의 인접 부속도서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즉 독도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학설상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표명된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엄격한 원칙이 SCAPIN 제677호를 넘어서 미국의 강화조약 초기 초안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입장은 SCAPIN 제677호가 전후 영토처리에서 제한적이지만 나름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는 데 반해, 전후 동구권과 중국의 공산화 등으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인식한 미국이 느슨한 강화조약으로 선회하였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SCAPIN 제677호의 합의도 축소하여 보고자 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포츠담선언과 일본의 항복 이후 수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는데, 조약에는 냉전체제 수립과 함께 급변해 가던 당시의 국제 질서가 영향을 주었다.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조약 초안들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화 모습을 보여 준다. 미국 국무부의 대일강화조약 초기 초안들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보듯이, 일본을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구축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위도와 경도로 상세히 기재하며 국경선 근처 작은 섬의 귀속국가도 명시하였으나, 냉전의 본격화로 일본을 공산세력에 대한 방파제로 여기게 되면서 당초의 목표는 희미해지고 규정은 모호해졌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장에서 영토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타이완과 평후제도, 쿠릴열도, 1905년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취득한 사할린 남부를 포기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위임통치를 받던 남태평양의 도서들은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남극과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쿠릴열도부터 남극까지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의 영토문제를 다루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고려와 냉전체제를 감안하여 미봉한 결과,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오키나와, 남사제도 등은 영토의 귀속 및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미국의 초기 대일강화조약 초안들과 영국과 호주의 초안에 모두 한국령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무지와 일본 측의 미국에의 선택적 자료제공과 로비 및 우리 측의 준비 소홀 등으로 그러한 규정은 사라지고 독도문제는 해결의 호기를 놓치게 되었다.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저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주요 연합국들이 합의한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원칙,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및 SCAPIN 제677호의 내용과 함의, 대일강화조약 초안 분석

과 조약체결 시의 사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독도 영유권 관련 합의 등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장별로 서평하고자 한다.

제1장 「한국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에서 도시환 독도실장은, 독도문제가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일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연합국이 설정한 초기 대일 영토정책의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즉 전후 일본영토 처리에 있어서 본래 적절하게 징벌적이었던 연합국들의 스탠스는 전후 동유럽과 중국의 공산화 및 한국전쟁의 발발 등 격화되어 가는 냉전의 영향으로 강화조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영토문제와 전쟁배상 등에서 관대한 방향으로 선회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쟁 중 연합국은 전후 대일 영토정책을 카이로선언(1943.12.1)과 포츠담선언(1945. 7. 26)을 통해 표명하였는데, 특히 포츠담선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강탈한 모든 태평양 도서의 몰수, 타이완과 펑후제도의 중국으로의 반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도취한 모든 지역에서의 추방을 밝혔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노예상태에 주목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그 후에도 유지되어, SCAPIN 제677호 ‘일부 주변 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지령’은 제3조에서 일본은 혼슈 등 4개의 본도와 약 1천 개의 인접부속 도서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 즉 독도는 거기에서 제외하였다. 이어서 소위 맥아더 라인을 설정한 SCAPIN 제1033호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지령’에서도 일본 선박과 승무원의 독도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였다. 이에 저자는 카이로선언부터 이때까지 연합국들은 일본영토를 경위도선과 부속지도 등을 첨부하여 분명히 밝히는 모양새를 견지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근거에서 저자는 1905년 독도에 대한 선점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SCAPIN은 무효가 되었던 우에다 도시오의 ‘SCAPIN 무효론’을 비판하였고, 일본영토는 후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SCAPIN은 임시적 효력을 가질 뿐이었다는 다이주도 가나에의 ‘SCAPIN 임시효력론’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고, 유사한 내용의 히로세 요시오의 ‘임시위임론’을 비판하였다.

한편 점차 견고해 가는 냉전체제로 대일강화조약의 징벌적 성격이 완화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의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William Sebald)가 일본의 독도 주장은 오래되었고 유효하며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는 것이 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 후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은 표류하기 시작하는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령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6차 초안에서는 일본령으로 표기되었고 결국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1950년 4월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미국 상원의원이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담당하면서 비징벌적 강화조약의 체결이 추진되었다. 1951년 7월 9일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제3차 영미합동초안을 보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와 파랑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도록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덜레스는 지리학자 보그스(Samuel W. Boggs)의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미국의 러스크(Dean Rusk) 국무차관보는 국무장관을 대신해 1951년 8월 10일 문서를 보내, 정보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한 러스크 서한인데, 서한 전달 직후인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확정안이 공표되고 9월 8일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저자는 이로써 일본 국제법학계에서는 무주지 선점론자 중심의 SCAPIN 효력단절론에서 쓰카모토 다카시의 무주지 선점에 대한 조약적 권원승인론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였다.

쓰카모토 다카시의 역사적 권원을 중시하는 ‘고유영토론’은 ‘1905년 무주지 선점론’의 약점을 대체하고자 제기된 것으로 17세기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에도 막부는 1696년 울릉도예의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1837년 이를 위반한 하치에몬을 처형했으며, 메이지 정부는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기반으로 1877년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다. 더구나 1900

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명시적인 방법으로 영토로 편입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제2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반식민주의 관련 법리 검토」는 오시진 교수의 글이다. 대일강화조약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패전국 일본에게 영토와 배상 등에 있어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자 의도하였으나, 전후 냉전체제의 수립 등의 영향으로 결국 느슨한 강화조약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조약을 해석할 때 ‘체결 시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착안하여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 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선언에 내포된 반식민주의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른 강화조약들과 달리 특이한 점들이 있다고 하였다. 다른 강화조약들은 영토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그렇지 아니하였으며, 시기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닌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의 결과인 타이완과 쿠릴열도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동 조약 제2조 영토 관련 조문에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영유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시점과 그 기준을 설정하게 된 동기가 관심대상이라고 하였다.

결국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문언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작업 기록과 체결 시의 사정 등 보충적인 수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조약의 준비작업 기록과 체결 시의 사정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조약체결을 주도한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초안들인데, 1947년 초안은 청일전쟁 이전인 1894년 1월 1일을 일본의 영토확정을 위한 기준일로 삼았다. 저자는 이 시점은 카이로선언의 ‘폭력과 탐욕’과 결부되어 반식민주의적 스탠스와 결부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식에서 탈레스는 포츠담 항복조건(Surrender Terms)이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일본과 연합국을 구속하는 문서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포츠담선언은 강화조약 제2조의 해석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탈레스의 주장대로 포츠담 항복조건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카이로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의 해석에서 ‘폭력과 탐욕’이 그 기준점이 되느냐, 청일전쟁 이전인 1894년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핀란드 간에 체결된 강화조약은 모두 영토를 확정하고 영토의 귀속에 관한 기준시점을 제시하였다. 영토의 귀속과 관련하여, 강화조약은 일반적으로 해당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기준시점을 정하여 그 당시로 복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그 사안의 범위와 기준시점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한국과 관련된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동시에 일본은 (b)포모사(Formosa), 즉 타이완과 타이완해협의 평후제도, (c)포츠머스조약에 의해 일본이 취득한 쿠릴열도와 사할린 일부, (d)국제연맹의 위임통치와 관련된 모든 권리, (e)남극에 관한 모든 권리, (f)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관한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사안 간에 연관성이 낮아서 개별적인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1947년 초안은 다른 강화조약들처럼 일본영토를 경도와 위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였고 1894년 1월을 기준시점으로 잡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1894년을 기준시점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일본의 영토를 명확히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1947년 초안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저변의 반식민주의 또는 반제국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1945년 포츠담선언은 제8조에서 카이로선언의 조건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4개 도서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에 있어서 카이로선언이 설정한 원칙이 중요 한데,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점령·장악한 태평양의 도서들을 박탈하고, 만주·타이완·펑후 등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탈취한 영토는 중국에 반환하며,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을 독립시켜 1905년 이전으로 복원한다고 하였다. 특히 카이로선언은 일본이 그간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것이 반식민주의 또는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되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반환하도록 한 것이 연합국의 일본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에 대한 반대와 결부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이로선언의 작성과 채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루즈벨트, 장제스, 처칠의 성향과 관련 기록 들은 선언이 언급한 ‘폭력과 탐욕’에 의한 영토취득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 기준에 의한 영토조정의 빌미가 되었음을 추론케 한다. 실제로 카이로선언은 주로 미국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선언의 수정 과정에서 루스벨트는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중국 관련 문장과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중국 관련 문장이 짧아지면서 ‘폭력과 탐욕’에 의해 점령한 영토의 해방에 관한 문장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영토의 처리와 관련하여 루스벨트가 주도하여 넣은 반식민주의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반식민주의 또는 반제국주의 차원에서 독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은 고유영토론 주장과 17세기 이후의 실효적 지배 및 1905년 선점에 의한 독도의 자국영토 편입을 주장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카이로선언의 ‘폭력과 탐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는 서인원 박사의 글이다. 저자는 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었던 중국과 소련 및 당사국 한국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것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으로 이어져 온 일본영토의 처리에 관한 원칙들이 냉전체제의 등장으로 퇴색된 가운데 온건한 강화조약이 된 것이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1943년 카이로선언 이후 연합국들은 일본영토의 처리와 관련하여 영토 불확장과 일본의 고유영토 이외의 영토는 일본에서 분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포츠담선언이 일본의 영토를 4개의 주요 도서와 기타 소도서라 하고,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며, 쿠릴열도, 하보마이, 시코탄을 일본에서 분리하기로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미국이 작성한 대일 강화조약 초안도 처음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억제하고 일본의 영토를 4개 도서 중심으로 제한하는 징벌적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동구권과 중국 본토의 공산화와 한국전쟁 발발 등 공산세력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점차 느슨한 강화조약으로 변모하였다. 1951년 조약체결을 앞두고 배포된 미국의 잠정초안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전후 일본 영토처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상당히 엄격하고 징벌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는바, 미국이 작성한 첫 번째 초안(1947. 3. 19)부터 5차 초안(1949. 11. 2)까지는 일본은 한국을 위하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격화와 공산세력의 중국 본토 통일 등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대일본 정책은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6차 초안(1949. 12. 29)은 독도를 일본영토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후의 초안들은 더 이상 독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 지리학자로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연 보그스 등이 작성한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지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택하게 된 것은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의 활약과 미국 국무부 러스크의 서신에서 보듯이 미국의 동아시아 지리와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저자는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강화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들을 두지 못하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을 다른 전승국(소련,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하였고, 일본을 공산세력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방과제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강화조약은 패전국의 군사행동에 따른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도 제14조에서 일본은 전쟁 중 발생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나, 동시에 일본의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하여 배상의무를 약화시켰다. 셋째,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영토문제와 배상과 관련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정보와 자료를 시블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우리나라도 당시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려 노력하였으나, 일본 측 활동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였다.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비교」는 조규현 박사의 글이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데 비해, 조약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다른 국가들 특히 호주와 영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고 보았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호주와 영국의 역할은 보조적인 데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호주와 영국 등의 강화조약에 임하는 입장과 정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 조율과정을 거쳤으며 양국의 입장이 최종적인 조약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함께 대일강화조약에서 호주와 영국이 취했던 주장과 정책들의 영토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이제까지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대개 국제법적 시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강화

조약은 일반적으로 영토처리나 배상문제에 있어서 징벌적 내용을 포함하는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전후 냉전체제의 등장으로 느슨한 강화조약이 되면서 왜곡되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전후 안보를 강조한 호주와, 경제와 국가위상을 중시한 영국의 정책에서 보듯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종전 이후 1950년대를 관통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호주는 대일강화조약 협상에서 강화조약의 특성에 맞게 일본을 징벌하고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견제하는 조약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다윈 공습 등으로 상당한 인명피해를 보았고 그 압도적인 무력에 많은 위협을 느낀 만큼, 일본을 약화하고 군사력을 억제해서 다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호주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하여 호주는 일본의 침략전쟁 수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전쟁배상금을 온전히 받아 내며, 천황제를 폐지하도록 압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후 동구권의 공산화, 중국 공산당의 중국대륙 통일, 한국전쟁 발발 등 공산세력의 팽창과 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시각이 징벌대상에서 반공진영의 최전선국으로 바뀌어 가는 가운데, 공산세력의 확장을 우려해 온 호주도 안보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미래 경제관계 수립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호주는 일본과 공산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전통적 우방인 영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인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뉴질랜드와 함께 ANZUS(태평양 안전보장조약) 창설에 합의하였다. 호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본과 공산세력에 대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게 되면서, 매우 엄격한 대일강화조약을 주장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미국의 느슨한 입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사력에 경악한 영국은 처음에는 일본의 해체와 약화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은 대일강화조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첫 번째 초안에서 침략적인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고, 일본이 침략을 통해 점령한 모든 영토를 박탈하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특히 영국은 일본의 군사력 억제와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 수호로 대영제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영국은 전쟁 중 버마 전선에서 강력한 일본군에게 고전한 사실 등을 떠올리며 일본의 군사적 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홍콩의 지위를 유지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쟁을 통해 엄청나게 불어난 부채도 영국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는 챙기는 전략을 유지하였는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이를 승인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호주와 영국 모두 일본의 군사력을 실감하였지만, 호주는 막대한 전쟁피해를 상기해 가며 강화조약 준비에 나선 데 비해, 영국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정치적 효과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대부분은 패전국인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강화조약의 전형을 따라 영토문제와 배상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내용의 조약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일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결국 매우 느슨한 조약으로 귀결되었고, 특히 영토처리와 전쟁배상에 대한 접근도 그러하였는데, 당초 한국의 영토로 명문화될 것으로 기대되던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규정도 우여곡절 끝에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을 주도한 미국 등이 전후 공산권의 세력팽창,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발발 등을 거치면서 일본을 패전국이자 징벌대상이 아닌 반공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저자는 영국과 호주는 이러한 냉전적·이념적 사고 이전에 지형학적인 요소들을 중요시하였다고 본 것이다. 특히 양국은 공산주의 확산의 억제라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호주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막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영국은 식민지의 독립과 전쟁채무 등의 문제로 자국의 국제적 지위 유지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였다는 것이다.

III.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 검토

제2부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독도 관련 합의에 대한 한국과 일본 학자 간의 논쟁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해 주요 연합국들이 합의한 일본영토처리 방향, SCAPIN 제677호에 대한 평가, 대일강화조약 초안 분석과 체결과정 분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독도 영유권 관련 합의 분석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선점조치, SCAPIN 제677호의 합의 등을 둘러싼 한국 학자와 일본 학자 간의 국제법적 논쟁과 견해 차이가 나타나 있다.

제2부의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쓰카모토 다카시,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은 정갑용 교수, 제7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은 쓰카모토 다카시,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은 정갑용 교수가 작성한 글이다. 이러한 4편의 글에 대하여 논평한다.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에서 저자 스카모토 다카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등 체결과정에서 독도문제를 나름대로 사실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입장에 머물렀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자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서 그 영토가 4개 섬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라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연합국은 일본에서 제외될 섬과 계속 보유할 섬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SCAPIN 제677호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류큐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오키노토리, 쿠릴열도 등과 함께 일본의 통치권 및 행정권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SCAPIN 제1033호는 일본의 선박과 선원은 독도 12해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SCAPIN 제677호는 대체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취지를 계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자는 영토의 최종결정은 오직 강화조약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영토 처분권이 없다고 하면서 SCAPIN 제677호의 독도 영유권 문제 결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평가절하했다.

대일강화조약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가 1947년 3월부터 1949년 12월 사이에 작성한 초안들은 일본령으로 남게 될 섬을 열거하고 지도에 일본영토의 범위를 표시하는 등 일반적인 강화조약 방식을 따랐다.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위해 포기할 대상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미국의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는 독도 관련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재고를 권고하였고, 그로 인해 1949년 12월 초안은 독도를 일본이 보유할 영토로 분류하였다. 결국 1951년 3월 23일 자 미국의 정식초안은 독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이 일본은 조선, 타이완, 펑후제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였다. 한편, 영국은 독자적으로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1951년 4월 7일의 초안은 초기 미국의 초안처럼 경도와 위도로 설명하고 지도상에 일본영토의 범위를 표시하였는데, 독도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1951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영국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영유권 포기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포함하되 독도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후 양국은 1951년 6월 영국 런던에서 다시 회동하여 6월 14일 양국 공동초안에 최종 합의하였는데,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정리하였다. 이 조문은 동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a)로 포함되었는바, 저자는 이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유지되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미국·영국 공동초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1951년 7월 19일 독도를 한국령으로 포함하도록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였다. 양유찬 대사가 전달한 수정안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

도, 파랑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해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나 당일 텔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묻자, 동행한 일등서기관이 이 섬들이 울릉도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어정쩡하게 답변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한국전쟁으로 우리가 혼란 중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영토문제에 대한 준비에 소홀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우리의 수정요구에 대해, 포츠담선언의 취지에 따라 모든 대상 영토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인도인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조선에 의해 영토로 주장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 지청이 관할하고 있다고 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저자는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발표하고 소위 이승만 라인을 설치하여 독도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도, 기실은 조약을 통해서 얻는 데 실패한 것을 일방행위로 실현하려 한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은 쓰카모토 다카시의 글을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한 정갑용 교수의 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일본의 항복 이전 국제문서,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가지는 합의에 관한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일본의 선점 주장 등 일본의 기타 독도 관련 주장들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에 관한 원칙은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선언을 통해서 정해졌다. 그러나 쓰카모토 다카시는 포츠담선언을 보더라도 일본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연합국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것이며, 독도는 카이로선언이 말하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획득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전후 처리에서 영토문제는 강화조약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 등은 영토처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 등에 나타난 영토처리에

관한 원칙이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까지 연결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쓰카모토 다카시는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의 독도 영유권 관련 함의를 축소하였다. 특히 SCAPIN 제677호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류큐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쿠릴열도 등과 함께 일본의 통치권 및 행정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체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일본영토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보지만, 저자는 영토의 최종결정은 오직 강화조약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영토 처분권이 없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독도 영유권 관련 함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a)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였을 뿐 일본이 독도를 포기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한국에게 반환될 모든 도서를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으며, 조약은 독도문제에 대해 한·일 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약체결을 주도한 미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확정된 증거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대일강화조약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독도를 일본이 한국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으나, 일본 주재 정치고문 시볼드의 친일적인 주장 등으로 잠시 초안은 일본이 보유할 영토에 독도를 분류하였고, 결국에는 초안에서 독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사라지는 과정을 겪었다. 그 후 미국과 영국의 공동 초안에서도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공동초안을 접한 한국 정부는 양유찬 대사 등을 통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포츠담선언의 취지에 따라 일본이 모든 대상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인도인 독도는 조선의 영토인 적도 없고 조선에 의해 그렇게 주장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 현이 이를 관할하고 있다고 하였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수용하기를 거부한 것 역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승인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부침이 있었으나 결국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유의해야 하며,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자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선점으로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선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여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었고 특히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 의해서는 근대 법체계에 의한 영토주권도 수립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제7장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이다. 이 글은 정갑용 교수가 작성한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을 쓰카모토 다카시가 논평한 것으로,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논평하였다.

저자는 『최종보고서』에 실린 자신의 글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즉,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한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되었으나, 영토의 최종결정은 강화조약에 따르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특히, 포츠담선언이 말하는 ‘작은 섬’은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하였다. 강화조약 기초작업 초기 미국이 작성한 초안들과 영국의 초안은 독도를 일본이 한국을 위해 포기할 영토로 규정하기도 했으나, 최종 초안은 독도가 일본령인 것을 전제로 일본은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정갑용은 카이로선언은 일본이 청일전쟁 이래 여러 국가로부터 제국주의 방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을 본국에 반환하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은 1905년 무주지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하지만, 독도는 줄곧 한국의 영토였으므로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카이로선언이 말한 대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독도를 약탈했다고 하려면 독도가 원래 한국령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섬이 역사적으로 한국령이었던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도 1906년 울릉군수의 보고였다고 하였다. 한국이 석도, 즉 독도를 울릉군의 관리하에 두는 행정조치가 담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석도가 독도인 것은 문헌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대한제국이 이를 관리 또는 통치한 사실, 즉 국가권능의 표시로 실효적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도 없다고 하였다.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의 독도 영유권 관련 합의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 특히 SCAPIN 제677호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 및 행정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체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일본 영토처리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보지만, 저자는 이는 일본의 이 섬에 대한 시정권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전후 영토귀속의 최종결정은 오직 강화조약에서 정해지므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영토처분권이 없다고 하면서, SCAPIN 제677호 6항도 포츠담선언은 여러 작은 섬의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미 17세기에 막부의 공인하에 독도와 울릉도 근해에서 자국민들의 어업활동이 있었고, 1905년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및 일련의 행정권 행사를 통하여 영유권을 확립한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독도의 자국영토 편입조치는 그곳에서 강치잡이를 하던 나카이 요자부로의 대하원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곳에 타국의 지배가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한 후 국가가 영유의사를 가지

고 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은 정갑용 교수의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를 비판하였다. 쓰카모토 다카시의 글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이미 앞서도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해 가면서 논평하였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결국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고 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에는 조약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데 실패한 것이니 국제법상 한국영토임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저자는 일본의 선점주장,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의 항복문서 등에서 발견되는 일본 주장의 부당성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다.

저자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가 무주지가 아닌 섬을 카이로선언이 말한 대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하였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는바, 동 선언 제8항에 따라서 카이로선언은 그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SCAPIN 제677호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과 시정권을 잠시 중지한 것일 뿐이므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국내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SCAPIN 자체가 일본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유력한 자료는 아니지만,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배제한 후 이를 변경 또는 부인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독도에 대해 침묵한 점을 들어서, SCAPIN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IV.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연구의 집대성

금번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간한 연구총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조약적 권원에 대한 검토라는 측면에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I~III』의 후속연구 시리즈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독도주권 관련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2022년에 출간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의 후속연구 시리즈인 점에서 우리나라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주권 연구결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제해양법 연구를 비롯하여 독도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영토해양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성과에 참여한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성원을 전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등대』

(김신 저, 2024, 좋은땅)

정갑용 영산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II. 『독도등대』의 주요 내용

III. 독도등대와 독도 영유권의 귀속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김신의 『독도등대』(좋은 땅, 2024년)에 대한 서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¹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는 소위 ‘독도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2024년 6월에 그동안 대한민국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해양과학조사는 불법이니 그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² 이처럼 오늘날에도 일본은 끈질기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의, 주장, 이의 제기 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영토 귀속에 관한 국제법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일본의 주장은 불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적절한 서평을 위해 『독도등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저자가 언급한 사실관계를 국제법적 측면에서 분야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독도등대』의 주요 내용

『독도등대』는 머리말과 7개의 장으로 된 본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자는 이와 같은 책의 순서대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제1장은 독도등대의 역사적 기반에 관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기반, 연합국의 영토정의, 평화선 선포, 독도등대 모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독도등대의 역사적 기반에 관한 것으로 칙령 제41호와 고시 제40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독도등대의 탄생, 1954년의 상황과 독도등대, 울릉

1 이하 『독도등대』의 저작자는 ‘저자’로, 이에 대한 서평을 하는 본인은 ‘필자’로 한다.

2 『MBC뉴스』, 2024.6.7.

도 경찰서의 경찰관 파견, 국회의원단의 독도 시찰, 독도등대의 법제화, 독도의 글로벌화 및 관보에 고시된 교통부 고시 제372호와 독도에 관한 설명이다.

저자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상태가 종식한 이후 1951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일본 및 미국이 행한 국가적 동향을 설명하였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침략과 야욕'으로 탈취해 간 영토로 반환대상이 되었고, 이는 카이로·포츠담선언과 무조건 항복문서로 승계되어 확인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확인된 것으로, 독도가 한반도와 함께 한국영토로 회복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사이에 연합국은 일본을 간접통치하기로 하고 지령을 공포하였고, 일본은 이를 받아 칙령을 발포하여 점령기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이를 '포츠담법령'이라 하였는데 이들 법령들에는 일본의 대외관계를 위해 일본과 외국의 범위를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37개 법령 모두에서 울릉도, 독도(죽도), 제주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한 1952년부터 독도등대가 건립된 1954년까지 발생한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으로부터 제외시킨 법령들을 폐지하거나 삭제, 개정하였다. 다만,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으로부터 제외시킨 법령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일본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12해리 접근 금지)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셋째, 대한민국의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여 일본 어선의 진입을 막자 일본 어선들이 황금어장인 '평화선' 안의 수역으로 침입하여 충돌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일본 어선들의 침입을 저지하고 한국 어민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53년 7월 8일에 '관계관 대책회의'가 열

렸고, 가장 실효적인 방안으로 독도등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저자의 견해는, 독도등대의 건설은 국내적으로는 어민들의 불안과 항해상의 위험을 일부라도 잠재울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고대로부터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의 우산국(울릉도, 독도) 복속과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된 칙령 제41호와 1952년 1월 18일 선포된 평화선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와, 국제법적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일본의 국내 법령들이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독도에 등대를 건설하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독도등대를 글로벌 표준으로 수립하면 국제법이라는 소프트웨어와 등대라는 하드웨어가 잘 융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독도등대의 역사, 한국의 등대표, 등대표 보는 법, 등대명칭의 변화 분석, 한국의 등대표와 독도등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로표지는 외국의 강권에 의해 일본 항로표지 관리소의 협조로 계획하고 건립되었으며, 근대적인 시설을 세운 것은 1892년 구한국 시대에 인천해관등대국을 설치하고, 그 다음해인 1903년 6월에 소월미도를 위시하여 팔미도 등대, 북장자서(北長子巖) 및 백암(白岩) 입표를 건설하여 점등하기 시작한 것이 항로표지의 효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인에 의한 한국의 항로표지 건설은 일본의 해운발전과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에 비해 아주 빈약한 형태였으며, 해방 후에도 치안의 부재로 항로표지의 건설은 평탄치가 못하였고 6·25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항로표지의 건설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제연합(UN)의 원조에 의하여 상순 국면을 맞게 되면서 항로표지의 건설 및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해방 후 10년간은 기존의 항로표지에 대한 정비와 복구에 머무른 수준이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연안의 항로표지를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에게 항로표지의 원상 복구를 지시하였다. 그

러나 기술인력과 자재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1945년 12월 26일부로 항로표지 업무 전반이 한국에 인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발행한 등대표는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등대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은 그동안 국내용으로 주로 발행되던 등대표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구역을 PUB 31으로 1958년부터 발행하다가 1963년부터 PUB 31을 PUB 112로 바꾸어 발행하였다. 미국이 1958년 발행한 등대표에서 독도등대의 소속 국가를 처음으로 KOREA(1958)로 하고 그 명칭도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독도의 명칭인 Tokto(1963)로 기재하여 한국의 독도가 글로벌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즉, 독도가 'Dokdo'로 등재되고 독도의 소속국가를 한국(Korea)으로 함으로써 전 세계 누구라도 독도가 한국의 섬이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1953년 7월 8일의 관계관 대책회의에서 독도등대의 건립이 제기되었지만 독도등대의 건립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전후 한국의 부흥을 돕기 위한 국제연합 한국지원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원조자금이 195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여 이들 자금이 항구시설의 보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고, 1954년에 등대건설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의 예산과 UNKRA 자금의 일부가 독도등대 건설에 들어갔다. 1954년 8월 초에 독도등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54년 8월 10일 정오 12시에 역사적인 점등을 하였다. 독도등대를 점등한 교통부는 관보 제1155호(1954년 8월 12일)에 '교통부 고시 제372호 항로표시점등'으로 독도등대의 점등사실을 국내외에 알렸고 외무부 장관에게도 주한 외교사절에 통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처음에 건립된 독도등대는 현재 일부 흔적이 남아 있을 뿐 실물은 사라져 없어지고 1955년에는 동도 정상으로 등대를 새로이 건립하였다. 1954년의 첫 독도등대는 대한민국 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등대표와 관보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1954년의 독도등대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등대의 위치는 독도 북부 동안, 북위 37도 14분 55초, 동경 131도 52분 15초이다. 둘째, 1954년의 독도등대는 ‘백색사각노형철조’로 등대 높이가 2.9m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을 합치면 총 5.2m이다. 셋째, 1954년의 독도등대는 폐기시키고 새로운 등대를 동도의 정상에 건립하였거나, 일부를 파기 또는 분해하여 1955년에 건립한 독도등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1954년의 첫 독도등대와 1955년의 독도등대 모두 등대를 가동하는 방식이 전기식이 아닌 ‘아세찌랭’ 와사등으로 같다는 점에서, 1954년 독도등대의 자재를 일부 이용하여 1955년의 독도등대를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해방 후 미국 군정청은 항로표지 업무를 일제강점기의 기구를 준용하여 교통국 해사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1946년 2월 5일 교통국 해사과는 교통국 해사부로 개편되어 해사부 내에 총무, 해운, 표지, 해관과로 개편되었다. 1946년 3월 29일 자의 근정법령 제64호에 의하여 교통국 해사부가 운수부 해사국으로 개편되고,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운수부 해사국을 운수부 해상운수국으로 재개편하여 해사과에서 항로표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6월 15일 자의 근정법령 제86호에 의해 해군의 전신인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어 국방상 항로표지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1947년 2월 1일에 해안경비대에 표지계가 신설되어 해군에서 관장하던 중 1948년 8월 4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더불어 같은 해 11월 4일 자의 대통령령 제26호에 의해 대한민국 교통부 해운국으로 이관되어 항로표지 시설의 보수 유지는 전적으로 정부투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극빈 국가로 분류되어 국제원조를 기다려야 했던 우리나라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국제연합이었는데, 한국의 재건을 목표로 세워진 UN 산하의 특별임시기구인 UNKRA를 통해 원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1년 UNKRA가 결성되어 한국을 도우려고 하였지만 원조물자를 들여올 항구와 운송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UNKRA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1958년 7월

1일에 그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총 122,084,000달러의 물자를 지원하였고, 이들 자금은 특히 한국의 산업·교통·통신시설의 복구와 주택·의료·교육 시설의 개선에 집중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항로표지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상실되었고, 이에 한국 정부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항로표지 시설의 복구에 나섰다. 그 첫해인 1953년은 국가예산과 UNKRA 및 대외사업(FOA) 원조자금으로 25만 달러의 표지(등대용품) 자재가 도입되어 공사를 실시하였고, 1954년 8월에 UNKRA 자금으로 도입된 등대자재로 독도등대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 등대표는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된 등화나 음향신호(무신호), 전파신호를 생산하는 항로표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자료이다. 1953년에 한국의 등대표 초판이 출판되었는바,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1953년 1월 서지 제1251호(Pub 1251) 제1권이 발행된 것이다. 이 시기는 독도등대가 건립되기 전이어서 당연하게도 독도등대가 등재되지 않았으며 1954년 10월에 간행된 제2판에서 처음으로 독도등대가 등재되었다. 대한민국의 등대표는 195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54년 10월에 제2판, 1957년, 1958년, 1962년에 이어 1969년 10월에 제10판(개정판)이 발행되고, 1996년 4월에 제20판(전면개정판), 1999년 4월에 제22판(개정판), 2000년 4월에 제23판(개정판), 2021년 4월에 제43판이 발행되었다.

현재 한국 등대표, 미국 등대표, 영국 등대표 모두 똑같이 독도등대의 등고를 104m로 등재하고 있다. 독도등대는 1954년 건립 당시에는 하나의 표지만 있었으나 현재는 6개로 시대의 흐름과 해양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 기능과 수가 증가되었음이 밝혀졌으나, 국제등대번호는 1959년 F4440에서 2008년에 M4440으로 바뀐 이래 변하지 않았다.

제3장은 미국 등대표에 등재된 독도등대에 관한 설명으로, 미국 등대표 보는 법, 1958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미국 등대표에 등재된 독도등대의 번호, 소속 국가, 명칭 등의 변화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미국 해군 수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PUB No. 30을 발행해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등대표를 발행하였으며 독

도가 포함되는 PUB No. 31은 1958년부터 발행되었고 1963년에는 PUB No. 112로 바꾸어 발행하고 있다. PUB No. 31(1959년판)에 1954년 8월 10일 점등한 독도등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등대로 'Takeshima(Liancourt Rocks)'로 등재되었고, PUB No. 31(1961년판)에는 대한민국의 등대로 'Liancourt Rocks(Takeshima)(Japan)'란 명칭으로 등재되었다가 대한민국이 세계등대협회에 1962년 가입한 이후 발행된 1963년판에는 PUB No. 31이 PUB No. 112로 바뀌고 독도등대가 'Tokto(Liancourt Rocks)'로 정정되어 등재되었다. 2004년에 이르러 독도가 'Tokto'로 단독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는 독도의 한국 로마자 표기인 'Dokdo'로 등재되어 있다.

1959년 미국 등대표인 No. 31은 독도등대를 대한민국(KOREA)의 등대로 최초로 등재하였으나 그 명칭은 'Liancourt Rocks(Takeshima)'로 표기하였다. 1961년 6월 3일 제2판에는 독도등대의 소속 국가를 대한민국(KOREA)으로 하면서 그 명칭은 'Liancourt Rocks(Takeshima)(Japan)'로 표기한 뒤 '(Japan)'을 부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Japan)'을 부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63년에 제3판을 발행하면서 대한민국이 1954년 독도등대의 건립사실을 전 세계에 통고할 때 사용되었던 'Tokto'란 독도명칭을 독도등대의 명칭으로 등재하였다. 1963년판에 등재된 'Tokto(Liancourt Rocks)'란 명칭은 매년 계속 등재되었는데, 2004년부터는 'Liancourt Rocks' 없이 'Tokto'로 단독 등재되었고 2018년부터는 'Dokdo'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4장은 독도등대의 기원에 관한 설명으로, 독도등대의 건립역사, 독도등대와 관련된 고시 및 공고 등의 관련 문서, 독도와 관련된 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고 1953년 개최된 제2차 한일회담 어업협상에서 일본은 한국의 평화선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일본 어선의 독도수역 침입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일본 어선의 불법침범에 대응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여론에 부응하고자 정부(외무부)는 1953년 7월 8일에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4가지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다.

첫째,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기 위해 외무부가 교통부와 협의할 것, 둘째, 해군함정으로 하여금 일본 관헌이 표식을 세웠나 확인할 것, 셋째, 해군 수로부로 하여금 독도에 측량표를 세우도록 할 것, 넷째, 역사적 및 지리적 조사를 비롯한 광범위한 조사를 행하여 그 조사결과를 외무부에서 일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8일에 실태조사를 위해 해군함정을 독도에 파견했으며, 7월 25일에 외무부는 교통부에 독도에 등대설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방부에 해군 수로부를 통한 측량표 설치를 요청하였다.

1953년 7월 10일 경상북도 의회는 대통령에게 독도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하였다. 일본 관헌의 독도 불법침범에 대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그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대와 측량표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 교통부 및 국방부에도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표주와 주의표를 세운 것에 대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내외에 천명하고 독도의 관리를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1953년 7월 8일에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관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8월 20일에는 차관회의가 열렸다. 1953년 9월 9일에는 다시 관계 장관들이 모여 ‘해양주권선 및 독도문제에 관한 관계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1953년 7월 8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검토 및 추진책에 관한 것이었다. 1953년 9월 9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1953년 7월 8일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같으며, 사실상 이 회의에서 독도에 등대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6·25전쟁 중이어서 즉각적으로 독도등대를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독도등대의 건설을 위하여 1947년과 1953년에 독도조사단이 독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선박의 접근이 용이한 동도 북단부 돌출부가 등대건설이 보다 용이한 장소로 선정되어 약 10m의 구조

물을 건축하여 그 위에 독도등대를 건립하였다. 그 후에 시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1955년에 독도등대를 동도 정상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1953년 10월에 한국산악회 독도조사단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측량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활동은 독도에 최초로 등대를 건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세계등대협회는 처음에는 항로표지에 관한 비정부기구로 1929년부터 1956년까지 지역적인 협력기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1957년 7월에 20개국이 참여한 세계적인 국제기구로 정식 발족하였고, 1990년에 국제항로표지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세계등대협회에 가입하였는데, 저자는 이러한 가입이 독도등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천연기념물 제336호(1982. 11. 4) 해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12월 10일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1997. 12. 31)에 근거하여 독도 등 48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2000. 9. 5)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 독도 관련 법령으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및 동 시행령, 문화재위원회 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양과학조사법 및 동 시행규칙, 여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어업자원보호법, 특정도서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이 있다.

제5장은 독도등대가 점등된 과정, 독도등대의 건립에 관한 고시 및 기타의 문서, 독도등대의 건립을 세계에 알린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1954년 8월 초 독도등대가 완성된 사실을 당시 미국을 순방하던

일정에서 하와이를 방문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독도등대의 점등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54년 8월 11일에 개최된 제28회 차관회의에서 교통부 차관이 「독도에 등대설치의 건」을 보고하였다. 1954년 8월 12일 교통부 고시 제372호로 독도등대 신설과 점등 사실이 고시되었다. 1954년 8월 13일에 개최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교통부 장관의 「독도등대 설치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독도등대 설치가 의결되었다. 1954년 8월 12일 교통부 장관은 외무부 장관에게 1954년 8월 10일 12시를 기하여 독도에 항로표지(독도등대)를 설치하고 점등하였음을 주한 외국공관에 통고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외무부는 주한 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교황청에 정식으로 통보하였는데, 미국 대사관은 이를 본국으로 통보하였다. 주한 교황사절관에서는 독도등대 점등을 축하하는 외교문서(Proto No.112/54)를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 1954년 8월 12일 대한민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독도등대 설치 사실을 통고하였는데, 이때 외교문서에 사용된 독도의 명칭은 'Dok-To Islet'였고, 이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 국무성에 보낸 문서에는 'Tokto(Liancourt Rocks)'가 사용되었다. 이때 사용된 'Tokto(Liancourt Rocks)'는 1963년판 미국 등대표에 사용되었다.

제6장은 세계 등대표에 등재된 독도등대의 기재 내용에 관한 것으로, 한국 등대표에 기재된 독도등대의 상세한 설명, 미국 등대표에 기재된 독도등대의 내용, 일본 등대표의 독도등대 기재 유무, 영국 등대표에 기재된 독도등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2021년판 등대표에는 4개의 '시각에 의한 항로표지', 1개의 '전파에 의한 항로표지', 1개의 '특수항로표지' 등 6개의 독도항로표지가 세분화되어 등재되어 있는데, 영문 명칭은 'Dokdo'로 모두 같고 국제등대번호도 동일하다.

2021년 미국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미국 등대표에는 하나의 독도등대가 등재되었는데, 미국 등대번호로는 16548이고 국제번호는 M4440으로 영문 명칭 'Dokdo'로 기재되어 있다.

2021년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발행한 일본 등대표 서지 제411호 제1권

의 일본의 북서안 동해에서 독도등대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서지 제412호 제2권의 조선반도 동안에는 울릉도 등대(등대번호 0567)가 국제등대번호 M4444로 등재되어 있지만 독도등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제1권), 한국 및 러시아(제2권)에서도 독도등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21년에 영국에서 발행한 등대표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등대를 한국 서해안, 한국 남해안, 한국 동해안으로 나누어 등재하고 있는데, 한국 동해안에 독도등대가 등재되어 있다. 이때 독도등대는 대한민국 소속이며 4개의 표지로 국제등대번호는 M4440이고, 그 명칭은 ‘Liancourt Rocks (Dokdo/Take-shima)’이다. 영국 등대표의 일본 혼슈 서해안 부분에서는 독도 등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는 독도등대가 대한민국 소속 등대라고 등재되었기 때문이다.

제7장은 영토와 관련 있는 일본의 법령들을 검토하여 독도가 이들 일본 법령에서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제외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본 스스로가 그들의 법령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제291호(1949년 8월 1일)’가 일본 법률 제43호(1952년 3월 31일)로 바뀌어 현재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1954년 5월 15일에 독도 등을 일본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일본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12월 12일)’을 시행하기 위한 일본 대장성령 제4호(1951년 2월 13일)는 제4조 제3항에 기초한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독도 등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53년 8월 1일에 일본 법률 제158호로 계속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 재산의 정리에 관한 법령 제40호(1951년 3월 6일)’가 일본 법률 제16호(1952년 3월 28일)로 바뀌어 현재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일본 총리부령 제24호(1951년 6월 6일)), 일본 ‘접수 귀금속 등의 수량 등의 보고에 관한 법률(1952년 8월 5일, 법률 제2989호)’의 시행에 관한

대장성령 제99호에서도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독도 등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그 후에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독도를 삭제하였다. 1954년 6월 9일 제정된 일본의 법률 제165호(자위대법)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명시하고 있는데, 1969년 8월 20일 ‘방공식별권에 있어서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 제36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법(법률 제8547호, 2007년)에는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II. 독도등대와 독도 영유권의 귀속

『독도등대』는 주로 독도등대의 건립과 관련하여, 독도등대가 처음으로 건립되던 당시의 국제정세의 변화, 독도등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건립되었는가에 관한 과정, 독도등대의 등재사실의 변천, 한국, 미국, 일본 및 영국의 등대표에 등재된 독도등대의 내용, 독도등대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령 및 일본의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등대의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그 등대가 위치한 장소를 등대 소속 국가의 영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아래와 같이 영토권취득에 관한 국제법이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필자는 『독도등대』에서 연구한 독도등대의 건립과 관련된 사실적 자료를 기초로 독도등대와 독도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것을, 국제법과 국가영토의 취득이론, 독도등대와 영유권의 귀속, 영유권 취득과 관련된 유사 개념 및 국제사례 등의 국제법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의 불법성이다. 국제법의 영역취득이론에서 ‘선점(occupation)’이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terra nullius*)’에 대하여 개인이 아닌 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영토취득의 방법이다.³ 즉, 국제법의 영토취득방식인

‘선점’은 국가가 ‘무주지’를 새로이 발견하거나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거나 이전에 해당 영토를 통제하던 국가가 영토주권을 포기한 지역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통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분쟁지역에서 이전부터 부족이 정착하여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국가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무주지’가 요건인 선점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영토분쟁에 있어서 해당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1905년 도근현의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그들이 주장하는 ‘선점’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점’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일본이 독도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비로소 공식화하였다는 일부 견해,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은 하지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없다는 견해, 조선시대 태종이 ‘공도 정책’을 통하여 독도를 포기하였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일본의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주장 또한 모순에 가득 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16세기 일본의 에도 막부는 일본의 돛토리번(현재 돛토리현)의 번주를 통해 울릉도·독도에 대한 ‘도해면허증(渡海免許證, 다른 나라의 영해를 넘나들 때 받는 허가증서)’을 발급하여 면허를 받은 일본 어부들만이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지배하여 왔다고 하면서 외국의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의미하는 ‘도해면허증’을 발급한 것 자체가 일본이 독도를 대한민국(당시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은 대한민국이 ‘공

3 M. N. Shaw, 2008,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 p. 503.

도 정책'을 통하여 독도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 조선은 왜구의 침탈로 많은 피해를 보았던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의 하나로 임시적인 '공도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국가는 자국의 국가영역을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국가정책을 '독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선점'의 요건(무주지, 공시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것이다.

둘째는 독도 영유권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하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동 조약을 작성하던 때에 초기의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인 조약규정에는 독도가 빠져 있으므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의 대원칙인 '문언주의'나 보충적 해석수단인 '당사자 의사주의'에 의하여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장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⁴

생각건대, 조약법에 관한 국제법의 해석원칙에 의하더라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 문언이나 초안의 작성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본의 1905년 선점 주장,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본 주장의 부당성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독도 영유권과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 및 SCAPIN 제1033호이다. 1946년 1월 29일에 발표된 SCAPIN 제677호

4 신용하, 2005,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38~39쪽.

는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지침’으로 그 내용은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으며, SCAPIN 제 1033호는 1946년 6월 22일에 선포되어 일본 본도와 홋카이도 및 대마도를 포함하는 극히 제한된 범위를 일본의 외양(外洋) 활동을 허용하는 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독도를 일본의 활동 허용 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 배제조항에 의하여 일본의 국가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 등 일본의 영토처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는 한국과는 별개의 대상이며,⁵ SCAPIN 제1033호는 1952년 4월에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2년 4월 28일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 그 효력도 상실되었다⁶고 주장한다.

한편, 국내 학자의 SCAPIN 제677호에 배제조항이 있다 해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⁷ 연합국에 의하여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수정이 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며 기정사실로 응고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된다는 견해⁸가 있으며, 외에도 이들 문서는 전후 영토 처리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 이들 문서에서 독도는 분명하게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것은 국제공동체가 분명하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넷째는 독도등대와 국제법의 국가영역이론에 관한 것이다. 흔히들 국가는 영토, 국민 및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며 국가영토란 주권을 가진 국가의 육지(영육), 바다(영해), 하늘(영공)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영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의 ‘영토취득’이나 ‘영토상실’이 발생하여 국가영토의 크기는 끊임없이 변화되

5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7, ‘1954년 2월 10일 자, 일본 정부견해 2’, 『독도관계자료집(1)』, 경인문화사, 51~52쪽.

6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7, ‘1962년 7월 13일 자, 일본 정부견해 4’, 앞의 책, 249쪽.

7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17쪽.

8 이상면, 2003, 「독도 영유권의 증명」, 독도학회 편,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협회, 308~309쪽.

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영토취득’이란 무주지이거나 다른 국가가 통치 하였던 지역에 자국의 주권을 확장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의 ‘영토상실’은 다른 국가가 무주지인 특정한 영토를 선점하거나 또는 국가가 영토를 포기하여 지금까지 행사해 오던 통치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영토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국제법이론에 의하면, 영토취득의 방식에는 선점, 시효, 할양, 매매, 첩부, 정복 등이 있다. 선점이란 ‘무주지’를 발견하여 이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경우이며, 시효는 타국의 영토를 일정 기간 동안에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그러한 점유가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 영토에 대한 권원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할양(cession)은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조약에 의하여 영토를 이전하는 경우이며, 매매는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를 주고 영토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첩부(accession 또는 accretion)는 지형의 자연적 변화에 의하여 영토가 변경되는 경우이며, 정복(conquest 또는 subjugation)은 경제적, 군사적인 이유로 타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자국의 영토로 만드는 국제법적으로 불법한 형태이다.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에는 국가영역에 관한 국제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영토에 관한 분쟁은 그 공간에 따라 육지영토분쟁, 해양영토분쟁으로 나뉘고, 특정한 섬에 대한 분쟁은 해당 섬의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 나타난다.

특정한 섬의 영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국제법의 영유권 귀속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그 주장의 정당성을 찾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국제법의 영유권 귀속에 관한 이론’이란 특정 육지, 해양 및 도서가 국제법 이론에 의하여 어느 국가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법이론을 의미하며, 해당 육지, 해양 및 섬을 과거에 어느 나라가 정당하게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을 따지는 문제를 말한다.

저자가 『독도등대』에서 밝혀낸 것과 같이, 독도등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의 등대표에 그 소속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독도등대가 설치되어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

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관련 여러 법령들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독도 영유권과 일본의 수로지에 관한 것이다. ‘수로지’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당 연안의 지도와 함께 선박이 운항할 때에 안전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본적인 수로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로, 각국은 수로지를 발행하여 자국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수로지 자체가 도서 등의 해당 영토의 귀속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수로지가 구현하고 있는 해당 해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전제로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는 독도 영유권의 귀속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다수의 수로지에서 일본 스스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887년에 세계 각국의 수로지를 모아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환영수로지(寶瀛水路誌)』는 독도에 대해 ‘리앙코르트열암’이란 명칭의 유래 및 변천, 지리적 위치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⁹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다. 1894년 11월에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조선수로지』¹⁰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고, 1907년 『조선 수로지』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다. 1907년에 편찬된 『일본수로지』는 일본 오키 섬 부근의 지도와 설명을 기술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¹¹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908년 5월에 당시 대한제국의 주권(외교권)을 대신하여 행사하였던 일본의 통감부가 편찬한 『한국수산지』에는 독도에 대한 기사, 지리적 위치, 해도 및 지류를 설명하고 ‘수로고시 제2094호’로 독도를 죽도(Liancourt rocks)로

9 日本 海軍省, 1887, 『露沿岸』, 『寶瀛水路誌』 第二卷 第二版.

10 日本 海軍省 海軍水路部, 1894, 『朝鮮水路誌』.

11 日本 海軍省, 1907, 『日本水路誌』 第一改版.

기재하고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고 있다.¹² 독도를 『한국수산지』에 포함한 것은 일본의 공식행정기관인 통감부가 시행한 공식적인 법령에 의한 것으로 수산행정, 특히 어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인바, 이는 ‘*Uti Possidetis*’ 법리에 비추어, 그 당시에 한국의 행정권을 행사하였던 통감부가 독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의 행정 관할이 미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으로 독도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3년 『조선연안수로지』는 일본의 해군수로부가 1933년에 간행한 것으로 조선의 연안 수로를 설명하면서 ‘울릉도 및 독도(鬱陵島及竹島)’편을 추가하여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 이후에도 일관되게 울릉도와 독도가 본래 조선의 영토였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¹³

이러한 일본의 수로지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독도가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가를 밝혀 주는 자료가 될 것인바, 영토조약이나 영역경계조약과 같은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증거들이 없는 경우에 수로지는 영토의 경계나 영유권의 귀속에 간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정황증거가 되므로, 일본의 이들 수로지는 ‘*Uti Possidetis* 법리’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던 당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는 독도 영유권과 일본의 법령들에 관한 것이다.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1877년 3월 29일에 일본 태정관은 “죽도 외 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으므로 명심할 것(日本海内 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이라는 지령을 하달하는데, 이는 일본의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판도 외(조선의 영토)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이와 같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

12 정갑용, 2012.4.12, 「수로지」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 『어업인수산』, <http://www.suhyupnews.co.kr>.

13 독도박물관,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朝鮮沿岸水路誌 第1券)”, http://www.Dokdo museum.go.kr/page.htm?mnu_uid=803&serch_no=117&step=view.

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면서 ‘선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인 것이다. 다음으로 1951년 일본 대장성령 제4호 및 총리부령 제24호를 들 수 있다.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은 조선총독부가 관할하였던 지역 내에 있는 일본의 국가재산 및 일본 민간인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는데,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제4호 ‘구령에 따라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칙에 근거하는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과 1951년 6월 6일에 공포된 총리부령 제24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이 그것이다. 이들 일본 법령들은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인적 및 지역적 범위를 본방(일본)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일본인)로 규정하고 있어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일본의 국내법령들은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관할하여 온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관할하여 온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관할하여 온 지역으로 독도(죽도, Liancourt Rocks)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일본은 일본의 국내법령에서 독도는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던 지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본 스스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는 독도 영유권과 ‘*Uti Possidetis* 법리’에 관한 것이다. ‘*Uti Possidetis* 법리’란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국가가 이전의 식민종주국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든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의 식민종주국이 식민지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적 단위를 기초로 피식민지국이 독립하던 당시에 존재하였던 행정적 경계를 국가영역으로 이어받는다든 원칙을 말한다.¹⁴ 국제사법재판소(ICJ)도 ‘*Uti Possidetis* 법리’는 식민행정당국의 철수 후 국경분쟁으로 인해 신생국의 독립과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

14 Joshua Castellino, 2008,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ual tool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 33, p. 508.

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오늘날 ‘*Uti Possidetis* 법리’는 식민상태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경우에 국가의 경계를 정하는 전통적인 일반원칙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탈식민화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국가 내에서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새로이 국가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Uti Possidetis* 법리’가 원용되기도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경분쟁 사건에서 ‘*Uti Possidetis* 법리’를 다룬 사건들을 보면, 1986년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의 국경분쟁 사건에서 재판소는 ‘*Uti Possidetis* 법리’가 과거 식민지배 국가가 식민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다가 각기 독립하는 국가들의 국가경계를 정하는 데 적용되는 일반원칙임을 인정하였다. 1992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영토분쟁 사건에서 재판소는 ‘*Uti Possidetis* 법리’의 본질은 해당 국가들이 독립한 시점에서의 영토경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원칙이라고 하였다. 2005년 베냉과 니제르의 국경분쟁 사건에서 재판소는 분쟁당사국들의 영토경계는 동일한 식민지 당국에 복종하였던 서로 다른 행정 단위들 사이의 경계획정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IV. 맺음말

오늘날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이 불법하게 차지하고 있는 독도를 조속히 일본에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끊임 없이 시비를 걸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여 일본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관계자들을 보내어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문서들을 일본으로 가져와 전문가들에게 보다 상세한 연구를 맡겨서 일본에게 유리한 부분은 과장하여 홍보하고 일본에 불리한 문서나 내용은 숨김으로써 일본이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언어와 마찬가지로의 모순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독도등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대단히 긴요하고 시의적절한 자료가 아닐 수 없으며, 국제법을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이 저서를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독도문제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을 상정하여 이에 필요한 것을 준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독도문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체제, 종합적으로 학제 간 연구협력체제의 구축,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또는 국민성금을 모아), 독립적이고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도 관련 전문연구소의 설립, 기존에 정부가 행하는 행정절차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 여건을 만들어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토·해양일지



영토 · 해양 일지

염태일 한림성심대학교

2023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 지리 과목에서 3년 연속 '독도'와 관련된 문제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일: 러시아 항공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노선"인 쿠릴열도 직항 항공기 취항 발표 20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 항공기 취항에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강경한 태도 유지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지구 궤도에 안착 28일: 일본 순시선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해역 항해 28일: 중국 해군은 센카쿠열도 해역에 진입한 일본 순시선에 경고·퇴거 발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 중·러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 공군은 전술 조치 실시 15일: 국방부는 14일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주한 중·러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 및 재발 방지 촉구 16일: 외교부는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내용 중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삭제 촉구 및 주한 일본대사관 관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일: 중국 허레이(何雷) 중장이 센카쿠열도에 분쟁에 대해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두렵지 않다"라며 "전쟁" 단어 언급 13일: 미국 정찰기와 미사일추적함 운용 통해 북 탄도미사일을 발사 관련 관측 14일: 중·러 군용기 6대가 KADIZ에 진입

영토·해양 일지

2023년	국내	국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일: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규탄 • 27일: 개편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 내용 중 자료지도에 독도가 미표기되어 논란 •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신교육 교재 문제에 대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표명 • 29일: 국군은 비공개 독도방어훈련(동해영토수호훈련) 실시계획을 발표 • 29일: 정부는 비공개로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 관련 일본 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고 표명 •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 문제 질책하여 교재 회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일: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 18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 미사일(ICBM) 1발 발사 • 19일: 러시아 외무장관은 관영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을 포함한 어느 국가와도 영토 분쟁은 끝났다”라고 입장 표명 • 29일: 일본은 한국군의 비공개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
2024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정부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쓰나미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엄중히 항의 • 5일: 국방부는 북한의 서해 해상사격 실시에 대응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 • 5일: 서해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 도발 상황에 따라 군 연락을 받고 대피 • 8일: 합참은 북한군의 사흘간 포사격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유감을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북한은 백령도 및 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 사격 실시 • 6일: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방사포와 야포 사격 실시 • 7일: 북한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의 포사격 실시 • 9일: 미 국무부가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실시하자 도발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

2024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서해 지역의 경계 태세 점검 • 25일: 합참은 24일 북 미사일 포착 후, 한·미 당국이 세부 분석 중이라고 설명 • 28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 공조 표명 • 29일: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관련 국군은 북한이 2가지 이상 동시 도발 통해 남측 대응 관측 의도 발표 • 30일: 외교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반복이라며 강력히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열도 방문 표명 • 14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 • 24일: 북한은 서해상에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수발을 발사 • 26일: 미국 해군의 해상·대잠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을 서해 상공에서 포착 • 28일: 북한은 함경남도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불화살-3-31' 2발 발사 • 29일: 북한은 서해상에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하며 대남 오물 풍선 260여 개 살포 •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측 의심부표를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발견하고 세부조사 실시 • 30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본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 30일: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 • 30일: 일본 외무상은 연례 외교 연설에서 11년 연속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는 망언과 쿠릴열도의 일본령 발표 • 30일: 러시아가 일본과의 재협상은 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 합참은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러시아의 인터넷 백과사전 루비키가 독도를 한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소개 • 2일: 북한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위력 시험 실시 • 6일: 미·일 합동 군사훈련 중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보도 관련 중국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에 함정 투입 • 14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시험 진행

영토·해양 일지

2024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실시 • 22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실시 관련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초지하여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항의 및 폐지 촉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해상경계선과 관련해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며 "국경선을 침범하면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 • 19일: 중국이 대만 인근 자국 푸젠성 사면과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 대해 상시 순찰 시행을 발표 • 19일: 대만이 중국의 대만 인근 해역에 대한 상시 순찰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 • 22일: 일본 정부와 언론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반복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한·미 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 실시 • 15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 • 18일: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의 비행체를 포착했다고 발표 • 20일: 백령도 해병대 방공레이더에 북방한계선(NLL) 북쪽 상공의 미상 비행체를 포착하고 남해해 오자 KA-1 기종 사격 격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일: 북한이 5~7일(3일간)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상공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신호 발사 • 8일: 중국 외교부는 FS 연습에 대해 한·미 양국이 특정 상대에 대해 도발하는 군사훈련은 갈등 해소와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8일: 미국 정부는 FS 연습이 지속해 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 • 9일: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18세기 지도가 독일의 한 박물관에서 전시 • 15일: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이 전남 신안군에서 불법 조업 실시 •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초대형방사포(KN-25)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 이상 발사

2024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 어선 2척 나포 • 22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중등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해 유감 표명 •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 •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도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이 전남 신안군에서 불법 조업 실시 • 22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에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 기술(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로 기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도 증가[2020년 82%(17종 중 14종)에서 2024년 89%(18종 중 16종)로 증가] • 22일: 러시아 해군 볼호프 잠수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칼리브르 PL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약 1,000km 거리의 목표물 타격 • 26일: '중국어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무인기 우전(無偵·WZ)-70이 동해를 선회 • 26일: 중국 무인기가 동해 상공을 선회하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긴급 발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중거리급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미·일은 10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센카쿠열도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조율 표명 • 2일: 북한이 해상으로 중거리급탄도미사일 1발 발사 • 9일: 미국은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이 안보협력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명 • 9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 예정에 대해,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서방이 주도하는 '블록 대결'을 공동으로 비난하며 양국 관계 과시 • 11일: 미·일·필리핀은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 표명 • 11일: 러시아가 쿠릴열도 일대에 11~17일까지 외국 함정의 항해를 금지하는 조치 발표 • 12일: 중국 정부가 미·일·필리핀 회담을 통해 자국을 견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주중 일본수석공사와 필리핀 대사를 초치 • 12일: 중국 해경국 함정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양 순찰하며 무력시위

영토·해양 일지

2024년	국내	국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일: 경상북도는 일본이 발표한 외교청서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하게 항의 • 16일: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를 통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공사 초치 • 17일: 독립운동 선양단체들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 규탄 • 22일: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발표 • 24일: 울산교육청은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응해 독도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 •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의 해양 순찰에 대해 함정 퇴거 요청 • 12일: 러시아의 항해 금지 조치에 일본은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항의 • 16일: 일본 외무상은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 보고 • 16일: 미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 • 19일: 북한은 서해상에서 전략수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 22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 • 27일: 일본 조사선이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 환경 조사 중 중국 해경선의 접근으로 조사 중단 • 28일: 중국 해경은 전일 일본 조사선과 대치한 것과 관련 일본의 침해와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제기했다고 표명 • 29일: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등이 센카쿠열도를 방문하고 조사 실시 • 29일: 중국은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등이 센카쿠열도를 방문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 공식 항의 •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 하자 성명을 발표해 항의

2024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일: 경북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 • 14일: 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일축 • 16일: 정부의 백령공항 건설 사업 본격화 • 17일: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 • 27일: 합참은 북한이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에 무선 관측소를 설치 • 4일: 호주 해군 HMAS 호바트함의 시호크 헬기가 서해에서 유엔 관련한 작전 수행 • 4일: 중국 J-10 전투기가 호주 해군 헬리콥터를 향해 조명탄 발사 • 7일: 호주는 작전을 수행 중이던 호주 헬리콥터에 중국 전투기가 조명탄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에 항의 • 8일: 일본 외무상은 최근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항의 • 8일: 중국 해경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에서 해상 순찰 실시 • 13일: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 표명 • 1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21일: 일본은 중국 해경선이 14일부터 지속적으로 센카쿠열도 인근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던 측량함을 추적했다고 발표 • 26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자위대가 최대 규모의 화력 훈련 실시 • 26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센카쿠열도 주변 해상을 지속적으로 순찰 • 27일: 북한이 서해로 2차 군사 정찰위성으로 보이는 인공위성을 발사 • 27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동중국해에서 신형 전투 드론을 비행 • 27일: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열도 인근 동중국해에서 중국 신형 전투 드론을 발견했다고 발표 • 27일: 중국 해경국 선박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센카쿠열도 인근으로 연속 항해 실시 • 27일: 중국 해경국 항해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영해 접근 금지 경고

영토·해양 일지

2024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합참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 10여 발 발사를 포착했다고 발표 • 30일: 외교부 출간 '일본개황' 개정판에 독도 관련 기사다 총리 발언 전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일: 중국은 서해 해역에서 로켓 발사를 예고하며 항행 경고 발령 • 30일: 북한은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 10여 발 발사

규정 및 규칙



- 편집위원회 규칙
- 발행 및 심사규정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개정 2018. 04. 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발행 및 심사규정)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10. 25.
개정 2020. 07. 22.

제1장 발행규정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장 심사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가능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차기 호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2020.07.22. 개정)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투고 요령)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권),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臺北: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11.11. 규칙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

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

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인)

편집위원장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 실장

편집위원

강병근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영 _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제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한민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송규진 _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윤유숙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편집간사

방제의 _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토해양연구 Vol. 27

초판 1쇄 인쇄 2024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4년 6월 30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